

# 2018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 2018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2019. 7.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 발 간 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대규모 재정투자사업과 민간투자사업 등 공공투자사업의 검토와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업추진 프로세스 개발, 공공투자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국내유일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한국 경제의 튼튼한 초석을 다지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1999년 5월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2000년 1월 KDI 조직으로 출범한 공공투자관리센터는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 전반을 다루는 조직으로 확대·개편되었으며, 2011년 1월에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2014년에는 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설립 이후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 1,121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및 민간투자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2011년에 시작한 공공기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도 총 176건을 수행하였고, 공공투자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연구도 약 209건을 수행하여 2018년 현재 약 190조원의 재정 절감 및 총 118조원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를 공적 조사과정의 모범사례로 정착시키고, 그 조사 방법론과 규율을 공공기관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장시켜 우리나라의 공공투자 운용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이후 추진된 주요 업무 수행 결과뿐만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적격성조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타당성 판단에 대한 객관성, 투명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노력을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공공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 수문장(Gatekeeper)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세금의 값어치(Value for Money)를 극대화하는데 진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의 개발과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김기완



# 목 차

##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b>제 I 장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b> .....	1
제1절 설립목적 및 역할 .....	1
제2절 설립연혁 및 업무추진 근거 .....	2
제3절 조직 및 인원구성 .....	5
<b>제 II 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b> .....	7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	8
1. 도입배경과 추진경위 .....	8
2.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분류 .....	13
3. 수행절차 .....	15
제2절 타당성재조사 개요 .....	20
1. 총사업비 관리제도 .....	20
2. 타당성재조사 제도 .....	24
<b>제 III 장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b> .....	31
제1절 1999~2018년 수행 실적 .....	31
1. 예비타당성조사 .....	31
2.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38
3. 타당성재조사 .....	39
4.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 .....	43
제2절 2018년도 수행 실적 세부 내역 .....	46
1. 예비타당성조사 .....	46

2.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49
3. 타당성재조사 .....	50
4.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 .....	52
<b>제 IV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b>	<b>54</b>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	54
1. 민간투자제도의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	54
2.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및 추진방식 .....	57
3. 민간투자사업의 참여자 및 역할 .....	64
4. 세부 추진절차 .....	64
제2절 민간투자지원사업 주요 내용 .....	76
1.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및 타당성분석 .....	76
2.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	77
3. 사업계획(제안서) 평가 .....	77
4.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및 협약(안) 검토 .....	78
5. 자금재조달 사전검토 .....	79
6. 사업 시행조건 조정 검토 .....	79
7. 민간투자사업 지원업무 .....	80
8. 관리이행계획 검토 업무 .....	80
<b>제 V 장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b>	<b>81</b>
제1절 민간투자사업 추진 실적 .....	81
1. 추진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	81
2.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	83
3. 연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	85
4. 추진주체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	90
5. 발주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	93
6. 추진단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	94
제2절 2018년도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실적 .....	97
1. 적격성조사(민간제안서 검토) 및 타당성분석 .....	98
2. 2018년도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	101

3. 2018년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약(안) 검토 .....	102
4. 2018년도 관리이행계획 검토 .....	102
5. 2018년도 자금재조달 및 사업시행조건 조정 .....	103
6. 기타 검토 및 질의답변 .....	106
<b>제VI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b>	<b>107</b>
제1절 도입배경과 추진근거 .....	107
1.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	107
2. 추진 근거 .....	110
제2절 대상사업 및 수행체계 .....	112
1. 대상사업의 선정 및 면제 기준 .....	112
2.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	113
3.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	114
제3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내용 .....	115
1. 조사의 수행절차 .....	115
2.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	116
제4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	118
1. 2011~2018년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118
2. 2018년도 수행 실적 .....	122
<b>제VII장 정책연구 및 정책서비스 수행 실적 .....</b>	<b>124</b>
제1절 정책연구의 개요 .....	124
1. 지침 연구 .....	125
2. 일반 연구 .....	129
제2절 2018년도 정책연구 .....	134
제3절 민간투자사업 관련 정책서비스 수행실적 .....	136
1. 민간투자 관련 교육 및 세미나 .....	136
2. 국제협력 업무 .....	136
3. DB system 관리 및 운영 .....	137



제Ⅷ장 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 실적 .....	140
제1절 도입배경과 추진근거 .....	140
1. 도입배경 .....	140
2. 조세지출의 개요 .....	141
3. 추진근거 .....	143
제2절 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개요 .....	146
1. 개요 .....	146
2. 대상사업 .....	147
3. 수행절차 .....	149
4. 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수행실적 .....	153

**제2부 2018년도 사업별 요약표**

**제 | 장 2018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 예비타당성조사 >

1. 광주 송정~순천 단선전철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159
2.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160
3. 의정부~금정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161
4. 포항~동해 전철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162
5. 서울 지하철 9호선 4단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163
6. 상화로(유천교~월곡) 입체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164
7. 평택·당진항 진입도로(신평~내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165
8. 정림중~버드내교간 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166
9. 광주 대촌~나주 금천 간 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167
10. 금남~북대전IC 연결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168
11. 새만금 기력선착장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169
12. 금호워터폴리스 일반산단 진입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170
13.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171

14. 엄궁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72
15.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73
16. 금강남부(2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74
17. 고덕8단지 임대주택 정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75
18.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76
19. 산재모병원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77
20.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신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78
21.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79
22. 대산임해산업지역 공업용수도(해수담수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80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1. 평택북부경찰서 신축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81
2. 경기 북부구치소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82
3. 전주 공공하수처리시설(4단계) 증설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83
4.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84
5.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85

< 타당성재조사 >

1. 제주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186
2. 원주천담 건설 타당성재조사	187
3. 부산북항 재개발 배후도로 건설 타당성재조사	188
4. 계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타당성재조사	189
5. 동광주~광산 고속도로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190
6.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사업 타당성재조사	191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1.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92
2. 원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93
3. 전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용진~우아) 건설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94
4. 국지도58호선(송정~문동) 건설공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95

5.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196
6. 파주 무대공연 종합아트센터 건립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197
7. 안성~구리 고속도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198
8.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김포~파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199
9. 홍보지구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200

< 설계의 적정성 검토 >

1.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건설사업 설계의 적정성 검토 .....	201
2.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설계의 적정성 검토 .....	202
3. 부산~울산 복선전철 설계의 적정성 검토 .....	203
4.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설계의 적정성 검토 .....	204
5. 중앙선(도담~영천) 복선전철사업(영주역사) 설계의 적정성 검토 .....	205
6. 새만금~전주 고속도로[5공구 중인동 구간] 설계의 적정성 검토 .....	206

**제 II 장 2018년도 민간투자지원사업 사업별 요약표**

< BTO (제안서검토) >

1. 경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	209
2. 천안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	210

< BTL (타당성분석 검토) >

1. 해양경찰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211
2. '19년 부산광역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	212
3. 강릉원주대학교 생활관 BTL사업 타당성분석 검토 .....	213
4. 2019년 국방부 교육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검토 .....	214
5. 육군 방공학교 재조사 .....	215
6. 경찰청 경찰대학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타당성분석 검토 .....	216
7. 강원도 삼척의료원 이전신축(BTL) 타당성분석 검토 .....	217
8. 3차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BTL) 타당성분석 검토 .....	218
9. 강릉경찰연수원 재건축(BTL) 타당성분석 검토 .....	219

10. 광주과학기술원(BTL) 타당성분석 검토 .....	220
11. 대구경북과학기술원(BTL) 타당성분석 검토 .....	221
12. 2018년 고시 육군 고성(18)병영 BTL 민자적격성조사 재검증 .....	222

### 제III장 2018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1. 인프라 투자 정책의 동향 및 시사점 연구: 호주사례를 중심으로 .....	225
2. 임대료 편익산정의 개선방안 연구 .....	227
3. 전력공급 편익 추정 및 대기오염물질 외부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	229
4. 민간투자사업 위험배분구조와 수익률간의 관계에 대한 기초 연구 .....	231
5. 민간투자사업 법률쟁점연구(대상기간: 2015~2017년) .....	233
6. 공익처분의 환경적 요인 및 실행요건에 관한 연구 .....	235
7. 민간투자사업의 자기자본수익률에 관한 연구 .....	237
8. 민간투자사업 위험분담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	239
9. 타당성 평가를 위한 도로부문의 유지관리비 개선방안 연구 .....	241
10.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부문 타당성 평가 개선방안 연구 .....	243
11. 민간투자사업의 재무적 쟁점에 관한 연구 .....	245
12. 도시재생 효과에 대한 편익산정 기초 연구: 사회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	247
13. 항만 민자사업 부실 개선방안 연구 .....	249
14.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익성 분석 방법론의 주요쟁점 연구 .....	251
15.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의 수요 및 편익산정 연구 .....	253
16.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 방안 연구 .....	255
17. 민간투자사업의 법인세관련 이슈 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	257
18.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및 제안서 검토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 .....	259
19. 공기업·준정부 기관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 (제2판) .....	261
20.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 (제2판) .....	263
21. 환경분야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지침 개정 연구 .....	266

## 제 IV장 2018년도 교육 및 국제협력 과제별 요약표

1. 중남미지역 공무원 대상 PPP 정책연수 .....	271
2. 2017 아시아 민간투자 네트워크(APN) .....	272
3. 카자흐스탄 공무원단(KSP 사절단) 방원회의 .....	274
4. 스리랑카 재무부 사절단 방원회의 .....	274
5. 우간다 장관 사절단 방원회의 .....	275
6. 우크라이나 공무원단(KSP 사절단) 방원회의 .....	275
7. 캄보디아 PPP 전담기관 사절단 방원회의 .....	276
8. 대만 공업기술연구원 사절단 방원회의 .....	276
9. 2018년 민간투자사업 상반기 권역별 순회교육 .....	277
10. 2018년 상반기 민간기관 대상 민간투자사업 교육 .....	277
11. 2018년 민간투자사업 재무심화교육 .....	278
12. 2018년 민간투자사업 하반기 권역별 순회교육 .....	278
13. 2018년 하반기 민간기관 대상 민간투자사업 교육 .....	279
14. 2018년 민간투자사업 심화교육 .....	279

## 제 V 장 2018년도 조세특례 평가사업 과제별 요약표

### < 조세특례 심층평가 >

1. 농림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	283
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284
3.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	285
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	286
5.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	287

참고 문헌 .....	288
-------------	-----

## 표 목 차

<표 I -1> 공공투자관리센터 연혁 .....	3
<표 I -2>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전공별 인력 현황 .....	5
<표 I -3>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주요 업무 내용 .....	6
<표 II -1>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	7
<표 II -2> 예비타당성조사 주요 추진경위 .....	12
<표 II -3>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	19
<표 II -4> 총사업비 관리제도 연혁 .....	23
<표 III-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	31
<표 III-2>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 규모 .....	33
<표 III-3>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부처별 수행 실적 .....	34
<표 III-4>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연도별 경제적 타당성 확보율( $B/C \geq 1$ ) .....	35
<표 III-5>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연도별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평가, 안전성 평가) .....	36
<표 III-6> 예비타당성조사 연도별 총사업비 절감액 .....	37
<표 III-7>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수행 실적 .....	38
<표 III-8>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1) 연도별 총사업비 절감액 .....	39
<표 III-9> 타당성재조사 수행 실적 .....	40
<표 III-10> 타당성재조사 요건별 수행 실적(공문 접수 기준) .....	41
<표 III-11> 타당성재조사 연도별 총사업비 절감액 .....	42
<표 III-12>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실적 .....	43
<표 III-13> 수요예측재조사 수행 실적 .....	44
<표 III-14>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검토 및 설계의 적정성 검토 수행 실적 .....	44
<표 III-15>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연도별 총사업비 합계 .....	45
<표 III-16>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별 조사결과 요약 .....	46

<표 III-17>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 수행 실적 .....	47
<표 III-18>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부처별 수행 실적 .....	48
<표 III-19>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 경제적 타당성 확보율( $B/C \geq 1$ ) .....	48
<표 III-20>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 $AHP \geq 0.5$ ) .....	49
<표 III-21> 2018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별 조사결과 요약 .....	49
<표 III-22> 2018년도 타당성재조사 요건별 수행 실적 .....	50
<표 III-23> 2018년도 타당성재조사 사업별 조사결과 요약 .....	50
<표 III-24> 2018년도 타당성재조사 부문별 수행 실적 .....	51
<표 III-25> 2018년도 타당성재조사 총사업비 규모 .....	51
<표 III-26> 2018년도 타당성재조사 사업부처별 수행 실적 .....	51
<표 III-27> 2018년도 타당성재조사 경제적·종합적 타당성 확보율 .....	52
<표 III-28> 2018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사업별 조사결과 요약 .....	52
<표 III-29> 2018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총사업비 규모 .....	53
<표 III-30> 2018년도 설계의 적정성 검토 사업 .....	53
<표 IV-1> 민간투자제도 변천과정과 특성 .....	56
<표 IV-2> 사회기반시설 유형 (민간투자법 제2조) .....	58
<표 IV-3> 민간투자사업 지정의 일반원칙(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60
<표 IV-4>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3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 .....	61
<표 IV-5> 민자사업 방식에 따른 주요특징 .....	62
<표 IV-6> 위험분담형과 손익공유형의 비교 .....	63
<표 V-1> 추진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	82
<표 V-2> 추진방식 및 발주 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	82
<표 V-3>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	83
<표 V-4> 추진방식 및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	84
<표 V-5> 연도 및 추진 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	87
<표 V-6> 연도 및 추진 주체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	88
<표 V-7> 연도 및 발주 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	89
<표 V-8> 추진주체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	90

<표 V-9> 추진주체 및 추진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91
<표 V-10> 추진주체 및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92
<표 V-11> 발주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93
<표 V-12> 발주방식 및 시설유형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94
<표 V-13> 추진단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94
<표 V-14> 추진단계 및 시설유형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95
<표 V-15> 수익형민자사업의 추진단계별 현황	96
<표 V-16> 임대형민자사업의 추진단계별 현황	96
<표 V-17>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97
<표 V-18> 2018년도 적격성조사 및 민간제안서 검토(BTO)	98
<표 V-19> 2018년도 BTL 제안서검토 수행 실적	99
<표 V-20> 2018년도 BTL 타당성분석 검토 수행 실적	99
<표 V-21> 2018년도 수요예측재조사 수행 실적	100
<표 V-22> 2018년도 적격성재조사 수행 실적	100
<표 V-23> 2018년도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수행 실적	101
<표 V-24> 2018년도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 수행 실적	101
<표 V-25> 2018년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검토 수행 실적	102
<표 V-26> 2018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검토 수행 실적	102
<표 V-27> 2018년도 관리이행계획 검토 수행 실적	103
<표 V-28> 2018년도 자금재조달 및 사업시행조건 조정 관련 업무 수행 실적	103
<표 V-29> 2018년도 자금재조달 검토 수행 실적	103
<표 V-30> 2018년도 사업시행조건 조정 방안 검토 수행 실적	104
<표 V-31> 2018년도 사업시행조건 조정 방안 검토 결과 요약	104
<표 V-32> 2018년도 금융재무 관련 단기검토 수행 실적	105
<표 V-33> 2018년도 기타검토 및 질의답변 업무	106
<표 VI-1>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 경위	109
<표 VI-2> 공공성과 수익성의 평가 기준치	117
<표 VI-3>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청 및 선정 현황	118
<표 VI-4> 공공기관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현황	119



<표 VI-5> 부문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현황	119
<표 VI-6>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120
<표 VI-7>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 현황	121
<표 VI-8> 2011~2018년 경제성 분석 결과(국내사업)	121
<표 VI-9> 2011~2018년 부문별·연도별 수익성 분석 결과	122
<표 VI-10> 2011~2018년 부문별·연도별 타당성 종합 분석 결과	122
<표 VI-11> 2018년도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123
<표 VII-1> 지침 및 연구과제 수행 실적	124
<표 VII-2> 재정투자평가사업 지침 목록	125
<표 VII-3> 수익형 민자사업(BTO) 관련 지침 및 공통 지침 목록	127
<표 VII-4> 임대형 민자사업(BTL) 관련 지침 목록	128
<표 VII-5>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목록	128
<표 VII-6>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목록	129
<표 VII-7> 재정투자평가사업 일반 연구 목록	129
<표 VII-8> 민간투자지원사업 일반 연구 목록	131
<표 VII-9>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일반 연구 목록	134
<표 VII-10>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일반 연구 목록	134
<표 VII-11> 2018년도 지침 및 연구과제 수행 실적	134
<표 VII-12> 2018년도 연구과제 목록	135
<표 VII-13> 2018년도 민간투자사업 교육 수행 실적	136
<표 VII-14> 2018년도 국제협력 수행 실적	137
<표 VII-15> Infracore DB system의 DB 현황	138
<표 VII-16> DB System 구축 기초자료	138
<표 VII-17> 시스템 관리내역	139
<표 VIII-1> 조세지출현황	140
<표 VIII-2>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	142
<표 VIII-3> 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수행의 법적근거	143
<표 VIII-4> AHP 평가 항목별 가중치 범위	151

<표 VIII-5> 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수행건수(전체 의뢰건수 착수기준) .....	153
<표 VIII-6> 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수행실적(착수기준) .....	153
<표 VIII-7> 2018년 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수행실적 .....	154

## 그림 목차

[그림 I -1]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조직도 .....	5
[그림 II -1]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절차 .....	16
[그림 II -2]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적 수행체계 .....	18
[그림 II -3] 타당성재조사 수행 흐름도 .....	30
[그림 IV -1] 수익형 BTO과 임대형 BTL 방식 기본구조 .....	62
[그림 IV -2] 민간투자사업 참여자 및 역할 .....	64
[그림 IV -3] 수익형 민자사업(BTO) 추진 절차 .....	65
[그림 IV -4] 수익형 민자사업 (BTO, 정부고시사업) 추진절차 .....	69
[그림 IV -5] 정부고시사업의 대상사업 지정절차(재정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경우) .....	70
[그림 IV -6] 정부고시사업의 대상사업 지정절차(정부고시 민자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을 신청한 경우) .....	71
[그림 IV -7] 수익형 민자사업 (BTO,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절차 .....	72
[그림 IV -8] 임대형 민자사업 (BTL)의 정부고시사업 추진절차 .....	73
[그림 IV -9] 임대형 민자사업 (BTL)의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 .....	74
[그림 IV -10] 경쟁적 협의(BTO, 정부고시사업) 추진 절차 .....	75
[그림 V -1] 연도별 사업 수 및 총투자비 추이 .....	85
[그림 V -2] 연도별 사업 수 및 평균투자비 추이 .....	86
[그림 VI -1]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흐름도 .....	115
[그림 VIII -1]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대상사업 수행절차 .....	149
[그림 VIII -2]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사업 수행절차 .....	150
[그림 VIII -3]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분석 체계 .....	152

##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제 I 장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 II 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제 III 장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제 IV 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제 V 장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제 VI 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 VII 장 정책연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 VIII 장 조세특례 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 실적



## 제 I 장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 제1절 설립목적 및 역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사업(재정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공공기관투자사업 등)을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시각으로 평가·관리하고 관련 제도 및 방법론을 연구함으로써 공공투자사업의 내실화와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등 공공투자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sup>1)</sup>.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관리를 위한 타당성재조사 및 조세특례 성과평가(예비타당성평가, 심층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전·사후 타당성 검증을 통해 재정투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민간투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정에서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조사, 사업제안서 평가, 자금제조달 검토, 협상지원 및 분쟁조정 검토 등 주무부처에 대한 직접적 지원 업무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내외 교육과 사업추진의 세부요령 및 정책개발 연구 등을 통하여 사업 주무부처와 민간부문에 대한 정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2011년 1월부터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공공기관의 신규투자 결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정부, 민간 및 공공기관 등이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1) 본 절은 『KDI 2017 연차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8) 중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분석·평가를 위해 조사 방법론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공공투자제도 및 정책관련 포럼과 대내외 홍보·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은행, OECD, IMF 등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해외의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국제협력 교류 및 국제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공공투자사업 전단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구축·보완하고 있으며, 글로벌 정책이슈를 공유하고 개발도상국가와 국가 간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민간투자시장 진출에도 노력하고 있다.

## 제2절 설립연혁 및 업무추진 근거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1999년 5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됨에 따라 2001년 1월 KDI 내부조직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라 KDI 부설기관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발족됨과 동시에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로 이관되었다.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는 1998년 8월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종합대책’ 수립과 1998년 12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공포 이후 1999년 4월 국토연구원의 내부조직으로 설립되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총 연혁은 다음 표와 같다.

&lt;표 I-1&gt; 공공투자관리센터 연혁

구분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공공투자관리센터(PIMA)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
199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사업 효율화 추진단 구성 (기획예산위원회, 건설교통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월,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종합대책 수립</li> <li>12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공포</li> </ul>
199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수립 (건설교통부)</li> <li>1월, 예비타당성조사 착수(24개 사업)</li> <li>2월, 일반지침 및 부문별 표준지침 발간</li> <li>5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조 2 예비타당성조사 법제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월,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설립</li> <li>4월, 초대 이규방 소장 취임 (초대, 제2대 연임)</li> </ul>
200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비타당성조사에 AHP 분석 시범 도입</li> <li>1월,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li> <li>1월, 초대 김재형 소장 취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OC민간투자지원단 구성 (관계부처, 민간투자지원센터, 금융기관, 민간업계, 학계 등)</li> </ul>
200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비타당성조사에 AHP 분석 본격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장기 민간투자계획 수립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li> </ul>
200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월, 타당성재검증 수행 (2007년, '타당성재검증'→'타당성재조사'로 명칭 변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장기 민간투자계획 수립 근거 마련 (민간투자법 개정)</li> </ul>
200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월, 제2대 심상달 소장 취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월, 제3대 김홍수 소장 취임</li> </ul>
200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월, 정보화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시범사업 착수(3개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월, PPP(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li> <li>11월, 민간투자사업의 기준 및 절차 개선 국제 세미나 개최</li> </ul>
200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월,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통합(법률 제7386호) KDI 부설 공공투자관리센터 발족</li> <li>1월, 초대 전홍택 소장 취임</li> <li>1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유형 추가 및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제도 도입</li> <li>12월,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위험분석 및 관리방안 국제회의 개최 (IMF, World Bank, ADB, Partnerships UK)</li> </ul>	
200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월, 제2대 김재형 소장 취임(제3대, 제4대 연임)</li> </ul>	
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비타당성조사 범위 확대(연구개발사업, 정보화사업)</li> <li>1월, 국가재정법(제3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시행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의 법정 제도화</li> <li>10월, 2007 아시아태평양 민간투자 장관회의</li> <li>12월, 자금재조달 검토 도입</li> </ul>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이 예비타당성조사(비용 사전심사제) 도입 (2012년, '간이 예비타당성조사'→'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로 명칭 변경)</li> </ul>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월, 아시아 인프라시설 민간투자사업 지식공유 국제회의(ADB, ADBI, WBI)</li> </ul>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비타당성조사 범위 확대(기타 비투자 재정부문사업) (2012년,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사업'→'기타 재정사업'으로 통칭)</li> </ul>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월,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도입</li> <li>8월, 민간투자사업의 성과평가와 성공사례에 대한 국제회의(IMF, World Bank)</li> </ul>	



4 2018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표 1-1>의 계속

구분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
2012년	· 2월, 제5대 박현 소장 취임	
2013년	· 7월, 제6대 김강수 소장 취임(제7대 연임)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도입에 관한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개정</li> <li>· 10월,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1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li> <li>· 11월,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li> <li>· 12월,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li> </ul>	
2015년	· 1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2016년	· 3월, 제8대 김기완 소장 취임(제9대 연임)	
2017년	· 4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정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법적 추진 근거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8조의 2(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 및 동 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근거하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제외한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총괄 수행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지정되어 있다.

민간투자지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3조에 근거한 대규모 민자사업의 타당성분석, 사업계획의 평가 등 총괄 지원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지정되어 있다.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항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근거한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지정되어 있다.

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의 2에 근거하여 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지정되어 있다.

### 제3절 조직 및 인원구성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재정투자평가실, 민간투자지원실, 공공투자정책실 등 3실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투자평가실, 민간투자지원실, 공공투자정책실은 별도의 세부 팀 조직을 갖추고 있는데 실별 세부 팀 조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정투자평가실은 예비타당성조사1팀, 예비타당성조사2팀, 타당성재조사팀, 민간투자지원실은 사업조사팀, 사업지원팀, 사업관리팀, 공공투자정책실은 공공투자정책팀, 공공기관사업팀, 조세지출평가팀의 세부 팀을 갖추고 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도 및 주요 업무 내용은 다음 [그림 1-1], <표 1-3>과 같다.

[그림 1-1]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조직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인원은 2019년 3월 기준으로 총원 97명으로 경제, 경영, 회계, 통계 및 공학 분야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1-2>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전공별 인력 현황

전문분야	인원 수	전문분야	인원 수
경제/통계	23	법률	4
경영/회계	15	국제협력	5
토목/건축/환경공학등	21	기타(문화관광등)	5
도시계획/도시공학/교통	15	행정총괄 및 지원/인턴	9

주: 2019년 3월 기준임.

6 2018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표 1-3>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주요 업무 내용

구분		주요 업무 내용
소장	소장실	· 공공투자사업(재정사업, 민간투자사업, 공공기관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재정투자평가실	예비타당성조사 1팀	· 교통부문 등 정형사업 관련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의 수행 및 지원·관리
	예비타당성조사 2팀	· 건축정보문화·R&D·기타 재정 부문 등 비정형사업 관련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의 수행 및 지원·관리
	타당성재조사팀	·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 수요 예측재조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설계의 적정성 검토,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검토 등의 수행 및 지원·관리
민간투자지원실	사업조사팀	· 정부고시사업의 타당성분석 검토 및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제안서 검토) 수행에 대한 지원·관리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수요예측의 재조사 및 민자 적격성 재조사 수행 및 지원·관리
	사업지원팀	·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문 검토 및 작성 · 제안서 평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및 실시협약안 검토 등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업무 지원
	사업관리팀	· 민간투자사업 관련 자금재조달 검토 및 협상 수행·지원 · 사업 시행조건 조정 및 MRG 지급액 관련 검토 수행·지원
공공투자정책실	공공투자정책팀	· 재정사업, 민간투자사업, 공공기관 사업 조사의 제도 및 방법론 연구 및 관리 · 사후평가 등 공공투자 관련 정책 연구 및 관리 · 교육, 홍보 및 DB구축·관리 · 공공투자사업 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동향 분석
	공공기관사업팀	· 공공기관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및 관리 ·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및 분석 방법론 연구 및 지원
	조세지출평가팀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심층평가의 수행 및 관리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심층평가 관련 제도 및 방법론 연구, 자료 축적 및 DB 구축

## 제 II 장

#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재정투자평가사업은 「국가재정법」 제8조의 2에 의거하여 수행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세부적으로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와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타당성재조사”의 체계로 구성된다.

그 외에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요예측 재조사, 설계의 적정성 검토, 설계 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등을 수행하고 있다.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수행한 재정투자평가사업의 수행 실적을 조사완료 사업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I-1>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구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타당성 재조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요예측 재조사	설계의 적정성 검토/설계변경 사전타당성검토
1999	20					
2000	30					
2001	41					
2002	30					
2003	32		6			
2004	55		6			
2005	30		9			
2006	52		19			1
2007	46	4	14		1	
2008	38	7	21		1	
2009	63	9	31		3	3

<표 II-1>의 계속

구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계획 적정성검토	타당성 재조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요예측 재조사	설계의 적정성 검토/실계변경 사전타당성검토
2010	48	6	31	3	1	1
2011	43	2	15	5	0	
2012	35	6	11	4	1	
2013	16	4	9	6	3	1
2014	34	10	18	11	7	
2015	18	9	10	11	0	4
2016	23	0	11	15	1	8
2017	31	8	7	9	2	3
2018	22	5	6	9	0	6
합계	707	70	224	73	20	27

주: 1) 각 연도별 조사 완료된 사업을 기준으로 함.  
 2) 예비타당성조사는 조사 도입 초기 기획예산처 직접 발주 수행 건수를 포함, KISTEP에서 수행한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는 제외한 실적임.  
 3)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총 53건이며, 2013년 이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지 않음.

##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 1. 도입배경과 추진경위

#### 가. 도입배경 및 의의<sup>2)</sup>

##### 1) 면밀한 사전검토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경제적·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사전검토는 일반 국민이나 기업 등 민간부문이 자신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공공사업의 경우 사업의 규모가 훨씬 클 뿐만 아니라 파급효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사전검토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타당성

2) 한국개발연구원, 『총괄백서 : 예비타당성 조사 어떻게 이루어졌나?』, 1999.

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우려된다.

첫째,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그 시설에 대한 수요가 없다면 이는 그만큼의 예산 낭비를 의미한다. 설사 다소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순조로운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결과 오랜 기간 동안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둘째, 예기치 않은 사업비 증액과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정부 재정은 면밀한 계획에 의하여 운영된다. 그런데 충분한 사전검토가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사업의 중간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재정 운용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된다. 물론 사전검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물가상승 혹은 예상치 못한 현장상황 등의 요인에 의해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사업비 증액의 폭은 훨씬 작을 것이며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오차 범위 내에 있을 것이다. 또한 충분한 사전검토의 결여는 사업계획의 잦은 변경을 초래하여 예기치 않은 사업비 증액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업기간의 연장을 불가피하게 만들 수 있다.

셋째, 사업에 착수한 이후 타당성 없음을 이유로 중도에 사업을 취소하기란 매우 어렵다. 중도에 취소한다는 것은 지역주민 혹은 지방정부의 반발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설사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동안 투입된 비용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동안 건설된 시설의 처리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것이다.

넷째, 경제적·기술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재정 운용이라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재정은 무한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예산제약 하에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별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함과 동시에 보다 폭넓은 ‘후보사업군’을 대상으로 한 면밀한 비교·검토를 통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 2) 예비타당성조사의 의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기존의 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의 의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실시한

타당성조사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그 당시까지의 타당성조사는 사업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기술적인 검토와 예비설계 등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그 이전 단계에서 재정운용의 큰 틀 속에서 대상 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을 판단하고 사업의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물론 예비설계안이 나와야 구체적인 비용·편익 분석 등이 가능할 것이지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기술적 검토 이전에 사업의 추진 여부 혹은 본격적인 타당성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꾸어 말해 사업의 추진 여부는 기술적인 검토 이전 단계에서 전체 및 사업부문별 재정운용과 상위계획, 기존의 추진사업의 큰 틀 속에서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업의 추진 여부는 기술적인 문제도 중요하나, 근본적으로는 사업의 목적과 의의, 시기, 대안에 대한 검토, 재원조달계획의 실현성 및 구체성, 파급효과에 대한 판단 등에 따라 사업의 추진 자체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는 본격적인 타당성조사 이전에 국민경제적인 차원에서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 이를 위해서 예비타당성조사는 해당 사업과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추진단계를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설정하는 한편, 원칙적으로 예산도 단계별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1999년 3월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업예산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상, 공사의 순서로 편성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조사의 표준지침을 작성하여 사업성 분석방식의 표준화를 도모한다는 데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투자대상 사업간의 우선순위가 비교 가능한 체제를 수립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에 따라 타당성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는 본격적인 타당성조사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각종 자료·통계·정보 등은 타당성조사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개발된 타당성 평가모형이나 평가기준, 각종 계수의 기준치 등은 타당성조사에서도 필요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서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1차로 걸러 주는 것이 예산운용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다. 즉 보다 폭 넓은 ‘후보사업군’을 대상으로 해서 1차 심사과정인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한편 궁극적으로 타당성조사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도입함으로써 본격적인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예산운용의 생산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다.

#### 나.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법적근거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이다.

「국가재정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하여 수행함을 명시하고 있다.

#### 다. 추진경위

(舊)건설교통부에서는 공공부문의 개혁차원에서 공공건설사업의 각 단계마다 내재된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공사업 효율화 추진단”을 구성하여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가 있다.

이러한 종합대책은 공공건설사업의 계획·집행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건설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건설품질의 확보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기획예산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되었으며, 이의 일환으로 1999년도 「예산회계법 시행령」 법·제도 정비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추진 경위는 다음 표와 같다.



<표 II-2> 예비타당성조사 주요 추진경위

연도	주요 추진경위
1998년	· 공공사업 효율화 추진단 구성(기획예산위원회, 건설교통부)
1999년	·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수립(건설교통부) · 1월, 예비타당성조사 착수(24개 사업) · 2월, 일반지침 및 부문별 표준지침 발간 · 5월, 예산회계법령 시행령 제9조 2 예비타당성조사 법제화
2000년	· 예비타당성조사에 AHP 분석 시범 도입
2001년	· 예비타당성조사에 AHP 분석 본격 도입
2004년	· 4월, 정보화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시범사업 착수(3개 사업)
2007년	· 예비타당성조사 범위 확대(연구개발사업, 정보화 사업) · 1월, 국가재정법(제3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시행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의 법정 제도화
2008년	· 간이 예비타당성조사(비용 사전심사제) 도입
2010년	· 예비타당성조사 범위 확대(기타 비투자 재정부문사업)
2012년	· 복지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검증 강화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신청 의무화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도입 ·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사업’→‘기타 재정사업’으로 통칭
2014년	· 정책성 분석 항목에 ‘고용효과분석’을 평가 항목으로 도입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공개 범위 및 기준 확대
2016년	·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 구성 -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 운영세칙」 작성 · AHP 평가자 확대(사업별로 예비타당성조사 평가단 2인 추가) · 예비타당성조사의 요구 매년 2회(반기별) → 매년 4회(분기별) 변경(2016년 11월부터 시행)
2017년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정 -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 규정
2018년	· 국가연구개발(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관(위탁형태)

## 2.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분류

### 가.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sup>3)</sup>

#### 1) 대상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이하 ‘기타 재정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건설사업은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을 말하며, 정보화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산안편성 세부지침’의 ‘세부사업유형별 지침’에 따라 정보화 예산 및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을 말한다.

기타 재정사업은 프로그램 예산체계상의 분야·부문 분류에 따라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해당되는 사업 중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말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민간투자사업 중 정부고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수행하는 타당성분석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 2) 면제사업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기획재정부, 「2018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2018. 4.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 나. 예비타당성조사 분류

앞서 살펴본 대상사업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이외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시범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도로, 철도 등의 중장기계획과 같이 해당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 간에 상호연계성이 높고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들에 대하여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예시로 도로정비기본계획(고속국도 분야), 국도·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의 중장기계획을 들 수 있다.

## 2)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 3) 시범적 예비타당성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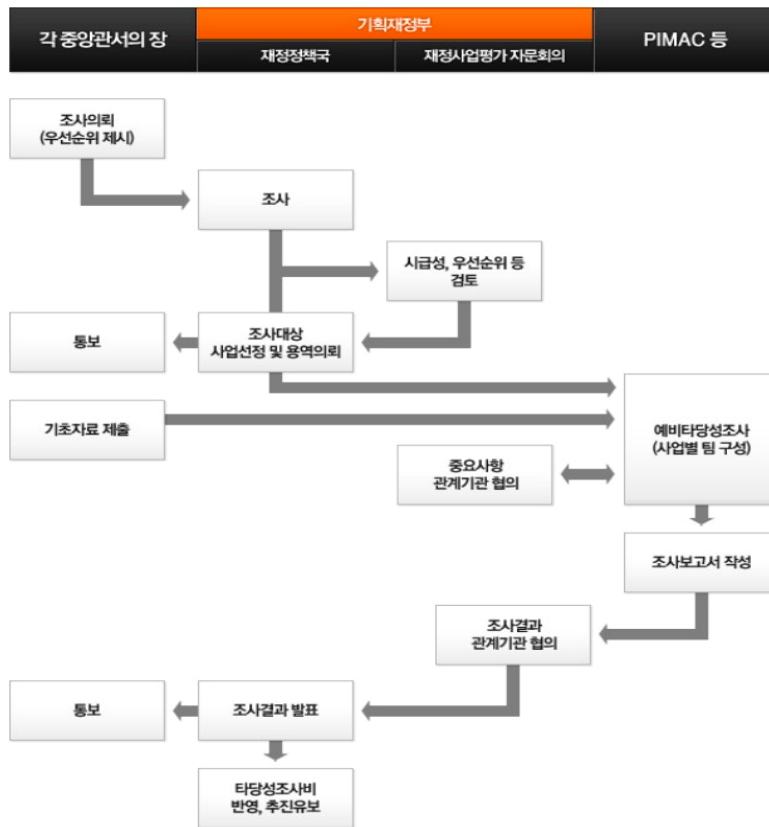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범위 및 요건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분야의 확대 또는 정책적으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범적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과 다른 분석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3. 수행절차

### 가. 대상사업의 선정 절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 원칙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상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선정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II-1]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절차



자료: KDI PIMAC 홈페이지(<http://pimac.kdi.re.kr>)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 전전년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여 한다. 다만, 사업추진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신규 예정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사업을 검토한 후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며,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가 없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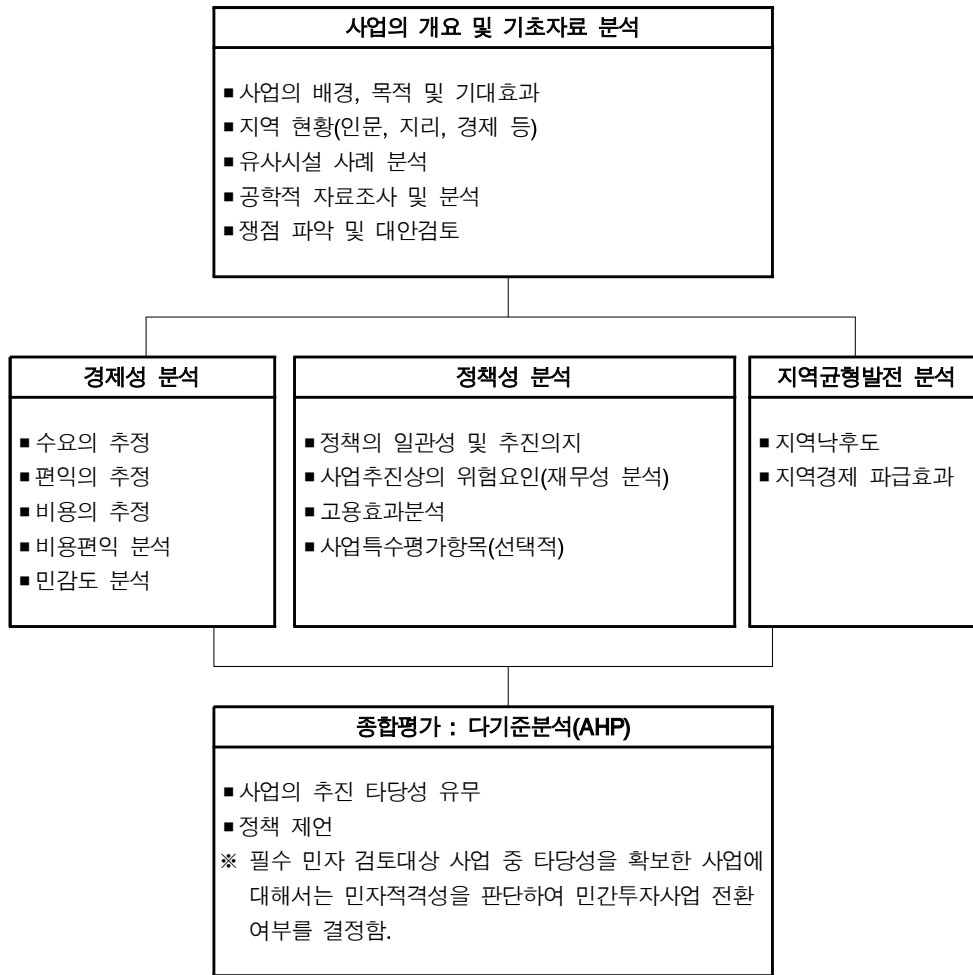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총괄 수행하며, 순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총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 나. 조사의 수행체계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기본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의 쟁점을 부각시킨다. 둘째, 수요·편익·비용 추정을 통해 경제성 분석을 실시한다. 셋째,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고용효과 분석, 사업 특수평가 항목 등의 정책성 분석을 실시한다. 넷째, 지역 간 불균형 상태의 심화를 방지하고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낙후도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토대로 본 사업의 국민경제적 위치를 파악한다. 넷째, 다기준분석을 활용하여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한다<sup>4)</sup>.

4) 통상의 건설사업에서는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종합평가를 수행하나, 정보화 사업과 기타 재정사업의 경우 종합평가 시 경제성·기술성·정책성, 경제성·정책성을 각각 고려하고 있다.

[그림 11-2]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적 수행체계



주: 1) 정보화 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외에 기술성 분석을 포함하나 사업의 주요내용이 건설사업인 경우에는 기술성 분석을 수행하지 않을 수 있음.  
 2) 해당 사업이 특정지역으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사업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할 수 있음.

이상의 예비타당성조사의 도입 배경 및 법적 근거, 대상사업, 수행절차 및 체계 등의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I-3>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구분	개요
<p>도입배경 및 법적 근거</p>	<p>□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li> <li>• 법적근거: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li> <li>• 조사 수행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지정</li> </ul> <p>□ 예비타당성조사의 도입배경 및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9년 이전 부실한 타당성조사로 다수의 무리한 사업 추진</li> <li>•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신중하게 추진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운영</li> </ul>
<p>대상사업</p>	<p>□ 대 상 사 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에 해당하는 신규사업으로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고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li> <li>: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 사업</li> </ul> </li> <li>•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상위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 상호연계성과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의 고려가 필요한 경우</li> </ul> <p>□ 면 제 사 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 문화재 복원 등</li> </ul> </li> <l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면제사업에 대한 적정 사업규모 검토</li> </ul>
<p>수행절차 및 체계</p>	<p>□ 수 행 절 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타당성조사의 요구(각 중앙관서의 장 → 기획재정부장관)</li> <li>• 대상사업 선정(기획재정부장관 검토,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li> <li>•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획재정부장관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li> </ul> <p>□ 조사의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성 분석: 대상사업의 특성에 따른 수요, 편익, 비용 등 고려하여 비용·편익 분석(B/C)수행(필요시 재무성분석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C: 장래 발생될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나눈 비율</li> </ul> </li> <li>• 정책성 분석: 계량화하여 경제성 분석에는 반영하지 못하나 사업의 시행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고려하여야할 중요항목을 정성적으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고용효과 분석, 사업특수 평가항목 등</li> </ul> </li> <li>• 지역균형발전 분석: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상위의 국가정책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가평가 항목 등</li> </ul> </li> <li>• 종합평가(AHP):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 타당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HP: 분석요소간 상대적 중요도를 수치화하여 정량적 결론 도출</li> </ul> </li> </ul>



## 제2절 타당성재조사 개요

### 1. 총사업비 관리제도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사업구상,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 공사완료단계 등 사업의 추진단계별로 총사업비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변경도 총사업비 변경협의의 대상이 된다.<sup>5)</sup>

1989년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3조에 총사업비 관리제도가 처음으로 규정되었으며, 1994년에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제정되었다. 1995년에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기존 100억원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1996년에는 토목 500억원, 건축 200억원 이상으로 세분화되었다. 2000년에는 총사업비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도입하여 총사업비 관리제도와 연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에는 총사업비 20% 이상 증액 사업 등에 대한 타당성재조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5년에는 도로, 철도 등 주요 부문별 총사업비 조정기준을 마련하였다. 2006년에는 사업추진과정 중 수요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사업에 대한 수요예측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2008년에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2008.7.23)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3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과 1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2010년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2010.11.10)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5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과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으로 다시 상향 조정되었다. 2018년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2018.4.17)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 및 정보화 사업과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으로 조정되었다.

총사업비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말하며 국가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공공기관 부담분 및 민

5) 한국개발연구원, 『타당성재조사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2판)』, 2012.

간 부담분을 포함한다.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는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구성되며, 정보화사업의 총사업비는 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구축비, 부대경비 등으로 구성된다.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국가 직접시행사업, 국가위탁사업,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는 지자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민간기관의 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 및 정보화 사업과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전기·기계·설비 등 부대공사비도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는 재정투자의 효율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은 SOC 수요예측재조사 및 타당성재조사를,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하는 사업은 설계변경 사전타당성 검토 및 설계의 적정성 검토,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검토의견 조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타당성재검증 제도는 1994년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제정되면서 규정되었다. 당시 타당성재검증의 수행시점을 실시설계단계로 한정하고, 실시설계 총사업비가 기본설계에 비하여 20% 이상 증가한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재검증을 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총사업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가할 때에 타당성재검증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총사업비 증가 원인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타당성재검증을 하지 않는 등 타당성재검증이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1995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타당성재검증 대상 사업의 기준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후 1996년에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중 건축사업은 기준을 20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1997년, 1998년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는 타당성재검증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누락되었는데, 이는 타당성재검증 수행규정의 구속력이 없어 타당성재검증이 선언적인 효력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1999년 경제위기 이후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공공 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마련,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도입 등 공공투자사업의 관리가 엄격해지는 추세에서 타당성재검증 규정을 다시 명문화하였으며, 대상은 실시설계 총사업비가 기본설계 총사업비 대비 20% 증가한 경우로 규정하였다.

2000년에는 기본설계 완료 시점에도 타당성재검증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01년에는 총사업비 변경의 기준 설정 시 기존의 타당성조사 총사업비 기준 이외에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4년에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단계별로 타당성재검증 대상과 수행주체, 분석내용을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이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재검증을 기획예산처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시공단계에서도 타당성재검증을 수행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2007년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는 기존 타당성재검증의 명칭이 타당성재조사로 변경되었으며, 국회가 그 의결로 타당성재조사를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재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등 특별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08년에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2008.7.23)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기존 5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과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에서 3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과 1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2009년에는 「국가재정법」 개정(2009.3.18)에 의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타당성재조사를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재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500억원 이상인 사업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500억원 미만인 사업은 중앙관서의 장이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던 수행주체를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일임하였다. 또한 제49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간이타당성재조사)제도를 도입하였다.

2010년에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2010.11.10)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대상 대상 사업이 기존 3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과 1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에서 500억원 이상인 토목 및 정보화사업과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으로 상향조정되었다.

2013년에는 예타 면제사업, 국가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 미만의 토목 및 정보화 사업을 타당성재조사 면제요건으로 신설하였다.

2014년에는 기존 국유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지관련비용을 포함하는 내용의 건설분야의 총사업비 정의를 추가하였다. 더불어 기타부대비 항목 중 시설부대 경비를 공사비 항목으로 변경하였다.

2016년에는 총사업비에서 국유지 부지관련비용 제외<sup>6)</sup>하였으며, 정보화사업 및 연구기반구축 R&D 사업과 관련하여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총사업비 협의단계, 조

6)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포함하였다.

정기준 등 총사업비 관리 내용을 추가하였다.

2017년에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내용을 추가하였다.

<표 II-4> 총사업비 관리제도 연혁

연도	총사업비 관리제도, 재정사업평가제도의 주요변경사항
1989	• <b>총사업비 관리제도 규정</b>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
1994	• <b>총사업비 관리제도 운영개시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 수립</b> • <b>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 기준 수립</b>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며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주요투자사업과 100억원 미만인 사업 중 총사업비 관리가 특히 필요한 사업) • <b>실시설계단계</b> 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기본조사설계의 총사업비와 비교하여 <b>20% 이상</b> 차이가 있을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함.
1995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b>기준 변경</b>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 500억원 이상)
1996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b>기준 세분화</b> (토목사업: 500억원 이상, 건축사업: 200억원 이상)
1997	• <b>사업시행과정</b> 에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도 대상으로 포함
1999	• <b>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b>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2001	• 기본설계, 실시설계단계에서 총사업비가 <b>당초 계획된 수준을 초과하여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b> 타당성 재검증을 수행함.
2002	• 춘천~양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타당성 재검증 수행(KDI, 2003)
2003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요건 추가(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고 300억원 이상인 사업)
2004	• <b>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턴키방식)</b> 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총사업비 관리제도 적용 • 타당성 재검증 수행단계 확대: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시행단계
2005	• 타당성 재검증 수행단계 확대: 기본계획, <b>타당성조사</b> , 실시설계, <b>시공단계</b> 등 각 사업추진단계별로 요건에 해당할 경우 • 타당성 재검증 수행을 위한 <b>표준지침(일반지침, 부문별지침) 제정</b>
2006	• 교통분야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사업에 대한 <b>수요예측 재검증 제도 도입</b> - 평택·당진항 2단계 개발사업 수요예측 재검증 수행(KDI, 2006) • 공사착공 이후 총사업비 변경을 요구받은 사업의 설계변경 항목 중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b>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제도 도입</b> - 토공구간 교량화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수행(KDI, 2006)
2007	•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근거법령이 「국가재정법」으로 수정됨(「예산회계법」이 폐지). • 「 <b>총사업비 관리지침</b> 」 조문화 • 타당성재검증, 수요예측재검증 명칭변경 → 타당성재조사, 수요예측재조사 • 타당성재조사 수행 요건 신설: 국회의결이 있을 경우 • 수요예측재조사 수행대상 확대: 모든 <b>SOC</b> 분야
2008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기준 <b>조정</b> (토목사업: 300억원 이상, 건축사업: 100억원 이상) • <b>간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b> (추정 총사업비가 4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사업과 사업추진이 기 결정된 사업)

<표 II-4>의 계속

연도	총사업비 관리제도, 재정사업평가제도의 주요변경사항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이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총사업비 기준이 폐지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요건 변경</li> <li>타당성재조사의 수행주체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정되었으며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타당성재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요건이 신설됨.</li> <li>간이 타당성재조사 제도 도입(타당성재조사 미시행 사업)</li> </ul>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기준 조정(토목 및 정보화사업: 500억원 이상, 건축사업: 200억원)</li> <li>국립서울병원 현대와 사업 간이 타당성 재조사 외 4건 수행(KDI, 2010)</li> <li>정보화 부문 세부조정기준 수립</li> </ul>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당성재조사 면제요건 추가 신설: 예타면제사업, 국가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 미만의 토목 및 정보화사업</li> </ul>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분야의 총사업비 정의 추가: 기존 국유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지관련비용 포함</li> <li>수요예측재조사 기준시점 변경: 이전단계 예측치 → 최초 사업추진단계 예측치</li> <li>기타부대비 항목 변경: 시설부대경비 → 공사비</li> <li>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검토의견서 항목 추가 : 총사업비 조정시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조사에서 정한 규모 및 금액을 초과할 경우 검토의견을 조회</li> </ul>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사업비에서 국유지 부지관련비용 제외(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포함)</li> <li>정보화사업 및 연구기반구축 R&amp;D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내용 추가(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총사업비 협의단계, 조정기준 등)</li> </ul>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내용 추가</li> </ul>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당성재조사 및 검토의견조회 범위 조정</li> </ul>

## 2. 타당성재조사 제도

### 가. 타당성재조사의 수행요건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및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2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① 법 제5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5.8>

1.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3.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대상사업의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한 사업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당해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5.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에 해당되는 경우 등과 같이 타당성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때와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재해예방·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당성재조사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50호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가 「국가재정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규모로 증가한 사업
  2.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3. 물가인상분과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사업물량 또는 토지 등의 규모 증가로 총사업비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한 사업
  - 가. 총사업비 증가율은 예비타당성 조사 시 반영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이 반영된 시점에서의 최초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타당성 재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증가율을 산정한다.
  - 나.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한 사업이라 함은 총사업비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경우 총사업비가 100분의 20 이상, 1,000억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15 이상 증가한 사업을 말한다.
4. 제39조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타당성재조사의 시행을 요구 받은 사업 및 제40조에 따라 수요예측재조사의 시행 결과 그 예측치가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조사 등 최초의 수요예측치 대비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
5.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낭비 사례로 접수된 사업으로서 중복 투자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개연성이 크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6.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타당성재조사를 요청하는 사업 또는 국회가 그 의결로 타당성재조사를 요구하는 사업
7. 기타 다음 각 목의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쳤으나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 사업이 재차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추진 중인 경우
  - 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의한 타당성 평가 결과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간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교통시설 개발사업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 다. 제5조제2항 <별표3> ‘부문별 표준내역서’에 구분 표기된 바와 같이 공

사비를 공중별로 관리하는 사업에 있어서 공중별로 시차를 두고 설계하는 경우 특정 공중에 대한 설계 결과의 공사비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중별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0분의 20이상 증가한 경우(사업비의 공중별 누계액에 대하여도 동일하며, 비교 대상으로 하는 총사업비에는 예비비를 포함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타당성재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2.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상위계획의 변경, 법정사항의 반영 등 외부적인 요인에 있는 경우
  3.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지역균형발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 지역간 현저한 불균형의 해소 또는 광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 등
    - 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 경기침체, 대량실업,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대내외의 중대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추진되는 사업 등
  4. 재해예방·복구지원 또는 안전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5.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1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6.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토목 및 정보화사업

한편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의2에서는 동 법 제4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舊간이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나.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조사내용

타당성재조사는 기본적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는 작업으로,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사업부문별 조사방법론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1조에서는 타당성재조사의 조사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사업의 개요 및 재조사의 쟁점 파악,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재조사 수행단계별로 제시된 내용을 조사하고, 이를 종합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대안을 제시한다.

사업의 개요 및 추진경위에서는 사업의 배경 및 목적, 기대효과 등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한다. 최초 사업이 추진되어 타당성재조사에 이르기까지의 상세한 추진경위 및 현재까지의 예산집행 현황 등을 검토하고, 총사업비 변경내역 및 타당성재조사의 수행근거를 검토한다.

타당성재조사의 쟁점 파악에서는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와 관련한 쟁점, 사업추진전략의 적절성 검토와 관련한 쟁점, 경제성 분석 및 정책성 분석과 관련된 쟁점,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 구조물 형식의 선택 등 총사업비 추정의 적절성 검토와 관련된 쟁점을 파악한다.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에서는 사업목적의 적절성,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선정대안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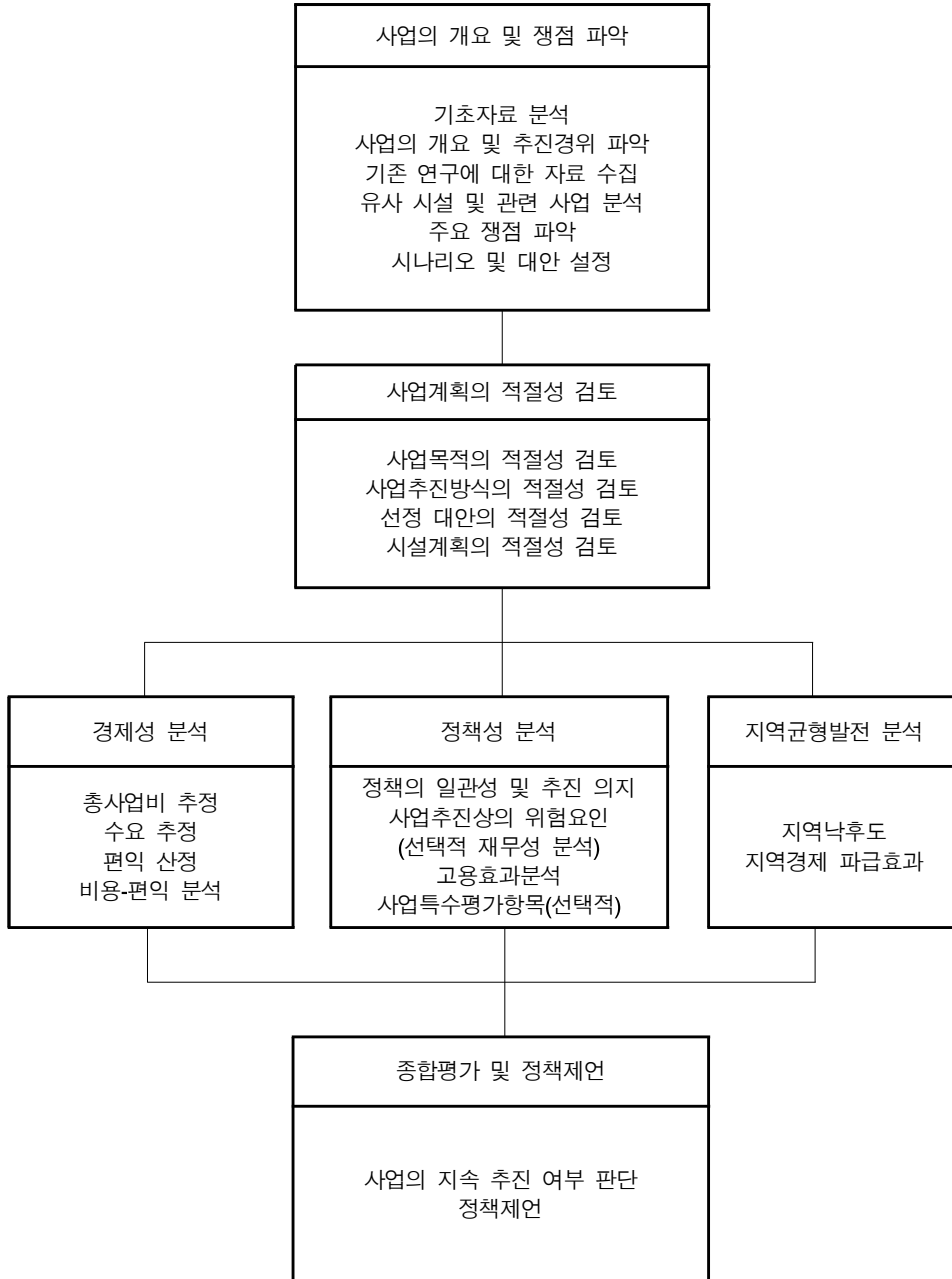
경제성 분석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기준을 적용하되, 매물비용의 처리 등 타당성재조사의 특성에 맞도록 조정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수요 추정은 사업부문별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을 적용하되, 이전 단계의 수요 추정 결과와 비교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총사업비는 공종별로 물량 및 적정 단가 산정을 통해 추정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자료의 활용이 가능한 단계의 타당성재조사에는 예비비를 반영하지 않는다.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서는 착수 전년도를 분석기준시점으로 설정하고, 사회적 할인율 및 분석기간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적용한다. 연차별 투입률은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의하되 예산편성 상황을 감안하여 조정이 가능하며, 이미 완료된 설계비, 공사비는 매물비용으로 처리하되, 용지매입비는 매물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정책성 분석 및 지역균형발전 분석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상의 분석기준을 적용한다.

종합평가에는 사업추진 경위, 경제성 분석 및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기초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따라 계층화 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적용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를 판단한다. 적정 총사업비 조정액을 산정하고 바람직한 사업추진방식, 시설물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적인 개선사항 등 사업추진상의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규모, 적정 투자시기 조정 등 사업에 대한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그림 11-3] 타당성재조사 수행 흐름도



## 제Ⅲ장

#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 제1절 1999~2018년 수행 실적

#### 1. 예비타당성조사

1999~2018년까지 총 707건(조사완료 사업 기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수행되었다. 부문별로는 도로부문 및 철도부문 사업이 각각 247건 및 130건으로 그간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의 절반 이상(약 53%)을 차지하고 있다.

<표 III-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단위: 건)

연도	도로	철도	항만	문화·관광 ·건축	수자원(댐)	기타	합계
1999	11	2	1	4	1	1	20
2000	11	7	5	2	1	4	30
2001	20	14	1	5	-	1	41
2002	9	8	2	2	5	4	30
2003	10	7	3	5	5	2	32
2004	24	13	1	2	3	12	55
2005	11	6	2	1	3	7	30
2006	27	10	5	5	1	4	52
2007	30	5	1	2	1	7	46
2008	12	2	4	3	2	15	38
2009	22	5	2	2	12	20	63
2010	7	14	2	1	2	22	48

<표 III-1>의 계속

(단위: 건)

연도	도로	철도	항만	문화·관광 ·건축	수자원(댐)	기타	합계
2011	6	5	2	11	5	14	43
2012	7	7	5	6	5	5	35
2013	8	-	1	2	1	4	16
2014	6	4	2	12	2	8	34
2015	3	3	2	7	-	3	18
2016	5	6	2	3	4	3	23
2017	10	7	-	7	4	3	31
2018	8	5	1	4	2	2	22
계	247	130	44	86	59	141	707

- 주: 1) 2018년 12월말까지 조사완료된 사업을 기준으로 함.  
 2) 기타부문에 공항, 정보화, R&D 부문, 기타재정사업 등의 건수가 포함됨.  
 3) 건축부문은 2011년부터 별도 구분되며 기존 사업은 기타 실적으로 구분됨.  
 4)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간이예비타당성조사)는 수행 실적에서 제외함.

총사업비 규모를 살펴보면 1999~2018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전체 총사업비 334.5조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검토되는 사업의 전체 총사업비는 해마다 약 6~34조원 수준이며, 도로 및 철도 부문사업의 총사업비가 전체의 약 68.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lt;표 III-2&gt;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 규모

(단위: 조원)

연도	예비타당성조사						
	도로	철도	항만	문화·관광 ·건축	수자원 (댐)	기타	합계
1999	14.9	2.0	0.1	0.3	0.6	0.7	18.7
2000	4.9	4.6	0.8	1.5	0.0	0.5	12.4
2001	6.1	12.1	0.1	1.4	-	0.1	19.7
2002	5.9	6.2	0.3	0.5	1.1	0.7	14.7
2003	5.3	5.4	1.9	1.0	1.3	0.8	15.7
2004	7.1	6.4	1.0	1.0	0.2	2.5	18.3
2005	3.5	4.6	0.4	1.4	0.4	1.7	12.1
2006	7.7	7.3	1.3	0.6	0.1	1.1	18.1
2007	6.8	4.2	2.0	0.2	0.1	7.6	20.9
2008	2.6	1.1	1.0	0.3	0.4	5.0	10.4
2009	13.1	7.7	0.4	0.3	3.4	9.5	34.4
2010	5.7	17.9	0.5	0.1	0.5	9.3	34
2011	1.3	6.1	0.6	1.9	2.0	3.7	15.6
2012	1.8	10.3	2.1	1.1	0.8	1.7	17.8
2013	1.9	-	0.1	0.1	0.4	1.3	3.8
2014	2.1	13.7	0.6	2.0	0.5	3.1	21.9
2015	2.3	1.3	0.5	1.3	-	1.1	6.5
2016	1.1	4.0	0.3	0.3	0.6	0.6	6.9
2017	3.8	7.2	-	0.8	1.2	8.3	21.3
2018	1.2	8.2	0.1	0.7	0.3	0.8	11.3
계	99.1	130.3	14.1	16.8	13.9	60.1	334.5

주: 2018년 12월말까지 조사완료된 사업의 사업계획(안)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사업부처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의 사업이 470건으로 전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66.5%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 등 예비타당성조사 대상범위 확대에 따라 다양한 사업부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표 III-3>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부처별 수행 실적

(단위: 건)

연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타
	건설교통부	철도청 <sup>1)</sup>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sup>2)</sup>	과학기술부 <sup>3)</sup>	교육부			
1999	12	1	2	1	-	-	-	3	1	-
2000	12	7	5	1	-	1	-	2	-	2
2001	27	8	2	-	-	-	-	2	-	2
2002	19	4	3	2	-	-	-	2	-	-
2003	17	4	7	-	-	-	1	1	-	2
2004	26	1	4	-	9	1	-	2	2	10
2005	20	-	3	-	-	-	2	-	2	3
2006	33	-	10	-	2	2	-	-	1	4
2007	25	-	2	2	1	-	1	1	1	13
2008	21			7		1		1	1	7
2009	42			8		3		2	3	5
2010	26			9		5		2	2	4
2011	19			5		2		2	1	14
2012	22			2		4		2	2	3
2013	13			1		1		-	-	1
2014	10		5	2	3		4	1	9	
2015	6		2	1	2	-	2	1	4	
2016	12		2	1	-	-	2	4	2	
2017	19		3	2	-	-	1	1	5	
2018	13		1	-	-	-	1	1	6	
계	470 (66.5%)			56 (7.9%)		29 (4.1%)		32 (4.4%)	24 (3.4%)	96 (13.7%)

주: 1) 2005년 1월부터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민영화됨에 따라 관련 사업은 건설교통부로 이관됨.  
 2) 2008년도 정부조직 개편 이전 재정경제부 소관 사업 분야는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지식경제부로 이관되었으며, 2013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식경제부의 업무를 이관받음.  
 3) 2013년 3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폐지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됨.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율(B/C≥1 비율)을 살펴보면 약 48.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항만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율이 가장 높게(63.6%) 나타났고, 다른 부문 사업은 40~54% 수준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lt;표 III-4&gt;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연도별 경제적 타당성 확보율(B/C≥1)

(단위: %, 건)

구분	도로	철도	항만	문화관광 ·건축	수자원	기타	B/C≥1 (%)
1999	36.4	50.0	100.0	25.0	100.0	100.0	45.0
2000	45.5	71.4	80.0	0.0	100.0	50.0	56.7
2001	30.0	50.0	0.0	20.0	-	0.0	34.1
2002	33.3	87.5	50.0	0.0	0.0	75.0	46.7
2003	50.0	71.4	100.0	0.0	60.0	50.0	53.1
2004	50.0	53.8	100.0	0.0	33.3	58.3	50.9
2005	45.5	33.3	100.0	0.0	66.7	71.4	53.3
2006	48.1	20.0	40.0	60.0	0.0	75.0	44.2
2007	53.3	0.0	0.0	50.0	100.0	28.6	43.5
2008	41.7	50.0	75.0	66.7	50.0	26.7	42.1
2009	27.3	20.0	50.0	50.0	66.7	45.0	41.3
2010	42.9	21.4	100.0	100.0	100.0	54.5	47.9
2011	83.3	0.0	50.0	54.5	20.0	42.9	44.2
2012	85.7	0.0	60.0	16.7	60.0	80.0	48.6
2013	37.5	0.0	100.0	0.0	100.0	75.0	50.0
2014	66.7	50.0	50.0	83.3	50.0	50.0	64.7
2015	33.3	66.7	50.0	57.1	-	37.5	47.8
2016	100.0	33.3	0.0	66.7	50.0	66.7	56.5
2017	30.0	42.9	0.0	42.9	75.0	66.7	45.2
2018	62.5	40.0	100.0	50.0	50.0	100.0	59.1
사업건수	247	130	44	86	59	141	707
B/C≥1 (건수)	115	52	28	38	32	75	340
B/C≥1 (%)	46.6%	40.0%	63.6%	44.2%	54.2%	53.2%	48.1%

주: 기타분야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1건의 사업을 6개 세부 사업군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음.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AHP≥0.5)은 평균 64.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항만부문(75.0%)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철도 부문이 56.9%로 가장 낮은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연도별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평가, 안전성 평가

(단위: %, 건)

구분	도로	철도	항만	문화관광 ·건축	수자원	기타	타당성 확보율
1999	45.5	50.0	100.0	100.0	100.0	100.0	65.0
2000	27.3	71.4	80.0	0.0	100.0	75.0	53.3
2001	30.0	35.7	100.0	40.0	-	0.0	34.1
2002	33.3	75.0	50.0	0.0	0.0	75.0	43.3
2003	70.0	71.4	100.0	0.0	60.0	50.0	59.4
2004	87.5	53.8	100.0	100.0	66.7	66.7	74.5
2005	36.4	83.3	100.0	100.0	66.7	71.4	63.3
2006	63.0	40.0	40.0	40.0	100.0	50.0	53.8
2007	63.3	20.0	100.0	50.0	100.0	42.9	56.5
2008	75.0	100.0	100.0	100.0	50.0	46.7	68.4
2009	50.0	80.0	50.0	0.0	91.7	80.0	68.3
2010	71.4	64.3	100.0	100.0	100.0	77.3	75.0
2011	83.3	60.0	50.0	81.8	80.0	71.4	74.4
2012	100.0	28.6	80.0	50.0	80.0	100.0	71.4
2013	62.5	-	100.0	50.0	100.0	75.0	68.8
2014	83.3	75.0	50.0	91.7	50.0	75.0	79.4
2015	33.3	66.7	50.0	100.0	-	62.5	69.6
2016	100.0	83.3	50.0	66.7	50.0	66.7	73.9
2017	30.0	42.9	-	57.1	75.0	100.0	51.6
2018	75.0	60.0	100.0	75.0	100.0	100.0	77.3
사업건수	247	130	44	86	59	141	707
통과건수	147	74	33	56	42	102	454
타당성 확보율(%)	59.5%	56.9%	75.0%	65.1%	71.2%	72.3%	64.2%

주: 1) 1999~2002년 조사결과는 (舊)기획예산처 보도자료 발표 기준이며, 2003년 이후 조사결과는 AHP≥0.5 기준임.

2) 기타분야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1건의 사업을 6개 세부 사업군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종합적 타당성을 분석하였음.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이후 2018년 12월 말까지 제3차 및 제4차 국·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를 포함하여 토목, 건축, 정보화, 기타 재정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789건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수행되었다. 타당성 유·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약 143.6조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III-6> 예비타당성조사 연도별 총사업비 절감액

(단위: 억원)

출판연도 <sup>1)</sup>	사업수(건)	전체 사업비 <sup>2)</sup>	총사업비 절감액 <sup>6)</sup>
1999	20	271,559	197,956
2000	30	152,439	57,753
2001	41	198,401	105,823
2002	30	162,059	73,120
2003	32	176,278	39,885
2004	55	185,740	52,697
2005	30	123,561	39,569
2006	52	193,531	101,401
2007	46	189,476	82,947
2008	38	90,471	39,685
2009	63	303,290	91,362
2010	48	279,831	112,091
2011 <sup>3)</sup>	99	228,262	107,606
2012	35	206,434	75,150
2013	16	34,445	9,421
2014	34	119,939	28,305
2015	18	64,689	31,323
2016 <sup>4)</sup>	49	122,781	60,952
2017	31	239,904	103,175
2018	22	115,155	26,053
총합계 <sup>5)</sup>	789	3,458,245	1,436,274

주: 1) AHP를 수행하지 않았던 1999년~2002년간 사업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사업추진, 중장기 검토)를 기준으로 함.

2)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분석된 재추정 사업비 기준이며, 국고 및 지방비 등이 포함됨.

3) 제3차 국·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56건)를 포함한 수치임.

4) 제4차 국·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26건)를 포함한 수치임.

5) 예비타당성조사에 의한 분석결과로 실제 집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6)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이 AHP<0.5인 사업을 대상으로 한 총사업비 합계임.

## 2.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한편 2007년부터 『2010년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사전타당성조사에 대한 재조사』의 수행을 기점으로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하는 사업계획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후 간이에비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을 포함하여 2007~2018년까지 총 70건(조사완료 사업 기준)의 조사가 수행되었다. 부문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수행 실적을 살펴보면 <표 III-7>과 같다.

<표 III-7>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수행 실적

(단위: 건)

연도	도로	철도	항만	문화·관광 ·건축	수자원(댐)	기타	합계
2007	2	-	-	-	-	2	4
2008	5	-	-	-	-	2	7
2009	3	-	1	-	-	5	9
2010	2	-	-	-	2	2	6
2011	-	-	1	-	-	1	2
2012	2	1	-	1	1	1	6
2013	1	-	1	1	-	1	4
2014	2	-	-	7	1	-	10
2015	-	-	1	6	2	-	9
2016	-	-	-	-	-	-	-
2017	-	-	3	3	2	-	8
2018	-	-	-	4	1	-	5
계	17	1	7	22	9	14	70

주: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하는 연구(사업계획 검토, 간이에비타당성조사 등)를 수행한 모든 사업을 포함한 수치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분석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총 70건의 사업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적정 사업규모 및 효율적 대안 등의 제시와 이의 분석을 통해 약 2조원 수준의 예산을 절감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산정되었다.

<표 III-8>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sup>1)</sup> 연도별 총사업비 절감액

(단위: 억원)

출판연도	건수	사업계획서 총사업비 (A)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B)	절감액 (A-B)
2007	4	9,790	9,705	85
2008	7	3,167	2,723	444
2009	9	111,521	123,200	-11,679
2010	6	52,969	44,925	8,044
2011	2	7,467	5,275	2,192
2012	6	45,080	35,650	9,430
2013	4	57,822	56,763	1,059
2014	10	17,176	13,485	3,691
2015	9	44,826	39,191	5,635
2016	0	-	-	-
2017	8	13,996	13,151	845
2018	5	5,911	5,786	125
총합계 <sup>2)</sup>	70	369,725	349,854	19,871

주: 1)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간이에비타당성조사의 변경된 명칭임.

2)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의한 분석결과로 실제 집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3. 타당성재조사

2002~2018년까지 총 224건(조사완료 사업 기준)의 타당성재조사(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및 수요예측재조사 제외)가 수행되었다. 부문별로는 도로부문 사업이 142건으로 전체 타당성재조사의 절반 이상(약 63.4%)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관광·건축 부문 35건, 수자원 부문 16건, 항만 부문 12건, 철도 부문 11건, 기타 8건의 타당성재조사를 수행하였다.

<표 III-9> 타당성재조사 수행 실적

(단위: 건)

연도	도로	철도	항만	문화·관광 ·건축	수자원(댐)	기타	합계
2003	3	-	-	3	-	-	6
2004	2	1	-	2	-	1	6
2005	6	-	-	3	-	-	9
2006	10	-	-	2	5	2	19
2007	9	2	2	1	-	-	14
2008	10	1	2	6	2	-	21
2009	25	-	2	1	2	1	31
2010	17	3	-	5	4	2	31
2011	12	-	-	2	-	1	15
2012	6	1	1	2	1	-	11
2013	3	1	2	3	-	-	9
2014	16	-	2	-	-	-	18
2015	6	1	-	3	-	-	10
2016	7	1	1	1	-	1	11
2017	7	-	-	-	-	-	7
2018	3	-	-	1	2	-	6
계	142	11	12	35	16	8	224

주: 1) 2018년 12월말까지 조사완료된 사업을 기준으로 함.  
 2) 기타부문에는 정보화, R&D 부문 사업 등의 건수가 포함됨.  
 3)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및 수요예측재조사는 수행 실적에서 제외함.

2002년 이후 타당성재조사의 요건별 수행현황을 살펴보면 사업 착수일 기준 235건의 타당성재조사 중에서 현행 사업비 대비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가 62건(26.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한 경우가 51건(21.7%)을 차지하고 있다(표 III-10 참조).

&lt;표 III-10&gt; 타당성재조사 요건별 수행 실적(공문 접수 기준)

(단위: 건)

연도	예타대상 규모로 증가	예타 미실시	총사업비 (20%이상) 증가	수요예측 (30%이상) 감소	예산낭비 신고	감사원 및 국회요구	기타	합계
2002	-	-	1	-	-	-	-	1
2003	3	1	1	-	-	-	1	6
2004	2	2	5	-	-	-	-	9
2005	3	4	9	-	-	-	-	16
2006	3	4	8	-	1	-	4	20
2007	3	4	2	1	1	-	6	17
2008	4	1	6	1	-	-	6	18
2009	4	2	3	3	-	14	10	36
2010	2	8	6	1	-	6	4	27
2011	2	5	2	-	-	-	-	9
2012	2	2	3	1	-	-	1	9
2013	1	8	2	1	-	2	7	21
2014	2	5	3	7	-	-	3	20
2015	2	-	4	-	-	-	-	6
2016	-	2	3	1	-	-	4	10
2017	1	1	2	1	-	-	-	5
2018	1	2	2	-	-	-	-	5
계	35	51	62	17	2	22	46	235

주: 1) 사업 착수일(공문 접수일) 기준임.  
2) 2018년 12월말 기준임.

2003년 타당성재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8년 12월 말까지 총 312건의 토목, 건축, 정보화 부문 등 다양한 분야의 타당성재조사가 수행되었고, 이를 통해 약 39.3 조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III-11> 타당성재조사 연도별 총사업비 절감액

(단위: 건, 억원)

연도	요구안 총사업비 및 재조사 총사업비 <sup>1)2)</sup>			총사업비 절감액
	총건수	요구안 총사업비	재조사 총사업비	
2003	6	47,987	42,328	5,659
2004	6	13,977	13,928	49
2005	9	72,976	47,375	26,847
2006	19	49,126	44,357	4,769
2007	14	40,650	43,684	-1,915
2008	21	166,919	155,070	29,306
2009	31	98,162	81,191	30,541
2010	31	148,006	132,340	34,250
2011 <sup>3)</sup>	48	121,438	108,690	96,584
2012	11	48,657	48,598	34,987
2013	9	10,420	10,069	5,948
2014	18	80,368	76,537	20,762
2015	10	33,305	30,477	7,859
2016 <sup>4)</sup>	66	100,593	95,995	74,665
2017	7	24,093	18,559	22,700
2018	6	9,405	9,503	-98
계 <sup>5)</sup>	312	1,066,082	958,701	392,913

- 주: 1) 2018년 12월말까지 조사완료된 사업을 기준으로 함.  
 2) 총사업비 절감액은 AHP값 0.5이상인 경우 요구안 대비 최적대안 총사업비 절감액을, AHP값이 0.5 미만인 사업의 경우 요구안의 총사업비를 합산하여 집계하였음. 단, AHP를 수행하지 않은 사업은 요구안 대비 최적대안 총사업비 절감액을 합산하여 집계함.  
 3) 제3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33건)을 포함한 수치임.  
 4)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55건)을 포함한 수치임.  
 5) 타당성재조사에 의한 분석결과로 실제 집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4.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

2007년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와 수요예측재조사가 수행되었으며, 2007~2018년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총 73건, 수요예측재조사는 총 20건이 수행되었다. 부문별로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도로부문 13건, 철도부문 7건, 항만부문 5건, 문화·관광·건축부문 37건, 수자원 7건, 기타 4건에 대해 검토가 수행되었으며, 수요예측재조사는 주로 도로부문 16건과 항만부문 4건에 대해 이루어졌다. 한편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검토와 설계의 적정성 검토는 2006년 이후 총 27건이 수행되었다.

<표 III-12>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실적

(단위: 건)

연도	도로	철도	항만	문화·관광 ·건축	수자원(댐)	기타	합계
2010	1	-	1	1	-	-	3
2011	1	3	-	1	-	-	5
2012	1	-	-	1	1	1	4
2013	1	-	-	4	-	1	6
2014	2	-	1	6	1	1	11
2015	1	1	2	5	2	-	11
2016	1	-	1	13	-	-	15
2017	1	3	-	4	1	-	9
2018	4	-	-	2	2	1	9
계	13	7	5	37	7	4	73

주: 2018년 12월말까지 조사완료된 사업을 기준으로 함.



<표 III-13> 수요예측재조사 수행 실적

(단위: 건)

연도	도로	철도	항만	문화·관광 ·건축	수자원(댐)	기타	합계
2007	-	-	1	-	-	-	1
2008	1	-	-	-	-	-	1
2009	2	-	1	-	-	-	3
2010	1	-	-	-	-	-	1
2011	-	-	-	-	-	-	0
2012	1	-	-	-	-	-	1
2013	3	-	-	-	-	-	3
2014	7	-	-	-	-	-	7
2015	-	-	-	-	-	-	0
2016	1	-	-	-	-	-	1
2017	-	-	2	-	-	-	2
2018	-	-	-	-	-	-	-
계	16	-	4	-	-	-	20

주: 2018년 12월말까지 조사완료된 사업을 기준으로 함.

<표 III-14>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검토 및 설계의 적정성 검토 수행 실적

(단위: 건)

연도	도로	철도	항만	문화·관광 ·건축	수자원(댐)	기타	합계
2014이전	4	1	-	1	-	-	6
2015	2	-	1	-	1	-	4
2016	2	3	-	1	-	2	8
2017	2	1	-	-	-	-	3
2018	1	5	-	-	-	-	6
계	11	10	1	2	1	2	27

주: 2018년 12월말까지 조사완료된 사업을 기준으로 함.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경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73건의 사업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고, 적정 사업비를 산출한 결과 약 4.7조원 수준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산정되었다.

&lt;표 III-15&gt;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연도별 총사업비 합계

(단위: 건, 억원)

연도	요구안 총사업비 및 재검토 총사업비			총사업비 절감액
	총건수	요구안 총사업비	재검토 총사업비	
2010	5	83,021	77,217	5,804
2011	3	14,959	11,241	3,718
2012	4	47,117	30,532	16,585
2013	6	8,429	7,294	1,135
2014	11	12,490	9,871	2,619
2015	11	10,891	10,363	528
2016	15	17,661	16,992	669
2017	9	44,553	32,585	11,968
2018	9	56,077	51,970	4,107
계	73	295,198	248,065	47,133

- 주: 1) 2018년 12월말 기준 조사완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舊간이타당성재조사) 사업 대상임.  
 2)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안이 다수인 경우는 최소값의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3)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의한 분석결과로 실제 집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제2절 2018년도 수행 실적 세부 내역

### 1. 예비타당성조사

2018년도에 완료된 예비타당성조사는 총 22건으로 총사업비의 합계는 사업계획 기준으로는 11조 3,359억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기준으로는 11조 5,155억원에 달했다. 사업별 조사결과 요약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II-16>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별 조사결과 요약

(단위: 억원)

연번	사업명	부문	총사업비			조사결과	
			사업 계획 (A)	예타 (B)	차액 (B-A)	B/C	AHP
1	광주 송정~순천 단선전철 건설사업	철도	17,171	17,055	-116	0.85	0.489
2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철도	12,382	13,045	663	1.10	0.561
3	의정부~금정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철도	41,781	43,088	1,307	1.36	0.616
4	포항~동해 전철화사업	철도	4,417	4,450	33	0.59	0.468
5	서울 지하철 9호선 4단계 건설사업	철도	6,546	5,593	-953	0.99	0.511
6	상화로(유천교~월곡) 입체화 사업	도로	2,425	2,856	431	1.04	0.506
7	평택~당진항 진입도로(신평~내항) 건설사업	도로	1,385	1,405	20	1.36	0.598
8	정림중~버드내교간 도로개설사업	도로	827	906	79	1.05	0.513
9	광주 대촌~나주 금천 간 도로확장사업	도로	797	734	-63	0.23	0.349
10	금남~북대전IC 연결도로 건설사업	도로	1,999	2,038	39	0.78	0.408
11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사업	항만	868	1,012	144	1.09	0.677
12	금호위터폴리스 일반산단 진입도로 건설사업	도로	1,328	1,076	-252	1.23	0.579
13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진입도로	도로	734	924	190	1.18	0.552
14	염공대교 건설사업	도로	2,637	3,732	1,095	0.99	0.510
15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정보화	3,761	3,776	15	1.06	0.630
16	금강남부(2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수자원	1,222	1,109	-113	2.76	0.792
17	고덕8단지 임대주택 정비사업	건축	2,625	2,664	39	1.19	0.571
18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 사업	건축	725	914	189	4.29	0.571
19	산재모병원 건립사업	건축	1,715	1,776	61	0.73	0.304

&lt;표 III-16&gt;의 계속

(단위: 억원)

연번	사업명	부문	총사업비			조사결과	
			사업 계획 (A)	예타 (B)	차액 (B-A)	B/C	AHP
20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신축사업	건축	2,045	1,136	-909	0.94	0.503
21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정보화	3,769	3,560	-209	1.09	0.630
22	대산임해산업지역 공업용수도(해수담수화) 사업	수자원	2,200	2,306	106	0.98	0.562
합계			113,359	115,155	1,796	-	-

주: 1) 조사결과에 AHP를 수행한 최적대안에 한하여 제시함.  
2) 국유지 및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지 관련 비용이 반영된 총사업비 금액임.

부문별 수행 건수를 살펴보면 도로부문은 “상화로(유천교~월곡) 입체화 사업” 등 8건, 철도부문은 “광주 송정~순천 단선전철 건설사업” 등 5건, 항만부문은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사업” 1건, 문화·관광·건축부문은 “고덕8단지 임대주택 정비사업” 등 4건, 수자원부문은 “금강남부(2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등 2건, 기타부문은 2건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부문별 총사업비 규모를 살펴보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철도부문의 총사업비가 8조 3,231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 1건당 평균 총사업비는 5,234억원이고, 부문별 사업 1건당 평균 총사업비는 철도부문이 1조 6,646억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III-17&gt;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 수행 실적

(단위: 건, 억원)

구분		도로	철도	항만	문화·관광 ·건축	수자원	기타	합계	
수행 건수		8	5	1	4	2	2	22	
총 사 업 비	사업계획 (A)	소계	12,132	82,297	868	7,110	3,422	7,530	113,359
		평균	1,517	16,459	868	1,778	1,711	3,765	5,153
	예타 (B)	소계	13,671	83,231	1,012	6,490	3,415	7,336	115,155
		평균	1,709	16,646	1,012	1,623	1,708	3,668	5,234
	차액 (B-A)	소계	1,539	934	144	-620	-7	-194	1,796
		평균	192	187	144	-155	-3	-97	82

주: 기타부문에는 공항, 정보화, R&D 부문, 기타재정사업 등의 건수가 포함됨.

사업부처별 수행 실적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소관의 사업이 13건으로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59.1% 가량을 차지한다.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총사업비 규모를 보아도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가 9조 6,874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8>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부처별 수행 실적

(단위: 건, 억원)

구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관세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합계	
수행 건수	13	1	1	1	1	1	1	1	1	1	22	
총사업비	사업계획 (A) 소계	94,467	1,385	725	868	3,761	3,769	1,715	2,625	2,045	1,999	113,359
	사업계획 (A) 평균	7,267	1,385	725	868	3,761	3,769	1,715	2,625	2,045	1,999	5,153
	예타 (B) 소계	96,874	1,405	914	1,012	3,776	3,560	1,776	2,664	1,136	2,038	115,155
	예타 (B) 평균	7,452	1,405	914	1,012	3,776	3,560	1,776	2,664	1,136	2,038	5,234
	차액 (B-A) 소계	2,407	20	189	144	15	-209	61	39	-909	39	1,796
	차액 (B-A) 평균	185	20	189	144	15	-209	61	39	-909	39	82

부문별 경제적 타당성 확보율을 살펴보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사업(B/C ≥ 1)의 비율은 약 59.1%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도로부문에서 62.5%, 철도부문에서 40.0%, 항만부문에서 100.0%, 문화·관광·건축부문에서 50.0%, 수자원부문에서 50.0%, 기타부문에서 100.0%의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9>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 경제적 타당성 확보율(B/C ≥ 1)

(단위: 건, %)

구분	도로	철도	항만	문화·관광·건축	수자원	기타	전체
전체건수	8	5	1	4	2	2	22
B/C ≥ 1	건수	5	2	1	2	1	13
	비율	62.5%	40.0%	100.0%	50.0%	50.0%	59.1%

주: 기타부문에는 공항, 정보화, R&D 부문, 기타재정사업 등의 건수가 포함됨.

부문별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AHP ≥ 0.5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의 타당성 확보율은 77.3%이다. 부문별로는 항만, 수자원, 기타부문의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이

10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각 부문별로 도로 75.0%, 철도 60.0%, 문화·관광·건축부문 75.0%의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0>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AHP≥0.5)

(단위: 건, %)

구분	도로	철도	항만	문화·관광·건축	수자원	기타	전체
전체건수	8	5	1	4	2	2	22
AHP≥0.5	건수	6	3	1	3	2	17
	비율	75.0%	60.0%	100.0%	75.0%	100.0%	100.0%

주: 기타부문에는 공항, 정보화, R&D 부문, 기타재정사업 등의 건수가 포함됨.

## 2.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2018년도에 수행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평택북부경찰서 신축사업” 등 총 5건이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의 총사업비 합계는 사업계획안(요구안)이 5,911억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가 5,786억원으로 절감액이 125억원으로 나타났다.

<표 III-21> 2018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별 조사결과 요약

(단위: 억원)

연번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계획(A)	검토안(B)	절감액(B-A)
1	평택북부경찰서 신축사업	594	573	-21
2	경기북부구치소 신축사업	1,195	1,294	99
3	전주 공공하수처리시설(4단계) 증설사업	1,030	964	-66
4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사업	796	781	-15
5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	2,296	2,174	-122
합계		5,911	5,786	-125

주: 1) 2018년도 12월말 조사완료 사업 기준

2) 검토안, 대안 중 '검토안'을 기준으로 하여 총사업비를 제시함.

### 3. 타당성재조사

2018년 타당성재조사의 요건별 수행 실적을 살펴보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가 1건,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가 1건, “총사업비 20% 이상 증가”가 4건으로 나타났다.

<표 III-22> 2018년도 타당성재조사 요건별 수행 실적

(단위: 건)

구분	예타 대상 규모로 증가	예타 미실시	총사업비 20%이상 증가	수요 30%이상 감소	기타	합계
타당성재조사	1	1	4	-	-	6

주: 2018년 12월말까지 조사완료된 사업을 기준으로 함.

2018년도에 수행한 타당성재조사는 “제주시 구국도대체육회도로(회천~신촌)” 등 총 6건이다. 각 사업별 조사결과 요약은 <표 III-23>과 같다.

<표 III-23> 2018년도 타당성재조사 사업별 조사결과 요약

번호	사업명	총사업비(억원)		조사결과		
		요구안 (A)	타재 (B)	절감액 (A-B) 또는 (A)	B/C	AHP
1	제주시 구국도대체육회도로(회천~신촌) 건설사업	823	820	3	1.12	0.622
2	원주천댐 건설사업	587	662	-75	1.30	0.668
3	부산북항 재개발 배후도로 건설사업	2,314	2,249	65	1.10	0.527
4	계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969	1,183	-214	1.31	0.570
5	동광주~광산 고속도로 확장사업	4,229	4,031	198	0.95	0.506
6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사업	483	558	-75	8.13	0.631
계		9,405	9,503	-98	-	-

- 주: 1) 조사결과 AHP를 수행한 최적대안에 한하여 제시함.  
 2) 요구안의 총사업비는 타당성재조사 의뢰공문에 제시된 금액으로 조사결과와 가격기준연도가 상이함.  
 3) 총사업비는 모두 기 투입비 포함임.  
 4) 총사업비 절감액은 AHP값 0.5이상인 경우 요구안 대비 최적대안 총사업비 절감액을, AHP값이 0.5 미만인 사업의 경우 요구안의 총사업비를 합산하여 집계하였음. 단, 타당성재조사에 의한 분석결과로 실제 집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5) 2018년도 12월말 조사완료 사업 기준

타당성재조사의 부문별 수행 실적을 살펴보면 도로부문 3건, 문화·관광·건축부 문 1건, 기타부문 2건의 사업이 재조사가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4> 2018년도 타당성재조사 부문별 수행 실적

(단위: 건)

구분	도로	철도	항만	문화·관광 ·건축	기타	합계
타당성재조사	3	-	-	1	2	6

주: 2018년 12월말까지 조사완료된 사업을 기준으로 함.

2018년도 수행된 타당성재조사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를 살펴보면, 요구안의 총사업비는 9,405억원이며, 타당성재조사의 총사업비는 9,503억원으로 요구안 대비 약 9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5> 2018년도 타당성재조사 총사업비 규모

(단위: 억원)

구분	건수	총사업비		
		요구안	타당성재조사	절감액
타당성재조사	6	9,405	9,503	-98

주: 총사업비 절감액은 AHP값 0.5이상인 경우 요구안 대비 최대단 총사업비 절감액을, AHP값이 0.5 미만인 사업의 경우 요구안의 총사업비를 합산하여 집계하였음. 단, 타당성재조사에 의한 분석결과로 실제 집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사업부처별 수행 실적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 4건,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 1건, 국가보훈처 소관 사업 1건으로 집계되었다.

<표 III-26> 2018년도 타당성재조사 사업부처별 수행 실적

(단위: 건)

구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합계
타당성재조사	4	1	1	6

주: 2018년 12월말까지 조사완료된 사업을 기준으로 함.

타당성재조사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율( $B/C \geq 1$ ) 및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 $AHP \geq 0.5$ )을 살펴보면, 경제적 타당성 확보율 및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은 10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7> 2018년도 타당성재조사 경제적·종합적 타당성 확보율

(단위: 건)

구분		경제적 타당성 확보(B/C≥1)	종합적 타당성 확보(AHP≥0.5)
총건수		6	
타당성 확보	건수	5	6
	비율	83.3%	100.0%

#### 4.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

2018년도에 수행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등 총 9건이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사업의 총사업비 합계는 요구안이 5조 6,077억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가 5조 1,907억원으로 절감액이 4,107억원으로 나타났다.

<표 III-28> 2018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사업별 조사결과 요약

(단위: 억원)

번호	사업명	총사업비		
		요구안 (A)	재검토 (B)	절감액 (A-B)
1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19,576	17,018	2,558
2	원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	1,401	1,306	95
3	전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용진~우아) 건설사업	2,185	2,025	160
4	국지도 58호선(송정~문동) 건설공사	2,802	2,758	44
5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4,122	3,913	209
6	파주 무대공연 종합아트센터 건립사업	382	363	19
7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사업	1,980	1,209	771
8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김포~파주) 건설사업	17,330	17,143	187
9	홍보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6,299	6,235	64
계		56,077	51,970	4,107

- 주: 1) 요구안의 총사업비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의뢰공문에 제시된 금액으로 조사결과와 가격 기준연도가 상이함.  
 2) 총사업비는 모두 기 투입비 포함임.  
 3)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안이 다수인 경우는 최소값의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단,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의한 분석결과로 실제 집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2018년도 12월말 조사완료 사업 기준

&lt;표 III-29&gt; 2018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총사업비 규모

(단위: 억원)

구분	건수	총사업비		
		요구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감액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9	56,077	51,970	4,107

2018년도에 수행한 수요예측 재조사는 수행된 건수가 없으며, 설계의 적정성 검토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건설사업” 등 총 6건이 수행되었다.

&lt;표 III-30&gt; 2018년도 설계의 적정성 검토 사업

번호	사업명
1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3	부산~울산 복선전철 태화강역사 신축
4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5	중앙선(도담~영천) 복선전철사업(영주역사)
6	새만금~전주 고속도로(5공구 중인동구간)

주: 2018년도 12월말 조사완료 사업 기준

## 제 IV 장

#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 제 1 절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 1. 민간투자제도의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 가. 도입배경

민간투자사업이란 전통적으로 정부부문의 범주에 속했던 도로, 항만, 철도, 환경 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의 건설과 운영을 민간부문이 담당하여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은 국가 경제활동의 기반을 이루며,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는 그 자체로서 고용의 증대, 소득 증가, 지역개발, 기술진보 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생산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은 공공부문이 공급하고 운영·관리해 왔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들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는 공공투자사업의 패러다임이 바뀐 커다란 변화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도로·철도·항만·공항시설·전력·용수·하수처리시설 등 인프라시설의 부족문제가 발생하였다. 인프라시설의 부족은 물류비 증가와 국가경쟁력 저하라는 악영향을 초래하였다. 정부는 그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비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는 있었지만 세수를 늘려 필요한 투자비를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1990년대부터는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향상하면서 여가 등 복지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지방화·개방화도 급속히 진행되었다. 개발시대의 성장정책에

밀려 소홀히 취급되었던 복지, 교육, 환경 등에 대한 투자수요도 급증하였다. 정부는 이와 같은 투자재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사용자부담원칙의 적용이 가능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민간자본의 유치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난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은 그러한 배경 하에서 탄생하였으며, 1998년 12월에는 민자유치촉진법을 민간투자법으로 대폭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나.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경위 및 법적근거

##### 1) 추진경위

1994년 8월에 재정을 보완하여 민간자금으로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을 제정하였고, 이러한 법적 토대를 바탕으로 도로, 철도, 항만 등 경제적 인프라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수익형 사업(BTO)이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수정 및 보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1999년 12월)하였는데, 개정내용은 1997년과 1998년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으로 민간제안방식을 도입하였다.

이후 2005년 1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하였고, 학교시설 및 군주거시설 등 사회적 인프라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형 사업(BTL) 방식 도입과 더불어 공모 형태의 인프라펀드를 통해 투자자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시행령 개정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을 통하여 지금의 민간투자제도의 틀이 완성되었다. 임대형 사업(BTL)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과 예비한도액을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사전의결제도를 도입하고, 논란이 되어온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였다.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 변천과정은 크게 네 기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제1기는 민간투자사업이 개별법에 의해 추진되던 시기이다. 지난 1960년대부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제정된 1994년 8월 이전까지가 이에 해당된다. 제2기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의 전면 개정이 이루어진 1999년 3

월까지이다. 제3기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시행된 1999년 4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이며, 제4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시행된 2005년 1월부터 현재의 기간에 해당된다.

이하에서는 각 기간별 민간투자제도의 변천 내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표 IV-1> 민간투자제도 변천과정과 특성

구 분	기간	특성
제1기	1968~1994	· 개별 법(도로법, 항만법 등)에 의한 산발적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제2기	1994~1998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제정 ·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민간자본 유치 도모 · 제1종 시설과 제2종 시설로 구분하여 제1종의 경우 BTO 방식으로, 제2종의 경우 BOO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제3기	1999~2004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지원과 역할 분담 · 제1종 시설과 제2종 시설로 구분 폐지하여 사업추진방식 다각화
제4기	2005~현재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BTL 방식 도입 ·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 의무화 · 공모방식을 통한 인프라 펀드의 활성화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민간제안 허용(2016.3.2. 개정)

주: 1) 기획예산처, 『SOC 민간투자제도 발전방안 연구』, 2002.  
2) 한국개발연구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 정비방안 연구』, 2007.

## 2) 법적근거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체계는 민간투자법과 동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투자법은 사업대상시설, 추진방식, 추진절차, 지원제도, 운영·감독·제재조치 등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일반법적 성격과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각 관계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적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는 법이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민간투자법 제7조와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는 것으로 법·시행령과 함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기반시설의 분야별 민간투자정책방향
- 민간투자사업 또는 민간투자 대상 사업의 투자범위·방법 및 조건에 관한 사항
-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정책방향

이 외에 사업추진과 관련된 참고지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세부요령 등이 있다.

## 2.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및 추진방식

### 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 및 유형

민간투자사업 대상인 사회기반시설은 각종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을 말하며, 민간투자법 제2조 1호에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나열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민간투자대상시설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은 총 12개 분야, 56개 법률, 53개 유형이다.

<표 IV-2> 사회기반시설 유형 (민간투자법 제2조)

분야 (시설 유형 개수)	법률	시설유형
교육(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치원 및 학교
국방(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 군사시설 중 주거, 복지 및 체육시설 등
국토교통(17)	도로법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철도사업법	철도
	도시철도법	도시철도
	항공법	공항시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다목적댐
	하천법	하천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차장법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복합환승센터 및 지능형교통체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체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시설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	공공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중 공공건설임대주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 소속 청사 (경찰법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는 제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공영차고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문화체육관광(6)	관광진흥법	관광지 및 관광단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도서관법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국제회의시설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시설

&lt;표 IV-2&gt;의 계속

분야 (시설 유형 개수)	법률	시설유형
과학기술정보통신 (4)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설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국가정보화 기본법	초고속정보통신망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관
보건복지(6)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노인복지법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기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화장시설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
산림(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자연휴양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
산업통상자원(5)	전원개발촉진법	전원설비
	도시가스사업법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기반시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시설
안전행정(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 설비
여성가족(1)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수련시설
해양수산(3)	항만법	항만시설
	어촌어항법	어항시설
	신항만건설촉진법	배후간선망 연결시설 및 기반시설
환경(6)	수도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도 및 중수도
	하수도법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 시설 및 하·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수중말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처리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재활용시설
12개 분야	56개 법률	53개 사회기반시설 유형

자료: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 나. 추진 절차 및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재정투자사업 중 사업성이 우수하고 정부보다 민간이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정부가 선정하여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정부고시사업과 둘째, 민간사업자가 공공투자사업 중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민간제안사업으로 나누어진다.

<표 IV-3> 민간투자사업 지정의 일반원칙(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p><b>제4조 (민간투자사업 지정의 일반원칙)</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익자부담능력원칙 : 기존 저부담의 이용시설에 대비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이용자가 이와 같은 고편익에 상응하여 고부담 사용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li> <li>2. 수익성원칙 : 정부가 허용 가능하고 이용자가 지불 가능한 사용료, 정부가 지원 가능한 건설보조금 범위 내에서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li> <li>3. 사업편익의 원칙 : 정부 재정사업 추진시 예산제약 등으로 조기 시설건설과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시 목표 연도내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사업편익의 조기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li> <li>4. 효율성 원칙 : 민간의 창의·효율을 활용함으로써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비해 사업편익 증진 및 사업비용 경감, 정부재정시설과의 경쟁촉진으로 서비스질 제고 등이 기대되는 사업</li> </ol>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은 주로 BTO 방식과 BTL 방식이 있으며, 기타 BOT, BOO 방식 등으로도 추진이 가능하다. BTO 및 BTL 방식은 준공과 동시에 시설을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이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조에 열거되어 있으며 제시된 방식 외에 민간부문이 제시하고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관청이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하는 방식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

&lt;표 IV-4&gt;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3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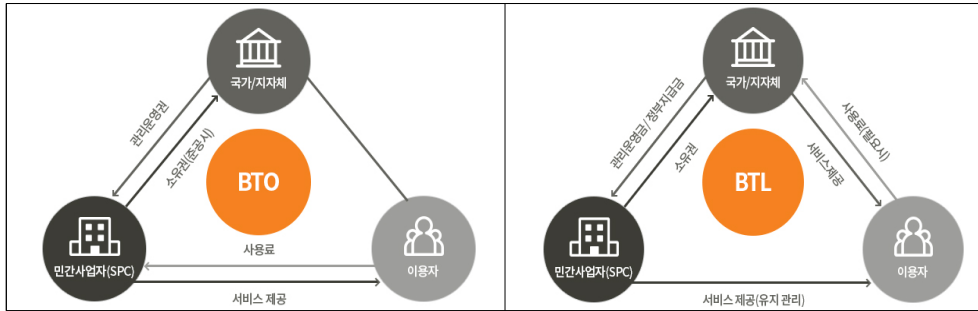
1.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2.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3.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사회기반시설 준공(신설·증설·개량) 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BOO(Build-Own-Operate) 방식: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 시설을 준공(신설·증설·개량)한 후 일정기간 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
6. 혼합형 방식 : 법 제4조제1호 내지 제6호의 방식 중에서 둘 이상의 방식을 혼합한 방식
7. 그 밖에 민간부분이 제시하고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관청이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제시하는 방식(교육청이 사립학교시설을 제2호와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익형인 BTO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기반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사업시설을 운영하고, 그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대체로 도로 및 철도 등 수익(통행료 등) 창출이 용이한 시설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시장위험(수요변동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2015년 정부는 “정부와 민간이 사업위험을 분담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제3자의 방식을 도입”하고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2조부터 제33조의2를 개정 및 신설함으로써 위험분담형(BTO-rs: Build·Transfer·Operation-risk sharing, 이하 ‘BTO-rs’)과 손익공유형(BTO-a: Build·Transfer·Operation-adjusted, 이하 ‘BTO-a’)을 규정하였다.

임대형인 BTL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기반으로 사업시설을 주무관청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취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학교 및 문화시설 등 수요자(학생, 관람객 등)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정부의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므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시장위험(수요변동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혼합형 방식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BTO 방식부터 제6호의 방식 중에서 둘 이상의 방식을 혼합한 방식이다.

[그림 IV-1] 수익형 BTO와 임대형 BTL 방식 기본구조



자료: KDI PIMAC 홈페이지 (<http://pimac.kdi.re.kr>)

BTO와 BTL 방식의 대상시설 성격 및 투자비 회수, 사업 리스크 등의 주요 항목별 특징을 비교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V-5> 민자사업 방식에 따른 주요특징

추진방식	BTO (수익형 민자사업)	BTL (임대형 민자사업)
대상시설 성격	최종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수익형)	최종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서비스구입형)
주요 시설	도로, 철도, 항만 등	학교, 군관사, 하수관거,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투자비 회수	최종사용자의 사용료 (수익자부담원칙)	정부의 시설임대료 (정부재정)
사업 리스크	민간이 수요위험 부담 (수요에 따라 수익률 변동)	민간의 수요위험 배제
수익률	상대적으로 높음	상대적으로 낮음
사업추진 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 BTO_rs(Build · Transfer · Operate -risk sharing: 위험분담형) · BTO_a(Build · Transfer Operate-adjusted: 손익공유형)	BTL(Build-Transfer-Lease)

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수요위험을 전부 부담하여, 파산위험이 있고, 이를 반영하여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운영기간에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원칙적으로 매년 요금 인상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불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여 정부는 2015년 4월 20일에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투자위험 분담 방식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 공고하였다. 투자위험 분담 방식은 위험분담형과 손익공유형으로 구분된다.

위험분담형 민간투자사업은 총사업비에서 건설보조금을 제외한 총민간사업비를 대상으로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수준만큼 투자비 등을 정부가 보전하는 방법으로써, 정부가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부분의 사업수익률을 낮추어 최종적으로 이용자의 사용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손익공유형은 정부가 총민간투자비 중 선순위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이후 실시협약에서 정할 금액을 한도로 함)과 이를 제외한 민간투자비의 최소기획비용 및 운영비용을 보전하는 방법으로써 정부가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부분의 사업수익률을 낮추어 최종적으로 이용자의 사용료를 인하하는 방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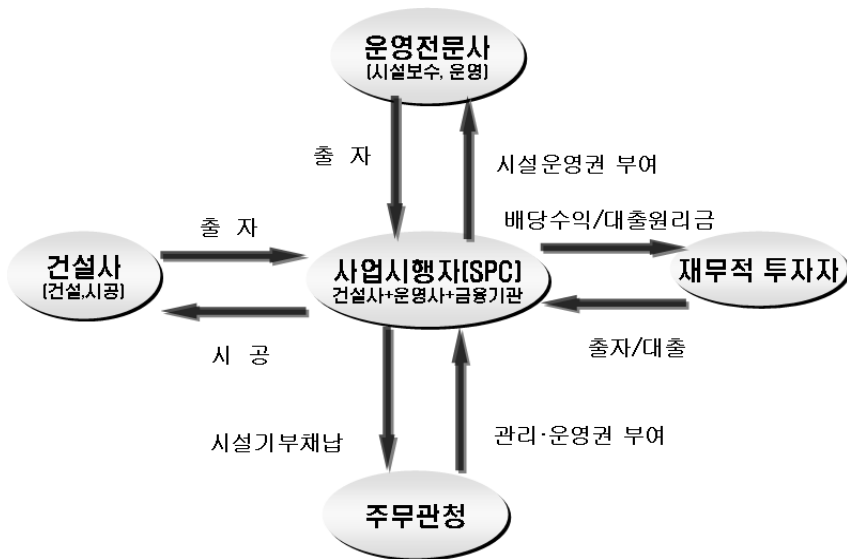
<표 IV-6> 위험분담형과 손익공유형의 비교

구 분		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위험 공유 수준	부담주체	일부 정부부담(예: 50%)	상당부분 정부부담(예: 70%)
	보장내용	정부 부담분의 민간투자비, 운영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투자비 70% 원리금</li> <li>■ 민간투자비 30% 기본수익(국채금리)</li> <li>■ 운영비용</li> </ul>
	환수여부	정부 부담비율만큼 환수(비율 변경가능)	민간투자비 초과금액 정부환수(예: 70%)
운영비	보장여부	50%(예시)	100%
	수익률 기준	혼합경상수익률 (정부부담분 +사업자부담분의 가중평균)	5년국고채금리+ $\alpha$ (보장수익률)
사용료	수준	협약요금(공공요금 준용)	협약요금(공공요금 준용)
	인상방식	매년 물가상승률 (공공요금 인상을 반영 가능)	매년 물가상승률 (공공요금 인상을 반영 가능)

### 3. 민간투자사업의 참여자 및 역할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와 민간의 실시협약에 의해 성립되는데, 사업시행자(SPC: Special Purpose Company)가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시설을 건설하면,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고, 사업시행자는 동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게 된다.

[그림 IV-2] 민간투자사업 참여자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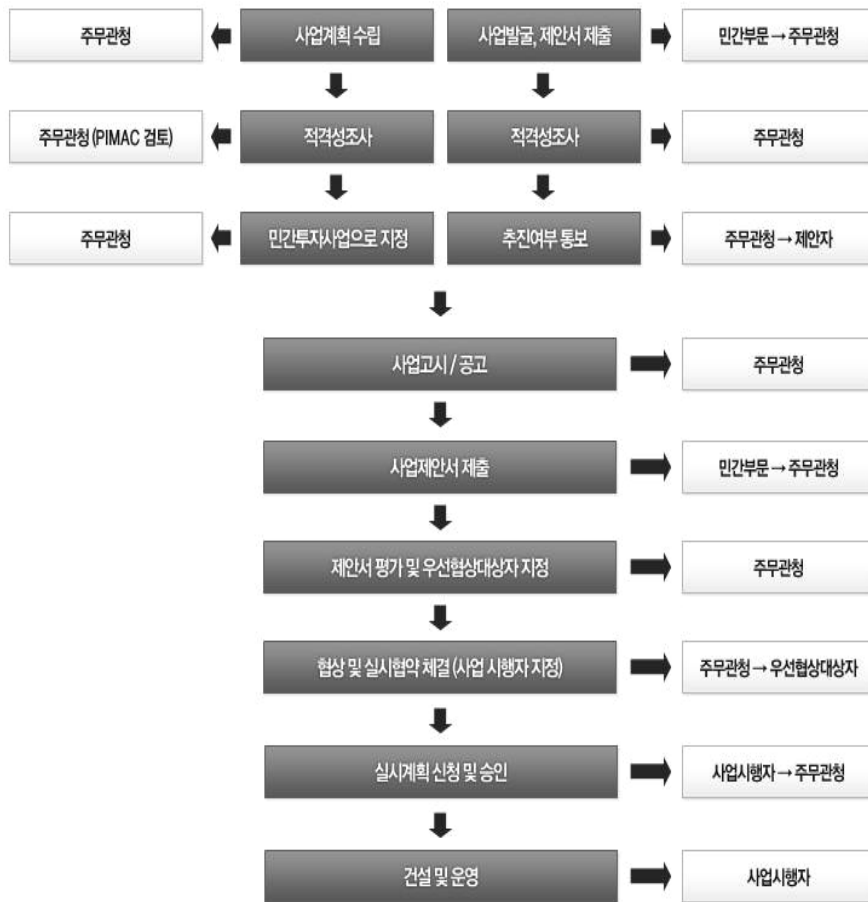
사업시행자는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설계회사, 건설회사, 재무적 투자자, 운영회사 등으로 구성되며, 설계, 건설, 재무, 운영 등을 담당한다.

주무관청은 당해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각 중앙부처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된다. 사업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중장기계획 부합 여부 및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선정할 수 있으며, 실시계획 승인 및 운영 등 민간투자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한다.

### 4. 세부 추진절차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은 민간 부문이 사업을 제안하는 ‘민간제안사업’과 주무관청이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상사업을 지정하고 고시하는 ‘정부고시사업’으로 구분되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은 과거에는 ‘정부고시사업’으로만 추진 할 수 있었지만, 2016년 3월 2일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인해 BTL 방식도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이 허용되어 ‘민간제안사업’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림 IV-3] 수익형 민자사업(BTO) 추진 절차



가. 정부고시사업

주무관청이 국가정책상 중요한 사업 중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민간투자사업의 지정의 일반원칙(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조),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시설 및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하여야 한다.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연계 강화 및 정부고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민자적격성 판단을 수행한 후 민간투자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필수 민자검토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을 비교분석하여 재정사업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격인지 여부를 분석한다.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연도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주무관청은 수립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된다. 주무관청은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 협상을 진행한다. 이후 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 나. 민간제안사업

민간제안사업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 지정 일반원칙,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정한 시설 및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 부합 여부 검토 및 사업내용에 대해 비용·편익 분석 등을 포함한 적격성조사를 실시하여, 국가 경제적으로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고 민간제안 및 민간투자 실행대안이 재정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정부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의 제고 등이 가능한 경우 추진대상사업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함으로써 사업이 시작된다. 주무관청은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를 확정하기 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당해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당해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주무관청 및 기

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주무관청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당해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사업에 대한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당해 제안내용의 개요를 관보, 세 개 이상의 일간지 및 주무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른 제안이 있을 경우,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와 제3자의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협상대상자를 지정하며,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의 시행에 이르게 된다.

대부분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은 정부고시사업보다는 민간제안사업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 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선정은 법적 적합성, 경제적·재무적 적합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이루어진다.

첫째, 법적 적합성 측면에서는 국가·지자체가 국민에게 기초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국·공립 시설 및 이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유형의 사업과 관계법령 등에 근거하여 수립된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경제적·재무적 적합성 측면에서는 ① 민간의 창의·효율을 활용함으로써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비해 적기완공으로 사업편익 조기 향유, 시설물의 품질·안전도 향상, 서비스 질 제고 등 사업편익 증진과 설계·건설·운영을 포함한 특정사업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총비용의 절감 등 사업비용 경감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 ② 사업의 생애주기비용 중 운영유지비용의 비중이 크고 설계·건설·운영 유지 등에 대한 일괄적인 관리로 효율이 나타나는 사업, ③ 시설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부과가 어렵거나 사용료 부과만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사업(다만, 사용료 수입 및 건설보조금 등의 일부 지원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사업은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추진), ④ 시설물이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독립적 사업관리와 회계처리가 가능한 사업 등에 한하여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사업의 시급성 등 그 밖의 고려사항으로 ① 사업편익이 크고 시설의 조기 확충이 시급하나 재정여건상 투자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로서 선투자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 ②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시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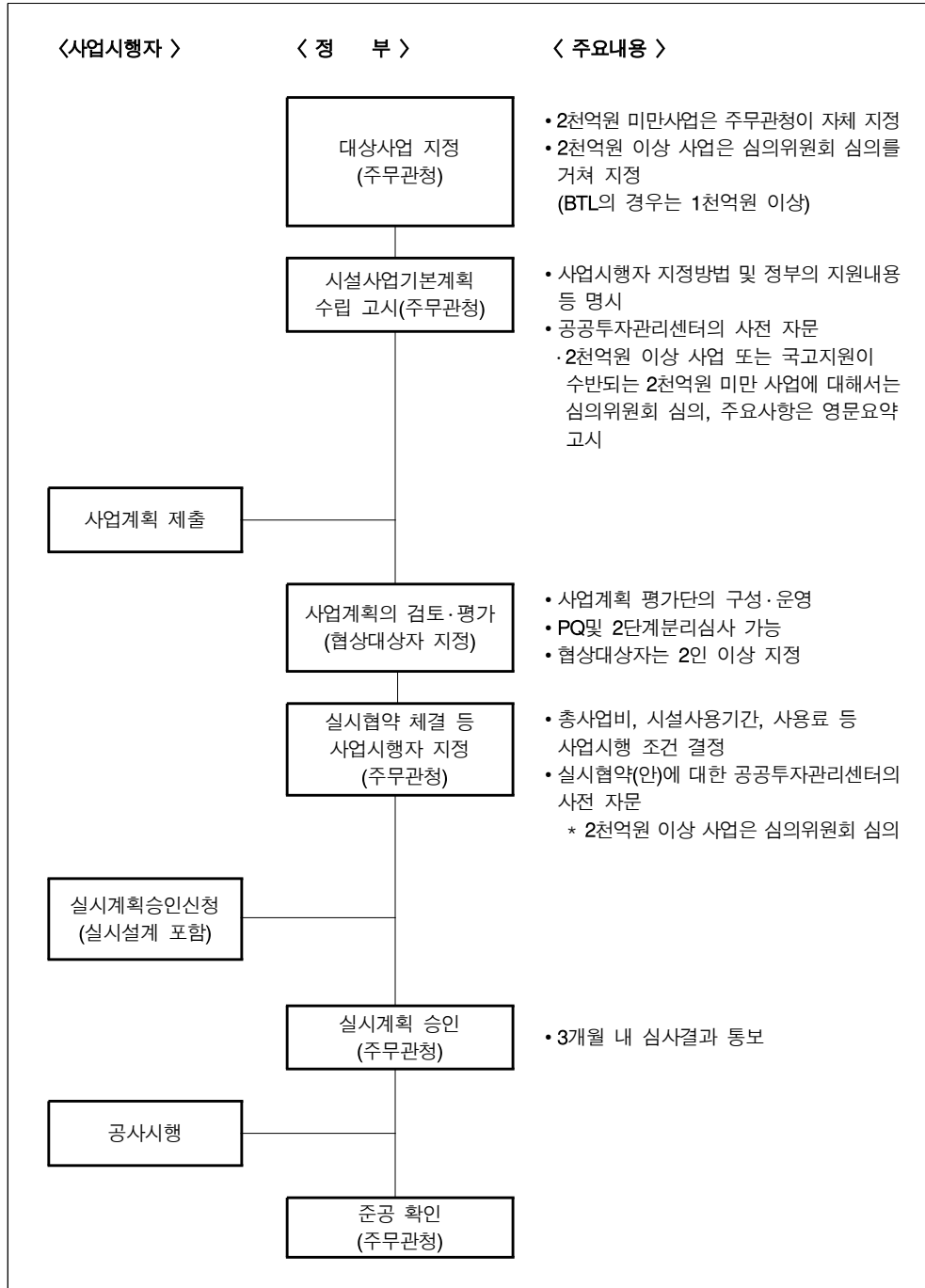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도록 할 수 있는 사업, ③ 민간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사업 등에 한하여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의 고려사항으로 주무관청은 한도액이 설정된 해당 연도 내에 사업실시가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준비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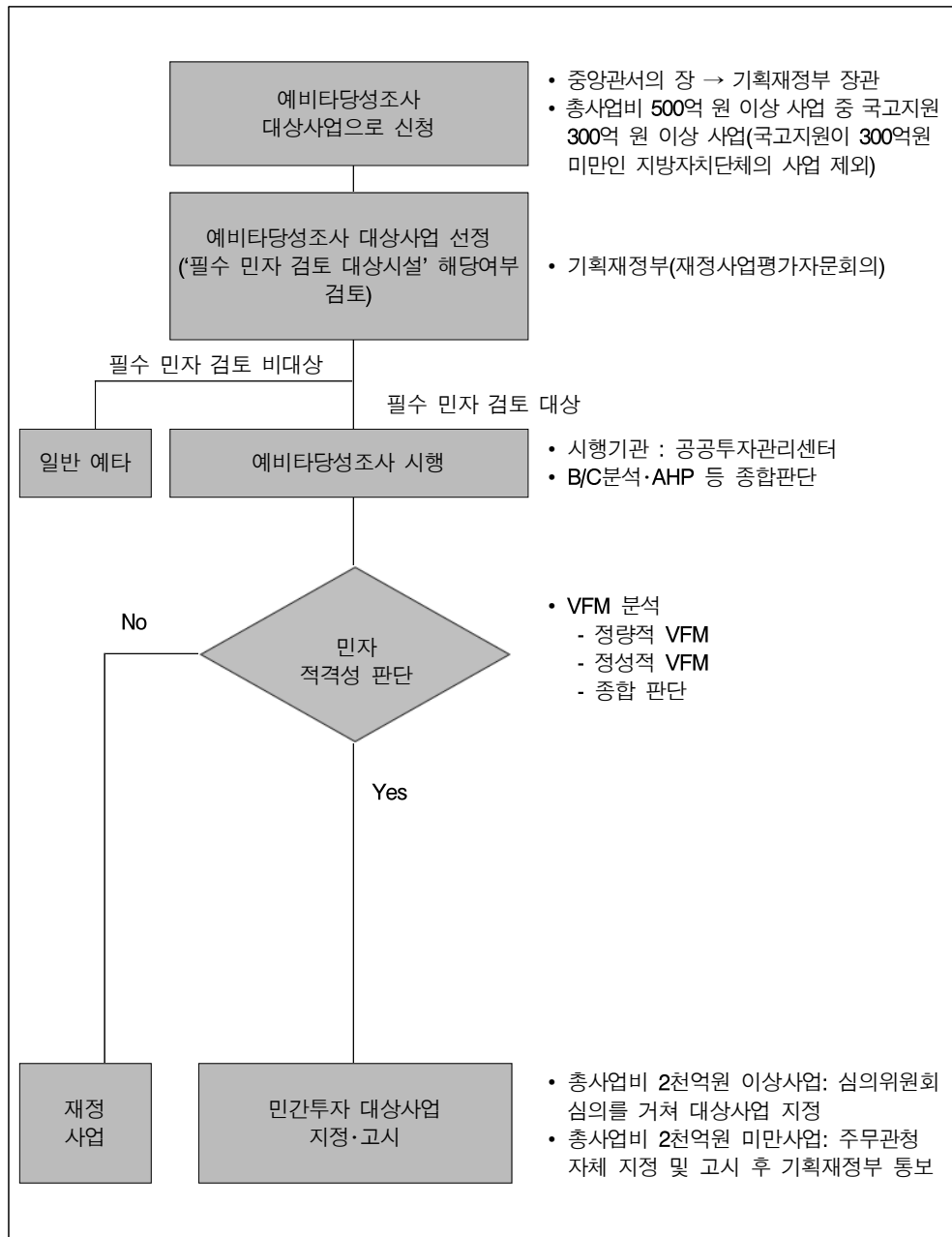
- ① 시설 확충에 수반되는 추가 운영인력 확보 등 원활한 집행이 가능한 사업
- ② 건축시설은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관련 인·허가 등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
- ③ 토목시설은 기본설계 완료, 관련 인·허가의 원활한 진행 등으로 조기 착공이 가능한 사업
- ④ 기존 시설 이용자의 이주대책·대체수용시설 마련이 가능하고 환경 등 민원처리에 큰 어려움이 없는 등 사업집행상의 애로사항이 없거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사업

[그림 IV-4] 수익형 민자사업 (BTO, 정부고시사업)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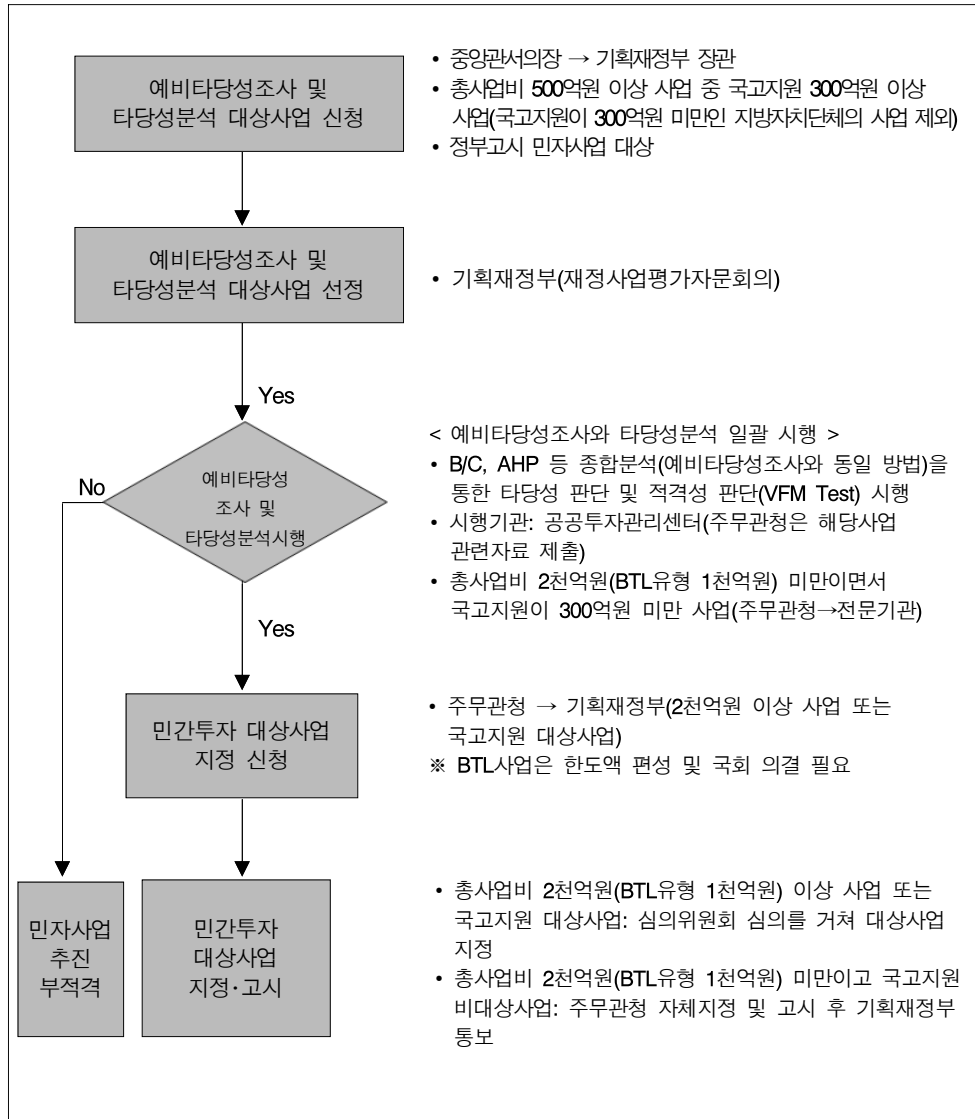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2018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18.

[그림 IV-5] 정부고시사업의 대상사업 지정절차(재정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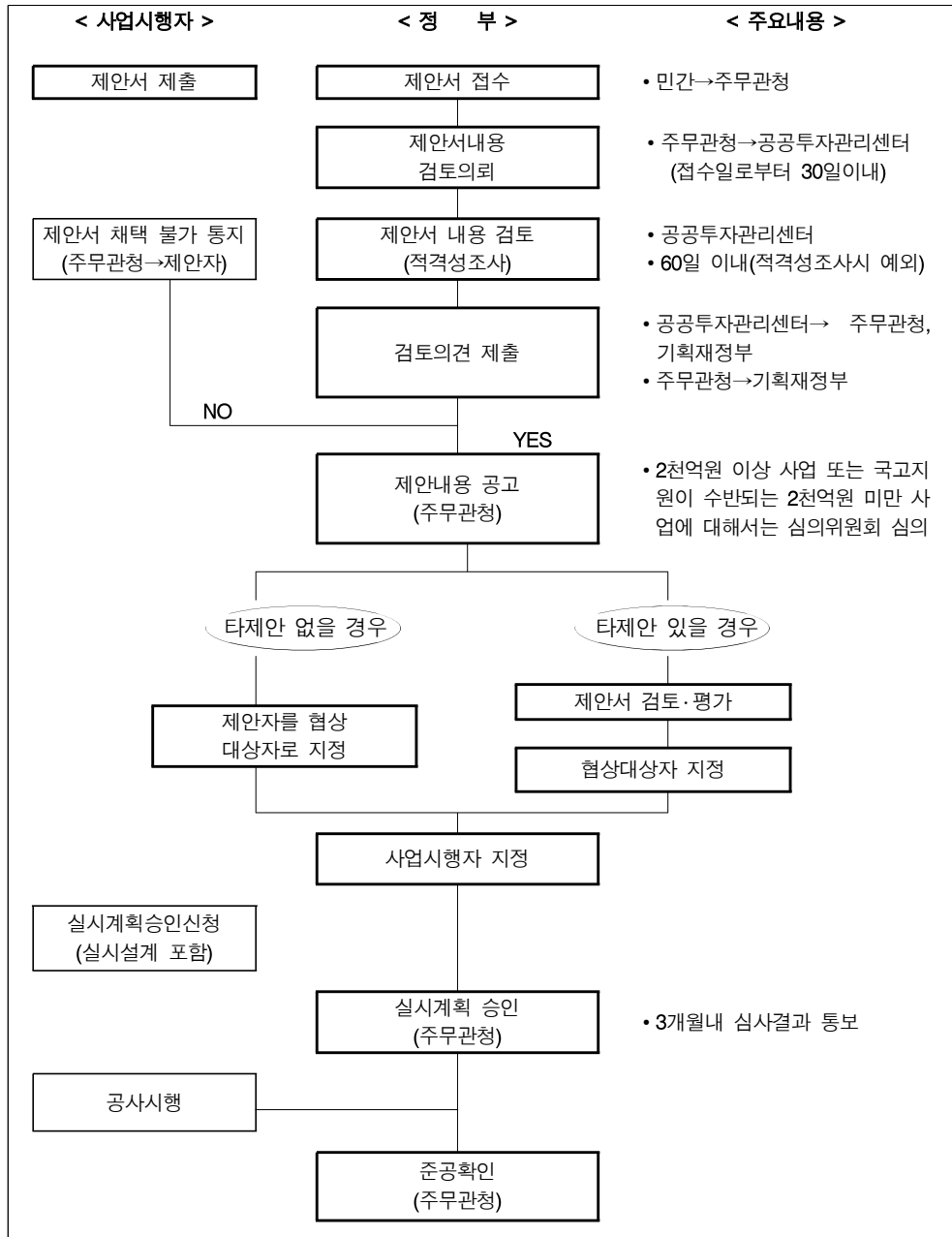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2018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2018.

[그림 IV-6] 정부고시사업의 대상사업 지정절차(정부고시 민자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을 신청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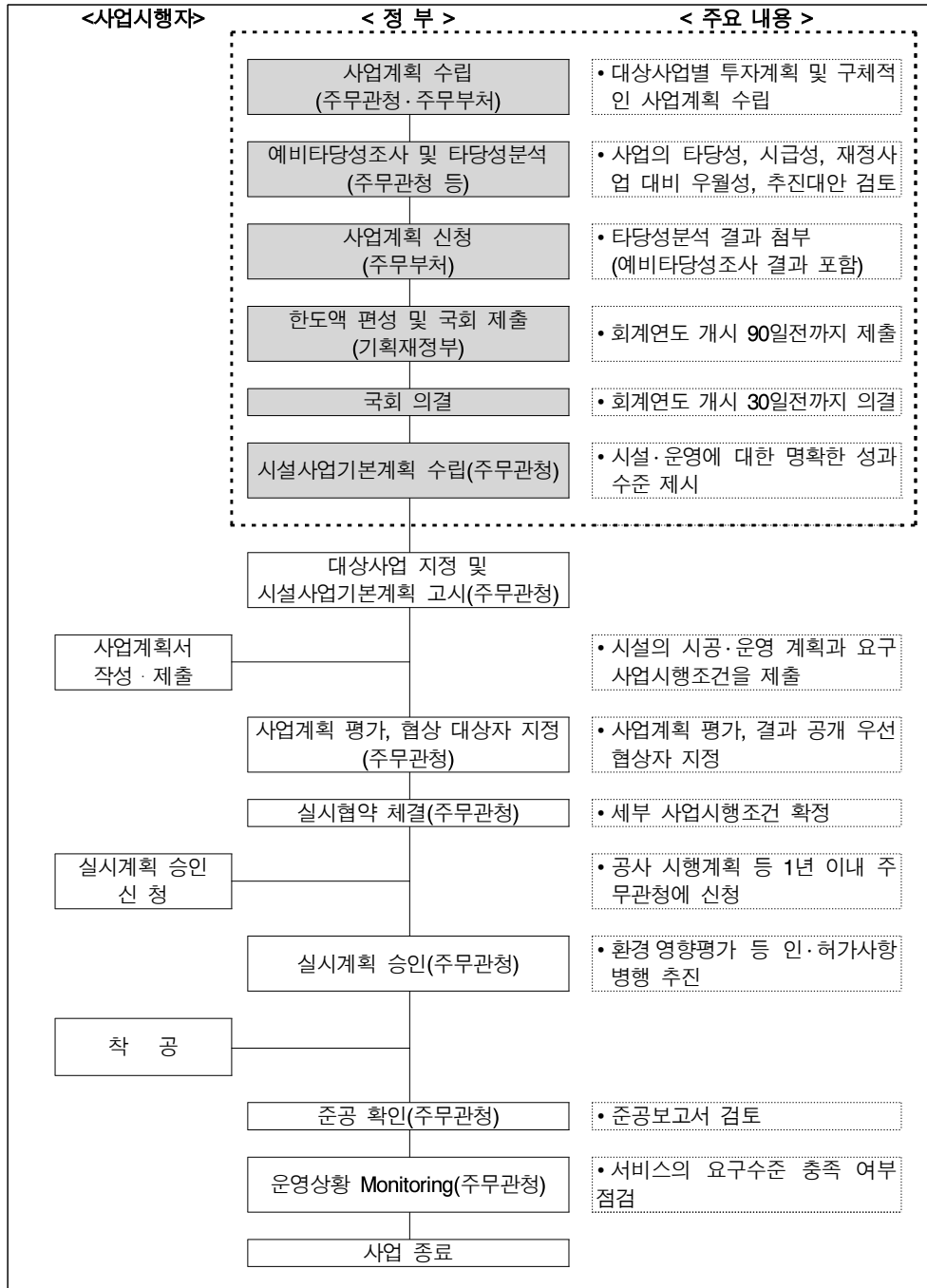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2018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18.

[그림 IV-7] 수익형 민자사업 (BTO,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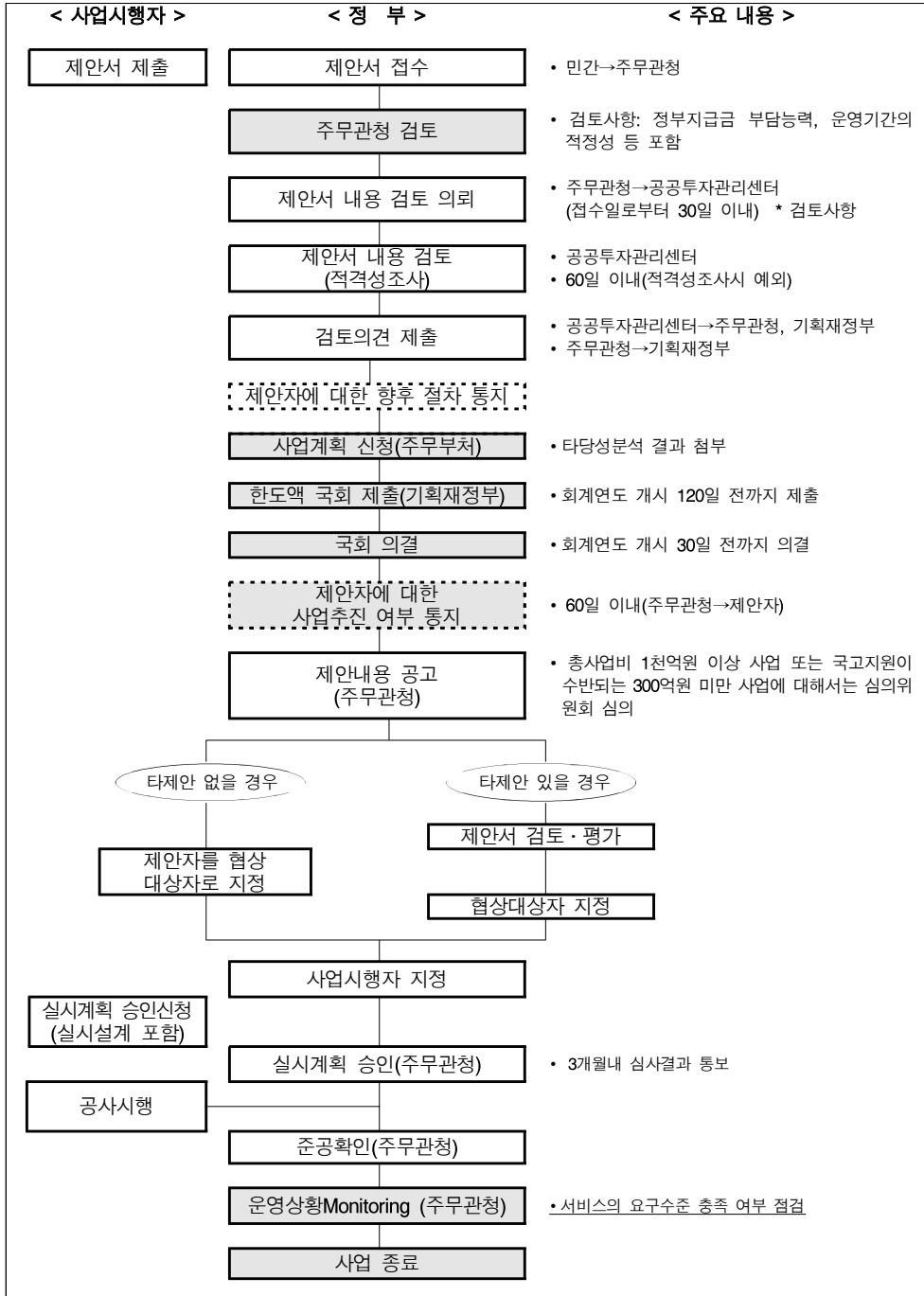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2018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18.

[그림 IV-8] 임대형 민자사업 (BTL)의 정부고시사업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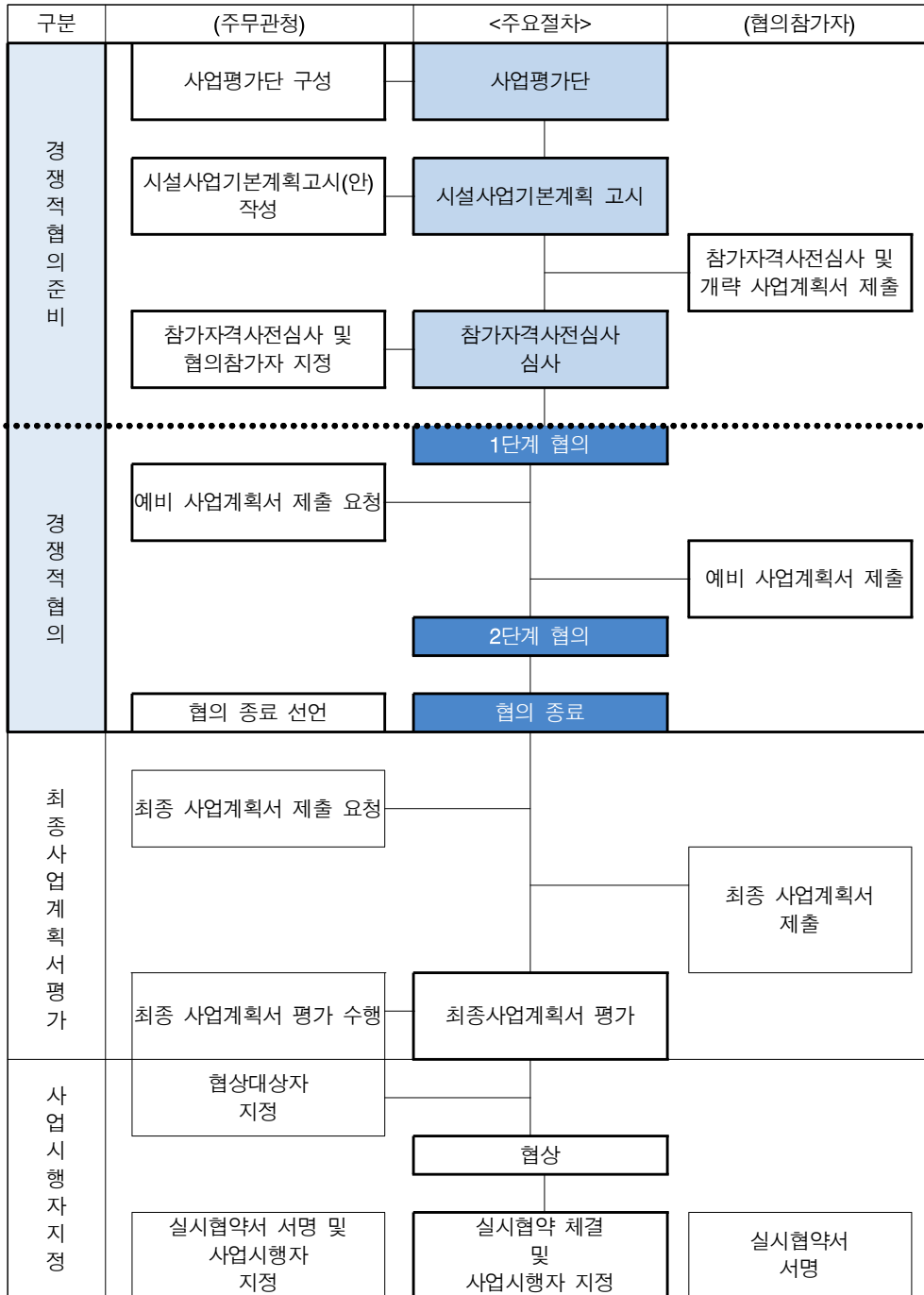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2018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18.

[그림 IV-9] 임대형 민자사업 (BTL)의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



자료: 기획재정부, 『2018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18.

[그림 IV-10] 경쟁적 협의(BTO, 정부고시사업) 추진 절차



자료: 기획재정부, 『2018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18.



## 제2절 민간투자지원사업 주요 내용

### 1.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및 타당성분석

#### 가.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주무관청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안서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검토의뢰를 받은 제안사업 중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적격성조사를,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적격성조사 내지 제안서검토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제1단계인 타당성 판단의 단계에서는 해당사업의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제2단계인 민간제안 적격성 판단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는 경우 정부 실행대안(PSC: Public Sector Comparator)과 민간투자대안(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의 VFM(Value for Money) 분석을 실시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제3단계인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단계에서는 제2단계에서 수행한 민간제안서 내용의 적격성 판단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재무성분석 등을 통해 정부측 입장에서의 적정 사업비, 사용자, 정부 재정지원 규모 등을 산출하고 민간투자 실행대안을 구축한다.

#### 나. 타당성분석 검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는 모든 BTL 단위사업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립한 「임대형 민자사업 타당성분석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라 타당성분석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기대편익 및 시급성 등을 위주로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을 조사하며 재정사업 추진시와 대비하여 민자사업 추진시 비용·편익 면에서 우월성이 있는지 VFM(Value for Money) 분석을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주무관청은 타당성분석 결과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의뢰하도록 되어있으며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주무관청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sup>7)</sup>.

## 2.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 가.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정부고시)

시설사업기본계획 검토는 민간제안사업의 방식으로 주로 수행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와 대응되는 업무이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고시사업의 형태로만 추진될 수 있으므로 모든 사업에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수립되는데, 타당성분석을 실시한 후 타당성분석 결과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게 된다. 이 때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사전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의뢰하여야 하는데,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이러한 검토 업무를 관장하며 민간투자법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각종 요령 등과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sup>8)</sup>.

### 나.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 및 작성(민간제안)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통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당해 제안내용의 개요를 관보와 세 개 이상의 일간지 및 주무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지원실은 주무관청의 의뢰를 받아 제3자 제안공고(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업무를 수행한다.

## 3. 사업계획(제안서) 평가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제3자 공고에 따라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와 제3자의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협상대상자를 지정하며,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의 시행에 이르게 된다. 주무관청은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 7)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사업, 복합화시설사업,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대상사업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함으로써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를 갈음할 수 있다.
  - 8) 제3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민간투자사업의 평가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평가의 투명성,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교하고 세밀한 관리기법을 통하여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4.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및 협약(안) 검토

##### 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우선협상대상자와 일정 기간 동안의 협상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협상의 내용은 총사업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을 포함하여 사업 내용 전반에 걸쳐진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민간투자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무관청을 지원하고, 협상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러한 협상 대행 업무를 하고 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협상 업무는 내외부의 전문가들로 협상단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협상점검위원회가 협상단이 수행한 협상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있으며, 협상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개선 노력 역시 계속되고 있다.

##### 나. 실시협약(안) 검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이거나 민간투자사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가진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를 거치게 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모든 사업에 대하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실시협약을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sup>9)</sup>. 따라서 주무관청은 실시협약 체결 이전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실시협약안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이를 관장하여 실시협약안이 민간투자법령,

9) 제38조에 따른 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할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각종 요령 등과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 5. 자금재조달 사전검토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중 운영단계에 접어드는 사업이 증가하면서 자금재조달(Refinancing) 사례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4년도부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개정을 통하여 자금재조달의 기준 및 절차 등 일반지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2004년 기본계획에서는 자금재조달의 정의와 공유원칙을 처음으로 제시하였으며 자금재조달 이익산정을 위한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이후 거시경제 환경변화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07년에는 자금재조달의 범위를 출자자변경까지 확대하고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관리사업에 대하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검토 의무를 주요사항으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자금재조달 규정을 개정하였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자금재조달에 관련된 세부요령을 작성·운영하고 있으며, 주무관청의 요청에 의해 공유이익규모 측정 등 자금재조달 사전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대행 업무, 주무관청의 자문 업무, 출자자 변경 등 자금재조달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6. 사업 시행조건 조정 검토

『2014년 민간투자기본계획』에서는 MRG사업에만 적용해왔던 사업재구조화 기법을 운영부실 및 재정투입이 과도한 사업 등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 기본계획 제33조의2(사업 시행조건 조정) 조항이 개정되었다. 이는 사업 시행조건 조정을 통해 주무관청재정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대상사업에는 MRG 규정 등으로 인해 과도한 정부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해지시지급금 발생으로 정부의 일시적 재정투입이 우려되는 사업 등이 포함된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주무관청이 사업 시행조건을 조정할 경우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사업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인 경우 주무관청의 의뢰를 받아 사전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 7. 민간투자사업 지원업무

### 가. 분쟁조정 검토 업무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진행 중에 발생한 다툼을 조정·심사하기 위해 2012년 3월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통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되는 분쟁조정 사항과 관련되는 법률적·기술적 쟁점에 대하여 자문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업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투자사업 관련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나. 기타 검토 및 질의답변 업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지원실은 앞서 기술한 업무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투자사업 관련기관 등의 의뢰를 받아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갖가지 쟁점들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주무관청, 민간사업자 및 일반국민이 웹사이트 또는 유선을 통해 수시로 제기하는 민간투자사업 관련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하고 있다.

## 8. 관리이행계획 검토 업무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사업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운영종료)되는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 후에 추가적인 투자 여부, 운영관리 주체 선정 등 사업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 등의 계획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고시 2015-82호)의 제54조의2에서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되는 사업의 추진방식 및 관리이행계획 수립 등’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된 사업 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 수립된 관리이행계획을 주무관청의 의뢰를 받아 사전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 제 V 장

#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 제1절 민간투자사업 추진 실적

2018년 12월 말까지 협약이 체결되어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총 724개 사업, 총투자비<sup>10)</sup>는 약 118조원이다.

추진방식별로 살펴보면, BTO방식은 230개 사업이 80.3조원이고, BOT·BOO방식은 11개 사업은 2.1조원이며, BTL방식은 480개 사업이 31.3조원이다. 최근 도입된 투자위험분담형 방식으로 BTO-a(손익공유형)방식 2개 사업의 985억원과 BTO-rs(위험분담형)방식 1개 사업의 4.1조원도 포함되어 있다.

대상시설을 총투자비 기준으로 보면, 도로사업이 46.1조원(41.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철도사업 19.8조원(18.3%), 환경사업 14.1조원(13.1%), 교육사업 10.3조원(9.6%), 항만사업 7.2조원(6.7%), 국방사업 5.9조원(5.5%) 순이다.

#### 1. 추진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규정에 따라 BTO, BOT, BOO, BTL 방식 등으로 추진할 수 있으나, 대부분이 BTO와 BTL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 수는 BTL 방식이 66.3%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총투자금액은 BTO방식이 71.4%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업 수 기준으로 보면 BTL방식이 480개, BTO방식 중 BTO방식이 230개, BOO방식이 7개, BOT방식이 4개, BTO-a방식이 2, BTO-rs

10) 총투자비 = ① 건설보조(경상) + 타인자본(경상) + 자기자본(경상)

② 총사업비 + 물가변동비(본 사업시설의 준공을 위해 소요되는 총사업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추가한 금액) + 건설이자(건설자금차입계약에 따라 대주단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

방식이 1개이다.

투자비 기준으로 보면 BTO방식이 80.4조원, BTL방식이 31.2조원 순이다.

추진방식별로 평균투자금액을 비교하면 BTO방식의 평균 투자비가 3,494억원으로 BTL방식의 평균 투자비 651억원의 약 5배 수준이다.

<표 V-1> 추진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사업수	총투자비		평균투자비		
		비중	비중			
수익형	BTO	230	31.8%	803,624	68.2%	3,494
	BOO	7	1.0%	14,273	1.2%	2,039
	BOT	4	0.6%	6,580	0.6%	1,645
	BTO-a	2	0.3%	985	0.1%	493
	BTO-rs	1	0.1%	41,047	3.5%	41,047
	소계	244	33.7%	866,509	73.5%	3,551
임대형	BTL	480	66.3%	312,576	26.5%	651
합계		724	100.0%	1,179,085	100.0%	1,629

추진방식 및 발주 방식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현황을 보면, 수익형의 경우 사업 수와 총투자비 모두 민간제안사업의 비중이 높다.

<표 V-2> 추진방식 및 발주 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사업수	총투자비		평균투자비		
		비중	비중			
수익형	고시	109	44.7%	351,850	40.6%	3,228
	제안	135	55.3%	514,659	59.4%	3,812
	소계	244	100.0%	866,509	100.0%	3,551
임대형	고시	480		312,576		651
합계		724		1,179,085		1,629

## 2.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대상시설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사업 수는 교육사업(239개)과 환경사업(193개), 투자비는 도로사업(46.0조원)과 철도사업(28.5조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시설에 대한 교육사업은 239개 사업, 총투자비 10.4조 원으로, 사업 당 평균투자비는 434억원 수준이다. 도로사업은 67개 사업, 총투자비 46.0조원으로, 사업 당 평균투자비는 6,869억원 수준이다. 사업 당 평균투자비가 가장 큰 사업은 철도사업으로 1.6조원 수준이며, 2017년에 비해 평균투자비가 크게 증가하였다.

<표 V-3>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사업수	총투자비		평균투자비
		비중	비중	
교육	239	33.0%	103,705	434
환경	193	26.7%	143,588	744
국방	81	11.2%	61,160	755
도로	67	9.3%	460,203	6,869
문화관광	40	5.5%	17,498	437
주차장	28	3.9%	3,377	121
항만	17	2.3%	72,435	4,261
복지	15	2.1%	5,550	370
철도	18	2.5%	285,108	15,839
공항	14	1.9%	8,261	590
유통	6	0.8%	15,443	2,574
정보통신	5	0.7%	2,536	507
주택	1	0.1%	223	223
총합계	724	100.0%	1,179,085	1,629

주: 2018년 연차보고서에서는 도로와 주차장을 별도 시설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추진방식별로 대상시설을 구분하면 사업 수 기준으로 구분하면, BTO사업의 경우 환경사업(87개) 및 도로사업(67개)이 전체 BTO사업의 66.9%를 차지하고, BTL사업의 경우 교육사업(237개) 및 환경사업(104개)이 전체 BTL사업의 71.1%를 차지한다. BTO-a와 BTO-rs방식의 사업은 환경사업(2개)과 철도사업(1개)으로 추진하였다.



투자금액 기준으로 구분하면, 도로사업이 전체 BTO사업의 57.3% (46.0조원)를 차지하고, 교육사업(10.2조원)이 전체 BTL사업의 32.8%를 차지했다.

<표 V-4> 추진방식 및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사업수	총투자비		평균투자비		
		비중	비중			
BTO	환경	87	37.8%	67,721	8.4%	778
	도로	67	29.1%	460,203	57.3%	6,869
	주차장	28	12.2%	3,377	0.4%	121
	항만	17	7.4%	72,435	9.0%	4,261
	공항	14	6.1%	8,261	1.0%	590
	철도	12	5.2%	189,361	23.6%	15,780
	교육	2	0.9%	1,299	0.2%	650
	문화관광	2	0.9%	524	0.1%	262
	정보통신	1	0.4%	444	0.1%	444
	소계	230	100.0%	803,624	100.0%	3,494
BTO-a	환경	2	100.0%	985	100.0%	493
BTO-rs	철도	1	100.0%	41,047	100.0%	41,047
BOT	문화관광	3	75.0%	3,439	52.3%	1,146
	유통	1	25.0%	3,141	47.7%	3,141
	소계	4	100.0%	6,580	100.0%	1,645
BOO	유통	5	71.4%	12,302	86.2%	2,460
	문화관광	2	28.6%	1,971	13.8%	986
	소계	7	100.0%	14,273	100.0%	2,039
BTL	교육	237	49.4%	102,406	32.8%	432
	환경	104	21.7%	74,882	24.0%	720
	국방	81	16.9%	61,160	19.6%	755
	문화관광	33	6.9%	11,564	3.7%	350
	복지	15	3.1%	5,550	1.8%	370
	철도	5	1.0%	54,699	17.5%	10,940
	정보통신	4	0.8%	2,092	0.7%	523
	주택	1	0.2%	223	0.1%	223
	소계	480	100.0%	312,576	100.0%	651
합계	724		1,179,085		1,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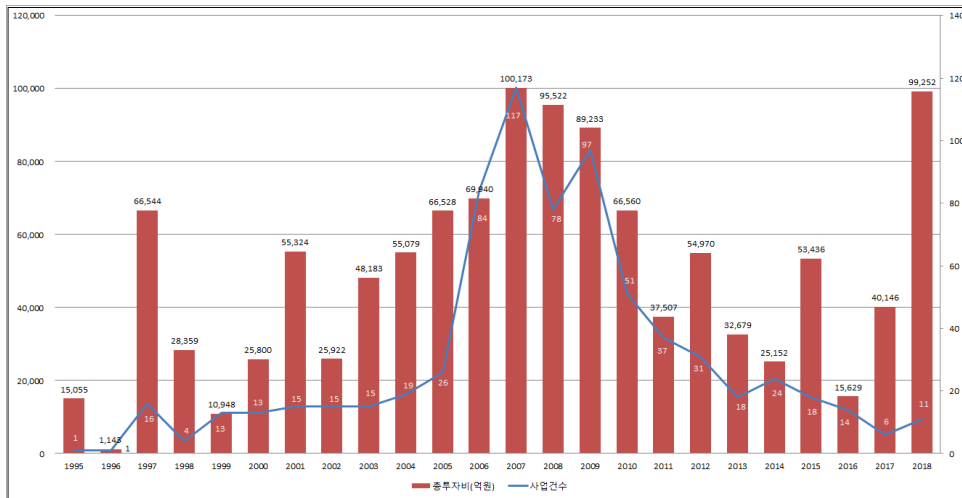
주: 비중은 추진방식별로 구분됨.

### 3. 연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994년 민간투자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사업 수와 투자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1999년 민간제안방식과 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도입된 이후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자금액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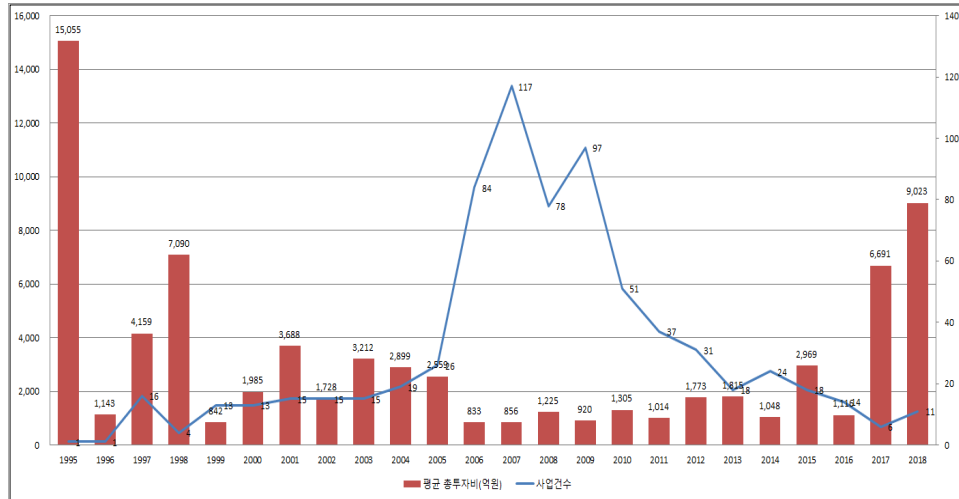
임대형 방식이 도입된 2005년 이후에 사업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2007년에 사업 수(117개)와 총투자금 규모(10조원)가 모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림 V-1] 연도별 사업 수 및 총투자비 추이



2000년 이후 민간제안방식 도입과 MRG 활용으로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2006년 이후에는 임대형 사업 도입의 영향으로 사업 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평균투자비 규모는 감소되었다. 2007년에는 사업건수 및 총투자비 규모가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이후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2015년에는 투자비 규모가 큰 철도 및 도로 사업(4건)이 실시협약이 체결되면서 사업건수에 비해 총투자비 규모가 커지게 되었다. 2017년에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은 6건이지만,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사업이 실시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총투자비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18년에는 실시협약 체결된 사업수가 2017년에 비해 증가했고, 신안산선 복선전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이 실시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총투자비 규모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V-2] 연도별 사업 수 및 평균투자비 추이



연도별로 추진방식을 비교하면, 다음 <표 V-5>와 같다. 수익형민자사업(BTO, BOT, BOO 등) 방식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한 실적은 약 86.7조원이며, 임대형민자사업(BTL)은 약 31.3조원에 이르고 있다. 만약 민간투자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민간이 투자한 금액 중 상당부분은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며, 재정부담의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의 편익이 그만큼 줄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lt;표 V-5&gt; 연도 및 추진 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건, 억원)

연 도	사업수	총 투자비	평균 투자비	수익형		임대형	
				사업 수	총투자비	사업 수	총투자비
1995	1	15,055	15,055	1	15,055	-	-
1996	1	1,143	1,143	1	1,143	-	-
1997	16	66,544	4,159	16	66,544	-	-
1998	4	28,359	7,090	4	28,359	-	-
1999	13	10,948	842	13	10,948	-	-
2000	13	25,800	1,985	13	25,800	-	-
2001	15	55,324	3,688	15	55,324	-	-
2002	15	25,922	1,728	15	25,922	-	-
2003	15	48,183	3,212	15	48,183	-	-
2004	19	55,079	2,899	19	55,079	-	-
2005	26	66,528	2,559	18	62,748	8	3,780
2006	84	69,940	833	12	39,441	72	30,500
2007	117	100,173	856	16	40,760	101	59,413
2008	78	95,522	1,225	15	66,366	63	29,156
2009	97	89,233	920	11	35,488	86	53,745
2010	51	66,560	1,305	4	20,335	47	46,224
2011	37	37,507	1,014	12	23,287	25	14,219
2012	31	54,970	1,773	8	38,819	23	16,151
2013	18	32,679	1,815	9	15,167	9	17,512
2014	24	25,152	1,048	8	13,840	16	11,312
2015	18	53,436	2,969	7	32,626	11	20,810
2016	14	15,629	1,116	4	10,550	10	5,079
2017	6	40,146	6,691	4	39,458	2	688
2018	11	99,252	9,023	4	95,266	7	3,986
합 계	724	1,179,085	1,629	244	866,509	480	312,576

주: 수익형민자사업에 BOT, BOO, BTO-a, BTO-rs 방식의 사업이 포함된 수치임.

연도별로 추진 주체를 비교하면, 임대형 사업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지자체에서 추진한 사업 수가 국가관리 및 국가관리지자체 사업보다 더 많은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총투자비 규모 측면에서는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6> 연도 및 추진 주체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건, 억원)

연도	사업수	총투자비	국가관리		국가관리지자체		지자체관리	
			사업수	총투자비	사업수	총투자비	사업수	총투자비
1995	1	15,055	1	15,055	-	-	-	-
1996	1	1,143	-	-	-	-	1	1,143
1997	16	66,544	13	60,748	1	3025	2	2,771
1998	4	28,359	1	26,310	1	1881.83	2	167
1999	13	10,948	4	7,661	-	-	9	3,288
2000	13	25,800	1	19,251	-	-	12	6,549
2001	15	55,324	4	48,255	-	-	11	7,069
2002	15	25,922	-	-	2	20621	13	5,301
2003	15	48,183	4	15,131	3	28611.07	8	4,441
2004	19	55,079	4	26,960	4	23150.04	11	4,969
2005	26	66,528	9	42,194	6	19226.09	11	5,107
2006	84	69,940	18	33,486	20	21718.73	46	14,735
2007	117	100,173	14	43,874	36	29939.28	67	26,360
2008	78	95,522	11	56,900	28	20657.1	39	17,965
2009	97	89,233	34	38,948	29	34573.35	34	15,712
2010	51	66,560	21	47,080	15	11772.47	15	7,707
2011	37	37,507	12	20,632	7	6539.14	18	10,336
2012	31	54,970	10	39,928	10	8629.73	11	6,412
2013	18	32,679	6	23,396	3	3128.09	9	6,154
2014	24	25,152	10	8,120	7	13996.22	7	3,036
2015	18	53,436	8	28,185	7	22963.74	3	2,287
2016	14	15,629	8	9,225	5	5745.96	1	658
2017	6	40,146	5	38,896	-	-	1	1,251
2018	11	99,252	7	75,232	1	15022.9	3	8,997
합계	724	1,179,085	205	725,470	185	291,202	334	162,413

연도별로 발주방식을 비교하면, 정부고시 수익형 민자사업은 2007년 이후로 급감하였으나, 민간제안사업은 급감하는 추세는 보이지 않아, 수익형의 경우 정부고시보다는 민간제안의 발주방식이 선호된 것을 볼 수 있다.

<표 V-7> 연도 및 발주 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건, 억원)

연 도	사업 수	총투자비	정부고시				민간제안 (수익형)	
			수익형		임대형		사업 수	총투자비
			사업 수	총투자비	사업 수	총투자비		
1995	1	15,055	1	15,055	-	-	-	-
1996	1	1,143	1	1,143	-	-	-	-
1997	16	66,544	16	66,544	-	-	-	-
1998	4	28,359	4	28,359	-	-	-	-
1999	13	10,948	12	10,598	-	-	1	350
2000	13	25,800	10	23,673	-	-	3	2,126
2001	15	55,324	10	51,127	-	-	5	4,198
2002	15	25,922	11	13,253	-	-	4	12,670
2003	15	48,183	6	26,331	-	-	9	21,852
2004	19	55,079	10	25,884	-	-	9	29,195
2005	26	66,528	5	17,719	8	3,780	13	45,029
2006	84	69,940	9	35,571	72	30,500	3	3,869
2007	117	100,173	5	912	101	59,413	11	39,848
2008	78	95,522	1	159	63	29,156	14	66,207
2009	97	89,233	-	-	86	53,745	11	35,488
2010	51	66,560	1	722	47	46,224	3	19,613
2011	37	37,507	-	-	25	14,219	12	23,287
2012	31	54,970	-	-	23	16,151	8	38,819
2013	18	32,679	2	1,228	9	17,512	7	13,939
2014	24	25,152	-	-	16	11,312	8	13,840
2015	18	53,436	1	564	11	20,810	6	32,061
2016	14	15,629	1	658	10	5,079	3	9,892
2017	6	40,146	2	985	2	688	2	38,473
2018	11	99,252	1	31,364	7	3,986	3	63,902
합 계	724	1,179,085	109	351,850	480	312,576	135	514,659

#### 4. 추진주체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추진주체별 민간투자사업의 현황을 비교하면, 사업수는 지자체 및 국가관리지자체사업(519개)이 국가관리사업(205개)에 비해 약 2.5배 수준이다. 그러나 총투자비 규모는 국가관리사업(72.5조원)이 국가관리지자체 및 지자체관리사업(45.4조원)보다 약 1.6배 크다. 국가관리사업의 평균투자비는 3,539억원이며, 국가관리지자체사업과 지자체사업의 평균투자비는 각각 1,574억원과 486억원이다.

<표 V-8> 추진주체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건, 억원)

추진주체	사업수	총투자비		평균투자비
		비중	비중	
국가관리	205	28.3%	61.5%	3,539
국가관리지자체	185	25.6%	24.7%	1,574
지자체관리	334	46.1%	13.8%	486
총합계	724	100.0%	100.0%	1,629

추진주체별 사업추진방식을 살펴보면, 국가관리사업과 국가관리지자체사업의 경우 사업 수는 BTL방식, 총투자비는 BTO방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지자체사업의 경우 사업 수와 투자금액 모두 BTL방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가관리사업 중 BTO방식<sup>11)</sup>의 사업수가 32.7%, 투자금액이 77.8%를 차지했다. 지자체관리사업 중 BTL방식의 사업수가 61.4%, 투자금액이 49.9%를 차지했다. 국가관리지자체사업 중 BTL방식의 사업수가 77.2%, 투자금액의 29.2%를 차지했다.

11) BTO-a와 BTO-rs 방식을 포함

&lt;표 V-9&gt; 추진주체 및 추진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건, 억원)

추진주체	사업방식	사업수		총투자비		평균투자비
			비중		비중	
국가관리	BTO	64	31.2%	522,734	72.1%	8,168
	BTO-a	2	1.0%	985	0.1%	493
	BTO-rs	1	0.5%	41,047	5.7%	41,047
	BOO	4	2.0%	11,159	1.5%	2,790
	BOT	1	0.5%	3,141	0.4%	3,141
	BTL	133	64.9%	146,405	20.2%	1,101
	소계	205	100.0%	725,470	100.0%	3,539
국가관리 지자체	BTO	43	22.8%	206,058	70.8%	4,792
	BTL	142	77.2%	85,144	29.2%	600
	소계	185	100.0%	291,202	100.0%	1,574
지자체관리	BTO	123	36.8%	74,832	46.1%	608
	BOO	3	0.9%	3,114	1.9%	1,038
	BOT	3	0.9%	3,439	2.1%	1,146
	BTL	205	61.4%	81,028	49.9%	395
	소계	334	100.0%	162,413	100.0%	486
합계		724		1,179,085		1,629

추진주체별 사업 수의 비중을 살펴보면 국가관리사업(205건)은 국방, 교육, 도로, 항만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관리지자체사업(185건)으로는 환경사업이 118건으로 가장 많고 지자체관리사업(334건)은 교육 사업이 196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투자금액으로 살펴보면 국가관리사업 중 도로사업이 31.8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관리지자체사업 중 환경사업이 10.5조원으로, 지자체사업 중에는 교육사업이 7.7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V-10> 추진주체 및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사업분야	사업 수	총투자비		평균 투자비	
			비중	비중		
국가 관리	국방	81	39.5%	61,160	8.4%	755
	교육	40	19.5%	25,443	3.5%	636
	도로	23	11.2%	317,703	43.8%	13,813
	항만	17	8.3%	72,435	10.0%	4,261
	공항	14	6.8%	8,261	1.1%	590
	철도	11	5.4%	216,014	29.8%	19,638
	유통	5	2.4%	14,300	2.0%	2,860
	환경	6	2.9%	4,335	0.6%	723
	복지	4	2.0%	2,038	0.3%	510
	문화관광	2	1.0%	1,657	0.2%	829
	정보통신	2	1.0%	2,124	0.3%	1,062
	소계	205	100.0%	725,470	100.0%	3,539
국가관리 지자체	환경	118	63.8%	104,659	35.9%	887
	문화관광	26	14.1%	7,146	2.5%	275
	도로	20	10.8%	105,415	36.2%	5,271
	복지	11	5.9%	3,511	1.2%	319
	철도	7	3.8%	69,093	23.7%	9,870
	교육	3	1.6%	1,377	0.5%	459
	소계	185	100.0%	291,202	100.0%	1,574
지자체관리	교육	196	58.7%	76,885	47.3%	392
	환경	69	20.7%	34,594	21.3%	501
	주차장	28	8.4%	3,377	2.1%	121
	도로	24	7.2%	37,085	22.8%	1,545
	문화관광	12	3.6%	8,695	5.4%	725
	정보통신	3	0.9%	412	0.3%	137
	유통	1	0.3%	1,143	0.7%	1,143
	주택	1	0.3%	223	0.1%	223
	소계	334	100.0%	162,413	100.0%	486
합계		724		1,179,085		1,629

## 5. 발주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발주방식별로 구분하면, 사업수와 총투자비 모두 정부고시사업의 비중이 높지만, 평균 투자비는 민간제안방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고시사업은 589개 사업으로 총투자비는 66.4조원의 규모이며, 사업당 평균투자비는 1,128억원으로 나타났다. 민간제안사업은 135개 사업으로 총투자비는 51.5조 원이며, 사업당 평균투자비는 3,812억원이다.

<표 V-11> 발주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사업수		총투자비		평균투자비
		비중		비중	
정부고시사업	589	81.4%	664,426	56.4%	1,128
수익형	109		351,850		3,228
임대형	480		312,576		651
민간제안사업	135	18.6%	514,659	43.6%	3,812
합계	724	100.0%	1,179,085	100.0%	1,629

발주방식을 시설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정부고시사업의 사업 수는 교육사업(239건), 환경사업(131건), 국방사업(81건), 문화관광사업(34건)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제안사업의 사업 수는 환경사업(62건), 도로사업(47건) 순으로 나타났다. 총투자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정부고시사업 중 철도사업이 17.0조원, 도로사업이 14.2조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제안사업은 도로사업이 31.8조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V-12> 발주방식 및 시설유형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건, 억원)

시설유형	정부 고시						민간제안	
			수익형		임대형			
	사업 수	총투자비	사업 수	총투자비	사업 수	총투자비	사업 수	총투자비
교육	239	103,705	2	1,299	237	102,406	-	-
환경	131	84,892	27	10,010	104	74,882	62	58,696
국방	81	61,160	-	-	81	61,160	-	-
문화관광	34	12,663	1	1,099	33	11,564	6	4,835
주차장	24	2,505	24	2,505	-	-	4	871
도로	20	142,316	20	142,316	-	-	47	317,886
복지	15	5,550	-	-	15	5,550	-	-
공항	13	7,759	13	7,759	-	-	1	502
항만	12	61,231	12	61,231	-	-	5	11,204
철도	11	169,977	6	115,278	5	54,699	7	115,130
유통	4	10,352	4	10,352	-	-	2	5,091
정보통신	4	2,092	-	-	4	2,092	1	444
주택	1	223	-	-	1	223	-	-
합 계	589	664,426	109	351,850	480	312,576	135	514,659

## 6. 추진단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추진단계별로 살펴보면 운영 중인 사업이 658개 사업으로 9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운영 종료된 사업이 12개 사업으로 1.7%를 차지하고 있다.

<표 V-13> 추진단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사업 수	총투자비		평균투자비
		비중	비중	
운영종료	12	1.66%	4,763	397
운영중	658	90.88%	878,552	1,335
시공중	45	6.22%	196,977	4,377
시공준비중	9	1.24%	98,793	10,977
합계	724	100.00%	1,179,085	1,629

추진단계 및 시설유형을 살펴보면 운영중인 사업 중 교육과 환경 분야의 사업이 각각 231건, 176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총투자비를 살펴보면 도로와 철도 분야가 각각 46.0조원과 28.5조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공 중인 사업수로는 도로와 환경분야가 각각 14건과 13건순으로 높았으며, 투자비 규모로는 도로와 철도 분야가 각각 9.8조원과 6.9조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으로 시공 준비 중인 사업은 총 9개이며, 총투자비 규모는 9.9조원으로 나타났다.

<표 V-14> 추진단계 및 시설유형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운영완료		운영 중		시공 중		시공 준비 중		전체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교육	-	-	231	99,065	6	3,961	2	680	239	103,705
환경	4	1,132	176	128,319	13	14,137	-	-	193	143,588
국방	-	-	75	56,275	4	3,493	2	1,392	81	61,160
도로	-	-	51	322,487	14	97,787	2	39,929	67	460,203
문화관광	-	-	40	17,498	-	-	-	-	40	17,498
주차장	3	143	23	2,495	1	17	1	722	28	3,377
항만	-	-	16	65,989	1	6,446	-	-	17	72,435
복지	-	-	14	4,943	1	607	-	-	15	5,550
철도	-	-	12	160,457	4	68,580	2	56,070	18	285,108
공항	4	3,043	10	5,217	-	-	-	-	14	8,261
유통	-	-	5	13,494	1	1,950	-	-	6	15,443
정보통신	1	444	4	2,092	-	-	-	-	5	2,536
주택	-	-	1	223	-	-	-	-	1	223
합계	12	4,763	658	878,552	45	196,977	9	98,793	724	1,179,085

수익형민자사업을 추진단계별로 살펴보면 운영 종료된 사업이 12건으로 0.5조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운영 중인 사업은 199건으로 60.8조원의 규모를 보였으며, 시공 중인 사업은 28건으로 15.7조원의 규모를 보였으며, 시공 준비 중인 사업은 5개 사업으로 9.7조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총투자비 규모로는 운영 중인 사업이 8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공 중인 사업이 11.5%, 시공 준비 중인 사업이 2.0%를

차지하고 있다.

<표 V-15> 수익형민자사업의 추진단계별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사업 수	총투자비		평균투자비
		비중	비중	
운영종료	12	4.92%	4,763	397
운영중	199	81.56%	608,054	3,056
시공중	28	11.48%	156,971	5,606
시공준비중	5	2.05%	96,721	19,344
합 계	244	100.00%	866,509	3,551

임대형 민자사업을 추진단계별로 살펴보면 운영 중인 사업이 459건으로 27.0조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시공 중인 사업은 17건으로 4.0조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고, 시공 준비 중인 사업은 4건으로 0.2조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총투자비 규모로는 운영 중인 사업이 86.6%, 시공 중인 사업이 12.8%, 시공 준비 중인 사업이 0.7%를 차지하고 있다.

<표 V-16> 임대형민자사업의 추진단계별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사업 수	총투자비		평균투자비
		비중	비중	
운영중	459	95.63%	270,499	589
시공중	17	3.54%	40,006	2,353
시공준비중	4	0.83%	2,071	518
합 계	480	100.00%	312,576	651

## 제2절 2018년도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실적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민간투자지원사업은 적격성조사 및 제안서검토, 타당성분석, 시설사업기본계획(안) 및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 사업계획 평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협약(안) 검토, 자문 등 기타 업무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까지 수행한 민간투자지원사업의 수행 실적은 다음 표와 같다.

<표 V-17>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단위: 건)

업무 유형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조사	적격성조사	-	-	-	-	-	4	1	12	10	25	5	3	5	1	2	-	1	4	12	
	제안서검토(BTO)	5	23	19	22	39	15	11	12	11	15	14	13	10	5	7	6	4	8	5	11
	제안서검토(BTL)																				2
	타당성분석(BTO)	-	-	-	-	-	-	-	-	-	-	-	-	-	-	1	2	2	-	2	-
	타당성분석(BTL)	4	8	10	-	4	4	-	-	-	-	68	17	14	20	15	12	11	6	8	12
	수요예측재조사	-	-	-	-	-	-	-	-	-	-	-	-	-	-	-	2	3	-	1	2
	적격성재조사	-	-	-	-	-	-	-	-	-	-	-	-	-	-	-	2	-	-	1	1
시설사업 기본계획(안),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 등	7	7	9	7	12	11	48	57	62	42	42	35	18	14	12	11	10	8	4	8	
사업계획 평가	1	2	8	7	-	7	16	8	17	5	1	7	4	2	-	-	1	1	1	-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3	32	23	25	29	20	6	8	6	8	4	4	3	3	-	4	-	2	1	-	
자문 등 기타							39	76	71	98	58	65	90	173	147	196	174	237	225	169	
실시협약(안)검토	3	5	3	2	2	7	2	41	78	80	72	45	25	20	13	16	16	11	9	7	
BTO	3	5	3	2	2	7	2	1	5	4	5	4	7	6	5	4	8	5	4	3	
BTL	-	-	-	-	-	-	-	40	73	76	67	41	18	14	8	12	8	6	5	4	
자금재조달 협상 및 사전검토	-	-	-	-	-	-	-	-	4	12	14	9	16	4	11	6	9	16	13	11	
사업시행조건 조정	-	-	-	-	-	-	-	-	-	-	-	-	-	2	-	2	4	6	-	3	
금융단기 (MRG 검토 등)	-	-	-	-	-	-	-	-	-	-	-	-	-	16	17	48	31	29	32	39	
분쟁조정검토	-	-	-	-	-	-	-	-	-	-	-	-	-	3	1	2	2	-	-	-	
관리이행계획 검토	-	-	-	-	-	-	-	-	-	-	-	-	-	-	-	-	-	-	1	1	
합 계	23	77	72	63	86	64	126	203	261	270	298	200	183	267	225	311	267	325	307	278	

주: 조사, 검토, 분석, 평가, 협상 등은 년도 말의 과제완료기준임.

## 1. 적격성조사(민간제안서 검토) 및 타당성분석

### 가. 적격성조사 및 민간제안서 검토(BTO)

2018년도 BTO 사업의 적격성조사 및 제안서 검토는 도로, 철도, 주차장, 환경, 상·하수도 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에 대해 적격성조사 12건, 제안서검토 11건으로 총 23건 수행하였다. 사업 추진방식별로는 BTO 사업이 10건, BTO-rs(투자위험분담형) 사업이 3건, BTO-a(손익공유형) 사업이 10건이었으며, 시설유형별로는 철도 3건, 도로(주차장 포함)이 10건, 환경 8건, 문화관광 2건이다.

<표 V-18> 2018년도 적격성조사 및 민간제안서 검토(BTO)

사업형태	연번	사업명	주무관청	추진방식	시설유형
적격성조사	1	위례선 트램	서울특별시	BTO-rs	철도
	2	승학터널	부산광역시	BTO	도로
	3	안산~인천 고속도로	국토교통부	BTO-a	도로
	4	백운산 터널	경기도	BTO-a	도로
	5	오산~용인 고속도로	국토교통부	BTO-a	도로
	6	계양~김포 고속도로	국토교통부	BTO-a	도로
	7	위례~신사선	서울특별시	BTO-rs	철도
	8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국토교통부	BTO-a	도로
	9	남부내륙 고속화철도	국토교통부	BTO-rs	철도
	10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국토교통부	BTO-a	도로
	11	서울 아레나	서울특별시	BTO	문화관광
	12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sup>주)</sup>	서울특별시	BTO	도로
제안서검토	1	여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대화	여주시	BTO	환경
	2	동대문 문화예술회관	동대문구	BTO	문화관광
	3	경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경산시	BTO-a	환경
	4	김포레코파크	김포시	BTO-a	환경
	5	천안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천안시	BTO-a	환경
	6	호림1공영주차장	대구광역시	BTO	주차장
	7	청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청주시	BTO	환경
	8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의정부시	BTO-a	환경
	9	주안 지하차도 및 지하주차장	인천광역시	BTO	주차장
	10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sup>주)</sup>	서산시	BTO	환경
	11	석수광역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자원화 <sup>주)</sup>	안양시	BTO	환경

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석수광역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자원화 사업은 사업제안자 및 주무관청의 요청에 의해 조사 도중 철회됨.

#### 나. 제안서검토(BTL)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은 과거에 ‘정부고시사업’으로만 추진할 수 있었지만, 2016년 3월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인해 민간부분의 사업제안도 허용된바 있다. 이에 따라 KDI PIMAC에서는 환경부문 BTL 사업 2건에 대해 제안서검토를 수행하였다.

<표 V-19> 2018년도 BTL 제안서검토 수행 실적

연번	사 업 명	주무관청	시설유형
1	여수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여수시	환경
2	부산형 물복지 맑은물 나눔센터조성 민간투자사업(BTL)	부산광역시	환경

#### 다. 타당성분석 검토(BTL)

2018년도 타당성 분석 검토(BTL)은 해양경찰청 청사, 하수관거,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국방부 관사, 국립대학교 기숙사, 의료원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총 12건 수행되었다. 주무관청은 해양경찰청(1건), 부산광역시(1건), 교육부(1건), 국방시설본부(3건), 경찰청(3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2건), 강원도(1건) 이다.

<표 V-20> 2018년도 BTL 타당성분석 검토 수행 실적

연번	사 업 명	주무관청	시설유형
1	해양경찰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해양경찰청	건축
2	'19년 부산광역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부산광역시	환경
3	강릉원주대학교 생활관 BTL사업 타당성분석 검토	교육부	건축
4	2019년 국방부 교육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검토	국방시설본부	건축
5	육군 방공학교 재조사	국방시설본부	건축
6	경찰청 경찰대학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타당성분석 검토	경찰청	건축
7	강원도삼척의료원 이전신축(BTL) 타당성분석 검토	강원도	건축
8	3차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타당성분석 검토	경찰청	건축
9	강릉경찰연수원 재건축(BTL) 타당성분석 검토	경찰청	건축
10	광주과학기술원(BTL) 타당성분석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축
11	대구경북과학기술원(BTL) 타당성분석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축
12	2018년 고시 육군 고성(18)병영 BTL 민자적격성조사 재검증	국방시설본부	건축



라. 수요예측 재조사 및 적격성재조사

2018년도에 KDI PIMAC에서 수행한 수요예측 재조사는 2건, 적격성재조사는 1건이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7조(수요예측의 재조사)에서는 관련 개발계획의 취소 및 변경으로 인해 수요예측 전제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재정사업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추진방식이 변경된 경우, 사업추진단계별 시행시기에 5년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적격성조사의 추정수요와 민간부문이 제시한 수요가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주무관청이 수요예측 재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포천~화도 고속도로 사업은 기본계획 제57조 제1항 제3호 ‘사업추진 단계별 시행시기에 5년 이상 차이가 있는 사업’에 해당하여 수요예측 재조사를 수행하였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8조(민자적격성 재조사)에서는 총사업비가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거나, 추정 수요량이 100분의 30이상 감소된 경우 등 사업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 민자적격성 재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화천·양구 관사 및 병영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총사업비가 100분의 20이상 증가’함에 따라 적격성 재조사를 수행하였다.

<표 V-21> 2018년도 수요예측재조사 수행 실적

연번	사 업 명	주무관청	조사수행사유
1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국토교통부	- 기본계획 제57조 제1항 각호 사유 중 제3호 ‘사업추진 단계별 시행시기에 5년 이상 차이가 있는 사업’에 해당
2	포천-화도 고속도로 수요예측 재조사	국토교통부	- 기본계획 제57조 제1항 각호 사유 중 제3호 ‘사업추진 단계별 시행시기에 5년 이상 차이가 있는 사업’에 해당

<표 V-22> 2018년도 적격성재조사 수행 실적

연번	사 업 명	주무관청	조사수행사유
1	2010년 고시 화천·양구 관사 및 병영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재)조사	국방시설본부	- 기본계획 제58조 제1항 사유 중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물량 등의 규모 증가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100분의 20이상 증가’에 해당

## 2. 2018년도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 가. 시설사업기본계획(BTL, BTO) 검토

2018년도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한 시설사업기본계획 검토는 총 4건이다. 검토한 사업의 유형은 경찰학교 무도훈련장, 병영시설, 철도 사업이다.

주요 검토 내용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방향에 부합하는지 등이다.

<표 V-23> 2018년도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수행 실적

연번	사 업 명	주무관청	추진방식
1	2차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검토	경찰청	BTL
2	2018년 국방부 병영시설(광명·파주)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검토	국방시설본부	BTL
3	2018년 국방부 병영시설(고양·양주)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검토	국방시설본부	BTL
4	육군 고성 병영시설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검토	국방시설본부	BTL

### 나. 제3자 제안공고(BTO) 검토

2018년도 BTO 방식의 제3자 공고(안) 검토는 4건을 수행하였다.

<표 V-24> 2018년도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 수행 실적

연번	사 업 명	주무관청	추진방식
1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BTO) 제3자제안공고안 검토	시흥시	BTO
2	천안시 하수처리장 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a)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	천안시	BTO-a
3	용인 에코타운 민간투자사업 제3자제안공고안 검토	용인시	BTO-a
4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제3자제안공고안 재검토	용인시	BTO-a

### 3. 2018년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약(안) 검토

#### 가. 실시협약(안) 검토(BTO)

2018년도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한 BTO 방식의 실시협약(안) 검토 및 변경실시협약(안) 검토는 “국가소유 폐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검토” 등 총 3건이다.

<표 V-25> 2018년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검토 수행 실적

연번	협약 검토	주무관청	추진방식
1	국가소유 폐수종말처리장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검토	환경부	BTO
2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검토	국토교통부	BTO
3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실시협약(안) 검토	국토교통부	BTO

#### 나. 실시협약(안) 검토(BTL)

2018년도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한 BTL 방식의 실시협약(안) 검토는 “육군 화천·양구 관사 및 병영시설 BTL사업 변경실시협약(안) 검토” 등 총 4건이다.

<표 V-26> 2018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검토 수행 실적

연번	협약 검토	주무관청
1	육군 화천·양구 관사 및 병영시설 BTL사업 변경실시협약(안) 검토	국방시설본부
2	중앙경찰학교 무도훈련장 증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검토	경찰청
3	육군 고성 병영시설 BTL사업 실시협약(안) 검토	국방시설본부
4	육군 간성 병영시설 BTL사업 실시협약(안) 검토	국방시설본부

### 4. 2018년도 관리이행계획 검토

2018년도에는 관리이행계획 검토 1건을 완료하였다.

&lt;표 V-27&gt; 2018년도 관리이행계획 검토 수행 실적

연번	관리이행계획 검토	주무관청
1	국방광대역통합망(BTL) 구축 관리이행계획 검토	국방부

### 5. 2018년도 자금재조달 및 사업시행조건 조정

2018년도에는 자금재조달과 관련하여 자금재조달 검토 11건, 사업시행조건 조정 방안 검토 3건, 그리고 금융재무 관련 단기검토 39건을 완료하였다.

&lt;표 V-28&gt; 2018년도 자금재조달 및 사업시행조건 조정 관련 업무 수행 실적

유형별	건수
자금재조달 사전검토	11
자금재조달 협상	-
사업 시행조건 조정	3
단기 검토(MRG 검토 등)	39

2018년에 완료된 자금재조달 검토 11건 중 BTO(Build-Transfer-Operate) 사업방식은 10건, BTL(Build-Transfer-Lease) 사업방식은 1건에 해당한다.

&lt;표 V-29&gt; 2018년도 자금재조달 검토 수행 실적

연번	과제명	사업방식	주무관청
1	수원-광명고속도로 자금재조달 사전검토	BTO	국토교통부
2	목포신외항다목적부두 1-1단계 자금재조달 검토	BTO	해양수산부
3	목포신외항다목적부두 1-2단계 자금재조달 검토	BTO	해양수산부
4	육군연천병영시설(BTL) 자금재조달 검토	BTL	국방시설본부
5	창원~부산간도로 자금재조달 검토	BTO	경상남도
6	산성터널 자금재조달 검토	BTO	부산광역시
7	봉담~송산 고속도로 자금재조달 검토	BTO	국토교통부
8	경주시하수도시설확충 자금재조달 검토	BTO	경주시
9	구리~포천 고속도로 자금재조달검토	BTO	국토교통부
10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자금재조달 검토	BTO	국토교통부
11	부산항신항 2-3단계 자금재조달 검토	BTO	해양수산부

2018년에는 BTO(Build-Tranfer-Operate) 사업방식에 대한 3건의 사업시행조건 조정 방안 검토를 완료하였다.

<표 V-30> 2018년도 사업시행조건 조정 방안 검토 수행 실적

연번	과제명	주무관청
1	서울외곽(일산~퇴계원)고속도로민자사업사업시행조건조정검토	국토교통부
2	포항영일만신항개발(1-1단계)사업시행조건조정검토	해양수산부
3	인천북항일반부두(3선석)사업시행조건조정검토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조건 조정 방안 검토를 통해 통행료 인하 또는 사업의 도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V-31> 2018년도 사업시행조건 조정 방안 검토 결과 요약

연번	과제명	사업 시행조건 조정 효과
1	서울외곽(일산~퇴계원) 고속도로 민자사업 사업시행조건 조정검토	통행료 인하
2	포항영일만신항개발(1-1단계) 사업 시행조건 조정검토	사업 도산 방지, 항만기능 유지, 운영 효율성 제고
3	인천북항일반부두(3선석) 사업 시행조건 조정검토	사업 도산 방지, 항만기능 유지, 운영 효율성 제고

2018년에 완료된 금융재무 관련 단기검토 39건 중 31건은 수익형 민자사업(BTO)에 해당되며, 8건은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해당된다.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 변경실시협약안 검토, MRG 검토, 자금재조달 여부 검토, 최초사용료 검토 및 기타 질의 등 다양한 유형의 검토가 수행되었다. 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 정부지급금 재산정 검토, 수익률 조정에 따른 재무모델 검토 및 기타 질의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검토가 수행되었다.

&lt;표 V-32&gt; 2018년도 금융재무 관련 단기검토 수행 실적

연번	과제명	사업방식	주무관청
1	구미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자금재조달 해당 여부 검토 의뢰	BTO	구미시
2	안양-성남 고속도로 자금재조달 추가검토	BTO	국토교통부
3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관련 업무지원	BTO	순천시
4	경전선 BTL사업 정부지급금 재산정 보고서 검토	BTL	국토교통부
5	신문당선 연장(정자~광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변경(인) 검토	BTO	국토교통부
6	수원-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자금재조달 관련 추가 검토	BTO	국토교통부
7	2017년도 목포신외항(1-1) MRG검토	BTO	해양수산부
8	2017년도 목포신외항(1-2) MRG검토	BTO	해양수산부
9	2017년도 울산신항개발(1-1단계) MRG 검토	BTO	해양수산부
10	육군 김화관사 자금재조달 검토결과 질의	BTL	국방부
11	2017년 인천국제공항도로 MRG검토의뢰	BTO	국토교통부
12	2017년 인천대교 MRG검토의뢰	BTO	국토교통부
13	2017년 천안-논산 고속도로 MRG검토의뢰	BTO	국토교통부
14	2017년 대구-부산 고속도로 MRG검토의뢰	BTO	국토교통부
15	2017년 서울외곽 고속도로 MRG검토의뢰	BTO	국토교통부
16	2017년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MRG검토의뢰	BTO	국토교통부
17	2017년 부산-울산 고속도로 MRG검토의뢰	BTO	국토교통부
18	2017년 서울-춘천 고속도로 MRG검토의뢰	BTO	국토교통부
19	2017년 평택당진항 내항동부두 MRG 검토	BTO	해양수산부
20	소사-원시 복선전철 최초 정부지급금 산정 보고서 검토의뢰	BTL	국토교통부
21	인천북항 다목적부두(2-1) 2017년도 운영수입보장금 검토	BTO	해양수산부
22	군장항 잡화부두 민간투자사업 자금재조달에 따른 변경실시협약 검토	BTO	해양수산부
23	민자고속도로 자금재조달 여건 발생여부 검토(대구부산고속도로)	BTO	국토교통부
24	민자고속도로 자금재조달 여건 발생여부 검토 (서수원평택고속도로)	BTO	국토교통부
25	민자고속도로 자금재조달 여건 발생여부 검토(광주원주고속도로)	BTO	국토교통부
26	포항시 생활폐기물에너지화 사업 자금재조달 해당여부 질의	BTO	포항시
27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사용료(경상가격) 산정관련 질의	BTO	순천시
28	국립청소년수련원(영덕김제) 건립 임대형민자사업 재무모델 적정성 검토	BTL	여성가족부

<표 V-32>의 계속

연번	과제명	사업방식	주무관청
29	소사원시 복선전철 운영개시에 따른 정부지급금 산정 검토	BTL	국토교통부
30	2017년도분 경기도 민자도로 재정지원액 검토 의뢰(일산대교)	BTO	경기도
31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BTL 재무모델 변경에 따른 검토의뢰	BTL	강남구
32	용인시 하수처리 민간투자사업(BTO) 부가세 과세 관련 자문 의뢰	BTO	용인시
33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자문 의뢰	BTO	부산시
34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민간투자사업 MRG 환급요청에 따른 검토요청	BTO	해양수산부
35	원주시 폐기물종합처리단지 자금재조달 관련 질의	BTO	원주시
36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 자기자본비율 관련 질의	BTO	순천시
37	파주시 교하도서관 지표금리 변경에 따른 임대료조정 재무모델 검토	BTL	파주시
38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임대료 재산정 검토	BTL	의성군
39	팔용터널 총투자비 관련 질의	BTO	창원시

## 6. 기타 검토 및 질의답변

2018년도에 기타 검토 및 질의답변 업무는 총 169건을 수행하였다. 민자제도 및 법률 관련 공문 질의답변은 25건, 기획재정부 요청 질의 답변은 8건, 홈페이지 질의(Q&A)는 144건을 수행하였다.

<표 V-33> 2018년도 기타검토 및 질의답변 업무

구분	건수
민자제도 및 법률 관련 공문 질의답변	25
기재부 요청 질의 답변	8
홈페이지 Q&A	144
계	169건

## 제 VI 장

#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 제1절 도입배경과 추진근거

#### 1.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공공기관은 정부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직접적인 집행업무와 간접적인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민생활 및 후생에 필수적인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정부의 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은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운법 제4조 제1항 각호 요건에 해당되어 2018년 1월 기준 338개 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정부는 공익성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공공기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체계 및 제도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주도하고 있으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문제가 주요 사회문제<sup>12)</sup>로 대두되면서 국회는 물론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제3의 기관에 의한 사전 타당성조사 제도 및 감독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설립목적에 관계없이 기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사업 참여가 가능함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유발됨을 지적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사전

12) 국회예산정책처(2010)에서는 공공기관의 부채 중 금융부채 증가율이 현저히 높음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추어 국회 차원의 관리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검증체계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감사원에서도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기관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대하여 재무구조 악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민간업체와의 과다 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을 훼손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리스크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자, 기획재정부는 2010년 5월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업타당성 검토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조치로서, 2011년 1월 공운법 제50조(경영지침)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기획재정부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즉, 종전에는 공공기관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자본출자에 한하여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나, 더 이상 자체 타당성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외부전문기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토록 제도를 변경함으로써 공공기관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2016년 3월 22일 공운법 제40조(예산의 편성) 제3항을 신설<sup>13)</sup>하여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이에 법률에서 제시되는 면제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은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더불어 종전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시행계획’에서는 대상 사업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 자본출자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제시되었으나, 2016년 3월 22일 신설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운법 시행령’)」 제25조의3(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사업 대상 규모를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며,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9월 28일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외 전문가가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외부 위탁과제(Outsourcing)가 추진될 수 있

13) 2016년 9월 23일 시행

도록 하였으며, 기존에 유사한 예비타당성조사 선행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사기간을 2개월까지 단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공공성 평가 중 정책적 타당성에 일자리 창출효과를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비용-편익(B/C) 분석 및 수익성 지수(PI) 분석 시 현재가치 산정을 위한 사회적 할인율 및 재무적 할인율을 5.5%에서 4.5%로 변경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획재정부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신속 추진, 사회적 가치 반영 확대, 운영상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2018년 12월 27일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개정하였다. 개정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공공기관 예타는 원칙적으로 연 2회(매년 1, 6월 말) 신청이 가능했으나, 연 3회(매년 1, 5, 9월 말)로 연간 예타신청 횟수를 확대하였다. 이는 신청기간의 제한으로 인해 공공기관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사업을 신청하는 등 조사기간이 지연되었던 점을 고려하였다. 둘째, 간이에타를 강화하였다. 해외 입찰형 사업, 선행 조사 사례가 있는 사업 등에 한하여 간이에타를 진행하였으나, 간이에타에 대한 별도의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선행 조사사례를 그대로 준용하는 방식으로 조사기간을 단축하는데 활용되었을 뿐, 그 외에 일반적인 예타 대상사업과 차이가 없었다. 개정된 운용지침에서는 간이에타 대상사업을 공공청사의 신·증축, 국제적인 환경규제 준수를 위한 사업 등 공공성이 현저하게 높고 수익성 검토 필요성이 낮은 사업으로 재정의하고 수익성 등의 분석을 생략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사회적 기여도’ 평가 항목을 신설하였다. 이전에는 전량화가 가능한 일부 사회적 가치 항목에 대하여 경제성 평가에서 부분 반영하였다. 사회적 기여도 평가항목의 신설을 통해 정량화가 불가한 사회적 가치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게 되었다.

<표 VI-1>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 경위

일 자	추진 경위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에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 실시</li> <li>- 공공기관 자체 수행</li> </ul>
201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의 사업타당성 검토 강화 방안 보고</li> <li>- 재정전략회의</li> </ul>
201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 타당성검증 강화 내용 포함</li> <li>-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li> <li>- 예산편성지침 심의의결</li> </ul>

<표 VI-1>의 계속

일 자	추진 경위
201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지정 전문기관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등 마련</li> <li>-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조치</li> </ul>
201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의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강화</li> <li>- 대통령 업무보고</li> </ul>
201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시행계획’</li> </ul>
201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내실화 방안 발표</li> </ul>
2013.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시행계획’ 개정</li> </ul>
2016.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16. 9. 23. 시행)</li> <li>- 예비타당성조사의 법률적 근거 강화</li> <li>-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유 강화</li> </ul>
2016.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16. 9. 23. 시행)</li> <li>- 예타대상: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기관투자비 500억원 이상 신규투자 및 자본출자사업</li> </ul>
201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정(16. 11. 07 시행)</li> <li>-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유, 면제절차 및 타당성재조사 명시</li> </ul>
2017.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17. 09. 28 시행)</li> <li>- 제도개선사항: 유사사업 간이 예타, 예타 절차 신속화, 조사기관 다원화 추진, 유형별 사회적 편익 확대, 일자리 창출효과 반영, 할인을 변경, 정책성 평가 강화</li> </ul>
2018.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19. 01. 01 시행)</li> <li>- 제도개선사항: 연간 예타신청 횟수 확대, 간이예타 강화, ‘사회적 기여도’ 평가 등 추가</li> </ul>

## 2. 추진 근거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공운법 제40조(예산의 편성) 및 동법시행령 제 25조의3(예비타당성조사)에 근거하고 있다. 공운법 제40조 제3항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면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예산의 편성)**

- ③ 기관장은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3.22.] [시행 2016.9.23.]
  - 1.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중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3.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율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
  -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정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 5.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 6.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 7.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가. 사업 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예비타당성조사)**

-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법 제40조제3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일 것
  - 2.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일 것
-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개요·필요성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기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가 법 제4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임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명칭, 개요, 필요성 및 면제 사유 등을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장은 법 제40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해당 사업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임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법 제4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확인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9.22]

## 제2절 대상사업 및 수행체계

### 1. 대상사업의 선정 및 면제 기준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기관 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다만, 2016년 9월 23일 신설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운법 시행령’)」 제25조의3(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며,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정되었다. 총사업비라 함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공공기관 부담분 및 민간 부담분 등을 포함한다. 사업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5년간의 사업비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자문회의를 통해 결정되며,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자문회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 이외에도 면제기준 및 평가방식 변경,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지정 및 기타 효율적 제도운영과 발전을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등을 자문한다.<sup>14)</sup>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기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항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 ①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중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③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율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
-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

14) 본 절은 기획재정부(2013),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시행계획」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2017.9)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구 지원, 시설 안정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 ⑤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 ⑥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 ⑦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가. 사업 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 2.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 가. 대상사업의 선정절차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항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사업규모의 적정성 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각 공공기관의 장은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 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sup>15)</sup>인 신규 투자사업, 자본출자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의 사업계획서<sup>16)</sup>를 사업시행 전년도 1월 말, 5월 말 또는 9월 말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이 시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나.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절차

각 공공기관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15) 본 사항은 2017년 9월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의한 내용이며, 2016년 법령 개정 이전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 자본출자에 해당하는 사업이었다.

16)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계획서 제출양식은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2019)’의 [별표]에 따른다.

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의뢰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사업시행년도는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처음으로 투입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 여부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으로 결정되고 그 승인으로 제3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신청하는 연도를 사업시행 연도로 본다.

### 3.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6조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조사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한 회의를 주관하며, 필요시 조사를 의뢰한 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독기관인 주무부처 및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착수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 조사의 난이도 등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 혹은 단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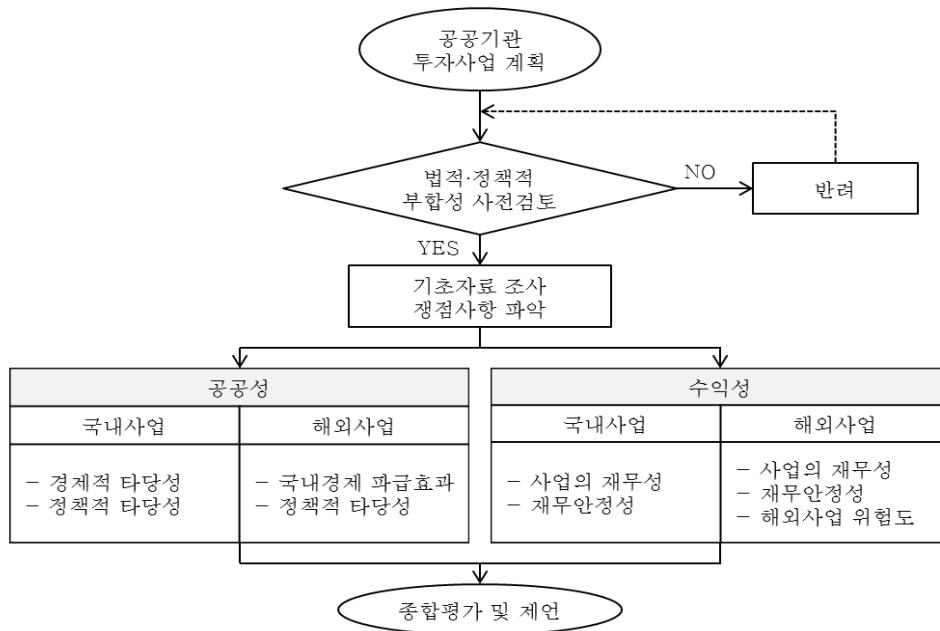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조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조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사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경우 그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해당 사업의 조사를 의뢰한 기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제3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내용

#### 1. 조사의 수행절차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절차는 다음 [그림 VI-1]과 같으며, 공공성과 수익성 두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하여 평가<sup>17)</sup>하며, 다음 <표 VI-3>과 같다.

[그림 VI-1]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흐름도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개정판)』, 2018.

17) 본 절은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2019)」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 2.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 가. 국내사업의 평가 방법

공공성 평가 방법은 기존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 틀을 유지하여 경제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을 평가한다.

경제적 타당성 평가는 해당 사업의 비용과 사업으로부터의 편익을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편익/비용(B/C) 비율을 제시한다.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위해서 사업 시행에 따른 수요를 추정하여 편익을 산정하고, 총사업비와 해당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합하여 비용을 산정한다.

정책적 타당성 평가는 ‘필수 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으로 구분하되, 평가항목들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필수 평가항목은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합치성’, ‘국가정책 및 상위·관련계획과의 일치성’, ‘주무부처 등 이해 당사자의 사업추진의지’, ‘사업의 준비정도’, ‘환경성 검토’, ‘지역경제발전효과’, ‘지역낙후도’, ‘고용유발효과’, ‘고용의 질 개선효과’, ‘사회적 기여도’ 등이며, 선택 평가항목은 경제성과 수익성 평가에서 정량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개별 조사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고려한다.

수익성 평가 방법은 재무성 평가와 재무안정성 평가로 구분한다. 재무성 평가는 사업의 투자안에 대한 수익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투자비 대비 운영수입의 현금흐름을 분석하며, 수익성지수법을 활용한다. 재무안정성 평가는 공공기관의 재무상태, 투자비 재원조달 가능성, 운영기간 중 추가재원조달 위험 등 재원조달 가능성 및 사업 추진 시 사업수행기관의 재무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한다.

종합평가는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법(AHP)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한다.

### 나. 해외사업의 평가 방법

해외사업의 평가도 국내사업과 마찬가지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AHP 수행)한다. 단, 국내사업의 평가에서 실시하는 경제성 평가는 별도로 수행하지 않으며, 공공성은 정책성과 국내경제 파급효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국내경제 파급효과’에서는 기관의 사업 수행이 국가 전체의 수출

또는 자원 확보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창출 효과를 토대로 ‘수출과급/자원확보 효과’를 평가하고, 기관의 고유목적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등을 파악하여 ‘기관경쟁력 제고효과’를 평가한다. 수익성은 사업의 재무성, 재무안정성과 더불어 해외사업 위험도를 평가한다. 특히, ‘해외사업의 위험도’ 평가는 해외사업 추진 시 해당 국가 및 사업이 가지는 위험도를 평가한다.

#### 다. 평가 가중치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국내사업과 해외사업의 평가부문 1계층 가중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 2019)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국내사업의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원칙적으로 공공성 70%, 수익성 30%를 적용하되,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해외사업은 원칙적으로 공공성 30%, 수익성 70%를 적용하되, 역시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표 VI-2> 공공성과 수익성의 평가 가중치

구분	평가 가중치
국내사업	공공성 70%, 수익성 30%
해외사업	공공성 30%, 수익성 70%

자료: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2019.1.

## 제4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 1. 2011~2018년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018년 12월 말 현재까지 공공기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여부를 검토 요청한 사업은 총 529개 사업이며 이 가운데 176개 사업이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공공기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시행한 후 연평균 약 66개 사업을 검토하여 매년 약 22개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였다. 공공기관의 대상여부에 대한 검토요청 사업 수는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예타 대상 사업 수는 매년 20여건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에는 35건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33개 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표 VI-3>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청 및 선정 현황

(단위: 건수)

'11~'15년			'16년			'17년			'18년			누적 합계		
요청	선정	(%)	요청	선정	(%)	요청	선정	(%)	요청	선정	(%)	요청	선정	(%)
409	90	22.0	48	25	52.1	37	28	75.7	35	33	94.3	529	176	33.3

- 주: 1) 2015년 상반기 규모의 적정성조사 2건은 제외  
 2) 자체의뢰 2건 포함  
 3) 수시 예타 포함  
 4) 기타공공기관 1건 제외  
 5) 조건부 면제 사업 3건 제외

예비타당성조사 조사대상 176개 사업을 소관 공공기관별로 구분할 경우, 발전 5개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관련 사업이 각각 55개, 27개, 24개로 가장 많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이 주로 에너지 관련 사업 및 단지조성 사업이기 때문이다. 2018년에도 발전 5개사 14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6개, 한국전력공사 사업 6개로 에너지 관련 사업 및 단지조성 사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선정되었다. 그리고 부문별로는 <표 V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전 및 설비부문이 22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VI-4> 공공기관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현황

(단위: 건수)

공공기관	2011~2015	2016	2017	2018	계
한국토지주택공사	16	1	4	6	27
한국전력 관련 <sup>2)</sup> 발전 5개사 별도	8	7	3	6	24
발전 5개사	24	4	13	14	55
항만공사 <sup>3)</sup>	9	0	0	1	10
공항/수자원공사	8	4	1	0	13
한국농어촌공사	7	0	0	0	7
한국자산관리공사	4	2	2	1	9
한국지역난방공사	4	1	1	1	7
기 타	10	6	4	4	24
합 계	90	25	28	33	176

주: 1) 대상사업 선정 시기 기준  
 2)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수력원자력  
 3) 부산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울산항만공사 포함

<표 VI-5> 부문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현황

(단위: 건수)

연도	발전 및 설비	산단	택지 및 부지개발	항만	건축	자원 개발	기타	계
2011	3	2	3	2	-	-	6	16
2012	11	-	-	1	3	-	2	17
2013	8	3	2	5	2	-	3	23
2014	4	6	2	1	1	-	-	14
2015	5	8	2	3	-	1	1	20
2016	10	2	1	0	3	1	8	25
2017	17	4	2	0	4	0	1	28
2018	22	1	4	0	4	0	2	33
총합계	80	26	16	12	17	2	23	176

주: 대상사업 선정 시기 기준

<표 VI-6>에서 볼 수 있듯이 총 176개 사업 중 2018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출판이 완료된 사업은 116건이며 이중 ‘타당성 있음’으로 결론이 도출된 사업은 82건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통해 176개 예타 선정사업 중 71개 사업(타당성 미확보 34, 사업철회 37)의 사업추진을 억제, 약 51조원의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달리 대상사업 선정 이후에 조사를 포기하

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을 볼 수 있다. 타당성 확보 비율을 살펴보면 조사를 완료한 116건 기준으로 볼 때 70.7%이며, 조사철회 및 사업포기를 포함할 경우 53.6%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VI-6>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18. 12월 말 기준, 단위: 건, 억원)

의뢰연도	계		조사 현황							
			타당성 있음		타당성 없음		사업 철회		조사 중	
	사업수	총사업비	사업수	총사업비	사업수	총사업비	사업수	총사업비	사업수	총사업비
합계	176	2,068,666	82	780,704	34	292,065	37	217,450	23	778,446
2011	16	52,550	11	41,496	4	9,012	1	2,042	-	-
2012	17	133,514	5	35,150	3	36,218	9	62,146	-	-
2013	23	164,482	12	76,499	6	40,393	5	47,590	-	-
2014	14	27,037	8	19,759	3	3,819	3	3,459	-	-
2015	20	102,206	11	53,545	4	40,397	2	5,559	3	2,705
2016	25	267,758	15	235,432	7	23,726	3	8600	0	0
2017	28	179,585	14	90,413	6	23565	7	47,566	1	18,041
2018	33	1,028,743	4	226,713	1	1,766	6	39,859	22	760,405

주: 대상사업 선정 시기 기준

출판연도 기준으로 총 116건의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매년 평균 14.5건의 조사가 완료되어 출판되고 있다. 부문별로는 발전 및 설비 사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VI-7>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 현황

(단위: 건)

출판 연도	발전 및 설비	산단	택지 및 부지개발	항만	건축	자원개발	기타	계
2011	2	2	1	2	-	-	6	13
2012	3	-	1	-	2	-	1	7
2013	4	2	-	4	1	-	-	11
2014	4	-	-	1	2	-	1	8
2015	4	3	3	1	-	-	-	11
2016	7	4	1	2	-	2	1	17
2017	10	5	1	1	3	-	6	26
2018	13	4	1	-	3	-	2	23
합계	47	20	8	11	11	2	17	116

주: 1) 2018년 12월말까지 조사 완료된 사업을 기준으로 함.  
 2) 기타부문에는 연수타운, 특구개발사업, 수자원 등을 포함

2011~2018년 동안 수행한 국내 사업에 대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 비율은 약 54.64%로 나타났다.

<표 VI-8> 2011~2018년 경제성 분석 결과(국내사업)

(단위: 건)

	발전 및 설비	산업단지	택지 및 부지개발	항만	건축	기타	계
사업 건수	31	20	8	11	11	16	97
B/C≥1	건수	18	12	2	9	4	53
	비율	58.06%	60.00%	25.00%	81.82%	36.36%	50.00%

주: 1) 2018년 12월말까지 조사 완료된 사업 기준이며,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해외사업은 제외된 수치임.  
 2) 시나리오 사업의 경우 가장 긍정적인 결과값에 기준하여 작성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재무적 타당성 확보 비율은 약 53.45%로 나타났다.

<표 VI-9> 2011~2018년 부문별·연도별 수익성 분석 결과

(단위: 건)

		발전 및 설비	산업단지	택지 및 부지개발	항만	자원개발	건축	기타	계
사업건수		47	20	8	11	2	11	17	116
PI≥1	건수	34	7	5	5	0	6	5	62
	비율	72.34%	35.00%	62.50%	45.45%	-	54.55%	29.41%	53.45%

주: 1) 2018년 12월말까지 조사 완료된 사업을 기준으로 함.  
 2) 시나리오 사업의 경우 가장 긍정적인 결과값에 기준하여 작성함.

앞서 조사된 공공성과 수익성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타당성 확보 비율은 약 70.69%로 나타났다. 다만, 사업 중단 또는 포기 사업을 포함할 경우에 타당성 확보 비율은 53.59%로 낮아진다.

<표 VI-10> 2011~2018년 부문별·연도별 타당성 종합 분석 결과

(단위: %, 건)

		발전 및 설비	산업단지	택지 및 부지개발	항만	자원개발	건축	기타	계
사업건수		47	20	8	11	2	11	17	116
AHP ≥0.5	건수	34	15	7	8	1	6	11	82
	비율	72.34%	75.00%	87.50%	72.73%	50.00%	54.55%	64.71%	70.69%

주: 1) 2018년 12월말까지 조사 완료된 사업을 기준으로 함.  
 2) 시나리오 사업의 경우 가장 긍정적인 결과값에 기준하여 작성함.

## 2. 2018년도 수행 실적

2018년에 완료한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총 23건으로 사업명과 의뢰기관은 <표 VI-11>와 같다.

&lt;표 VI-11&gt; 2018년도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연번	사업명	기관명
1	울산도시첨단 산업단지	한국토지주택공사
2	대전OO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3	당진화력 1-8호기 저탄장 옥내화 사업	한국동서발전
4	보령화력 4-6호기 성능개선 사업	한국중부발전
5	삼천포 5,6호기 환경설비 개선사업	한국남동발전
6	파키스탄 Asrit-Kedam 수력발전사업	한국남동발전
7	오송 화장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8	북평ICI(동해단봉)지구 개발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9	원전본부별 소내비상대응 거점(복합재난대응센터) 신축	한국수력원자력
10	고속철도차량 추가구입	한국철도공사
11	중구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유재산 위탁사업	한국자산관리공사
12	보령화력 기존 저탄장 옥내화 사업	한국중부발전
13	KTX광주송정역 융복합 지역개발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14	김포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한국서부발전
15	태안 3,4호기 성능개선 사업	한국서부발전
16	청주 집단에너지사업	한국지역난방공사
17	본사 사옥 이전사업(분양)	한국남부발전
18	당진화력 1-4호기 성능개선사업	한국동서발전
19	LNG 캐나다	한국가스공사
20	대호호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한국동서발전
21	고흥호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한국남동발전
22	미국 Niles 복합발전사업	한국남부발전
23	당진화력 1-4호기 환경설비 성능개선 사업	한국동서발전

주: 1) 2018년 12월말까지 조사 완료된 사업을 기준으로 함.  
 2) 철회 사업 제외



## 제Ⅶ장

# 정책연구 및 정책서비스 수행 실적

### 제1절 정책연구의 개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의 효율화와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투자 평가사업, 민간투자사업,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지침 및 일반연구 과제를 발굴하여 수행하고 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수행 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VII-1> 지침 및 연구과제 수행 실적

(단위: 건)

구분	재정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공공기관 예타			조세특례 예타			합 계		
	지 침	연 구	소 계	지 침	연 구	소 계	지 침	연 구	소 계	지 침	연 구	소 계	지 침	연 구	계
1999	3	1	4										3	1	4
2000	6	6	12										6	6	12
2001	6	6	12										6	6	12
2003	1		1										1		1
2004	5	4	9										5	4	9
2005															0
2006				4	17	21							4	17	21
2007		1	1	2	7	9							2	8	10
2008	4		4		11	11							4	11	15
2009		1	1	1	7	8							1	8	9
2010				1	6	7	1		1				2	6	8
2011		4	4	2	2	4							2	6	8
2012	3	2	5		2	2							3	4	7

&lt;표 VII-1&gt; 의 계속

구분	재정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공공기관 예타			조세특례 예타			합 계		
	지 침	연 구	소 계	지 침	연 구	소 계	지 침	연 구	소 계	지 침	연 구	소 계	지 침	연 구	계
2013	5	4	9	3	8	11	2	1	3				10	13	23
2014				1	8	9		3	3				1	11	12
2015	2	1	3		6	6							2	7	9
2016	2	3	5	1	2	3		2	2	1	1	2	4	8	12
2017	2	5	7	2	6	8		1	1				4	12	16
2018	-	2	2	2	12	14	2	3	5	-	-	-	3	18	21
총계	39	40	79	19	94	113	5	10	15	1	1	2	63	146	209

주: 1) 각 년도 말의 과제종료일 기준임.

2) 재정사업심층평가 사업과 관련된 연구과제는 총 4건이며, 2013년 이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지 않음.

## 1. 지침 연구

지침 연구는 재정투자평가사업(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사업부문별 표준지침, 민간투자사업 지원을 위한 지침·요령 등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규정하는 지침의 제정·개정 연구를 일컫는다.

지침 및 세부요령 연구의 목록은 다음 <표 VII-2> ~ <표 VII-6>과 같다.

&lt;표 VII-2&gt; 재정투자평가사업 지침 목록

지침	개정	개정 연도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제1판)	1999
	(제2판)	2000
	(제3판)	2001
	(제4판)	2004
	(제5판)	2008
	(제6판)	2016

<표 VII-2>의 계속

지침	개정	개정 연도
도로·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제1판)	1999
	(제2판)	2000
	(제3판)	2001
	(제4판)	2004
	(제5판)	2008
	(제5-1판)	2013
	(제6판)	2017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제1판)	1999
	(제2판)	2001
	(제3판)	2003
	(제4판)	2008
	(제5판)	2017
항만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제1판)	2000
	(제2판)	2001
	(제3판)	2013
공항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제1판)	2000
	(제2판)	2001
	(제3판)	2013
보건복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방법 연구	(제1판)	2004
의료시설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제1판)	2012
정보화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표준지침 연구	(제1판)	2004
	(제2판)	2013
타당성재검증 표준지침 연구 (타당성재조사 표준지침 연구)	(제1판)	2004
	(제2판)	2012
연구개발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제1판)	2008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분석지침 개선 연구	-	2012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시범사업평가 표준지침 연구 (기타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	(제1판)	2009
	(제2판)	2013
산업단지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제1판)	2015
문화관광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제1판)	2015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	2016

&lt;표 VII-3&gt; 수익형 민자사업(BTO) 관련 지침 및 공통 지침 목록

지침	개정 연월
BTO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 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2005. 12.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세부요령	2009. 06.
BTO 민간제안사업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수행 및 우대점수 산정을 위한 세부요령	2007. 01.
수익형(BTO)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연구	2010. 06.
환경분야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지침 연구 (환경분야 편익산정방안에 관한 연구)	2007. 12.
	2011. 08
	수정 중
항만부문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연구	2013. 08
혼합방식(BTO+BTL)의 타당성분석 세부요령 연구	2013. 04.
Rehabilitation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세부요령 연구	2013. 02.
수익형 민자사업(BTO) 표준실시협약(안) - 도로사업-	2007. 02.
	2007. 10.
	2008. 05.
	2009. 08.
	2010. 04.
수익형 민자사업(BTO) 표준실시협약(안) - 환경사업-	2008. 06.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 도로부문-	2007. 03.
	2010. 04.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	2007. 12.
	2014. 08.
경쟁적 협의 절차에 관한 세부요령	2017. 03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관한 세부요령 작성 연구	2017. 05
성과요구수준서 표준안 작성 연구 - 하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을 중심으로 -	수정 중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및 제안서 검토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	수정 중

<표 VII-4> 임대형 민자사업(BTL) 관련 지침 목록

지침	개정 연월
BTL 학교복합시설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2007. 01.
	2005. 05.
임대형 민자사업(BTL)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2005. 08.
	2006. 09.
	2009. 03.
	2010. 01.
	2011. 04.
	2012. 04.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	2005. 11.
	2006. 09.
	2008. 11.
	2009. 03.
	2010. 01.
	2011. 04.
임대형 민자사업(BTL) 표준실시협약(안)	2009. 04.
	2005. 05.
	2005. 08.
	2006. 09.
	2009. 03.
	2010. 01.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관리·운영 세부요령	2011. 04.
	2005. 05.
	2005. 08.
	2006. 09.
	2009. 03.
	2010. 01.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2011. 04.
	2005. 05.
	2005. 08.
	2006. 09.
	2009. 03.
	2010. 01.

<표 VII-5>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목록

지침	개정	개정 연도
(수탁)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시행계획 수립	-	2010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제1판)	2013
	(제2판)	2018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표준지침 연구	(제1판)	2013
	(제2판)	2018

&lt;표 VII-6&gt;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목록

지침	개정	개정 연도
(수탁)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	2016

## 2. 일반 연구

지침 연구과제를 제외하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연구과제를 일컫는다. 일반 연구과제 목록은 다음 <표 VII-7> ~ <표 VII-10>과 같다.

&lt;표 VII-7&gt; 재정투자평가사업 일반 연구 목록

년도	과제명
1999	총괄백서: 예비타당성 조사 어떻게 이루어졌나?
2000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 구축 및 분석
2000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다기준분석 방안연구
2000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및 절차 개선방안
2000	공공투자사업 예산관리의 효율화 방안 I
2000	사후적 사업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2000	VE 방법론 및 제도 활성화방안 연구
2001	예비타당성조사에 활용되는 O-D 및 NETWORK의 분석지침 연구
2001	공공투자지출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001	교통부문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환경비용추정 연구
2001	사후적 사업평가제도 도입방안 및 평가방법론 연구
200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다기준분석 방안연구 II
2001	공공투자사업 예산관리의 효율화 방안(II)
2004	문화과학 시설의 가치추정 연구
2004	예비타당성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2004	도시철도사업 자원조달 방향 및 민자가능성 검토
2004	공공투자사업 예산관리의 효율화 방안 III: 총사업비관리제도의 운영성과 및 향후개선방안을 중심으로
2007	국가교통DataBase(KTDB)검토 재정투자평가 연구사업
2009	도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추정 연구
2011	교통시설의 경제적 가치 추정에 관한 연구
2011	시설부대경비 산정의 적정성 비교 연구

<표 VII-7>의 계속

년도	과제명
2011	기존담 용수공급능력 재검토
2011	해외 사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현황 및 사례연구
2012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운영비 추정 연구
2012	통행시간가치 산정에 관한 연구
2013	우리나라 토지수용제도의 절차 및 쟁점에 관한 연구
2013	교통시설의 효율적 투자자원 조달 및 활용에 대한 연구
2013	교통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쟁점 연구
2013	도로부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분석결과와 안정성 향상방안 연구
2015	예비타당성조사 사후 타당성 검증 연구 -도로철도부문을 중심으로-
2016	공공발주 공사에서의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처리에 관한 연구
2016	타당성조사에서 용지비용에 관한 연구
2016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에 관한 연구
2017	재정투자사업평가의 고용효과 분석 방법론 연구
2017	조건부가치추정모형(CVM) 개선을 위한 방법론 연구
2017	교통부문사업 편익산정 방법론 연구
2017	신교통수단 타당성 평가를 위한 수요 및 편익추정 방법론 연구
2017	타당성 평가 항목에 대한 세부 고찰
2018	타당성 평가를 위한 도로부문의 유지관리비 개선방안 연구
2018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부문 타당성 평가 개선방안 연구

&lt;표 VII-8&gt; 민간투자지원사업 일반 연구 목록

년도	과제명
2006	BTL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연구
2006	BTL사업 평가방안
2006	BTL사업 실시협약 표준안
2006	BTL사업 유지관리방안
2006	BTL사업 정부지급금 지급방안
2006	민간투자사업 적격성평가의 위험반영방안 연구
2006	BTL민간투자사업 군주거시설 (군관사)성과요구수준서 연구
2006	BTL민간투자사업 군주거시설 (군병영막사)성과요구수준서 연구
2006	BTL민간투자사업 교육시설 성과요구수준서 연구
2006	BTL하수관거사업 성과요구수준서 작성
2006	BTL사업의 주민참여 활성화방안 연구
2006	민자사업(BTL)의 민간 Advisory 도입방안
2006	민간투자사업 해지시지급금 산정 방안에 관한 연구
2006	BTO 용지보상비 급증 대책에 관한연구
2006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있어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활용 개선방안 연구
2006	BTO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연구
2006	BTO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표준안 연구
2007	공공투자관리센터데이터베이스 구축(Ⅰ)연구
2007	중장기PPPs 종합계획 및 전략
2007	BTL학교복합시설사업 표준 RFP 연구
2007	도로·철도·항만(BTO) 표준재무모델 연구
2007	부대, 부속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2007	환경분야수익형 민자사업(BTO) 실시협약 표준안 연구
2007	민간투자법령정비방안 연구
2008	민간투자사업의후생효과 분석과 최적 재정정책에 대한 연구
2008	환경기초시설 임대형민자사업(BTL) 적용방안 연구
2008	동남아민간투자사업 진출환경 연구
2008	도시철도분야BTO 민간투자사업 표준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 연구
2008	임대형민자사업(BTL) 성과평가 및 발전전략 연구
2008	일본과 한국의 민자제도 비교를 통한 한국제도의 발전방향 연구
2008	민간투자사업 협상 관리방안 및 가이드라인연구
2008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국가계약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표 VII-8>의 계속

년도	과제명
2008	관광분야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안 연구
2008	민자사업의 국가정책 부합여부 및 우선순위 판단기준 연구
2008	민간투자사업 제세공과금, 부대비용의 산정 및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2009	민간투자사업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2009	개도국인프라사업에 있어 개발원조와 PPP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2009	BTL사업 표준 재무모델 연구
2009	평가관리 및 평가위원 POOL 관리방안 연구
2009	민간투자사업방식을 활용한 중국 인프라시장 진출방안 연구
2009	BTL사업시설관리 운영지침 작성요령 연구
2009	기운영중인 민자도로의 수요증대방안 연구
2010	BTL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 등 3개 요령 개정 연구
2010	민간투자사업의 금융약정에 관한 연구
2010	민간투자사업의 운영비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010	도로민자사업의 적정통행료 수준 관리방안
201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해설
2010	WTO GPA, FTA체결 국가별 협정 및 민간투자법과의 비교분석 연구
2011	BTL표준실시협약 해설 연구
2011	민자사업제도개선 방안 연구
2012	국내기업의 해외민간투자사업 진출 방안 연구
2012	민간투자사업운영비 실태 연구: 최소운영수입보장있는 도로사업 중심으로
2013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PPP 연계방안 연구
2013	부대사업 매뉴얼 작성 연구
2013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종료 사업의 처리방안 연구
2013	상수관망 개선 BTL사업 성과요구수준서 표준안 연구
2013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민간제한 허용 여부에 대한 연구
2013	2012년 민간투자사업 법률쟁점 연구
2013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분석에 대한 실증 연구
2013	복지시설의 임대형민자사업(BTL) 적용에 관한 연구
2014	임대형 민자사업(BTL) 서비스 성과평가 개선방안 연구
2014	한국과 호주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2014	민간투자사업의 펀드 투자 현황 및 규제 개선에 대한 연구
2014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 검토 세부요령 연구

&lt;표 VII-8&gt;의 계속

년도	과제명
2014	민간투자사업 사후적격성조사 사례분석(고속도로) 연구
2014	BTO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결정에 관한 연구
2014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국가교통DB 검토 및 활용방안 연구
2014	공공투자 주요 지표 및 동향분석 연구
2015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해지 및 해지시지급금에 관한 연구 -BTO사업을 중심으로-
2015	BOO 사업에 대한 연구
2015	2014년 공공투자 관련 법률쟁점 연구
2015	서비스 분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연구
2015	최근 민간투자사업 금융소송의 원인 및 시사점 연구
2015	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 사업 비교 연구
2016	민자사업 새로운 위험분담방식 제도화방안
2016	공공 서비스영역에 SIB방식 도입방안
2017	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및 사례 적용 연구
2017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 및 인식도 조사
2017	해외 민간투자시장 진출방안 연구- 아시아 PPP 시장을 중심으로-
2017	사업 시행조건 조정 방안 연구
2017	운영형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민간투자법 개편방안 연구
2017	부실민간투자사업 구조조정방안 연구
2018	인프라 투자 정책의 동향 및 시사점 연구 - 호주사례를 중심으로 -
2018	임대료 편익산정의 개선방안 연구
2018	민간투자사업 위험배분구조와 수익률 간의 관계에 대한 기초 연구
2018	민간투자사업 법률쟁점연구(대상기간: 2015~2017년)
2018	공익처분의 환경적 요인 및 실행요건에 관한 연구
2018	민간투자사업의 자기자본수익률에 관한 연구
2018	민간투자사업 위험분담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2018	민간투자사업의 재무적 쟁점에 관한 연구
2018	도시재생 효과에 대한 편익산정 기초 연구 - 사회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
2018	항만 민자사업 부실 개선방안 연구
2018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 방안 연구
2018	민간투자사업의 법인세관련 이슈 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표 VII-9>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일반 연구 목록

년도	과제명
2013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한 연구
2014	공공기관 해외사업 위험요인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 해외 발전사업을 중심으로 -
2014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비용 추정 연구
2014	보험을 통한 공공기관 해외투자사업 위험요소 완화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2016	공공기관 사업의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도입 필요성 연구
2016	사회적 할인을 연구
2017	철도부문 투자 및 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2018	전력공급 편익 추정 및 대기오염물질 외부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2018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익성 분석 방법론의 주요쟁점 연구
2018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의 수요 및 편익산정 연구

<표 VII-10>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일반 연구 목록

년도	과제명
2015	조세지출 평가 방법 정립을 위한 연구

## 제2절 2018년도 정책연구

2018년도에 수행된 연구과제는 다음 <표 VII-11>과 같이 총 21건이며, 재정투자사업의 경우 일반 연구 2건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지침연구 2건과 일반 연구 12건 등 총 14건이 수행되었으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일반 연구 지침연구 2건과 일반 연구 3건 등 총 5건이 수행되었다.

<표 VII-11> 2018년도 지침 및 연구과제 수행 실적

구분	재정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공공기관 예타			조세특례			합 계		
	지침	연구	소계	지침	연구	소계	지침	연구	소계	지침	연구	소계	지침	연구	소계
2018	-	2	2	2	12	14	2	3	5	-	-	-	3	18	21

주: 과제종료일이 2018년까지인 연구과제 목록이며, 일부 과제의 경우는 수정·보완 중에 있음.

2018년도에 수행된 연구과제의 목록은 다음 <표 VII-12>와 같다.

&lt;표 VII-12&gt; 2018년도 연구과제 목록

연번	과제구분	연구과제명
1	연구	인프라 투자 정책의 동향 및 시사점 연구 - 호주사례를 중심으로 -
2	연구	임대료 편익산정의 개선방안 연구
3	연구	전력공급 편익 추정 및 대기오염물질 외부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4	연구	민간투자사업 위험배분구조와 수익률 간의 관계에 대한 기초 연구
5	연구	민간투자사업 법률쟁점연구(대상기간: 2015~2017년)
6	연구	공익처분의 환경적 요인 및 실행요건에 관한 연구
7	연구	민간투자사업의 자기자본수익률에 관한 연구
8	연구	민간투자사업 위험분담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9	연구	타당성 평가를 위한 도로부문의 유지관리비 개선방안 연구
10	연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부문 타당성 평가 개선방안 연구
11	연구	민간투자사업의 재무적 쟁점에 관한 연구
12	연구	도시재생 효과에 대한 편익산정 기초 연구 - 사회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
13	연구	항만 민자사업 부실 개선방안 연구
14	연구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익성 분석 방법론의 주요쟁점 연구
15	연구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의 수요 및 편익산정 연구
16	연구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 방안 연구
17	연구	민간투자사업의 법인세관련 이슈 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18	지침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및 제안서 검토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
19	지침	공기업·준정부 기관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2판)
20	지침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2판)
21	지침	환경분야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지침 개정 연구

주: 과제기간이 2018년까지인 연구과제 목록이며, 일부 과제의 경우는 수정·보완 중에 있음.

### 제3절 민간투자사업 관련 정책서비스 수행실적

#### 1. 민간투자 관련 교육 및 세미나

2018년 민간투자사업 교육은 주무관청과 민간기관의 민간투자사업 담당자 및 민간투자사업 관심자를 대상으로 총 14회 실시되었고, 한 해 동안 563명이 참여하였다. 공공투자관리센터 공공투자정책실에서 2018년에 실시한 민간투자사업 교육 수행 실적 등은 다음과 같다.

<표 VII-13> 2018년도 민간투자사업 교육 수행 실적

연번	교육과정명	비고
1	2018년 민간투자사업 상반기 권역별 순회교육 총 5회 (영남권,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 제주권)	기초교육
2	2018년 민간투자사업 재무심화교육	심화교육
3	2018년 민간투자사업 하반기 권역별 순회교육 총 5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수도권)	기초교육
4	2018년 민간투자사업 심화교육	심화교육
5	2018년 민간투자사업 민간기업 대상 교육 총 2회	기초교육

#### 2. 국제협력 업무

2018년 국제협력 사업은 KDI에서 주최 또는 참석한 국제회의와 세미나는 총 4회, 방원회의 및 방문교육은 총 7회가 아래 표와 같이 수행되었다.

이 중 중남미지역 공무원 대상 PPP 정책연수를 수행하여 역내 PPP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한국의 PPP 제도를 공유한 점을 주목할 수 있으며, 2018 아시아 민간투자 네트워크(APN) 개최하여 국제기구 및 아·태지역 12개국 대표 3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역내 PPP 네트워크의 협력관계를 강화한 점을 주요 성과로 포함할 수 있다.

&lt;표 VII-14&gt; 2018년도 국제협력 수행 실적

구분	연번	사 업 명	일 자	장 소	비고
KDI 주최	1	중남미지역 공무원 대상 PPP 정책연수	2018.09.10.~14.	밀레니엄 서울 힐튼	개도국 공무원 교육
	2	아시아 민간투자 네트워크(APN) 국제회의 개최	2018.11.05.~08.	콘래드 서울	국제회의
KDI 참석	3	UNECE 국제 PPP 포럼 참석 및 한국사례 발표	2018.05.06.~10.	스위스 제네바	국제회의
	4	2018 AIIB 연차총회 참석 및 발제	2018.06.22.~26.	인도 뭄바이	국제회의
방원 회의 및 방문 교육	5	카자흐스탄 공무원단(KSP) 대상 PPP 제도 강의	2018.02.20.	KDI	방원회의
	6	스리랑카 재무부 사절단 대상 공공기관 투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강의	2018.03.29.	KDI	방원회의
	7	우간다 장관 사절단 대상 PPP 제도 강의	2018.04.11.	KDI	방원회의
	8	에콰도르 공무원 대상 PPP 제도 강의	2018.07.13.	KDI	방원회의
	9	우크라이나 공무원단(KSP) 대상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강의	2018.07.18.	KDI	방원회의
	10	캄보디아 PPP 전담기관 사절단 대상 공공투자관리제도(재정/민자) 강의	2018.10.02.	KDI	방원회의
	11	대만 공업기술연구원 사절단 대상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강의	2018.10.31.	KDI	방원회의

### 3. DB system 관리 및 운영

DB system의 구축 목적은 민간투자사업(수익형민자사업, 임대형민자사업)의 추진 단계별 주요자료를 DB화하는 것이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은 1994년부터 시작한 민간투자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단계부터 운영종료까지의 단계별 주요자료이다.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이후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제정되면서 급속히 확대되었다. 특히, 2005년에 임대형민자사업(BTL 사업) 방식이 도입되어 정부고시사업이 더욱 확대되었고 2018년 말까지 총 798<sup>18)</sup>건의 민간투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자료가 향후 중요한 데이터로서의 가치를 갖게 됨에 따라 자료의 효율적 및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InfraInfo DB system으

18) 2018년 12월 기준 제3자 제안공고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후로 진행되고 있거나, 운영기간이 완료된 사업 대상(진행 중 사업이 취소된 사업은 제외)

로 DB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다.

공고 및 고시 이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총 798건으로 수익형민자사업이 291건, 임대형민자사업은 507건의 추진단계별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표 VII-15> Infracore DB system의 DB 현황

사 업	건수	비고
수익형민자사업	291건	추진단계별 자료 DB화 (사업중단된 사업 제외)
임대형민자사업	507건	

공공투자관리센터는 2012년부터 매년 주무관청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추진단계별 자료를 수집하여 DB에 적용해왔다. 자료 수집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163조에 따라 시행하였으며, 기획재정부에서 주무관청에 공문으로 자료 요청을 하였다.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자료를 수집과 검수를 담당하여 DB system에 직접 입력하여 반영하였다. 특히, 2018년에는 주무관청 담당자가 각 시도 및 주무부처 단위로 부여한 ID로 본 시스템에 접속하고 시스템에 등록된 담당사업에 대한 자료를 검수하도록 하였다. 2019년 이후에는 기획재정부와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민간투자사업 자료의 수집과 발표용 통계자료를 시스템을 통해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표 VII-16> DB System 구축 기초자료

구분	해당자료
민간투자사업 추진단계별 주요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식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자 제안공고 /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단계 자료</li> <li>- 실시협약 및 변경협약 단계 자료</li> <li>- 실시계획승인 단계 자료</li> <li>- 공사 단계 자료</li> <li>- 운영 단계 자료</li> </ul> </li> <li>•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실시협약서 및 재무모델</li> <li>- 변경협약서 및 재무모델 변경자료</li> </ul> </li> </ul>
재정투자평가사업 주요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서 자료</li> <li>• 사업검토를 완료한 보고서</li> </ul>

시스템관리는 보안관리, 백업관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관리, 웹서비스 관리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보안은 웹서버 보안과 DB 암호화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솔루션 전문업체를 통해 관리하고 있고,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다. 백업은 DB와 OS 환경 등에 대해 매일 부분백업이 시행되고 일주일마다 전체백업이 시행되

고 있으며 자체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DBMS(Oracle 11g)는 DB 점검 전문 업체를 통해 1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표 VII-17> 시스템 관리내역

구 분	프로그램	보유량	비고
보안	서버보안	2	웹/DB 서버 접근 통제
	DB 암호화	1	개인정보 및 보안 자료
백업	백업	1	시스템 및 데이터 백업
DBMS	Oracle 11g	1	-
웹프로그램	웹 서비스	2	Infrainfo DB system PIMAC 평가관리시스템



## 제Ⅷ장

# 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 실적

### 제1절 도입배경과 추진근거

#### 1. 도입배경

우리나라 경제는 외부충격에 취약하여 대외요인에 의한 경기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재정여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억제나 세입증대가 필요하나, 재정지출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으로 재정소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입확충을 위해 조세지출 규모를 지속적하여 2008년 이후 국세감면 규모를 국세감면한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9년에는 고용과 빈곤 등의 해소를 위한 조세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세감면율의 한도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균형재정을 위한 노력은 더욱 절실해지는 실정이다.

<표 VIII-1> 조세지출현황

(단위: 조원)

연도	국세감면액	국세수입총액	국세감면율
2000	13.3	92.9	12.5
2001	13.7	95.8	12.5
2002	14.7	104.0	12.4
2003	17.5	114.7	13.2
2004	18.3	117.8	13.4
2005	20.0	127.5	13.6
2006	21.3	138.0	13.4
2007	23.0	161.5	12.5

&lt;표 VIII-1&gt;의 계속

연도	국세감면액	국세수입총액	국세감면율
2008	28.8	167.3	14.7
2009	31.1	164.5	15.8
2010	30.0	177.7	14.4
2011	29.6	192.4	13.3
2012	30.1	203.0	12.9
2013	33.8	201.9	14.3
2014	34.3	205.5	14.3
2015	35.9	217.9	14.1
2016	37.4	242.6	13.4
2017	39.7	265.4	13.0
2018	41.9	293.6	12.5
2019	47.4	294.8	13.9

- 주: 1) 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  
 2) 2012년 이후로는 신규로 3개 항목이 추가되었으나, 비교를 위하여 2011년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출  
 3) 국세감면액: ('18년 및 '19년) '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상 전망치  
 4) 국세수입총액: ('18년) 실적치, ('19년) 국회 확정 세입예산
- 자료: 1)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년도.  
 2) 기획재정부, 「조세지출 기본계획」, 각 년도.

조세특례 성과평가제도는 이러한 비과세·감면 축소 노력의 하나로 2014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2015년부터 연간 300억원 이상의 신규 도입제도에 대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와 일몰도래 조세특례에 대해서 심층평가 실시를 의무화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 2. 조세지출의 개요

조세특례는 일반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즉, 특례를 통하여 수혜대상 납세자에게 납부세금의 감소 혹은 증가가 발생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실제 정책상에서는 특정 정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세금을 면제, 감면해주는 제도가 대부분이므로 국가세입의 축소가 발생하여 국가재정에 주는 영향은 명시적인 재정지출행위와 동일하므로 이를 조세지출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 2에서는 조세지출을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지출은 크게 직접감면과 간접감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감면은 영구적인 세부담 경감(혹은 세수 감수)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비과세, 소득공제, 저율과세,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으로 구성되며 간접감면은 일정 기간 과세를 연기해주는 것으로서 준비금, 과세이연, 이월과세 등으로 이루어진다.

우리정부는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가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국세감면 실적 및 추정금액을 공표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직전, 당해 및 다음연도의 국세감면 실적 및 추정금액이 포함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였다.

「2019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연도별 조세지출 규모는 2017년 39조 6,769억원, 2018년 41조 8,598억원(전망), 2019년 47조 4,125억원(전망)으로 제시하였다.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는 2018년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확정)을 토대로 국세감면율이 12.5%수준일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2019년은 근로·자녀장려금등 저소득층 지원증가 및 지방소비세 확대 등 재정분권 강화에 따라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다소 상회할 전망으로 발표하였다.

<표 VIII-2>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17년 (실적)		2018년 (전망)		2019년 (전망)	
	액	비중	액	비중	액	비중
• 국세감면액(A)	396,769	100.0	418,598	100.0	474,125	100.0
조특법상 조세지출	201,873	50.9	210,803	50.4	262,680	55.4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184,201	46.4	195,678	46.9	208,134	43.9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10,694	2.7	12,117	2.9	3,311	0.7
• 국세수입총액 <sup>2)</sup> (B)	2,65.4조원		293.6조원		294.8조원	
• 국세감면율(A/(A+B))	13.0		12.5		13.9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4.4		14.0		13.5	

주: 1)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2)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세 세입예산안 확정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2018년은 실적치, 2019년은 국회 확정 세입예산임.

자료: 1) 기획재정부, 「2019년 조세지출예산서」, 2018.  
 2) 기획재정부,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2019.

### 3. 추진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와 동법 시행령 제13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특례에 대한 사전 및 사후적 관리를 할 수 있다. 이에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의 경우,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135조의 2에 평가수행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표 VIII-3> 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수행의 법적근거

조항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p>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p> <p>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1.1.&gt;</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사회정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목적,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정책효과, 연도별 예상 세수효과 및 관련 통계자료 등을 포함한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를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1.1.&gt;</p> <p>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1.1.&gt;</p> <p>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이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1.1., 2014.1.1.&gt;</p> <p>⑤ 정부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lt;신설 2014.1.1.&gt;</p> <p>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를</p>

<표 VIII-3>의 계속

조항	내용
<p>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p>	<p>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lt;신설 2013.1.1., 2014.1.1.&gt;</p> <p>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lt;신설 2013.1.1., 2014.1.1.&gt;</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조세감면건의, 조세감면에 대한 의견제출, 주요 조세특례의 범위, 조사·연구기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신설 2013.1.1., 2014.1.1.&gt;</p> <p>[전문개정 2010.1.1.]</p>
<p>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p>	<p>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p> <p>① 법 제1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lt;개정 2010.2.18., 2013.2.15., 2014.9.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과세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조세특례사항</li> <li>2. 시행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세특례사항</li> <li>3. 기존의 조세특례사항 중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사항</li> <li>4.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열거된 조세특례사항</li> </ol> <p>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42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lt;신설 2013.2.15., 2014.9.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분야별로 일괄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li> <li>2. 향후 지속적 감면액 증가가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조세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사항</li> <li>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심층적인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③ 법 제142조제4항 단서에서 "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lt;신설 2014.9.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li> <li>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li> <li>3.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142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규모와 적용대상 등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에 중요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li> </ol>

&lt;표 VIII-3&gt;의 계속

조항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	<p>④ 법 제14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lt;신설 2014.9.11.&gt;</p> <p>⑤ 법 제142조제4항 단서에서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lt;신설 2014.9.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목표 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조세특례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li> <li>2. 정책 목적과 대상 및 수단의 적절성 등 조세특례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li> <li>3. 조세특례의 성과를 저해하는 원인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li> </ol> <p>⑥ 법 제142조제5항에서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란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말한다. 다만,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기존 조세특례 금액에 추가되는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말한다. &lt;신설 2014.9.11.&gt;</p> <p>⑦ 법 제142조제5항에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lt;신설 2014.9.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li> <li>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 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li> <li>3. 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 지원 기간이 일시적이고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li> <li>4. 법 제142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세특례를 개선하려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42조제4항에 따른 평가 내용에 제8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li> </ol> <p>⑧ 법 제142조제5항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lt;신설 2014.9.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지원방법 등 정책적 타당성</li> <li>2. 고용·투자 등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li> <li>3. 가구·기업·지역 등 사회 각 분야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li> </ol> <p>⑨ 특례세율의 변경과 적용대상의 추가 등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법률안은 법 제142조제5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으로 본다. 다만,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단순히 연장하는 경우는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lt;신설 2014.9.11.&gt;</p>

<표 VIII-3>의 계속

조항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의 2	<p>⑩ 법 제142조제7항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제출기한이 따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가 보관·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관리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신설 2014.9.11.&gt;</p> <p>제135조의2(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42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할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li> <li>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li> <li>3. 그 밖에 조세특례의 평가 등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전문 인력과 조사·연구 능력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li> </ol> <p>[본조신설 2014.9.11.]</p>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제2절 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개요

### 1. 개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와 동법 시행령 제13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특례에 대한 사전 및 사후적 관리를 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은 사전적 평가인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와 사후적 평가인 조세특례 심층평가 사업으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다.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는 신규로 도입하려는 조세특례를 대상으로 하며 도입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평가함으로써 정책결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조세특례 심층평가는 의무심층평가와 임의심층평가로 구분되며, 해당 평가대상 조세특례의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일몰여부의 결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 2. 대상사업

### 가.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 1) 대상사업

신규 조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에 열거된 법률(「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외)에 아직 규정되지 않은 조세특례를 말하며, 특정한 조세특례의 시행으로 한 해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수입의 감소액을 조세특례금액으로 산정한다.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수행 대상사업은 신규 조세특례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을 변경<sup>19)</sup>하는 경우에 추가되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실시한다.

#### 2) 면제사업

개별 세법의 과세체계 내 조세특례로서 특정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 목적이 아니며, 장기간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 명백한 경우와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항 중 장관급 회의체에서 추진이 결정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국무회의 또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장관급 회의체에서 추진이 결정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경제성장률·고용률 등의 경기 지표가 하락하는 등 경제 전반에 상당한 위축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특정 산업부문 또는 생산·고용·투자 등 특정 경제활동에 상당한 위축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소득 격차 확대, 빈곤율 증가 등 주요 사회지표가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19)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특례세율을 변경하거나 적용대상을 추가하는 경우 등을 말하며 기존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단순히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함.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3. 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 지원 기간이 일시적이고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세특례를 개선하려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같은 법 제142조 제4항에 따른 평가 내용에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제8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 나. 조세특례 심층평가

##### 1) 의무심층평가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는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으로서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실시한다.

1. 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3. 최근 3년 이내에 심층평가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규모와 적용대상 등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에 중요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 2) 임의심층평가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다.

1. 유사 목적의 조세특례들로서 분야별로 일괄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2. 향후 지속적 감면액 증가가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조세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사항
3.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3항에 따른 조세특례에 대한 의견서의 확인·점검 결과 심층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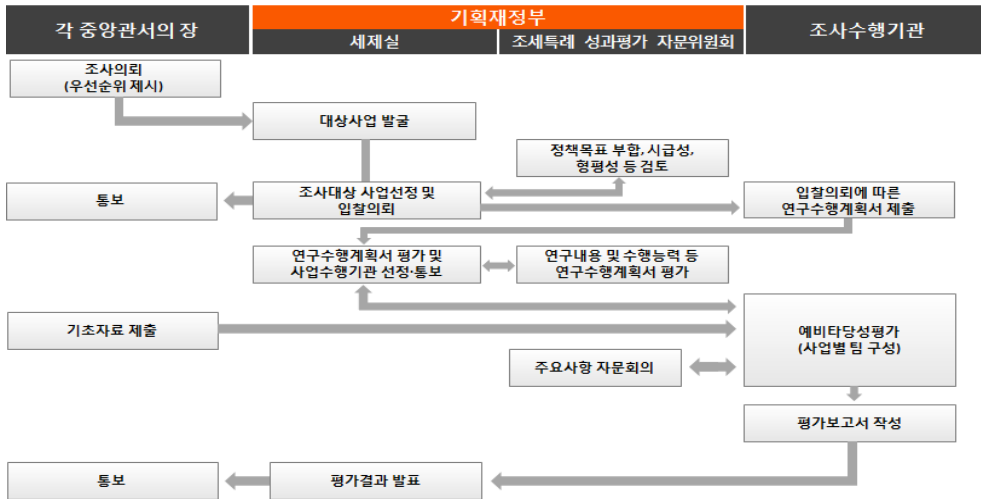
4. 지속적인 조세특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미흡했다고 판단되는 사항
5. 그 밖에 조세특례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심층적인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수행절차

#### 가.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수행절차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요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예비타당성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이러한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예비타당성평가 요구내용을 검토한 후,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그리고 예비타당성평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의2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적인 조사·연구 수행 기관으로 선정하여 수행하게 하며, 수행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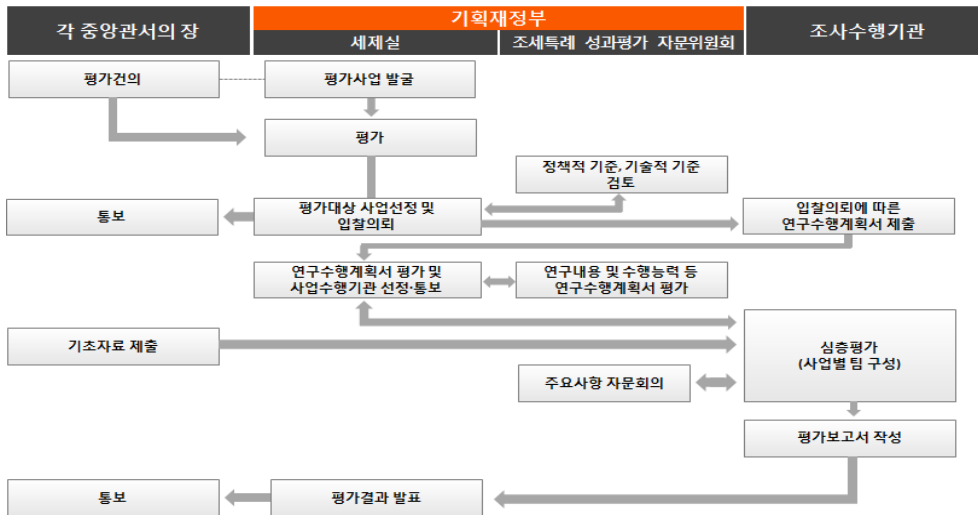
[그림 Ⅷ-1]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대상사업 수행절차



나. 조세특례 심층평가 수행절차

심층평가 대상은 매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 한차례 선정하나, 평가 필요성,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장은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심층평가 필요성 및 가능성 등을 선정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심층평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대상을 선정한다. 또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심층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세특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심층평가 실시를 건의할 수 있다. 그리고 심층평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의2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적인 조사·연구 수행 기관으로 선정하여 수행하게 하며, 수행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VIII-2]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사업 수행절차



## 다. 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수행체계

### 1)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수행체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는 기획재정부의 입찰참여 요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이 연구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의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대상사업에 대한 수행기관이 선정되어 평가사업이 착수된다.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사업의 주요 분석내용은 정책성 분석, 경제성 분석, 형평성 분석으로 구성되며 각 분석결과를 토대로 계층화 분석법을 활용한 종합평가를 수행한다. 각 항목별 분석내용은 아래의 내용과 같다.

- 정책성 분석: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제도 운용의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지원방법 등 분석
- 경제성 분석: 고용·투자 등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형평성 분석: 가구·기업·지역 등 사회 각 분야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종합평가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에 대한 종합평가는 평가항목 분석결과를 토대로 계층화 분석법(AHP)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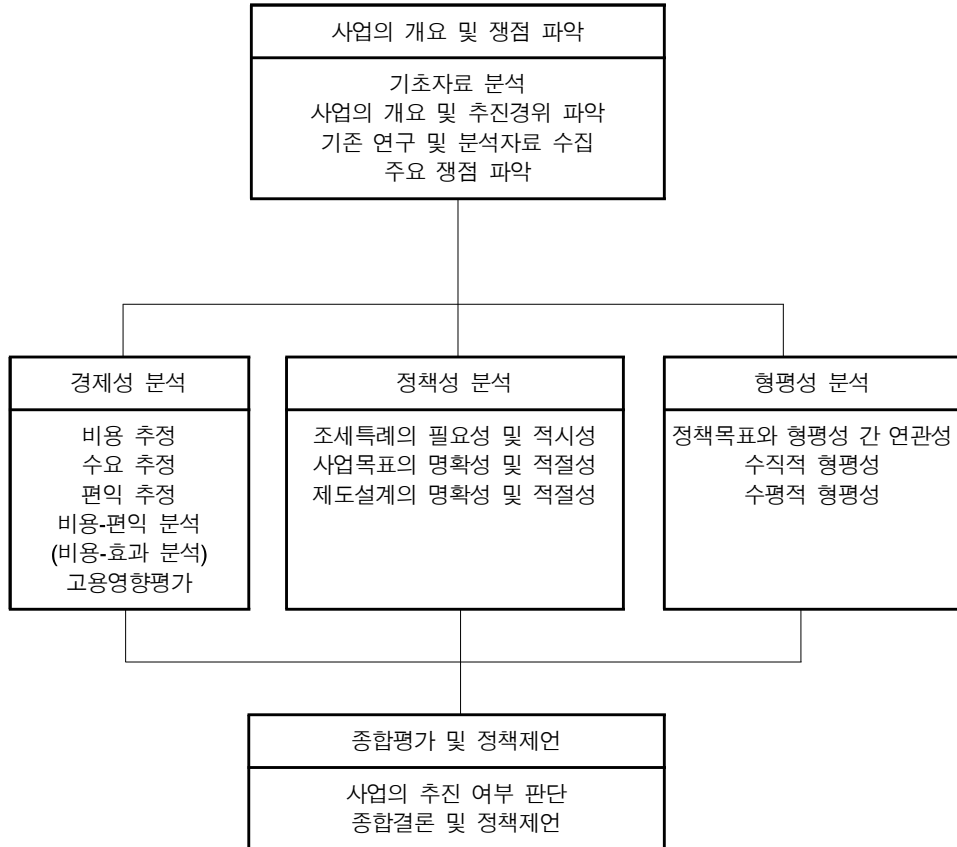
<표 VIII-4> AHP 평가 항목별 가중치 범위

분석 유형	경제성 항목	정책성 항목	형평성 항목
B/C 분석	30~50%	30~40%	20~30%
E/C 분석	25~40%	30~40%	30~40%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2018.12

- 정책제언: 종합평가 이외에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 도입에 따른 위험요인 및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할 수 있음.
  - 정책제언의 내용: 해당 조세특례의 특성, 향후 조세특례금액의 증가 가능성, 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특례 심층평가 실시 필요성, 평가시기,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의 축적 등에 관한 의견

[그림 VIII-3]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분석 체계



주: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경우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을 효과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으로 실시하며, AHP 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2) 조세특례 심층평가 수행체계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수행체계는 평가사업 착수단계까지의 경우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와 동일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조세특례 심층평가사업의 주요 분석내용은 타당성 분석, 효과성 분석, 형평성 분석 등으로 구성되며,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조세특례제도의 일몰연장 또는 폐지 여부,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의견을 제시한다.

#### 4. 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수행실적

지난 2014년 12월 이후, 2018년 1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은 예비타당성평가 8건, 심층평가 69건, 연구 6건으로서 총 83건이다.

<표 Ⅷ-5> 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수행건수(전체 의뢰건수 착수기준)

연도	예비타당성평가 대상사업	심층평가 대상사업		연구	합계
		의무심층	임의심층		
2015	3	14	3	1	21
2016	2	6	12	-	20
2017	2	8	9	5	24
2018	1	12	5	-	18
합계	8	40	29	6	83

이 중 KDI에서 수행한 사업은 예비타당성평가 2건, 심층평가 20건, 연구 1건으로 총 24건 수행하였다. 한편, 2015년에 착수한 평가사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수탁과제 형태로 진행하였으며, 지침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표 Ⅷ-6> 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수행실적(착수기준)

연도	예비타당성평가 대상 사업			심층평가 대상 사업		연구	합계
	사업수	총사업비	타당성 여부	의무심층	임의심층		
2015	1	344억원/년	타당성 없음	-	-	1	2
2016	1	445억원/년	타당성 없음	3	5	-	9
2017	1	164억원/년	타당성 없음	3	3	-	7
2018	0	-	-	5	1	-	6
합계	3	-	-	11	9	1	24

그리고 2018년 수행사업은 심층평가 6건(의무심층평가 5건, 임의심층평가 1건)이며, 이 중 의무심층평가는 평가가 완료되어 보고서가 출판되었으며, 임의심층평가는 현재 평가 수행중이다.

<표 VIII-7> 2018년 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수행실적

착수연도	구분	연번	사업명	출판여부
2018년	의무심층	1	농림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출판완료
	의무심층	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출판완료
	의무심층	3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출판완료
	의무심층	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출판완료
	의무심층	5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출판완료
	임의심층	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수행 중

**제2부**  
**2018년도 사업별 요약표**





제 1 장

2018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



## &lt; 예비타당성조사 &gt;

## 1. 광주 송정~순천 단선전철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1. 1 ~ 2018. 11. 30
연구진	- 외부위탁사업 - 이승재(서울시립대학교, PM), 김주영(서울시립대), 채희남(선구엔지니어링), 김강석(선구엔지니어링)
주요 논의사항	- 장래 고속열차운행계획 - 광주전남공동 혁신도시의 반영

##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위치	광주광역시 광주송정역 ~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역	
사업규모	L=107.6km 단선전철 건설 (기준선 활용 30.9km), 여객열차 운행	L=107.7km 단선전철 건설 (기준선 활용 29.602km), 여객열차 운행
총사업비(억원)	17,170.87	17,055.46
사업기간	2016년~2023년	
사업주체	국토교통부	
재원조달	전액국고	
B/C	-	0.85
AHP	-	0.489

주: 사업계획서는 2012년 말 가격기준이고, 예비타당성조사는 2013년 말 가격기준임.

## 2.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5. 1. 20 ~ 2018. 2. 28
연구진	- KDI 연구진: 정우현, 박미수 - 외부 연구진: 조중래(명지대), 신선철(동일기술공사)
주요 논의사항	- 시티타워 건설을 고려한 정거장 계획 - 시점부 회차선 저축 검토 - 청라지구 내 투자유치계획 및 대중교통계획 반영

###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청라국제도시역(인천공항철도)	
사업규모	L=10.60km, 정거장6개소	L=10.61km, 정거장6개소
총사업비(억원)	12,381.9	13,045.2
사업기간	2015년~2024년	2019년~2028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인천광역시/ 총사업비의 60% 국고지원	
B/C	-	1.10
AHP	-	0.561

주: 1)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는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는 2014년 말 기준임.

2) 예비타당성조사의 사업기간은 기본계획 수립기간, 최적 설계품질 확보 및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해 2028년까지로 조정

### 3. 의정부~금정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6. 1. 18 ~ 2018. 12. 31
연구진	- KDI 연구진: 김재영, 김성규 - 외부 연구진: 조중래(명지대), 구본로(유신)
주요 논의사항	- 경부선 등 기존선 공용구간의 선로용량 검토 - 삼성역 통합역사(가칭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검토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열차운행계획 적정성 검토

####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최초 사업계획서	변경 사업계획서 <sup>2)</sup>	예비타당성조사 <sup>3)</sup>
사업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 군포시 금정동	경기도 양주시 덕정~경기도 수원시	
사업규모	L= 47.85km(정거장 8개소, 차량기지 1개소)	L=74.2km(정거장 10개소, 차량기지 1개소)	
총사업비(억원) 1)	39,660억원 (국고 27,762, 지방비 11,898)	41,781억원	43,088억원
사업기간	2014년~2023년(10년)	2014년~2023년(10년)	2018년~2025년
사업주체/재원 조달 <sup>4)</sup>	국토교통부 /국비 70%(지특회계), 지방비 30%		
B/C	1.01	0.98	1.36
AHP	-	-	0.616

주 1)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2)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총사업비는 40,422억원이나, 이후 주무부처에서 추가 제출한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 C노선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청자료 제출(민자철도팀-641, 18.03.02)”에 제시된 총사업비 산정 결과(4,178,147백만원)를 준용함.

3)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는 2014년 가격기준임.

4) 주무부처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상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국고 70%, 지방비 30%로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동조 제2항에서는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고 분담률을 50%로 명시하였으므로 향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간의 지방비 분담비율에 따라 재원조달 계획이 변동될 수 있음.

## 4. 포항~동해 전철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6. 5. 30 ~ 2018. 3. 31
연구진	- KDI 연구진: 김재영, 정동호 - 외부 연구진: 이영인(서울대), 선우청(도화엔지니어링)
주요 논의사항	- 구간별 단선비전철 사업추진 단계의 특성을 고려한 비용 산정 - 운행계획의 설정 및 이에 따른 전철화 효과

###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강원도 삼척시, 동해시 일원	
사업규모	포항~동해간 173.4km 단선 비전철→단선 전철	
총사업비(억원)	4,417.06	4,450.34
사업기간	2017~2020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 / 국고 100%	
B/C	1.05	0.59
AHP	-	0.468

- 주: 1)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 포함임.  
 2)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는 2015년 말 기준임.  
 3) 총사업비 단위는 백만 원이며, 소수점 이하는 제시하지 않음.  
 4) B/C는 소수점 둘째 자리, AHP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제시  
 5)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는 사업시행 시 단선 비전철 사업과 동시에 공사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절감액(차량구입비, 시운전비)을 감안

## 5. 서울 지하철 9호선 4단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6. 5. 30 ~ 2018. 5. 31
연구진	- KDI 연구진: 정우현, 김형석 - 외부 연구진: 유정훈(아주대), 김종호(대한건설ENG)
주요 논의사항	- 서울~세종 고속국도 노선 병행구간 건설계획 검토 - 환기방식에 따른 중앙환기구 설치 여부 검토 - 사업노선 주변 재개발/재건축 계획 반영

###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	
사업규모	L=3.8km, 정거장4개소	L=4.3km, 정거장4개소
총사업비(억원)	6,545.5억원	5,592.9억원
사업기간	2017년~2025년(9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896억원을 제외한 40% 국고지원	
B/C	-	0.99
AHP	-	0.511

주: 1)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는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는 2015년 말 기준임.

2)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규모의 총 연장은 조사 과정에서 종점부 회차선 연결 및 분기기기 이격거리 등 0.56km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검토된 결과가 반영된 것임.



## 6. 상화로(유천교~월곡) 입체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6. 1. 10 ~ 2018. 5. 31
연구진	- KDI 연구진: 홍성필, 이명환 - 외부 연구진: 손영태(명지대), 정병권((주)유신)
주요 논의사항	- 순환도로의 구간별 운영주체 확인 - 사업노선 이용수요의 패턴 확인 - 대구산업철도와의 일관성 확보

###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위치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 달서구 유천동	
사업규모	고가차도 L=3.9km, B=20m (왕복 4차로)	
총사업비(억원)	2,425.44	2,855.99
사업기간	2017년 ~ 2020년 (4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 대구광역시 - 국고: 조사설계비 100%, 공사비 50% - 지방비: 공사비 50%	
B/C	-	1.04
AHP	-	0.506

주: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는 2015년 말 가격기준이며, 사업계획은 2014년 가격기준임.

**7. 평택·당진항 진입도로(신평~내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7. 1.10 ~ 2018. 3. 31
연구진	- KDI 연구진: 유재광, 조혜정 - 외부 연구진: 박동주(서울시립대), 설명만(대한건설엔지니어링)
주요 논의사항	- 평택·당진항의 장래개발계획 불확실성에 따른 미시행/시행시 네트워크 가정 - 해상교량 하부 통항계획 검토 필요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위치	충남 당진시 신평면 법석이교차로(국도 38호선) ~ 경기도 평택시 평택·당진항 내항	
사업규모	총연장 3.1km 신설 / 왕복 2차로(B=11.5m) (교량 L=2.42km, 도로 L=0.68km)	총연장 3.1km 신설 / 왕복 2차로(B=11.5m) (교량 L=2.42km, 도로 L=0.68km)
총사업비(억원)	1,385.00	1,404.50
사업기간	2018년 ~ 2023년	
사업주체	해양수산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재원조달	국가 전액 부담(교통시설 특별회계 100%)	
B/C	-	1.36
AHP	-	0.598

주: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는 2015년 말 기준임.

## 8. 정림중~버드내교간 도로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7. 6. 8 ~ 2018. 4. 30
연구진	- KDI 연구진: 양인석, 최영은 - 외부 연구진: 김성수(서울대), 권재혁((주)케이탑이엔씨)
주요 논의사항	- 사업노선 인근 기수형 철도사업 반영여부 -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존도로 구조물 변경에 따른 재원조달 여부 - 사업노선 설계기준 부합여부

###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중구 사정동	
사업규모	연장 2.4km 4차로 도로 신설	
총사업비(억원)	827.38	906.20
사업기간	2018~2023년	
사업주체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재원조달	중앙정부: 조사·설계비 100%, 공사비 50% 지자체: 용지보상비 100%, 공사비50%	
B/C	-	1.05
AHP	-	0.513

주: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는 2016년 말 기준임.

## 9. 광주 대촌~나주 금천 간 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7. 6. 8 ~ 2018. 4. 30
연구진	- KDI 연구진: 유재광, 이기택 - 외부 연구진: 신강원(경성대), 김성호(동성엔지니어링)
주요 논의사항	- 사업노선 일부구간 기확장에 따른 연장조정

###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대촌동~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사업규모	연장 9.1km (광주광역시 5.5km, 나주시 3.6km) 2→4차로 확장	연장 8.35km (광주광역시 4.75km, 나주시 3.6km) 2→4차로 확장
총사업비(억원)	796.54	734.36
사업기간	2019년~2024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국고50%, 지자체 부담50%	
B/C	-	0.23
AHP	-	0.349

주: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는 2016년 말 기준임.

## 10. 금남~북대전IC 연결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7. 6. 8 ~ 2018. 11. 30
연구진	- KDI 연구진: 정우현, 조혜정 - 외부 연구진: 이승재(서울시립대), 노희찬(도화엔지니어링)
주요 논의사항	- 과학비즈니스벨트 둔곡지구 통과 및 접속방안 관련

###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위치	세종시 금남면 영대리 ~ 대전시 유성구 화암동	
사업규모	L=7.30km, B=20m 왕복 4차로 신설 • 교차로 3개소(입체 2, 평면 1) • 구조물 - 교량: 9개소(1,010m) - 터널: 2개소(620m)	L=7.30km, B=20m 왕복 4차로 신설 • 교차로 3개소(입체 2, 평면 1) • 구조물 - 교량: 10개소(1,040m) - 터널: 2개소(620m)
총사업비(억원)	1,999.01	2,038.42
사업기간	2018년 ~ 2023년	
사업주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광역도로과)	
재원조달 (억원)	행복도시건설특별회계(전액 국고)	
B/C	-	0.78
AHP	-	0.408

주: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는 2013년 말 가격,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는 2016년 말 가격 기준임.

## 11.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7. 9. 18 ~ 2018. 11. 30
연구진	- KDI 연구진: 김세용, 김형석 - 외부 연구진: 신승식(전남대), 김홍석(수성엔지니어링)
주요 논의사항	- 기존 가력선착장의 수용능력 검토 - 대항항의 어항으로서의 기능 여부 - 관광수입 증대효과 및 위판환경 개선 효과의 적용 여부

###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위치	새만금 제1호 방조제 전면 가력선착장 일원	
사업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선 수용능력 확대 : 179척(목표년도 2025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파제 : (기존) 764m → (확장) 1,674m (증 950m, 제거 40m)</li> <li>- 물양장 : (기존) 620m → (확장) 1,290m (증 670m)</li> <li>- 부잔교 : (기존) 3기 → (확장) 5기 (증 2기)</li> </ul> </li> <li>○ 여객부두 : 50m 신설</li> <li>○ 어항용지 : (기존) 30천㎡ → (확장) 75천㎡ (증45천㎡)</li> </ul>	
총사업비(억원)	868	1,011.81
사업기간	2018~2024년	
사업주체/재원조달	농림축산식품부 / 국고 100%	
B/C	-	1.09
AHP	-	0.677

주: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는 2016년 말 기준임.

## 12. 금호워터폴리스 일반산단 진입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7. 9. 18 ~ 2018. 6. 30
연구진	- KDI 연구진: 양인석, 이기택 - 외부 연구진: 강승모(고려대), 이호영(삼보엔지니어링)
주요 논의사항	- 사업계획 횡단구성 및 교차로계획의 적정성 - 분석 시 사업지 인근 개발계획(이시아폴리스, 금호워터폴리스)반영의 적정성

###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위치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사업규모	총연장2.9km 4차로 도로 신설	
총사업비(억원)	1,328.22	1,076.38
사업기간	2018년~2022년	
사업주체	국토교통부, 대구광역시	
재원조달 (억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비보조 가능	
	국비 620.29, 시비707.93	국비 541.06, 시비535.32
B/C	-	1.23
AHP	-	0.579

주: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는 2016년 말 기준임.

**13.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7. 9. 18 ~ 2018. 6. 30
연구진	- KDI 연구진: 이승현, 조혜정 - 외부 연구진: 정성봉(서울과학기술대), 권혁찬((주)이산)
주요 논의사항	- 분석 시 사업지 인근 개발계획(한강시네폴리스, 향산지구 도시개발사업)반영의 적정성 - 금파교차로(국도48호선 진·출입로) 설치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필요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위치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 고촌읍 풍곡리(김포한강로)	
사업규모	총연장 2.13km, 왕복 4차로(B=20~30m) 신설 (입체교차로 1개소(풍곡IC))	
총사업비(억원)	734.00	923.99
사업기간	2018년 ~ 2020년	
사업주체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김포시(도시개발과)	
재원조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비보조 가능 국고 53%(3구간), 김포시 47%(1, 2구간)	
B/C	-	1.18(시나리오1) 1.27(시나리오2)
AHP	-	0.552(시나리오1)

주: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는 2016년 말 기준임.



## 14. 엄궁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7. 9. 18 ~ 2018. 10. 17
연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DI 연구진: 성철식, 이명환</li> <li>- 외부 연구진: 최재성(서울시립대), 김석희((주)진우엔지니어링코리아)</li> </ul>
주요 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동강 횡단 교량으로 연약지반 처리, 환경성 검토 필요</li> <li>- 연계노선의 진행여부를 고려하여 분석 시나리오 설정</li> <li>- 수요분석시 17년 8월 배포 자료 사용, 장래 개발계획 반영</li> <li>- 진행 중인 사업과의 분석 일관성 확보</li> </ul>

###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위치	부산시 대저동~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사업규모	도로신설 교량 L=3.0km, B=30m(6차로)	
총사업비(억원)	2,637.00	3,732.48
사업기간	2018년~2024년 (7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국 고) 설계비 100%, 공사비 50% (지방비) 공사비 50%, 보상비 100%	
B/C	-	시나리오 1(승학터널 미반영): 0.99 시나리오 2(승학터널 반영): 1.15
AHP	-	0.510(시나리오 1)

주: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는 2016년 말 가격기준이며, 사업계획서는 2015년 가격기준임.

## 15.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8. 2. 12 ~ 2018. 12. 31
연구진	- KDI 연구진: 장준경, 조문경 - 외부 연구진: 최영진(을지대), 정연호(계명대)
주요 논의사항	- 지자체의 사업 참여 의지 -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연계 기관 확대 및 신규 연계 정보 관련 협의 - 대안 도출의 충분성에 대한 검토 - 차세대 시스템 전환 이후 관리체계에 대한 쟁점 고려 - 적정 편익 항목 설정 및 중복 산정 검토

###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규모	신뢰받는 지방세정 실현을 위한 지능형 지방세 정보체계 구현 - 4대 추진전략, 15개 개선과제, 33개 세부과제 설정 - 국민 납세편의 제고, 지방 세무행정 혁신, 전국 고른 지방세정 발전, 유연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	
총사업비(억원)	3,760.83	3,775.69
사업기간	2019~2026년 (구축 3년, 운영 5년)	
사업주체/재원조달	행정안전부 / 국비·지방비	
B/C	3.3	1.06
AHP	-	0.630

주: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는 2016년 말 기준임.

## 16. 금강남부(2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7. 1. 10 ~ 2018. 12. 31
연구진	- KDI 연구진: 박상준, 박보영 - 외부 연구진: 이주석(한국해양대), 신희섭(한국종합엔지니어링)
주요 논의사항	- 사업의 목표연도와 새만금개발사업의 단계별 검토, 급수체계 조정사업 범위 - 시설계획 적정성 및 지방상수도 계획 및 사업비 검토 - 급수체계 조정수요 및 새만금지역 용수수요 검토

###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변경)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원	
사업규모	개발 물량	103.5천 m <sup>3</sup> /일 (정수: 15.6, 침전수: 87.9)	103.7천 m <sup>3</sup> /일 (정수 : 12.7, 침전수: 91.0)
	소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수 가압장 신설(3개소)</li> <li>- 220.0천 m<sup>3</sup>/일(양정 60m), 84.0천 m<sup>3</sup>/일(양정 30m), 155.0천 m<sup>3</sup>/일(양정 80m)</li> <li>■ 송수관로 신설</li> <li>- L=55.6km(D600 ~ 900m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수 가압장 신설(3개소)</li> <li>- 202.5천 m<sup>3</sup>/일(양정 45m), 72.6천 m<sup>3</sup>/일(양정 30m), 151.9천 m<sup>3</sup>/일(양정 75m)</li> <li>■ 송수관로 신설</li> <li>- L=55.6km(D500 ~ 900mm)</li> </ul>
총사업비(억원)		1,221.90	1,109.34
사업기간		2020~2023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 국고 30%, 한국수자원공사 70%	
B/C		3.11	2.76
AHP		-	0.792

- 주: 1)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2)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는 2015년 말 기준임.  
 3) 총사업비 단위는 백만원이며, 소수점 이하는 제시하지 않음.  
 4) B/C는 소수점 둘째 자리, AHP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제시.

## 17. 고덕8단지 임대주택 정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7. 9. 18 ~ 2018. 12. 31
연구진	- KDI 연구진: 정용관, 박보영 - 외부 연구진: 최용석(경희대), 황현명(투에이치엠건축사사무소)
주요 논의사항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의 적정성 및 재건축 가능성 검토 - 사업계획과 총사업비 적정성 검토 및 사업 미시행 시의 기술적 검토와 비용 추정 - 공무원 임대주택 수요 추정 및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의 가정

###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변경)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307번지	
사업규모	부지면적: 57,723.50㎡ (실사용 면적: 51,428.82㎡) 연면적: 186,045.0㎡(지상: 138,935.05㎡, 지하: 47,110.00㎡)	
총사업비(억원)	2,625.11	2,663.64
사업기간	2018~2024년	
사업주체/재원조달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전액국고(공무원연금)	
B/C	1.00	1.19
AHP	-	0.571

- 주: 1)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2)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는 238,405백만원이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비교함.  
 3)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는 2016년 말 기준임.  
 4) 총사업비 단위는 백만원이며, 소수점 이하는 제시하지 않음.  
 5) B/C는 소수점 둘째 자리, AHP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제시.

## 18.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6. 1. 18 ~ 2018. 12. 31
연구진	- KDI 연구진: 한성민, 사지원 - 외부 연구진: 이준상(성균관대), 임채성(위드엘씨에스(주))
주요 논의사항	- 운영계획에 관한 사업계획 구체화 필요 - 재원분담비율에 관한 구체적 논의 필요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를 통한 계획간 중복성 검토 필요

###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위치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36-1 마포유수지 주차장 부지 (총 부지 30,959㎡, 해당 사업부지 20,059㎡)	
사업규모	○ 연면적: 14,620.9㎡ - 대공연장(728석) 1관 - 중공연장(514석) 1관 - 소공연장(350석) 2관 - 무대지원시설 - 다목적 소강당 - 주차장, 기계/전기실 - 임대시설 등	○ 연면적: 14,620.9㎡ - 대공연장(728석) 1관 - 중공연장(514석) 1관 - 소공연장(350석) 2관 - 무대지원시설 - 다목적 소강당 - 주차장, 기계/전기실 - 임대시설 등
총사업비(억원)	725	914.32
사업기간	2017~2021년	
사업주체/재원조달	지자체(서울시, 마포구) / 국고 50%, 지방비 50%	
B/C	-	4.29
AHP	-	0.571

- 주: 1)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2) 총사업비는 용지보상비(20,079백만원)를 포함한 금액이며, 부지는 마포구 소유 부지이므로 실제 발생하는 비용은 아님.  
 3)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는 2014년 말 기준임.  
 4) 총사업비 단위는 백만원이며, 소수점 이하는 제시하지 않음.  
 5) B/C는 소수점 둘째 자리, AHP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제시

## 19. 산재모병원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1. 1 ~ 2018. 6. 30
연구진	- KDI 연구진: 정용관, 이주영 - 외부 연구진: 이준상(성균관대학교), 임진우(㈜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주요 논의사항	- 규모의 적정성 검토 - 진료권 설정 검토 - 산업재해병원의 공공병원 및 모병원으로서의 역할 검토 - R&D 기능 수행 검토

###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100 (UNIST 캠퍼스 부지)	
사업규모	- 부지: 101,390㎡, 건축연면적: 40,019㎡ - 200병상 규모의 산재모병원 건립	
총사업비(억원)	1,715.42	1,775.6
사업기간	2016~2020년	
사업주체/재원조달	고용노동부 / 국고 100%(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B/C	-	0.73
AHP	-	0.304

주: 1)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2)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는 2012년 말 기준임.

## 20.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신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8. 2. 12. ~ 2018. 12. 31.
연구진	- KDI 연구진: 한금용, 이경배 - 외부 연구진: 최창호(전남대), 은동신(이가종합건축)
주요 논의사항	- 시행 및 미시행 대안의 설정 - 수요 추정을 위한 전제 및 가정 - 주요 편익 항목의 설정 및 부수적 효과에 대한 처리 방안

###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0번지 일원	
사업규모	부지면적: 89,485㎡ 연 면 적: 45,264㎡ 주요시설: 해상특송창고, 냉장창고, 경비실, 컨테이너 검색센터, 관리대상화물창고, 이사화물창고, 압수창고 등	
총사업비(억원)	2,044.50	1,136.30
사업기간	2019~21년(3년 간)	
사업주체/재원조달	관세청/전액 국고지원	
B/C	2.81	0.94
AHP	-	0.503

주: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2016년 말 가격기준임.

## 21.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7. 2. 20 ~ 2018. 8. 15
연구진	- 외부위탁사업 - 강무정 센터장(한국정보화진흥원, PM), 정재동 수석연구원(한국정보화진흥원), 임성묵 교수(동국대)
주요 논의사항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범위 밖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검토 - 시스템고도화 관련 비용에 대한 검토 - 기존 시스템 투자비용 절감 및 확인조사 업무량 감소 등 편익항목 적절성 검토 - 사이버행정복지센터의 과업범위 및 운영인력 축소에 대한 검토

###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보시스템 운영 체계 마련</li> <li>월별 확인조사를 통한 복지재정 지킴이 역할 강화</li> <li>온라인 신청접수 확대 및 업무처리지원 강화</li> <li>국민중심의 사회보장체계 기반 마련</li> <li>공공·민간 간 사회보장정보의 효과적인 활용체계 수립</li> <li>미래 환경 변화에 유연한 구조 재설계</li> </ul>	
총사업비(억원)	3,769	3,560
사업기간	2019년 ~ 2026년 (구축 3년, 운영·유지보수 5년)	
사업주체/재원조달	보건복지부 / 국고 100%	
B/C	-	1.09
AHP	-	0.630

- 주: 1)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2)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는 2015년 말 가격기준임.  
 3) 운영·유지보수비는 시스템 구축 후, 5년간(2022년~2026년) 비용  
 4) 사업계획서는 변경안을 적용(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720(2017.12.01.))



## 22. 대산임해산업지역 공업용수도(해수담수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7. 1. 10 ~ 2018. 3. 9
연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DI 연구진: 이원석, 오승연</li> <li>- 외부 연구진: 조창익(한림대), 김양섭((주)우리엔지니어링)</li> </ul>
주요 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를 고려한 안정적인 해수 취수·방류지점 검토</li> <li>- 농축수의 직접방류로 인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검토</li> <li>- 수요추정 방법론 및 설문조사 보완</li> <li>- 비용 추정 시 유사사례 실적 자료 활용의 한계</li> <li>- 막교체비 및 전력비의 적정 비용 산출 검토</li> </ul>

###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검토안	대안
사업위치	충남 서산시 대산임해산업지역		
사업규모	100천 m <sup>3</sup> /일 (해수담수화시설 1식, 관로 12.7km(D1,500~500mm) 등)		100천 m <sup>3</sup> /일 (해수담수화시설 1식, 관로 14.67km(D1,500~400mm) 등)
총사업비(억원)	2,200.00	2,312.47	2,305.64
사업기간	2017~2019년(3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 및 K-water/ 국토교통부 30%, K-water 70%		
B/C	1.02	0.97	0.98
AHP	-	-	0.562

주: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는 2015년 말 기준임.

## &lt;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gt;

## 1. 평택북부경찰서 신축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8. 5. 18 ~ 2018. 11 18
연구진	- KDI 연구진: 최승안, 박지영 - 외부 연구진: 이정철(무영건축)
주요 논의사항	- 적정 인원에 대한 검토 - 부지 규모 검토에 대한 대안 설정

##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검토안	대안
사업위치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 신도시 개발지구		
사업규모	부지 18,029㎡ 연면적 13,243㎡	부지면적 : 18,029㎡ 연면적 : 10,818㎡	부지면적 : 14,928㎡ 연면적 : 10,818㎡
총사업비(억원)	59,445	57,347	52,322
사업기간	2019~2023년		
사업주체/재원조달	경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 국고 100%(국유기금)		
B/C	-	-	
AHP	-	-	

주: 1)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총사업비는 2017년 말 가격 기준임.

2) 검토안: 검토안은 사업계획안의 규모를 동일하게 적용하되 중복 및 오류 계상된 부분과 비용을 재산정한 결과임.

대안: 부지규모 조정에 따른 비용을 재산정한 결과임.

## 2. 경기 북부구치소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6. 9. ~ 2018. 3.
연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DI 연구진: 정민웅, 서영웅</li> <li>- 외부 연구진: 임채성(위드씨엘에스(주))</li> </ul>
주요 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래미결수 수감인원에 대한 예측</li> <li>- 법무시설규칙에 제시되지 않은 소요시설 검토</li> <li>- 공용면적 및 단가 적용 사례의 비일관성</li> </ul>

###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요구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검토안	대안
사업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교도소 부지 내		
사업규모	부지면적 : 869,592㎡ 연면적 : 42,351.8㎡	부지면적 : 777,525㎡ 연면적 : 38,523.8㎡	
총사업비(억원)	1,195	1,294	1,142
사업기간	2017~2022년		
사업주체/재원조달	법무부 / 국고 100%		

- 주: 1) 부가가치세 포함.  
 2) 사업계획안 금액은 항목별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제출되어 구분하였음.  
 3)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당초 사업계획안에 미포함.
- 자료: 1) 법무부 1차 답변자료(2016.11.)  
 2) 법무부 2차, 3차 답변자료(2017.2.)

### 3. 전주 공공하수처리시설(4단계) 증설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7. 3. 27 ~ 2018. 10. 31
연구진	- KDI 연구진: 이원석, 사지원 - 외부 연구진: 김용운((주)건화)
주요 논의사항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상의 계획인구 및 계획하수량 적정성 검토 필요 - 도시기본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사회적 유입인구 타당성 검토 필요 - 4단계 증설용량의 적정성 검토 필요

####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검토안	대안
사업위치	전주시 고내천변로 58 일원		
사업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Q=49,000m <sup>3</sup> /일 증설	공공하수처리시설 Q=49,000m <sup>3</sup> /일 증설	공공하수처리시설 Q=36,000m <sup>3</sup> /일 증설
총사업비(억원)	1,030	963.81	804.25
사업기간	2017~2021년		
사업주체/재원조달	전주시 / 전주시하수도특별회계		
B/C	-	-	-
AHP	-	-	-

- 주: 1)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총사업비는 예비비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2)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총사업비는 2016년 말 가격기준임.  
 3)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총사업비 단위는 백만원이며, 소수점 이하는 제시하지 않음.  
 4)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검토안(49,000m<sup>3</sup>/일)은 사업규모를 사업계획안(49,000m<sup>3</sup>/일)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비용을 재산정, 대안(36,000m<sup>3</sup>/일)은 사업규모와 비용을 재산정함.

#### 4.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6. 9. 19 ~ 2018. 6. 30
연구진	- KDI 연구진: 한금용, 이주영 - 외부 연구진: 성기택(㈜위드종합건축사사무소)
주요 논의사항	- 기존 운영 및 인프라 현황과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규모와 비용 재추정 - 사업계획을 통한 사업목적 달성 여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검토 - 음압병실, 중환자실 등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적정 기준 단가 추정

#####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검토안	대안
사업위치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65, 조선대학교병원		
사업규모	연면적: 14,907㎡ (병원 11,133㎡, 주차장 3,774㎡)	연면적: 11,789㎡ (병원 8,423㎡, 주차장 3,366㎡)	
총사업비(억원)	795.94	780.93	677.78
사업기간	2018~2021년		
사업주체/재원조달	(주관부처) 질병관리본부, (수행주체) 조선대학교병원 / 국고 100%		
B/C	-	-	-
AHP	-	-	-

- 주: 1)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2) 총사업비는 2015년 말 기준임.  
 3) 사업계획의 총사업비는 자료를 통해 제시된 총사업비(3개소 × 47,583백만원/개소 = 142,749백만원) 중 1개소에 대한 비용에 누락된 기타투자비(32,011백만원)를 합산한 금액임.

## 5.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6. 9. 19 ~ 2018. 6. 30
연구진	- KDI 연구진: 조숙진, 사지원 - 외부 연구진: 김창원((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주요 논의사항	- 국립중앙병원의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및 사업대상 부지의 확정 필요 - 총사업비에 대한 세부 산정 근거(100병상에 대한 필요시설 및 면적) 제시 필요 - 사업 운영인력에 대한 검토 필요

###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검토안	케이스1	케이스2
사업위치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부지 27,857㎡ 예정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대상 부지 69,575㎡와 더불어 추가 부지 매입하여 건립)			
사업규모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100병상 (일반 80, 중환 16, 고도 4), 감염병 전문 외래 진찰실, 수술실 등 구축 연면적 39,125㎡	39,126㎡	32,924㎡	34,709㎡
총사업비(억원)	2,296	2,174	1,952	2,029
사업기간	2017~2020년			
사업주체/재원조달	보건복지부 / 전액 국고(국민건강증진기금)			
B/C	-	-	-	-
AHP	-	-	-	-

- 주: 1)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총사업비는 예비비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2)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총사업비는 2015년 말 가격기준임.  
 3)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총사업비 단위는 백만원이며, 소수점 이하는 제시하지 않음.  
 4)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검토안은 사업규모를 사업계획안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비용을 재산정, 케이스1, 2는 면적 산출 방식의 차이로 구분하여 산정함.  
 5)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케이스1은 병동 및 진료지원부 면적을 병상당 면적과 추가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교육연구부 최소 면적과 마산의료원의 BSL3 연구소 면적을 추가한 방법임.  
 6)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케이스2 병동부는 서울시 감염병 전문센터 보고서를 활용하여 단위면적을 수정하고, 외래부 및 지원부는 유사규모 일반 병원 사례 평균과 비교하여 면적을 산정, 교육연구부와 BSL3 연구소는 케이스1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 방법임.

< 타당성재조사 >

**1.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6. 09. ~ 2018. 01.
연구진	- KDI 연구진: 김세용, 박재민 - 외부 연구진: 유정훈(아주대), 이상훈(대륜엔지니어링)
주요 논의사항	- 교차로 형식변경에 따른 서비스수준 산정의 적정성 - 횡단변경에 따른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 교통분석 기초자료의 수정 검토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분	현행안 2006. 06 <sup>1)</sup>	요구안 2016. 12 <sup>1)</sup>			타당성재조사 2017. 07 <sup>1)</sup>
		당초 2015.11	변경 2016.12	변경 2017.07	
사업위치	제주시 봉개동~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사업규모	- 연장 L=4.22km, B=24.0~25.0m (4차로) - 교량 6개소(293m), 교차로 3개소 (입체 2, 평면 1)	- 총연장 L=4.02km, B=21.0m(4차로) - 교량 4개소(203m) - 교차로 3개소(평면 3)			
총사업비 <sup>2)</sup> (억원)	79,100	95,407	106,020	82,256	81,627 (82,023)
사업기간	2014~2020년				2016~2020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공사비 및 보상비(국고 100%)				
BC	-	-	-	-	1.12
AHP	-	-	-	-	0.622

- 주: 1) 사업비 산출가격 기준일임.  
 2) 사업계획 제시일임.  
 3) ( )안 금액은 기투입비용임.  
 4)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5) 사업비 단위는 백만원이며, 소수점 이하는 제시하지 않음.  
 6) B/C는 소수점 둘째 자리, AHP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제시

## 2. 원주천댐 건설 타당성재조사

###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6. 12. ~ 2017. 12.
연구진	- KDI 연구진: 최승안, 박재민 - 외부 연구진: 김병식(강원대), 김태형(아람코퍼레이션(주))
주요 논의사항	- 원주시가 위치한 원주천 유역의 홍수피해 방지로 인명 및 재산보호 검토

###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분	현행안	요구안	타당성재조사	
			경제성장을 미반영	경제성장을 반영
사업위치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일원			
사업규모	- 총저수량: 1.8백만m <sup>3</sup> (유역면적 7.5km <sup>2</sup> , 저수면적 0.13km <sup>2</sup> ) - 댐규모: 높이 50m×길이 265m (콘크리트 중력식댐)			
총사업비(백만원)	48,550	58,743	66,151	
사업기간	2014~2020년(7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공사비 및 보상비(국고 100%)			
BC	-	-	1.30	2.12
AHP	-	-	0.668	0.719

- 주: 1)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2) 타당성재조사의 총사업비는 2015년 말 가격기준임.  
 3) 타당성재조사의 총사업비는 기 투입비용 포함금액  
 4) B/C는 소수점 둘째 자리, AHP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제시.  
 5) 총사업비 단위는 백만원이며, 소수점 이하는 제시하지 않음.



### 3. 부산북항 재개발 배후도로 건설 타당성재조사

####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6. 12. ~ 2017. 12.
연구진	- KDI 연구진: 김세용, 김중태 - 외부 연구진: 이승재(서울시립대학교), 김석희(진우엔지니어링코리아)
주요 논의사항	- 가시설 계획, 사토장 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 부산북항 재개발지구 반영한 존세분화 수행 - 시점부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여부에 따른 시나리오 설정

####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분	현행안	요구안	타당성재조사 2015. 12 <sup>1)</sup>	
	2006. 12 <sup>1)</sup>	2015. 12 <sup>1)</sup>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사업위치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부산항 1부두배면)~동구 초량동(부산항 4부두배면)			
사업규모	상부도로 L=1.98km(B=50~60.0m) 지하차도 L=1.87km(B=19.3m)			
사업기간	2012~2020년			
총사업비(억원)	1,047	2,266 (2,314)	2,187 (2,234)	2,202 (2,249)
B/C	-	-	1.01	1.10
AHP	-	-	0.488	0.527

주: 1) 사업비 산출가격 기준일임.

2) 괄호 안은 기 투입비용 포함 금액임.

3)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4) 사업비 단위는 백만원이며, 소수점 이하는 제시하지 않음.

5) B/C는 소수점 둘째 자리, AHP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제시

6) 시나리오1은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미시행, 시나리오2는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 시로 설정함.

### 4. 계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타당성재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7. 04. ~ 2018. 06.
연구진	- KDI 연구진: 이원석, 박재민 - 외부 연구진: 강부식(단국대), 김태형(아람코퍼레이션(주))
주요 논의사항	- 계양천변 저류지의 규모축소 및 테리IC 저류지 설치계획의 당위성 확인 - 편익산정을 위한 침수면적 확인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분	현행안 2008.12. <sup>1)</sup>	요구안 2016.12. <sup>1)</sup>	타당성재조사 2016.12. <sup>1)</sup>					
			대안1		대안2		대안3	
			경제성 장울 미반영	경제성 장울 반영	경제성 장울 미반영	경제성 장울 반영	경제성 장울 미반영	경제성 장울 반영
사업위치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일원(계양천 유역)							
사업규모	•계양천 천변저류지 (303,000m <sup>2</sup> )	•계양천 천변저류지(140,000m <sup>2</sup> ) •테리 천변 저류지 (14,700m <sup>2</sup> ) •하도준설(L=1.025km)	•계양천 천변저류지(155,000m <sup>2</sup> ) •하도준설(L=1.025km)	•계양천 천변저류지(140,000m <sup>2</sup> ) •하도준설(L=1.025km)				
총사업비(백만원)	49,500	79,235 (96,937)	102,312 (121,784)	103,692 (123,164)	98,852 (118,324)			
사업기간	2012~2020년(7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경기도)/국고 60%, 지방비 40%							
BC	-	-	1.26	2.06	1.26	2.05	1.31	2.13
AHP	-	-	-	-	-	-	0.570	0.624

주: 1) 사업비 산출가격 기준일  
 2) 괄호 안은 기 투입비용 포함 금액임.  
 3)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4) 사업비 단위는 백만원이며, 소수점 이하는 제시하지 않음.  
 5) B/C는 소수점 둘째 자리, AHP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제시.  
 6) 대안1은 요구안의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대안2는 테리IC저류지를 삭제한 안이며, 대안3은 테리IC저류지를 삭제하되 해당부지 및 용량만큼을 계양저류지에서 분담하도록 설정함.  
 7) AHP는 대안3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 5. 동광주~광산 고속도로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7. 05. ~ 2018. 12.
연구진	- KDI 연구진: 양인석, 최흥빈 - 외부 연구진: 이청원(서울대), 서금열(대한건설ENG)
주요 논의사항	- 방음벽 등 사업비 증가요인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 기존 수요예측 결과와 비교 분석

####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분	현행안 2011.12. <sup>1)</sup>	요구안 2016.10. <sup>1)</sup>	타당성재조사 2016.12 <sup>1)</sup>
사업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 북구 문흥동		
사업규모	총연장 10.8km(4→6차로 확장, 출입시설: 6개소)		
총사업비 <sup>2)</sup> (억원)	2,762	4,192 (4,229)	3,994 (4,031)
사업기간	2014~2023년		
사업주체/재원조달	- 사업주체: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 재원조달 · 공사비: 광주시 50%, 국가 50%(국고 40%, 한국도로공사 60%) · 용지비: 광주시 50%, 국가 50%(국고 100%)		
BC	0.96	0.76	0.95
AHP	0.517	-	0.506

주: 1) 사업비 산출가격 기준임.

2) 괄호 안은 기 투입비용 포함 금액임.

3)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 6.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사업 타당성재조사

###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8.04. ~ 2018.08.
연구진	- KDI 연구진: 장준경, 오승연 - 외부 연구진: 이주석(한국해양대), 한균(비콘힐)
주요 논의사항	- 사업 추진 단계를 고려한 조사의 수준 - 건립 인허가 및 건축제한규정 검토 및 시설규모 적정성 검토 - 총사업비 추정 방법론 - 수요 및 편익 산정의 방법론

###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분	현행안	요구안 2019 <sup>1)</sup>	타당성재조사 2017. 12 <sup>1)</sup>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산5-5		
사업규모	부지면적	5,695m <sup>2</sup>	3,656m <sup>2</sup>
	연면적	6,200m <sup>2</sup>	9,000m <sup>2</sup>
총사업비 <sup>2)</sup> (억원)	364.17	482.90	555.91 (557.92)
사업기간	2017 ~ 2020년 (2020년 개관)	2017 ~ 2021년 (2021년 개관)	
사업주체/재원조달	국가보훈처/국고 100%		
BC	-	-	8.13
AHP	-	-	0.631

주: 1) 사업비 산출가격 기준임.

2) 괄호 안은 기 투입비용 포함 금액임.

3) 본 사업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도서의 수준상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활용이 가능한 단계'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예비비를 공사비, 용지보상비, 시설부대경비, 기타비용의 합이 10%를 적용함.

4)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1.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 추진경위

사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의2(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6.06. ~ 2017.12.
연구진	- KDI 연구진: 정용관, 이경배 - 외부 연구진: 박덕규(목원대), 송기홍(동의과학대)
주요 논의사항	- 재검토의 범위와 결과의 의미 - 고정 커버리지 내에서 통신 수준을 달리할 때 요구되는 고정기지국 수 검토 - 비용 추정의 한계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분	요구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사업계획	수정안		
사업 규모	커버리지	국토면적 대비 40.5%		
	기지국	- 고정기지국: 15,447개(RU 기준) - DU 2,322개, 중계기(신규) 2,080개 구축 - 이동기지국: 310식		
	단말기	243,823대	241,614대	239,118대
	운영센터	- 제1 운영센터 - 수도권 및 충청 7개 시도 - 단말기 13만여 대 - 제2 운영센터 - 기타 10개 시·도 - 단말기 11만여 대	- 제1 운영센터 - 5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 강원, 세종) - 제2 운영센터 - 12개 시·도(대전, 광주,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총사업비(억원)	19,611	19,576	17,018	
사업기간	2016~2019년(2016년: 시범사업; 2017~2019년: 1, 2, 3단계 구축)			
사업주체/재원조달	행정안전부 / - 단말기 비용을 제외한 총사업비는 국비 조달을 계획함. - 단말기 비용 중 소방(지방)과 지자체는 5:5의 비율로 국비와 지방비를 조달함. - 전기와 가스 분야의 단말기는 민간비용으로 조달함.			

주: 1)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2016년도 기준임.  
2)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는 예비비 10%가 포함됨.  
3) '수정안'은 재검토 중 연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주무부처가 제출한 사업물량과 사업비를 의미함.

## 2. 원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1) 추진경위

사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의2(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6. 11. ~ 2017. 12.
연구진	- KDI 연구진: 성철식, 박보영 - 외부 연구진: 임채성(위드엘씨에스)
주요 논의사항	- 사업대상지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용지보상비 산정 등) - 시설규모의 적정성 검토(요구안의 면적 적정성 등) - 총사업비 조정요구 비용의 적정성 검토

###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분	현행안	요구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sup>1)</sup>
사업위치	강원도 원주광역시 우물시장길 58(봉산동) 일원		
사업규모	부지면적	196,629m <sup>2</sup>	
	시설면적	41,321.6m <sup>2</sup>	42,880.5m <sup>2</sup>
총사업비(억원)	114,037	140,060	130,608
사업기간	2014~2019년		
사업주체/재원조달	법무부 / 국고 100%		

주: 1) 현행안은 2013년 말 가격기준이며, 요구안은 기본설계 결과반영에 따른 공사비 조정요구임을 고려할 때 기본설계 기준시점인 2015년 말 가격기준임.

2)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총사업비는 2015년 말 가격기준임.

3) 용지보상비는 원주시와 위·수탁 협약에 체결(2014)된 점을 고려하여 현행안, 요구안과 동일함.

4) 설계비는 계약이 체결(2015.11)되어 기본설계가 완료된 점을 고려하여 현행안, 요구안과 동일함.

5) 본 재검토에서는 본 사업의 추진단계를 고려하여 별도의 예비비를 반영하지 않음.

6)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시설부대경비의 부가가치세는 계약이 체결된 설계비를 제외하고 산정함.

7) 사업비 단위는 백만원이며, 소수점 이하는 제시하지 않음.

**3. 전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용진~우아) 건설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 추진경위

사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의2(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7. 05. ~ 2018. 01.
연구진	- KDI 연구진: 성철식, 서승호 - 외부 연구진: 조완형(다산컨설팅)
주요 논의사항	- 터널 공사비에 대한 수량 및 단가산출 검토 - 설계속도 80km/h의 2차로 도로에 대한 공용속도 검토 및 도로폭 검토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분	사업계획(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사업위치	전라남도 광양항 특정해역 입항항로 및 깊은수심항로		
사업규모	L=11.7km 2차로 B=12.5m	L=10.2Km, 소교량 8개소, 장대교 5개서, 터널 2개소(2,556m), 지하차도 1개소, 설계속도 80Km/h	
총사업비(억원)	2,011.65	2,185	2,025
사업기간	2005년~2025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자체 조달 100%		

주: 1)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총사업비는 2016년 말 가격 기준임.  
2) 본 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으로 예비비 0%를 적용함.

#### 4. 국지도58호선(송정~문동) 건설공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1) 추진경위

사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의2(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6. 02. ~ 2018. 01.
연구진	- KDI 연구진: 우지원, 박재민 - 외부 연구진: 이상화((주)진우엔지니어링)
주요 논의사항	- 요구안의 노선계획 적절성 검토 - 비용추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

#####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분	요구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안 1	대안 2
사업위치	경상남도 거제시 여초면 송정리 ~ 거제시 문동동		
사업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장 5.77km</li> <li>•폭원 20.0m</li> <li>•교량11개소 1,745m</li> <li>•터널4개소 4,231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장 5.77km</li> <li>•폭원 20.0m</li> <li>•교량11개소 1,635m</li> <li>•터널5개소 4,511m</li> </ul>	
총사업비(백만원)	274,033 (280,224)	273,649 (279,840)	269,618 (275,809)
사업기간	2013~2022년	2018~2023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 / 국고 70%, 지방비 30%(경남도청, 거제시청 분담)		

- 주: 1)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총사업비는 2016년 12월 가격기준임.  
 2) 현행안은 2012년, 요구안은 2016년 가격기준임.  
 2)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3) 괄호 안은 기 투입비용 포함 금액임.  
 4) 사업비 단위는 백만원이며, 소수점 이하는 제시하지 않음.  
 5) 본 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으로 예비비 0%를 적용함.



## 5.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1) 추진경위

사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의2(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7. 11. ~ 2018. 06.
연구진	- KDI 연구진: 한금용, 김수정 - 외부 연구진: 이현범(글로벌엔지니어링), 안익장(헤인이앤씨)
주요 논의사항	- 전력지중화의 경제적 효과 등의 검토를 통해 지중화 계획과 비용의 적정성 검토 - 미착공 3개 공구 계획 및 비용의 적정성 검토

###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분	요구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안 1		대안 2		대안3	
사업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원(1도 2시 1군)						
사업규모	· 전력지중화 사업(방수제 62.1km 및 농생명용지 9,430ha) · 농생명용지(2공구 조성공사, 3공구 매립공사, 6-1공구 조성공사)						
총사업비(억원)	4,122	대안1-1	4,662	대안2-1	4,390	대안3-1	4,023
		대안1-2	4,552	대안2-2	4,281	대안3-2	3,913
사업기간	2009~2020년						
사업주체/재원조달	농림축산식품부 / 국고 100%						

- 주: 1)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2016년 말 가격기준임.  
 2) 총사업비의 검토 범위는 전력지중화부문 한전납입금과 농생명용지 미착공 3개공구임.  
 3) 전력공급방식과 농생명용지 규모 검토 결과 반영에 따른 설정(전력지중화, 부분지중화, 전면 가공화에 따라 대안 1, 대안 2, 대안 3으로 구분하였으며 농생명용지 미착공공구 3개공구는 단가 수정(물가 반영)한 대안 1, 단가와 규모 검토 결과를 모두 반영한 대안 2로 설정하였으며 두 개 부문을 종합하여 대안 1-1, 대안 1-2 등으로 설정함.  
 4) 제시된 총사업비는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 6. 파주 무대공연 종합아트센터 건립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1) 추진경위

사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의2(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7. 11. ~ 2018. 08.
연구진	- KDI 연구진: 박상준, 오승연 - 외부 연구진: 성기택((주)위드종합건축사사무소)
주요 논의사항	- 국고지원의 적정성 - 시설 이용대상의 범위 및 시설규모 적정성 검토 - 부지면적의 적정성 검토 - 총사업비 누락비용에 대한 검토

###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분	요구안 2015. 12 <sup>1)</sup>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016. 12 <sup>1)</sup>	
		대안 1	대안 2
사업위치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31		
사업규모	부지면적 : 50,000m <sup>2</sup> 연면적 : 14,228m <sup>2</sup>	부지면적 : 50,000m <sup>2</sup> 연면적 : 13,403m <sup>2</sup>	부지면적 : 38,000m <sup>2</sup> 연면적 : 11,954m <sup>2</sup>
총사업비(억원)	382.05	409.33	363.23
사업기간	2017 ~ 2020년		
사업주체/재원조달	문화체육관광부 / 국고 100%		

주: 1) 사업비 산출가격 기준임.

2) 본 사업은 '사업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이전단계'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단계에 따라 사업단계별 예비비를 차등 적용함(10%).

3)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4) 대안 1은 요구안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공용면적만 재산정한 안이고, 대안 2는 시설규모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재산정된 면적을 적용한 안임.

5) 대안 2는 부지면적 적정성 검토에 따른 여유 부지를 제외한 면적임.

## 7. 안성~구리 고속도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1) 추진경위

사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의2(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7. 12. ~ 2018. 04.
연구진	- KDI 연구진: 홍성필, 박재민 - 외부 연구진: 서금열(대한건설이엔지)
주요 논의사항	- 금어JCT 추가설치, 졸음쉼터 설치 등 시설물의 설치계획 적정성 검토 - 비용추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

###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분	요구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안 1	대안 2	대안3
사업위치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장죽리			
사업규모	금어JCT, 원삼IC, 모현IC, 원삼 졸음쉼터, 양지 졸음쉼터	금어JCT, 원삼IC, 모현IC, 원삼 졸음쉼터, 양지 졸음쉼터	금어JCT, 원삼IC, 양지 졸음쉼터	금어JCT, 원삼IC, 원삼 졸음쉼터
총사업비(백만원)	198,022	210,346	120,850	110,685
사업기간	2008~2022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 / 국고 100%			

- 주: 1)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2) 현행안의 경우 요구안에 대한 비교대상 시설물이 없으므로 공란처리함.  
 3)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총사업비는 2017년 말 가격기준임.  
 4) 본 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으로 예비비 0%를 적용함.  
 5) 사업시설물의 포함여부에 따라 대안을 설정함(대안1은 금어JCT, 원삼 및 모현IC, 원삼 및 양지 졸음쉼터 등 5개시설을 포함하였으며, 대안2는 금어JCT, 원삼IC, 양지졸음쉼터 3개시설을 포함하였고, 대안3은 금어JCT, 원삼IC, 원삼졸음쉼터 3개시설을 포함).

## 8.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김포~파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1) 추진경위

사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의2(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7. 12. ~ 2018. 06.
연구진	- KDI 연구진: 우지원, 최영은 - 외부 연구진: 동성엔지니어링 김성호 부사장
주요 논의사항	- 한강 통과구간(하저터널)에 대한 적정 시설규모 및 사업비 - 나들목 추가 설치에 대한 적정성 검토 - 군사시설 공사비

###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분	요구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사업위치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사업규모	L = 25.52 km, 4차로(B=23.4 m)	
총사업비(억원)	1조7,330.42	1조7,142.61
사업기간	2009~2023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 / 한국도로공사	

주: 총사업비는 용지보상비와 기투입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 9. 홍보지구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1) 추진경위

사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의2(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8. 02. ~ 2018. 12.
연구진	- KDI 연구진: 박상준, 최홍빈 - 외부 연구진: 장성순(천마기술단)
주요 논의사항	- 미착공공구(천북·은하) 총사업비 조정 요구 비용의 적정성 검토 - 수혜면적 관련 기술적 검토

###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분	요구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안 1	대안 2
사업위치	- 충남 홍성군 홍성·광천읍, 서부·결성·구항·장곡·은하·홍동·갈산면 - 보령시 오천·천북·청소·주포·주교면 (14개 읍·면)		
사업규모	- 개발면적: 8,100ha - 방조제 3조 2.9km, 배수갑문 2개소, 양수장 6개소, 용수로 365km 등		
총사업비(억원)	6,299	6,348	6,235
사업기간	1991~2018년	1991~2025년	
사업주체/재원조달	한국농어촌공사/국고 100%		

## &lt; 설계의 적정성 검토 &gt;

**1.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건설사업 설계의 적정성 검토**

## 1) 추진경위

사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57조 제1항(설계의 적정성 검토)
----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6. 11. ~ 2018. 01.
연구진	- KDI 연구진: 여흥구, 박상준, 박용덕 - 외부 연구진: 한중수(삼보기술단)
주요 논의사항	- 역사신설(4개소) 및 노선 연장 등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 사업비 검토 - 역사신설(4개소)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분	요구안	설계의 적정성 검토
사업위치	경기도 과천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일원	
사업규모	복선전철 33.278km (본선 복선 신설 30.709km, 인입선 단선 신설 2.569km) 정거장 : 13개소(신설 13개소, 서동탄역 활용)	
총사업비(억원)	28,570.45	-
사업기간	2015 ~ 2021년(7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 / 국고 100%	

## 2.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설계의 적정성 검토

### 1) 추진경위

사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57조 제1항(설계의 적정성 검토)
----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7. 7. ~ 2018. 4.
연구진	- KDI 연구진: 박상준, 최홍빈 - 외부 연구진: 이성모(서울대), 전찬석(피토우컨설팅트)
주요 논의사항	- 오정역 신설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 - 토공물량 증가 등에 대한 총사업비 증가의 적정성 검토

###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분	요구안	설계의 적정성 검토
사업위치	충청남도 계룡시(계룡역)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신탄진역) 일원	
사업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룡~신탄진 35.35km 철도건설사업</li> <li>· 조차장~회덕 복선 신설(2복선화) 4.15km</li> <li>· 회덕~신탄진 단선 신설 5.82km</li> <li>- 정거장 : 12개소(기존활용 6개소)</li> </ul>	
총사업비(억원)	요구안 2,358억원 중 오정역 신설 관련 증가분 105억원, 토공물량 관련 증가분 214억원 대상	
사업기간	2015년~2021년	2015년~2022년
사업주체/재원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체: 국토교통부</li> <li>- 재원조달</li> <li>· 공사비 및 부대비: 국고 70%, 지자체 30%</li> <li>· 대전 1호선 용두역(환승역): 지자체 100%</li> <li>· 오정역 : 국고 70%, 지자체 30%</li> </ul>	

### 3. 부산~울산 복선전철 설계의 적정성 검토

#### 1) 추진경위

사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57조 제1항(설계의 적정성 검토)
----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7. 9. ~ 2018. 3.
연구진	- KDI 연구진: 홍성필 박재민 - 외부 연구진: 신동원((주)삼보기술단)
주요 논의사항	- 기존역 개보수 후 광역역사 연결 증축(안)과 기존역을 철거한 후 통합신축하는 방안의 기술적 검토

####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분	요구안	설계의 적정성 검토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울산광역시 남구 중 울산 태화강역사	
사업규모	태화강역사(일반철도) 신축	
총사업비(억원)	요구안 전체 총사업비 통합증축 20,556백만원, 통합신축 23,472백만원 요구안 전체 총사업비 통합증축 20,556백만원, 통합신축 22,330백만원	
사업기간	2003년~ 2019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 / 국고 100%	



#### 4.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설계의 적정성 검토

##### 1) 추진경위

사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57조 제1항(설계의 적정성 검토)
----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8. 1. ~ 2018. 3.
연구진	- KDI 연구진: 유재광, 오승연 - 외부 연구진: 홍성천(서현기술단)
주요 논의사항	- 백담정거장(신호장) 신설의 적정성 검토

#####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분	요구안	설계의 적정성 검토
사업위치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일원	
사업규모	- 총 연장(단선, 92.52km) - 정거장 : 6개소 (신설 5개소, 춘천역 활용) - 차량기지 : 기존 경춘선 평내차량기지 활용 - 구조물 : 토공 8.80km, 교량 3.41km, 터널 77.07km, 정거장 3.24km	
총사업비(억원)	20,992	-
사업기간	2016 ~ 2024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 / 국고 100%	

## 5. 중앙선(도담~영천) 복선전철사업(영주역사) 설계의 적정성 검토

### 1) 추진경위

사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57조 제1항(설계의 적정성 검토)
----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8. 4. ~ 2018. 11.
연구진	- KDI 연구진: 박상준, 최홍빈 - 외부 연구진: 라정균(동부엔지니어링)
주요 논의사항	- 기본계획상 영주역사를 신축으로 변경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개보수안과 신축안 등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 사업비 검토

###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분	요구안	설계의 적정성 검토
사업위치	충북 단양군, 경북 영주시, 안동시, 의성군, 군위군, 영천시 일원	
사업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담~영천간 149km</li> <li>· 복선 L=77km(영주담이설 10.4km 포함)</li> <li>· 단선 L=71km</li> <li>- 정거장 9개소, 신호장 5개소</li> </ul>	
총사업비(억원)	요구안 37,635억원 중 영주역사 신설 관련 증가분 222억원 대상	
사업기간	2011년 ~ 2020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한국철도시설공단)/국고 100%	

## 6. 새만금~전주 고속도로[5공구 중인동 구간] 설계의 적정성 검토

### 1) 추진경위

사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57조 제1항(설계의 적정성 검토)
----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8. 3. ~ 2018. 7.
연구진	- KDI 연구진: 여흥구, 김정아 - 외부 연구진: 정훈(우성디앤씨)
주요 논의사항	-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5공구 노선변경에 따른 적정사업비 산출

###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분	요구안	설계의 적정성 검토
사업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원당동	
사업규모	총연장 : L = 7.10km (B=23.4m, 4차로, 교량 6개소, 터널 1개소)	
총사업비(억원)	공사비 1,005.4억원 보상비 126.5억원	공사비 995.90억원 보상비 160.13억원
사업기간	2010년 ~ 2020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50%) 한국도로공사(50%), 용지비(국고 100%)	

## 제 II 장

### 2018년도 민간투자지원사업 사업별 요약표

---



< BTO (제안서검토) ><sup>20)</sup>

**1. 경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7.4.28. ~ 2018.6.14.
연구진	- KDI 연구진: 최승안, 양봄이
쟁점	- 하수처리구역 변경을 위한 시설물 계획 확인 - 기존 시설물 공용사용에 대한 운영비 적용 기준 검토 - 경산시 전체 수요를 고려한 수요 추정의 적절성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497(대정동)
사업기간	- 2019년 1월 ~ 2021년 6월(착공일부터 30개월) - 2021년 7월 ~ 2041년 6월(20년)
사업규모	- 하수처리시설: 25,000m <sup>3</sup> /일 증설 - 소화조: 133m <sup>3</sup> /일 증설 - 총인처리시설: 25,000m <sup>3</sup> /일 증설 - 부지면적: 기존시설 부지 46,628m <sup>2</sup> 중 8,700m <sup>2</sup> 활용
주무관청	경산시
사업방식	BTO-a
사업제안자 (출자자)	- (가칭)경산맑은물주식회사

3) 조사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

20) 민간투자사업 제안 내용 보호를 위해 제3자 제안공고(안) 고시가 이뤄진 사업에 한해서만 본 장에 수록함.

## 2. 천안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7.5.29. ~ 2018.1.29.
연구진	- KDI 연구진: 조영희, 이지현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미시행 대안 설정</li> <li>- 미시행 대안(기존시설 유지보수 후 계속 가동) 시 편익 항목의 설정</li> <li>- 제안수익률의 적정성</li> </ul>

###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변길 127
사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간 : 2018.11.1.~2022.12.31.(착공일로부터 50개월)</li> <li>- 운영기간 : 준공 후 30년</li> </ul>
사업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개선사업</li> <li>·1,4~5단계 : 통합침사지 신설(133,000m<sup>3</sup>/일)</li> <li>·2단계 유량조정조 개량(80,000m<sup>3</sup>/일)</li> <li>·통합 유량조정조 신설(163,000m<sup>3</sup>/일)</li> <li>·1,2단 PRO-MBR 공법적용(150,000m<sup>3</sup>/일)</li> <li>- 하수처리장 증설 : 23,000m<sup>3</sup>/일</li> <li>- 하수찌꺼기 감량화시설 : 243,000m<sup>3</sup>/일</li> </ul>
주무관청	천안시
사업방식	BTO-a

### 3) 조사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

< BTL (타당성분석 검토) >

**1. 해양경찰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8.04.25 ~ 2018.07.19
연구진	- KDI 연구진: 우지원 전문위원, 구석모 전문연구원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 서귀포시 표선면, 서호동, 제주시 일원 등 4개 지역				
사업기간	- 공사기간: 2020년 5월 1일 ~ 2022년 2월 28일(총 22개월) - 운영기간: 2022년 3월 1일 ~ 2042년 2월 28일(총 20년)				
사업규모	사업유형	시설명	연면적(m <sup>2</sup> )	사업부지	도입시설
	리모델링	대양관 (청사 등)	2,178.90	제주시 건입동 918-25, 18-28	업무시설, 숙소 18실
	리모델링	관사 IV	796.64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1442	16세대
	소 계		2,975.54		
	신축	특공훈련청사	4,504.75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388-1	업무시설, 훈련시설
	신축	관사 I	6,650.14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388-1	관사 60세대, 숙소 10실
	철거/신축	관사 II	6,157.40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091	관사 60세대
	철거/신축	관사 III	2,333.66	제주시 건입동 661-3	관사 24세대
	증축	원룸형숙소 I	1,861.70	제주시 아라1동 2444	숙소 40실
	증축	원룸형숙소 II	1,549.40	서귀포시 서호동 1528	숙소 32실
	소 계		23,057.05		
	합 계		26,032.59		
	총사업비	- 47,417 백만원			
주무관청	- 해양경찰청				
사업방식	- BTL				

3) 조사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



## 2. '19년 부산광역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8.05.02 ~ 2018.07.13
연구진	- KDI 연구진: 이과섭 전문위원, 이용재 연구원

###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변처리구역의 하단처리분구 일원
사업기간	- 공사기간: 2021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총 36개월) - 운영기간: 2024년 1월 1일 ~ 2043년 12월 31일(총 20년)
사업규모	- 분류식 하수관거 61.958km - 배수설비 7,609개소
총사업비	- 77,884백만원
주무관청	- 부산광역시
사업방식	- BTL

### 3) 조사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

### 3. 강릉원주대학교 생활관 BTL사업 타당성분석 검토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8.05.23 ~ 2018.07.19
연구진	- KDI 연구진: 김혜영 전문위원, 안정현 연구원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7 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		
사업기간	- 공사기간: 2020년 7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18개월) - 운영기간: 2022년 1월 1일 ~ 2041년 12월 31일 (20년)		
사업규모	용도	연면적(m <sup>2</sup> )	건물용도
	생활관	10,494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 : 583명)
	철거	8,574	정진관, 예문관
총사업비	- 24,989백만원		
주무관청	- 교육부		
사업방식	- BTL		

3) 조사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

**4. 2019년 국방부 교육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검토**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8.05.23 ~ 2018.08.08
연구진	- KDI 연구진: 성철식 전문위원, 안정현 연구원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 세종시 연기면 일원					
사업기간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1.4개월 이내 - 운영기간: 20년					
사업규모	구분	요구 시설규모(m <sup>2</sup> )				동수
		교육시설	교육생활관	취사식당	위병면회실	
	방공학교 시설	14,146	7,917	2,730	309	4
	계	14,146	7,917	2,730	309	4
	총계	25,102				4
총사업비	- 48,795백만원					
주무관청	- 국방시설본부					
사업방식	- BTL					

3) 조사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

## 5. 육군 방공학교 재조사

###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8.08.14 ~ 2018.08.27
연구진	- KDI 연구진: 성철식 전문위원, 구석모 전문연구원

###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 세종시 연기면 일원				
사업기간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1.4개월 이내 - 운영기간: 20년				
사업규모	구분	요구 시설규모(m <sup>2</sup> )			등수
		교육시설	교육생활관	취사식당	위병면회실
	방공학교 시설	14,000	952	1,051	309
	계	16,312			4
총사업비	- 43,372백만원				
주무관청	- 국방시설본부				
사업방식	- BTL				

### 3) 조사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

## 6. 경찰청 경찰대학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타당성분석 검토

###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8.05.25 ~ 2018.07.30
연구진	- KDI 연구진: 홍성필 전문위원, 이지현 전문연구원

###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황산길 100-50 경찰대학		
사업기간	- 공사기간: 2020년 5월 1일 ~ 2021년 12월 31일(총 20개월) - 운영기간: 2022년 1월 1일 ~ 2041년 12월 31일(총 20년)		
사업규모	구분	주요 도입시설	시설연면적(m <sup>2</sup> )
	국제교류센터	회의(연회)장, 강의실, 식당, PDR, 게스트하우스 등	5,625
	연구강의동	강의실, 연구실, 행정실, 세미나실 등	5,006
	기숙사동	사생실, 지도실, 휴게실, 체력단련장 등	4,150
	합계	3개동	14,780
총사업비	- 34,703백만원		
주무관청	- 경찰청		
사업방식	- BTL		

### 3) 조사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

## 7. 강원도 삼척의료원 이전신축(BTL) 타당성분석 검토

###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8.05.25 ~ 2018.07.13
연구진	- KDI 연구진: 이선정 전문위원, 이용재 전문연구원

###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367-14 일원
사업기간	- 공사기간: 2021.11.01.~2023.10.31.(24개월) - 운영기간: 2023.11.01.~2043.10.31.(20년)
사업규모	- 시설규모: 총 248병상 - 건축연면적 25,494㎡(=병원 22,403㎡+지하주차장 3,091㎡, 85대)
총사업비	- 54,443백만원
주무관청	- 강원도
사업방식	- BTL

### 3) 조사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

### 8. 3차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BTL) 타당성분석 검토

####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8.06.05 ~ 2018.07.30
연구진	- KDI 연구진: 우지원 전문위원, 이지현 전문연구원

####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 사업규모 참고			
사업기간	- 공사기간: 2019년 3월 2일 ~ 2020년 3월 1일(총 12개월) - 운영기간: 2020년 3월 2일 ~ 2040년 2월 28일(총 20년)			
사업규모	구분	정원	연면적(㎡)	대지위치
	101경비단	250	2,7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
	광진경찰서	60	660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4
	금천경찰서	110	1,100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강북경찰서	50	550	대구광역시 북구 동암로 130
	남부경찰서	40	440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107번길
	중부경찰서	60	660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603-1
	시흥경찰서	100	1,100	경기도 시흥시 황고개로 513
	평택경찰서	100	1,100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90-6
	김포경찰서	60	660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95번길 65
	파주경찰서	60	660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771-1
	동두천경찰서	50	550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로 89
	강릉경찰서	70	770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77
	삼척경찰서	50	550	강원도 삼척시 정상로 53
	천안동남경찰서	100	1,1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청수6로 73
	군산경찰서	60	660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 3.1로 82 군산경찰서
	목포경찰서	80	880	전라남도 목포시 동명로 124
순천경찰서	60	660	전라남도 순천시 가곡동 316-1일대	
포항북부경찰서	60	660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 산127-1(경찰청이전부지)	
양산경찰서	60	660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 양산경찰서	
합계	1,470	16,170		
총사업비	- 45,371백만원			
주무관청	- 경찰청			
사업방식	- BTL			

#### 3) 조사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

## 9. 강릉경찰연수원 재건축(BTL) 타당성분석 검토

###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8.06.05 ~ 2018.07.30
연구진	- KDI 연구진: 우지원 전문위원, 이지현 전문연구원

###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 강원도 강릉시 견소동 223-1		
사업기간	- 공사기간: 2020년 3월 6일 ~ 2022년 5월 20일(총 27개월) - 운영기간: 20년		
사업규모	구분	내용	비고
	건축면적	1,704m <sup>2</sup>	건폐율 15.71% 적용
	규모	지상7층, 지하1층	층고 3m적용 시 13~14층 가능 (고도제한 45m이하)
	최대용적	19,400m <sup>2</sup>	용적률 200%, 층고 3m적용 시 13~14층 가능
	지상층 연면적	11,931 m <sup>2</sup>	용적률 110% 적용
	지하층 연면적	4,500m <sup>2</sup>	주차장, 기전실, 부대시설 등
	연면적 합계	16,431 m <sup>2</sup>	
	주차대수	80대	300m <sup>2</sup> 당 1대 X 2.0 적용
	객실수	134실	4인실 (전용37.87(12평형)m <sup>2</sup> )기준
	총사업비	- 46,798백만원	
주무관청	- 경찰청		
사업방식	- BTL		

### 3) 조사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



## 10. 광주과학기술원(BTL) 타당성분석 검토

###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8.06.05 ~ 2018.08.08
연구진	- KDI 연구진: 성철식 전문위원, 안정현 연구원

###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오룡동)		
사업기간	- 공사기간: 2020년 7월 1일 ~ 2021년 12월 31일(총 18개월) - 운영기간: 2022년 1월 1일 ~ 2041년 12월 31일(총 20년)		
사업규모	사업	건물용도	연면적(㎡)
	자연과학동 신축	교수실, 강의실, 실험실(전공, 공동), 학생연구실, 세미나실 등	9,091 (지하 1층, 지상 5층)
	합계		9,091
총사업비	- 20,793백만원		
주무관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방식	- BTL		

### 3) 조사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

## 11. 대구경북과학기술원(BTL) 타당성분석 검토

###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8.06.05 ~ 2018.08.08
연구진	- KDI 연구진: 성철식 전문위원, 안정현 연구원

###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테크노중앙대로 333, DGIST 부지 내		
사업기간	- 공사기간: 2020년 7월 1일 ~ 2021년 12월 31일(총 18개월) - 운영기간: 2022년 1월 1일 ~ 2041년 12월 31일(총 20년)		
사업규모	사업	내용	연면적(m <sup>2</sup> )
	교원사택 신축	전용 60m <sup>2</sup> 20실	9,091 (지하 1층, 지상 5층)
		전용 78m <sup>2</sup> 30실	
		전용 85m <sup>2</sup> 40실	
	합계	90실	9,091
총사업비	- 19,631백만원		
주무관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방식	- BTL		

### 3) 조사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

## 12. 2018년 고시 육군 고성(18)병영 BTL 민자적격성조사 재검증

###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8.08.20. ~ 2018.09.17
연구진	- KDI 연구진: 우지원 전문위원, 구석모 전문연구원

###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00번지 일원 등 3개 지역				
사업기간	- 공사기간: 2020년 3월 1일 ~ 2021년 7월 31일(총 17.1개월) - 운영기간: 2021년 8월 1일 ~ 2041년 7월 31일(총 20년)				
사업규모	요구 시설규모(㎡)	고성 A지역	고성 B지역	고성 C지역	계
	병영생활관	3,738	5,337	5,022	14,097
	취사식당	441	962	709	2,112
	위병면회실	66	66	66	198
	합계	4,245	3,365	5,797	16,407
총사업비	- 40,918백만원				
주무관청	- 국방시설본부				
사업방식	- BTL				

### 3) 조사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

### 제 III 장

## 2018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



**1. 인프라 투자 정책의 동향 및 시사점 연구**  
**- 호주사례를 중심으로 -**

1) 조사 개요 및 추진경위

연구기간	2018. 6 25. ~ 2018. 12. 31.
연구진	- KDI 연구진: 김혜영 전문위원(연구총괄), 송기원 연구원
연구의 목적	- 가치확보(Value Capture)에 대한 최근 호주의 인프라 투자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의 유사 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의 인프라 투자 자원조달 다양화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2) 연구결과

목차	제 I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II 장 인프라 투자 정책과 호주 정부의 기능 제 1 절 인프라 투자 정책 관련 기관과 정책 방향 제 2 절 인프라 투자 관련 자문기구의 현황과 역할 제 III 장 Value Capture 정책과 시사점 제 1 절 개념 및 구체적인 방법 제 2 절 각국의 Value Capture 제 3 절 호주의 Value Capture 정책과 사례 제 4 절 우리나라의 이익 환수 또는 부담금 제도와의 비교 제 5 절 Value Capture 논의의 국내에의 시사점 제 IV 장 종합 결론
연구의 배경 및 범위	- 인프라 투자 정책 관련한 호주 정부의 기능과 역할 • 인프라 투자 정책 관련 기관과 정책 방향 • 인프라 투자 관련 자문기구의 현황과 역할 - Value Capture 정책과 시사점 • 각국의 Value capture(미국, 영국, 홍콩, 호주 등) • 우리나라의 이익 환수 또는 부담금 제도와의 비교
연구 (평가) 방법	- 관련 국내·외 문헌 조사
연구내용 및 결론	- 인프라 투자 정책 관련한 호주 정부의 기능과 역할 • 인프라 투자 정책 관련 기관과 정책 방향 * 인프라 자원 마련과 금융조달의 대체방안 수립을 광범위하게 제시 * 인프라 자원 마련을 위한 funding으로서 Betterment Levy 방안을 사용할 것과 TIF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 인프라 투자 관련 자문기구(Infrastructure Australia 및 IPFA)의 현황과 역할

	<p>-Value Capture 정책과 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국의 Value capture(미국, 영국, 홍콩, 호주 등) 제도는 정부가 인프라 투자자로서 합리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노력으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의 지향점은 우리나라의 정부의 정책 결정에도 의미있음.</li> <li>• Value Capture 제도는 환수의 대상을 행정계획 (토지 이용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가치 증가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환수의 대상을 개발사업의 시행자뿐만 아니라 개별 수익자에게까지 확장하고 있음.</li> <li>• 환수 대상의 확장을 위해서는 창출되는 가치와 그 가치의 환수의 정책 목표에 대해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세부적인 실행 방안 또한 기존의 조세제도등과의 관계를 고려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제도 운용의 신뢰가 구축될 수 있음.</li> </ul>
--	---------------------------------------------------------------------------------------------------------------------------------------------------------------------------------------------------------------------------------------------------------------------------------------------------------------------------------------------------------------------------------------------------------------------------------------------------------------------------------------------------------

## 2. 임대료 편익산정의 개선방안 연구

### 1) 조사 개요 및 추진경위

연구기간	2018. 3. 26. ~ 2018. 10. 31.
연구진	- KDI 연구진: 정민웅 전문위원(연구총괄), 조민혜 전문연구원
연구의 목적	- 판매 및 근생시설 편익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사례조사를 통하여 일관성 있는 방법론 제시 - 판매 및 근생시설의 경제성 분석에서 임대료 시장가치를 대체할 수 있는 편익산정 방법론 대안에 대한 고민

### 2) 연구결과

목차	<p>제 I 장 연구의 개요</p> <p>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p> <p>제2절 연구의 목적</p> <p>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p> <p>제4절 연구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p> <p>제 II 장 임대시설 편익 산정의 이론적 고찰</p> <p>제1절 편익 산정 방법론</p> <p>제2절 편익 요인의 추가 식별</p> <p>제 III 장 임대시설 편익산정 사례조사</p> <p>제1절 중구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공기관 예타</p> <p>제2절 동대문구 문화예술회관 민간투자사업</p> <p>제3절 호림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p> <p>제 IV 장 임대료 편익산정 개선방안</p> <p>제1절 부가가치율을 이용한 편익 추정</p> <p>제2절 조정 부가가치율을 이용한 편익 추정</p> <p>제3절 건물 노후도를 보정한 임대료 편익 방법</p> <p>제 V 장 결론</p>
연구의 배경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 및 근생시설 편익산정의 이론적 고찰</li> <li>- 판매 및 근생시설 편익 반영 사례</li> <li>- 판매 및 근생시설 임대료 편익산정 문제점</li> <li>- 판매 및 근생시설 편익산정의 개선방안 제시</li> <li>- 적정 신규투자율 가중치, 재투자 및 대체투자 감소편익 계상</li> <li>- 부가가치 편익 산정 시 임대료의 추가편익 계상 여부 검토</li> </ul>
연구 (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가가치율 이용 방법</li> <li>- 임대료 이용 방법</li> </ul>



<p>연구내용 및 결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료를 위주로 한 판매 및 근생 시설에 대한 편익 산정에 대한 대안적 방법을 모색함.</li> <li>• 임대료 위주의 편익 방법을 탈피하고 보다 경제적 편익에 충실한 신규 투자 부가가치를 이용한 편익 산정(<b>Restructuring</b>)</li> <li>• 임대료 위주의 편익 방법의 수월성과 간편성을 인정하고 기존 방법을 수정 또는 개선하는 방법으로 편익을 산정(<b>Parametric change</b>)</li> <li>-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분석 예를 제시</li> <li>• 부가가치를 이용할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 측면에서의 부가가치를 고려할 수 있으나 실제 적용에서 이 두 방식의 차이는 크지 않음.</li> <li>• 기존 방법의 수정에 있어 건물 노후도, 이동거리 단축, 개축비용 절감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기존 방법과 수정 방식을 비교해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건물 노후도를 보정한 임대료 방식을 이용한 수정 방법을 예시적으로 제시</li> <li>• 구체적으로 중구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과 동대문구 문화예술회관 민간투자사업을 대상으로 대안적 방법을 적용해 보았음.</li> <li>- 분석 결과, 부가가치를 이용할 경우 대체로 임대료 방법에 비해 편익의 현가가 30%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건물 노후도를 보정할 경우 편익의 현가는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됨.</li> <li>- 대안적 방법을 이용하여 기존 방법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분석의 이론적 적합성과 더불어 예타 사업의 부차적인 시설에 대한 편익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 수집 등의 비용 등 현실적인 문제 역시 같이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li> </ul>
----------------------	--------------------------------------------------------------------------------------------------------------------------------------------------------------------------------------------------------------------------------------------------------------------------------------------------------------------------------------------------------------------------------------------------------------------------------------------------------------------------------------------------------------------------------------------------------------------------------------------------------------------------------------------------------------------------------------------------------------------------------------------------------------------------------------------------------------------------------------------------------------------------------------------------------------------------------

### 3. 전력공급 편익 추정 및 대기오염물질 외부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 1) 조사 개요 및 추진경위

연구기간	2018. 5. 21. ~ 2018. 12. 20.
연구진	- KDI 연구진: 김현석 부연구위원(연구총괄), 정유진 전문연구원, 최민혜 연구원
연구의 목적	- 전력공급 편익의 합리적인 가치 추정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의 수용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사용가능한 대기오염물질 외부비용 원단위 추정치들을 정리함으로써 조사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2) 연구결과

목차	<p>제 I 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p> <p>제 II 장 전력공급 편익 추정 제1절 편익 추정 관련 지침연구 및 사례 제2절 전력공급 편익 추정 방법론 제3절 산업용 전력공급 편익의 추정 제4절 일반용 전력공급 편익의 추정 제5절 주택용 전력공급 편익의 추정 제6절 전력공급 편익 추정 결과의 종합화</p> <p>제 III 장 대기오염물질 외부비용 산정 방안 제1절 대기오염물질 외부비용 지침연구 및 사례 제2절 대기오염물질 외부비용의 개요 제3절 대기오염물질 외부비용 관련 문헌 연구</p> <p>제 IV 장 결론 제1절 연구의 내용과 활용 제2절 연구의 한계</p>
연구의 배경 및 범위	- 생산함수 및 수요함수 추정을 통한 주요 용도별 전력공급 편익 추정 - 대기오염물질 외부비용 추정치 조사 및 정리
연구 (평가) 방법	- 사업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전력 사용량 및 가치에 대해 설문조사 수행 후 편익을 추정 - 관련 국내·외 문헌 조사 및 외부 자문 의뢰
연구내용 및 결론	- 본 연구는 소비자 잉여를 반영한 전력공급의 경제적 가치를 제시하고 대기오염물질 외부비용 원단위 수준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 검토 및 정리하려는 목적을 지님. - 먼저, 각 용도별 전력공급 편익을 추정한 후 2017년 전력판매량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결과 전력공급 편익은 발전사업자 기준 174.11원/kWh으로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 전력판매량에서 산업용은 61%, 일반용은 25%, 주택용은 15%임.</li> <li>• 추정된 전력공급 편익은 명확한 신규 및 이전수요 정의 및 구분을 전제로 신규 수요에 대응하는 전력 공급분에 적용할 수 있으나, 일부 발전원의 특수성이 고려되기 어려움.</li> <li>• 최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되어 발전소 건설 추진이 확실시되는 발전사업 역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신규수요로 간주할 수 있는 사업들이 계획되고 있음.</li> <li>• 다만, 본 연구의 전력공급 편익 추정에서는 원자력, 화력, 재생에너지원 등 각각의 발전원 특성을 고려한 추정치는 아님.</li> <li>•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외부비용 원단위관련 1차 연구와 그를 토대로 한 후속연구들을 소개함으로써 타당성 분석시 사용할 수 있는 원단위 대안들을 제시함.</li> <li>• 현행 조사에서 대기오염물질 외부비용은 산정 범위나 방법론의 방대함으로, 편익이전방법을 통해 해외 1차 연구에서의 추정치를 적용하고 있음.</li> <li>• 본 연구에서 검토한 대기오염물질 외부비용 원단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당 초래되는 외부비용 원단위와 관련된 연구들을 개관하여, 향후 타당성 분석시 사용할 수 있는 외부비용 원단위 대안들을 정리함.</li> <li>• 개별 조사 대상 사업하의 배출계수를 감안하여 연구진의 판단 하에 본 연구에서 검토한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활용 및 적용할 필요가 있음.</li> </ul>
--	-----------------------------------------------------------------------------------------------------------------------------------------------------------------------------------------------------------------------------------------------------------------------------------------------------------------------------------------------------------------------------------------------------------------------------------------------------------------------------------------------------------------------------------------------------------------------------------------------------------------------------------------------------------------------------------------------------------------------------------------------------------------------------------------------------------------

#### 4. 민간투자사업 위험배분구조와 수익률간의 관계에 대한 기초 연구

##### 1) 조사 개요 및 추진경위

연구기간	2017. 5. 22. ~ 2018. 6. 30.
연구진	- KDI 연구진: 김재영 전문위원(연구총괄), 구석모 전문연구원, 변혜리 전문연구원, 이용재 연구원
연구의 목적	- 현행 표준실시협약의 위험 배분 구조에 대한 분석 -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정부가 부담하는 위험의 수준의 측정 및 비교 - 표준실시협약을 기준으로 개별 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위험도 도출

##### 2) 연구결과

목차	<p>제 I 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및 범위</p> <p>제 II 장 민간투자사업의 위험 분류 제1절 위험과 위험의 관리 제2절 민간투자사업 위험의 분류 및 정의</p> <p>제 III 장 실시협약의 위험배분 구조 분석 제1절 분석방법의 개요 제2절 표준협약상 위험배분 구조의 분석 제3절 재정투자사업에서의 위험배분 구조와의 비교 제4절 해외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위험배분 제5절 위험배분 구조 분석의 시사점</p> <p>제 IV 장 민간투자사업의 위험과 수익률과의 관계 분석 제1절 분석의 개요 제2절 민간투자사업의 위험도 조사 개요 제3절 민간투자사업의 위험도 조사 결과 제4절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p> <p>제 V 장 결론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확률론적인 방법을 활용한 위험 평가</p>
연구의 배경 및 범위	- 민간투자사업의 위험배분 구조 분석 - 개별 사업 실시협약에서의 위험도 측정 - 개별 사업 위험도를 통한 수익률 관련 실증 분석
연구 (평가) 방법	- 민간투자사업 위험 항목 구분 및 중요도 산정 시 방법론에 대한 선정(위험도 측정 시 설문을 통하여 측정하는 것으로 최종논의) - 표준실시협약안의 위험배분에 대한 논의

<p>연구내용 및 결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과 수익률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수익률 결정시 기본계획상의 위험보상을 접근법은 잘 사용되지 않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는 실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건에 대해서 어느 쪽 주장이 더 정확하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측면과 위험의 본질적인 특성이 주관적이어서 위험을 정량화가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임.</li> </ul> </li> <li>-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의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도로, 철도, 환경 사업의 유형별로 위험 측정을 수행하여 위험과 수익률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표준실험계약안과 재정사업 및 해외 사업의 실험계약을 비교·분석하여 각각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위험 수준'을 가늠해 보고자 하였음.</li> <li>- 표준실험계약안, 재정사업 및 해외 사업의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TO 사업은 운영수입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투자위험을 건설보조금, 해지시지급금, 투자위험분담금 등을 통해 주무관청이 상당부분 분담하여 민간사업자의 운영수입위험이 감소되어 있었음.</li> <li>• 민간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건설비용위험 및 운영비용위험을 부담하고 있었음. 특히 건설과 운영은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은 상당부분 경감되어 있었음.</li> <li>• 재정투자사업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건설비용위험이나 운영비용위험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위험의 수준이 수급인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li> <li>• 일본이나 GIH의 경우 위험배분에 관한 세밀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위험배분의 수준 및 내용은 우리나라에서의 위험배분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li> </ul> </li> <li>- 설문을 통한 위험 평가 결과, 운영기간 중 수입위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49%로 여타 비용위험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사업의 운영기간 수입위험은 54%로 나타나 다른 사업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li> <li>• 한편, 환경사업의 경우 운영기간 중 비용위험(34.8%) 보다 타 사업유형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li> </ul> </li> <li>- 실제 수익률과 위험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사업 유형별로는 철도 사업이 수익률과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위험항목 별로는 운영기간 중 수입위험의 손실정도는 수익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나 나머지 위험과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음.</li> <li>- 국내는 표준실험계약이 존재하여 이미 민간과 정부의 위험배분을 정하고 있으며, 과거 사업들의 수익률 결정이 대부분 유사사업접근법 등으로 결정되어 개별 위험항목과 수익률의 관계가 도출되지 않았지만 수익률의 크기는 위험정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민간이 보유한 위험은 결국 공사비 및 기타 비용에 내재화 될 수 있으므로 위험에 따른 위험프리미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li> </ul>
----------------------	--------------------------------------------------------------------------------------------------------------------------------------------------------------------------------------------------------------------------------------------------------------------------------------------------------------------------------------------------------------------------------------------------------------------------------------------------------------------------------------------------------------------------------------------------------------------------------------------------------------------------------------------------------------------------------------------------------------------------------------------------------------------------------------------------------------------------------------------------------------------------------------------------------------------------------------------------------------------------------------------------------------------------------------------------------------------------------------------------------------------------------------------------------------------------------------------------------------------------------------------------------------------------------------------------------------------------------------------------------------------------------------------------------------------------------------------------------------------------------------------------------------------------------------------------------------------------------------------------------------------------------------------------------------------------------------------------------------

**5. 민간투자사업 법률쟁점연구(대상기간: 2015~2017년)**

1) 조사 개요 및 추진경위

연구기간	2017. 6. 1. ~ 2018. 4. 30
연구진	- KDI 연구진: 이선정 전문위원(연구총괄), 김혜영 전문위원, 양봄이 전문연구원, 이지현 전문연구원
연구의 목적	- 민간투자사업의 분쟁 사례 심화 분석 및 쟁점 검토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결과

목차	<p>제 I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p> <p>제 II 장 법령 개정 동향                  제1절 민간투자법령 개정 동향                  제2절 법률안 국회 계류 현황                  제3절 유료도로법 개정 동향</p> <p>제 III 장 민간투자사업 관련 판례 분석                  제1절 분쟁현황의 개요 및 총론                  제2절 민간투자사업 추진단계별 분쟁사례 및 시사점                  제3절 종합</p> <p>제 IV 장 실시협약 변경의 기준과 한계- 공정경쟁의 관점에서                  제1절 도입                  제2절 실시협약 변경 현황                  제3절 관련 외국법제 고찰 및 시사점                  제4절 민간투자법령 개정안 검토</p> <p>제 V 장 운영기간 중 사업시행자의 파산                  제1절 도입                  제2절 국내 파산절차 소개(개관)                  제3절 부동산 PF 사업의 파산 쟁점 검토                  제4절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파산 시 쟁점 검토                  제5절 해외사례 및 제도의 검토                  제6절 제도 개선 사항 제언</p> <p>제 VI 장 종합결론</p>
연구의 배경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민간투자법령 개정 동향 및 유권해석사례의 조사와 분석</li> <li>- 국내 민간투자사업 소송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li> <li>· 분석대상 : 2015년~최근까지 선고된 민간투자사업 분쟁 관련 판례</li> <li>- 실시협약 변경의 기준 및 한계 관련 쟁점 분석</li> <li>· 실시협약 변경 현황 및 변경내용 분석</li> <li>* 해외(유럽연합,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제도의 검토 및 시사점 도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 및 기본계획 개정요소 검토</li> <li>- 운영기간 중 사업시행자의 도산</li> <li>• 국내 도산절차의 검토, 부동산 PF사업의 도산 쟁점 검토</li> <li>• 해외 파산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li> <li>• 도산관련 쟁점의 제도개선 방향 모색</li> </ul>
<p>연구 (평가)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문헌 조사</li> <li>- 판례 조사</li> <li>- 민간투자법에 대한 입법 발의 현황, 법제처 해석례 조사</li> <li>- 외부 전문가 간담회 및 자문, 인터뷰 등</li> </ul>
<p>연구내용 및 결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 개정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기간(2015년 1월 ~ 2017년 10월) 중 민간투자법령(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 및 취지 등을 살펴보고, 같은 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투자법령의 개정안을 조사하여 정리함. 아울러 관계법률인 유료도로법의 최근 개정 내용도 살펴봄.</li> </ul> </li> <li>- 민간투자사업 관련 판례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민간투자사업 분쟁 현황과 법률 쟁점 파악을 위하여 대상기간에 새로 축적된 민간투자사업 분쟁사례 중 판결이 선고된 총 24건의 사례(민간투자법령 관련 22건, 유료도로법 등 관계 법률 관련 2건)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추진단계별로 정리한 후 사례별로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분석함.</li> </ul> </li> <li>- 실시협약 변경의 기준과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을 거쳐 사업시행자 지정시 확정된 사업시행조건에 현저한 변화가 수반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경쟁절차 없이 기존 실시협약만 변경하는 것이 민간투자법령의 기본취지에 맞는지, 민간투자법령에 실시협약 변경의 한계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지, 구체적으로 정한다면 어떤 기준이 적절한지 등을 토대로 상기 쟁점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아래와 같은 순서로 살펴봄.</li> <li>• 국내 실시협약 변경사유를 조사하고, 관련 해외 법제와 판례를 조사·분석하여 실시협약 변경의 구체적인 허용 기준, 제도 개선점을 탐색한 후 앞서 조사한 국내 실시협약 변경사유별 허용 기준, 당부 등을 재검토하여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책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함.</li> </ul> </li> <li>- 운영기간 중 사업시행자의 파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국내 민간투자사업에서 최초로 사업시행자가 파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그 외 운영적자 누적 등으로 사업시행자의 파산이 우려되는 사업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상기 쟁점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아래와 같은 순서로 살펴봄.</li> <li>• 국내 파산절차의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부동산 PF(Project Finance) 사업의 파산 사례를 유사 사례로 선정하여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민간투자사업 파산의 경우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찾아보았으며, 해외 PPP 사업의 파산 사례, 관련 법규 및 제도상 절차를 비교·분석한 후 국내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 및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함.</li> </ul> </li> <li>- 제도 개선사항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산절차 이전의 대주의 개입권 규범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민간투자법은 관리운영권 또는 사업시행자의 권리를 대주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 간접적인 방식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대주의 담보권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입법 보완이 필요함.</li> </ul> </li> <li>•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절차 개선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에서도 해지 이후의 절차로서 재입찰 (retendering) 절차와 연계하여 해지시지급금을 시장가치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절차 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li> </ul> </li> </ul> </li> </ul>

## 6. 공익처분의 환경적 요인 및 실행요건에 관한 연구

### 1) 조사 개요 및 추진경위

연구기간	2017. 5. 26. ~ 2018. 12. 25.
연구진	- KDI 연구진: 박용진 전문위원(연구총괄), 최우람 연구원
연구의 목적	- 주무관청이 공익 처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의 추상성 및 모호성에 따른 문제점 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처분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공익 처분을 위한 판단기준이나 논거를 제공함으로써 법률적인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2) 연구결과

목차	<p>제 I 장 서론</p> <p>제 II 장 민간투자사업의 민간투자법제와 공익개념</p> <p>제1절 개관</p> <p>제2절 공익개념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p> <p>제3절 헌법에서의 공익개념</p> <p>제4절 법률에서의 공익개념</p> <p>제5절 판례에서의 공익개념</p> <p>제6절 민간투자법과 공익</p> <p>제 III 장 공익처분과 관련된 해외법제</p> <p>제1절 개관</p> <p>제2절 EU</p> <p>제3절 영국</p> <p>제4절 독일</p> <p>제5절 프랑스</p> <p>제6절 호주</p> <p>제7절 미국</p> <p>제8절 일본</p> <p>제9절 우리나라 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p> <p>제 IV 장 공익처분의 환경적 요인 및 실행요건 구체화</p> <p>제1절 공익처분의 환경적 요인</p> <p>제2절 민간투자법상 공익처분의 요건</p> <p>제3절 공익 처분의 내용 및 관련 쟁점</p> <p>제 V 장 공익처분의 손실보상 및 처분과 관련된 절차</p> <p>제1절 해외 법제의 손실보상</p> <p>제2절 정당한 손실보상</p> <p>제3절 처분 관련 절차</p> <p>제 VI 장 결론 및 정책 제언</p>
연구의 배경 및 범위	- 민간투자제도적 관점에서 공익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고찰 -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하여 공익 처분이 필요한 환경적 요인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투자법상 공익처분의 효과, 부과기준 및 절차규정에 대한 개선사항 제시</li> <li>- 공익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 제시</li> </ul>
<p>연구 (평가)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국내·외 문헌 조사</li> <li>- 공익처분 관련 기관 방문 조사 및 전문가 자문</li> <li>- 토지수용법의 손실보상 규정과의 비교 분석</li> </ul>
<p>연구내용 및 결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투자사업의 도입 당시인 IMF 직후의 불안정한 경제 환경과 사업 추진을 위해 수요예측이 과다하게 이루어진 상황 하에서 체결된 계약 조건은 장기간 민자사업의 시행하는데 있어서 공익에 저해하는 측면이 부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실시협약의 변경을 통한 방법상의 한계로 인하여 민간투자사업 상 ‘공익을 위한 처분’의 활용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음.</li> </ul> </li> <li>- 우리나라의 공익처분에 대응하는 제도들이라는 측면에서 ‘사업관리’ 또는 ‘계약관리’(contract management) 단계에서 주로 문제되는 정부의 주도에 의한 계약 변경 또는 해지에 관련된 해외법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호주의 경우에는 실시협약의 해지라고 하는 ‘계약의 법리로 이를 접근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에는 사업 자지정의 취소와 같은 ‘행정행위’의 법리로 이를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li> <li>• 발주청의 자발적인 계약해지의 원인이 되는 사유를 규율하는 방식은 계약해지의 사유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방식과 공익적 사유로 제한하는 방식의 두가지가 존재하는데, 전자의 경우에도 미국의 경우를 보면 신의칙 등 일반법원리에 의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음.</li> <li>• EU회원국들의 경우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계약변경의 한계가 존재하나,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EU와 같은 계약변경의 한계가 존재하지 않음.</li> </ul> </li> <li>- 해외 또는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사례를 통해 살펴 본 바에 따르면, 해외사례들은 편의적 계약해지의 사유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법제와의 비교가 우리나라 손실보상 법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협약의 해지시 지급금과 공익처분시 손실보상을 단일하게 규율하는 해외 법제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양자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둘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두는 것이 필요함.</li> <li>•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와 정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재검토가 필요함.</li> </ul> </li> <li>• 우리나라 민간투자법에서 공익처분시 ‘정당한 보상’을 요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보상의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li> <li>• 공익처분시 요구되는 정당한 보상의 범위를 구체화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조절적 보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공용수용에 따른 보상과 유사하게 볼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li> </ul> </li> <li>- 민간투자법상 ‘공익을 위한 처분’과 관련된 절차 중 청문제도와 관련된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가 청문을 주재하여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국민의 권리구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함.</li> <li>• 실질적인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인 청문장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li> <li>• 행정절차법 제35조의2 조문상으로는 의무적으로 청문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임의적 규정으로 구속력 확보 대책이 필요함.</li> </ul> </li> <li>- 토지수용위원회와 관련된 개선방안은 공익 처분에 있어서 정당한 손실보상이 핵심인 바,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는 현행 법제에 있어서는 가급적 해당 개별 법률인 민간투자법에서 손실보상에 관한 규율사항을 충실히 담아놓는 것이 필요함.</li> </ul>

## 7. 민간투자사업의 자기자본수익률에 관한 연구

### 1) 조사 개요 및 추진경위

연구기간	2017. 6. 15. ~ 2018. 10. 31.
연구진	- KDI 연구진: 박경애 전문위원(연구총괄), 임혜림 전문연구원, 황희주 전문위원
연구의 목적	- 대안적 MCC 구조의 핵심 요소인 보장 ROE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대안적 MCC 관리방안을 제시 - 후순위채 특성을 파악하여 주무관청이 후순위채를 도입하는 데 있어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

### 2) 연구결과

목차	<p>제 I 장 서론</p> <p>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p> <p>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p> <p>제 II 장 민간투자사업의 자기자본에 대한 이론적 검토</p> <p>제1절 기업의 자기자본 조달</p> <p>제2절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자기자본 조달</p> <p>제3절 민간투자사업의 자기자본</p> <p>제4절 자기자본 비용의 측정</p> <p>제5절 민간투자사업 자기자본비용의 결정요인 분석</p> <p>제 III 장 민간투자사업의 자기자본수익률 분석</p> <p>제1절 과거 민간투자사업의 자기자본수익률 분석</p> <p>제2절 최근 민간투자사업의 자기자본수익률 분석</p> <p>제3절 본 연구에의 시사점</p> <p>제 IV 장 자기자본수익률에 대한 비교 분석 : 국내 발전사업과 영국 민자사업</p> <p>제1절 국내 발전 사업</p> <p>제2절 해외 사례 : 영국의 민자사업</p> <p>제 V 장 자기자본수익률 관리 방안</p> <p>제1절 대안적 MCC 사업의 출자자 기대수익률 관리 방안</p> <p>제2절 후순위채 관리 방안</p> <p>제 VI 장 결론</p>
연구의 배경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기업, PF 사업, 민간투자사업의 자기자본 개념의 차이를 분석</li> <li>- 대안적 MCC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조건 조정 전후 주주의 투자구조와 그 수익률 수준을 분석하고 주주 수익률이 확보되는 원인을 분석</li> <li>- MRG가 폐지된 이후 재무적 투자자가 출자자로 참여한 최근 민자사업들을 대상으로 투자구조와 주주 수익률 수준을 분석</li> <li>- 국내 프로젝트 파이낸스 사업인 발전 사업과 영국 민자사업의 자기자본 특성을 살펴봄.</li> <li>- 상기 분석을 토대로 대안적 MCC 대상사업의 출자자 기대수익률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후순위채 도입 시 그 적정성을 검토하는 가이드라인도 제시</li> </ul>

<p>연구 (평가)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투자사업의 자기자본 비용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자기자본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li> <li>- 재무적 투자자가 출자자이며 MRG가 보장되어 대안적 MCC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협약의 투자구조와 실제 투자구조를 비교하여 주주수익률의 변동 이유와 그 수준을 살펴보고 출자자 수익률이 확보되는 원인을 분석</li> <li>- 국내 PF 사업 전문가의 국내 PF 발전사업과 민자사업 비교 분석</li> </ul>
<p>연구내용 및 결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투자사업의 자기자본비용의 결정요인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수익률의 뚜렷한 하락추세가 확인되나, 국채 대비 초과수익률은 뚜렷한 하락추세가 있다고 말하기 어려움.</li> <li>· 자본구조와 관련하여 자본금 및 후순위채가 평균 민간투자비의 20% 후반 ~ 30% 초반을 구성</li> <li>· 이자율과 관련하여, 선순위채와 후순위채간 뚜렷한 차이를 확인</li> <li>·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 결과, 국채 대비 초과수익률은 사업유형, 후순위채 비율, 후순위채 이자율, 선순위채 이자율 및 MRG 비율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짐.</li> </ul> </li> <li>- 민간투자사업의 자기자본수익률 분석의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상 자본구조가 준수됨에 따라 출자자 기대수익률은 크게 변동하지 않음.</li> <li>·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비율이 변경되면 재무적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은 변동함.</li> <li>· 후순위차입금의 관리 필요성</li> </ul> </li> <li>- 자기자본수익률에 대한 비교 분석: 국내 발전사업과 영국 민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사업은 사업주의 신용도가 높아 선순위 대출의 배당 제약조건이 엄격하지 않음. 민자사업의 주주 수익률은 발전사업에 비해 낮지만 후순위 대출 금리는 높음.</li> <li>· 영국과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점: 주주가 자본금 이외 후순위채를 조달하여 조기배당 및 절세효과를 얻고 있음. 영국 PFI사업의 협약상 자기자본수익률은 9~12%이지만 실제 Blended Equity IRR은 이보다 높게 형성</li> <li>* 차이점: AP(Available Payment)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요금 징수 방식(Toll based) 사업은 많지 않음. 우리나라는 사업수익률(Project IRR)을 협약에 명시하고 있는 반면, 영국은 자기자본수익률(Equity IRR)을 협약에 명시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출자자의 변경도 자금재조달로 보는 반면, 영국의 경우 이를 재조달로 보지 않음.</li> </ul> </li> </ul> </li> <li>- 자기자본수익률 관리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안적 MCC 사업의 출자자 기대수익률 관리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안적 MCC 방식은 기존 주주가 계속 남아 있으면서 예상 주주의 기대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구조임. 따라서 기존 사업 조건하에서 주주의 투자원리금 수준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li> <li>* 주주보장액의 핵심 개념인 주주수익률의 의미와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li> <li>* 대안적 MCC의 보장 한도는 기존 협약 재무모델의 주주수익률 수준을 고려하지만, 기존 방식 하에서 추정되는 실제 주주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이를 상회하지 않는 수준에서 주주현금흐름을 보장하는 방향이 실질적이라 할 수 있음.</li> </ul> </li> <li>· 후순위채 관리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무관청은 후순위채의 가능성과 기능을 충분히 인지함으로써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이를 사업수익률 협상에 반영하여 통행료 인하를 이끌어 내는 게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임.</li> <li>* 주주 수익률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분석 결과와 기본계획 25조의2를 바탕으로 주무관청이 후순위채를 관리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후순위채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함.</li> </ul> </li> </ul> </li> </ul>

## 8. 민간투자사업 위험분담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 1) 조사 개요 및 추진경위

연구기간	2017. 6. 15. ~ 2018. 9. 30.
연구진	- KDI 연구진: 이호준 연구위원(연구총괄), 김도일 전문위원(공동총괄), 정종욱 전문위원, 양봉이 전문연구원
연구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위험을 정부와 민간이 분담할 수 있는 BTOs, BTOa(위험분담형) 방식의 시행을 공표한 바 있으나, 국회 및 시민단체 등은 정부의 과도한 위험부담으로 인한 재정의 낭비, 특혜 등에 대한 우려 제기</li> <li>- 따라서 해외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과 추진방식별 정부의 위험분담 정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위험분담 방식과 비교 → 시사점 도출 → 개선방안 제시함.</li> <li>- 사업추진 방식별, 주체별 재무성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논의를 제시</li> </ul>

### 2) 연구결과

목차	<p>제 I 장 연구의 개요</p> <p>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p> <p>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p> <p>제 II 장 해외 위험분담 제도 검토</p> <p>제1절 해외 위험분담 제도 소개</p> <p>제2절 위험배분 적용사례 검토</p> <p>제 III 장 위험분담제도 소개 및 도입의 이론적 배경</p> <p>제1절 국내 위험분담 제도 소개</p> <p>제2절 민간투자사업 위험분담에 관한 이론적 배경</p> <p>제 IV 장 사례 분석을 통한 투자위험분담 방식 평가</p> <p>제1절 도로 사업을 이용한 사례 분석</p> <p>제2절 사례분석 결과를 활용한 효율성 검토</p> <p>제 V 장 종합 결론</p>
연구의 배경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투자사업에 내재된 위험의 종류를 살펴보고, 해외 선진국의 민간투자 제도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위험분담 방법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 검토 후 시사점 도출</li> <li>- 동일 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방식 별 재무성 검토 결과 제시(BTO, BTOs, BTOa, BTL)</li> <li>- 국내 위험분담 방식에 대한 주요 쟁점 검토·정리</li> <li>- 국내 위험분담 방식의 이론적 배경 검토</li> </ul>
연구 (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국내·외 문헌 조사</li> <li>- 관련 기관 방문 조사 및 전문가 자문</li> </ul>

연구내용  
및 결론

- 해외 위험분담 제도에서는 공공부문이 수요위험을 전적으로 또는 많은 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됨.
  - 교통량(수요) 변동위험은 민간부문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 수요위험으로 민간투자사업이 부실화되어 파산상태에 이르게 될 경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인 지원 등을 통해 정부와 납세자의 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투자위험분담방식(BTO-rs 및 BTO-a)의 효용성은 기존 BTO방식 대비 추진 가능한 민간투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료를 낮추는데 있음.
  - 정부의 위험부담으로 민간사업자의 위험부담이 줄어들고 기대수익률도 낮아지므로 기존 BTO방식으로는 추진 가능성이 낮은 사업을 추가 재정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음.
  - 또한, 사업자의 기대수익률이 낮아지므로 BTO 방식으로 추진할 때보다 사용료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다만, 사업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투자위험분담방식을 도입하더라도 민간사업자의 적정 기대수익률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기존 BTO방식 대비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사례 분석을 통해 투자위험분담 방식을 평가한 결과, 사업성이 높을 경우 위험분담방식이 기존 BTO방식 대비 정부재정부담 및 이용자부담 모두 낮아지는 것으로, 사업성이 낮을 경우 정부재정부담은 유사하지만 이용자부담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 기대수요 대비 실제수요가 변동할 때 투자위험분담(BTO-rs 또는 BTO-a) 각 방식별로 위험분담금(또는 환수금) 지급(수취) 시점 및 방식 등이 상이하므로,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여 개별 사업에 적절한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개별사업을 넘어 거시적 관점에서 민간사업자와 정부가 부담하는 수요위험의 수준을 비교할 필요가 있음.
  - 개별사업의 관점에서는 BTO 방식에서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수요변동위험과 BTL 방식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수요변동위험이 유사할 수 있으나, 무수히 많은 공공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관점에서 개별사업은 다수의 공공투자사업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임.
  - 개별사업의 수요위험은 상당 부분 비체계적인 위험(분산가능위험)의 특성을 가지므로 다수의 공공투자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비체계적인 위험의 많은 부분이 상쇄될 수 있을 것임.
  - 이는 해외 선진국에서 주로 적용하고 있는, 즉 정부가 수요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AP(availability payments) 방식의 향후 추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될 수 있음.
- 한편, 최근 투자위험분담방식이 이미 폐지된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의 부활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지만, 투자위험분담방식은 BTL 방식 수준의 낮은 수익률로 시설투자비의 일부를 보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수익률의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기존의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 두 제도를 서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투자위험분담방식에 대한 이러한 논란을 피하고 국민 및 이용자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정부는 투자위험분담방식을 BTO+BTL의 혼합방식으로 변경하여 제도를 간결화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은 있어 보임.
  - 또한 필요시 국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추가하여 투명성을 더욱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9. 타당성 평가를 위한 도로부문의 유지관리비 개선방안 연구**

1) 조사 개요 및 추진경위

연구기간	2017. 7. 1. ~ 2018. 9. 30.
연구진	- KDI 연구진: 우지원 전문위원(연구총괄), 유재광 전문위원, 박재민 전문연구원, 김중태 전문연구원
연구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도로부문의 유지관리비 추정 연구」(2009)에서 제시한 연차별 표준유지관리비와 최근 한국도로공사 연구를 검토하고 일반국도의 최근 유지관리비 집행실적을 추가 분석하여 타당성 평가를 위한 도로부문 유지관리비를 개선하고자 함.</li> <li>- 예비타당성조사 외 다양한 타당성 분석과정(타당성재조사, 민자 적격성조사 등)에 적용하기에는 일부 한계가 있으므로 분석목적(분석정밀도)에 맞는 유지관리비 추정방법 제시가 가능하도록 검토하고자 함.</li> </ul>

2) 연구결과

목차	<p>제 I 장 연구의 개요</p> <p style="padding-left: 20px;">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p> <p style="padding-left: 20px;">제2절 연구의 구성 및 수행방법</p> <p>제 II 장 도로의 유지관리 개념 및 현황</p> <p style="padding-left: 20px;">제1절 도로의 구분</p> <p style="padding-left: 20px;">제2절 도로 유지관리의 기본개념</p> <p style="padding-left: 20px;">제3절 국내 도로 현황 및 유지관리체계</p> <p style="padding-left: 20px;">제4절 해외 도로 현황 및 유지관리체계</p> <p>제 III 장 기존 연구 고찰 및 시사점 도출</p> <p style="padding-left: 20px;">제1절 국내 도로 유지관리비 추정 관련 기존 연구 고찰</p> <p style="padding-left: 20px;">제2절 국외 도로 유지관리비 추정 관련 기존 연구 고찰</p> <p style="padding-left: 20px;">제3절 시사점 도출</p> <p>제 IV 장 유지관리비 자료 구축 및 집행실적 분석</p> <p style="padding-left: 20px;">제1절 개요</p> <p style="padding-left: 20px;">제2절 고속도로 유지관리비 자료 분석</p> <p style="padding-left: 20px;">제3절 일반국도 유지관리비 자료 분석</p> <p>제 V 장 유지관리비 표준 모델 정립 및 세부비용 산정</p> <p style="padding-left: 20px;">제1절 타당성 평가를 위한 유지관리비 표준모델 정립</p> <p style="padding-left: 20px;">제2절 고속도로의 일반구간 유지관리비 산출</p> <p style="padding-left: 20px;">제3절 일반국도의 일반구간 유지관리비 산출</p> <p style="padding-left: 20px;">제4절 터널구간(고속도로, 국도)의 유지관리비 산출</p> <p style="padding-left: 20px;">제5절 특수 교량의 유지관리비 산출</p> <p style="padding-left: 20px;">제6절 표준모델을 활용한 유지관리비 추정결과와 적정성 검토</p> <p>제 VI 장 결론 및 정책제언</p> <p style="padding-left: 20px;">제1절 연구결과 요약</p> <p style="padding-left: 20px;">제2절 연구결과 활용을 위한 제언</p>
----	------------------------------------------------------------------------------------------------------------------------------------------------------------------------------------------------------------------------------------------------------------------------------------------------------------------------------------------------------------------------------------------------------------------------------------------------------------------------------------------------------------------------------------------------------------------------------------------------------------------------------------------------------------------------------------------------------------------------------------------------------------------------------------------------------------------------------------------------------------------------------------------------------------------------------------------------------------------------------------------------------------------------------------------------------------------------------------------------------------------------------------------------------------------------------------------------------------------------------------------------------------------------------------------------------------------------------------------------------

<p>연구의 배경 및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지관리비 자료 구축 및 집행실적 분석</li> <li>- 유지관리비 표준 모델정립 및 세부비용 산정</li> <li>- 타당성 평가 수행을 위한 유지관리비 추정 방안 마련</li> </ul>
<p>연구 (평가)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국내·외 문헌 조사 및 시사점 도출</li> <li>- 실적자료 검토 및 유지관리비 표준모델 정립</li> <li>- 표준유지관리비 개정 방안 도출</li> </ul>
<p>연구내용 및 결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시점에서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기초자료는 2007년까지의 자료로 이후 10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1990년 이후 급속히 증가한 구조물 비율이 높은 도로들의 대수선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비용 추정 방안 등이 필요하였음.</li> <li>· 금번 연구에서는 일반구간(토공, 일반교량) 및 터널구간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였으며, 사장교, 현수교 등의 케이블 교량은 별도의 특수교량구간으로 산출하였음.</li> <li>· 또한 본 연구의 유지관리비 항목은 기존 연구에서 분류한 항목과 유지관리비 실적 자료 검토를 통하여 재분류하고, 대수선의 각 항목별 교체주기는 시설물별 교체주기 기준과 유지관리비 실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li> <li>· 본 연구의 방법론을 이용한 도로부문 유지관리비 추정결과와 최근 집행되고 있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유지관리비의 실적금액을 비교해 볼 때 기존의 연구들에 비해 상당히 현실에 부합함을 알 수 있음.</li> </ul> </li> <li>- 연구결과 활용을 위한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최근 계획되고 있는 해상장대교량, 해저(하저)터널 및 대심도 터널 등 새로운 시설에 대한 적용방안 마련을 통해 사업별, 시설별 특성을 감안한 더욱 합리적인 유지관리비 제시가 가능할 것임.</li> <li>· 시설계획의 구체성에 따라 분석 목적에 적합하게 추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마련하여, 실제 계획단계별로 계획의 구체성이 상이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등을 위해 차별적인 접근방법론의 기초를 마련하였음.</li> <li>· 여러 해외 도로의 유지관리 현황에 대한 사례를 살펴본 결과,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시설물 유지관리의 방향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예산 소요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li> </ul> </li> </ul>

**10.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부문 타당성 평가 개선방안 연구**

1) 조사 개요 및 추진경위

연구기간	2017. 6. 1. ~ 2018. 9. 30.
연구진	- KDI 연구진: 박상준 전문위원(연구총괄), 이기택 연구원
연구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예측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도로 교통량의 변동 특성 파악</li> <li>- 시간대에 따라 변화하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도로 교통량의 변동특성 파악</li> <li>- 예비타당성조사 교통수요 분석 기준 보완</li> <li>- 도로·철도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의 수요예측 방법론을 근간으로 교통 수요 추정 결과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현 시점에 취득 가능한 빅데이터를 통한 통행패턴을 파악하고, 이를 구분하여 분석하기 위한 기준 마련</li> <li>- 도로교통량의 변동 특성을 반영한 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한 지표개발</li> <li>- 교통량 정산기준 보완 및 모형이 모사하는 통행 거리 및 통행시간 등에 대한, 평균 혼잡도 등에 대한 지표개발</li> </ul>

2) 연구결과

목차	<p>제 I 장 연구의 개요</p> <p>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p> <p>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p> <p>제 II 장 교통량 변동특성 파악의 필요성</p> <p>제1절 교통수요 추정시 교통량 변동특성 파악의 필요성</p> <p>제2절 기존 연구 및 현황 고찰</p> <p>제 III 장 교통량 변동패턴을 고려한 수요분석 기준</p> <p>제1절 상시교통량 자료구축 현황</p> <p>제2절 상시교통량 조사자료를 통한 교통량 변동패턴 파악</p> <p>제3절 교통량 변동패턴을 고려한 수요분석 기준</p> <p>제4절 공간적 통행 특성에 따른 교통량 변동패턴</p> <p>제5절 사례분석</p> <p>제6절 소결론</p> <p>제 IV 장 교통량 변동특성을 고려한 네트워크 정산 허용오차</p> <p>제1절 네트워크 정산 허용오차의 필요성</p> <p>제2절 기존 연구 및 현황 고찰</p> <p>제3절 교통량 변동 요인 파악</p> <p>제4절 네트워크 정산 허용오차 기준 제시</p> <p>제5절 소결론</p> <p>제 V 장 결론 및 정책제언</p>
연구의 배경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량 변동특성을 고려하기 위한 교통수요 분석기준 마련</li> <li>- 월별, 요일별, 시간대별 교통량 변동특성을 파악하고 패턴을 분석</li> <li>- 패턴별 분석을 위한 수요분석 기준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형의 적합도와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검증지표</li> <li>- 교통량 변동 특성을 고려한 도로위계별 네트워크 정산 허용오차 기준 마련</li> <li>- 통행배정 결과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개발</li> </ul>
<p>연구 (평가)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 내·외 문헌 조사 및 시사점 도출</li> <li>- 지점별 교통량조사자료, TCS통행량자료 및 내비게이션 자료를 이용한 교통량 변동패턴 분석 및 시사점 도출</li> <li>- 교통량 변동특성을 고려한 교통수요 분석기준 개발</li> </ul>
<p>연구내용 및 결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 있어 수요추정은 적정 사업의 규모의 판단과 함께 사업시행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통한 사회적 비용의 변화로 그 효과를 분석하고 있음.</li> <li>- 그 간의 연구가 수요예측의 정밀성 향상을 통해 수요 예측 오차를 줄이기 위함 이었다고 본다면, 본 연구의 목적은 수요예측 결과의 현실모사와 해석을 통한 신뢰성 향상에 있음.</li> <li>- 본 연구에서는 기존 지침의 연평균 일일교통량 기준의 시간대별 교통량 비율과 지속시간이 현실을 모사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간 교통량 변동을 패턴화하고 패턴별 교통량 비율과 지속시간을 제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의 의의를 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분석은 집계된 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개별적인 교통량 변동패턴을 파악하고 분석에 반영하기 어려웠던 반면,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구득 가능한 개별 현황 교통량 조사 자료를 통해 연간 교통량 변동패턴과 시간대별 변동 패턴을 파악하여 모형이 모사해야 할 교통상황을 구분이 가능함.</li> <li>• 더욱이 최근 수요추정 결과에 대한 검증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주말을 포함한 모형이 설명하는 특정일의 분석결과, 패턴별 분석결과를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음.</li> </ul> </li> <li>- 또한 현황 모사를 위한 패턴별 교통량 비율 및 지속시간과 함께 도로 유형별 교통량 변동수준을 고려한 교통량 정산기준을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연구에서는 도로 유형별 교통량 변동수준을 고려해 개별 연구진의 교통량 정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보다 완화된 교통량 정산기준을 제시함.</li> </ul> </li> <li>- 다만 본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실무 활용 시 주의가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째, 본 연구의 검토범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영향권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교통량 변동패턴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li> <li>• 둘째, 해당 지역의 교통량 변동패턴을 확인하여 주말, 성수기 등 특정시기의 교통상황을 구분하여 모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간적 교통량 변동 패턴을 고려한 분석기준을 적용하여 별도의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li> </ul> </li> <li>- 교통부문 빅데이터는 통행자의 행태분석을 필요로 하는 교통수요분석에서 이용자의 통행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실적자료이므로 수요예측 모형이 현실의 교통상황의 모사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통부문 빅데이터 활용은 모형 추정결과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사의 특성상 제한된 예산과 기간에 수행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기 구축된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고 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한 다양한 지표개발을 위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li> </ul> </li> </ul>

## 11. 민간투자사업의 재무적 쟁점에 관한 연구

### 1) 조사 개요 및 추진경위

연구기간	2017. 6. 16. ~ 2018. 8. 31.
연구진	- KDI 연구진: 강동석 전문위원(연구총괄), 윤인경 전문연구원, 유진석 전문연구원, 신형섭 전문연구원
연구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의 자금재조달 관련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자금재조달제도의 성과 및 문제점 특히 자금재조달 이익 공유 방식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의 필요</li> <li>- 사업시행조건의 조정 시 기본이 될 수 있는 사업권 가치(혹은 주식가치)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수준은 사업시행조건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나 그 적정성 등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므로 관련 검토가 필요</li> <li>- 현재의 사업수익률 결정방식에 있어 주주기대수익률을 감안한 사업수익률 결정과 관련 주주기대수익률에 있어 후순위 차입을 감안한 B.ROE 등에 대한 검토 및 적용방안 마련 필요</li> </ul>

### 2) 연구결과

목차	<p style="text-align: center;">&lt;1부: 사업시행조건 조정시점의 사업권 가치 산정에 관한 연구&gt;</p> <p>제 I 장 연구 개요</p> <p>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p> <p>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p> <p>제 II 장 현금흐름할인법(DCF)를 활용한 사업시행조정시 주식 및 사업권 매각가치 추정</p> <p>제1절 주식 및 사업권 가치</p> <p>제2절 사업시행조건 조정시점의 주식 및 사업권 매각가치</p> <p>제3절 사례분석</p> <p>제 III 장 실물옵션을 활용한 사업시행조정시 주식 및 사업권 매각가치 추정</p> <p>제1절 실물옵션 이론</p> <p>제2절 옵션가치 평가 이론모형</p> <p>제3절 시뮬레이션 모형</p> <p>제4절 민간투자사업의 옵션가치 추정 모형</p> <p>제5절 사례분석</p> <p>제 IV 장 결론</p> <p style="text-align: center;">&lt;2부: BTO-a 사업수익률 인하를 위한 금융조건 산출에 관한 연구&gt;</p> <p>제 I 장 서론</p> <p>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p> <p>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p> <p>제 II 장 출자자기대수익률의 적정수준 분석</p> <p>제1절 기존 BTO 방식과 BTO-a방식의 위험분담</p> <p>제2절 사업방식별 출자자기대수익률 수준</p>
----	---------------------------------------------------------------------------------------------------------------------------------------------------------------------------------------------------------------------------------------------------------------------------------------------------------------------------------------------------------------------------------------------------------------------------------------------------------------------------------------------------------------------------------------------------------------------------------------------------------------------------------------------------------------------------------------------------------------------

	<p>제3절 위험 대비 적정 수익률 분석</p> <p>제III장 BTO-a 사업수익률을 인하하기 위한 금융구조 분석</p> <p>제1절 사업수익률 인하 분석을 위한 변수 설정실물옵션 이론</p> <p>제2절 사업수익률 인하를 위한 조합 민감도 분석</p> <p>제3절 사업수익률인하를 위한 최적 조건 제시</p> <p>제IV장 결론</p>
<p>연구의 배경 및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제도의 재무적 쟁점</li> <li>- 사업시행조건 조정 시점의 변화된 사업권 및 주식가치 추정</li> <li>- 출자자기대수익률(B-ROE)의 민자사업 활용성 검토</li> </ul>
<p>연구 (평가)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국내·외 문헌 조사</li> <li>- SPC를 통한 관련 자료의 수집</li> <li>- 실물옵션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사업권 및 주식가치 산정</li> <li>- BTO방식과 BTO-a 방식의 위험 및 구조분석을 수행하고 동일한 사업수익률하에서 출자자 기대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금융구조 분석</li> </ul>

**12. 도시재생 효과에 대한 편익산정 기초 연구**  
**- 사회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

1) 조사 개요 및 추진경위

연구기간	2017. 7. 1. ~ 2018. 11. 30.
연구진	- KDI 연구진: 송인호 연구위원(연구총괄), 정우현 전문위원, 조민혜 전문연구원, 사지원 전문연구원
연구의 목적	- SOC 개선과 결합된 도시재생의 유형 및 범위를 설정하고, 사업 유형별 편익 항목별 계량화 가능성을 진단함으로써 향후 관련한 타당성조사의 기초연구자료로 활용 - 도시재생 효과 또는 촉진을 사업목적 중 하나로 하는 일련의 SOC 사업 또는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및 추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정책 방향을 선도 - 도시재생이 가진 지역의 고유성(장소성 및 역사성)을 보전·유지하는 동시에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본래의 의미 부각

2) 연구결과

목차	제 I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 범위와 내용 제 II 장 SOC와 도시재생 제1절 SOC 투자 정책 제2절 도시개발정책과 도시재생 제3절 SOC와 도시재생의 관계 제 III 장 SOC 개선의 도시재생 효과 제1절 선행연구 고찰 제2절 SOC 개선사업의 도시재생 효과 제3절 효과의 측정 제 IV 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연구의 배경 및 범위	- SOC와 도시재생의 관계 분석, SOC 개선에 따른 도시재생 효과 규명, SOC 타당성분석의 도시재생 효과 평가 방법론 정립 - SOC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도시개발정책과 도시재생, SOC와 도시재생의 관계, SOC 개선사업의 유형 분류, SOC 개선의 도시재생 효과 정의, 정량적·정성적 도시재생 효과 파악 - 평가 프레임워크의 설정, 평가 방법론의 정립 (경제성 및 정책성)
연구 (평가) 방법	- 향후 촉발될 관련 유형의 정책이나 사업은 SOC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이 동등한 계획의 상세도(level of detail)로 구상되어 추진되는 경우와, 도시재생을 유도하기 위해 SOC 사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의 두 가지 케이스로 분류가 가능 - 연구 대상의 도시재생 효과를 고찰하고 이것이 각각의 유형별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마련

<p>연구내용 및 결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연구에서는 SOC의 물리적 재배치나 개선이 도시재생 측면에서 어떠한 함의를 갖고 있으며, 도시정책 측면에서 어떠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 최근의 정책동향 및 관련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한 기초연구로 수행됨.</li> <li>• 제 II 장에서는 SOC 투자정책과 도시정책의 동향 및 전망을 살펴봄.</li> <li>• 제 III 장에서는 도시재생의 효과와 공공공간의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SOC 개선사업의 추진 양상과 단계별로 얻어질 수 있는 도시재생 측면의 효과들을 고찰함.</li> <li>•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재생에 목적을 두고 추진되는 다양한 SOC 개선사업에서 참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나 철도 등 선형 SOC를 지하화하고 상부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 하수처리장이나 철도정비창과 같은 면적 SOC를 이전하고 해당 용지를 공공용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 트램 등을 설치하고 대중교통전용지구 등 보행환경을 동시에 개선하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함.</li> <li>*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양상과 추진 이후 모니터링 성과와 사후적 평가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본래 효과를 일반화하여 분류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li> </ul> </li> </ul> </li> <li>- 향후 연구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OC 투자의 목적이 다변화하고 있음을 전제로 현재의 공공투자평가 영역의 2차적 효과, 즉 광의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반영 체계에 대해 다양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li> <li>• 향후 우리나라의 공공투자 평가체계가 이러한 포괄적인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보다 다양한 요구와 가치 투영의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li> </ul> </li> </ul>
----------------------	------------------------------------------------------------------------------------------------------------------------------------------------------------------------------------------------------------------------------------------------------------------------------------------------------------------------------------------------------------------------------------------------------------------------------------------------------------------------------------------------------------------------------------------------------------------------------------------------------------------------------------------------------------------------------------------------------------------------------------------------------------------------------------------------------------------------------------------------------------------------------------------------------------------------------------------------------------------------------------------------------------------------------------------------------------------------------------------------------------------------------------------------------------------

### 13. 항만 민자사업 부실 개선방안 연구

#### 1) 조사 개요 및 추진경위

연구기간	2017. 5. 20. ~ 2018. 6. 30.
연구진	- KDI 연구진: 박경애 전문위원(연구총괄), 변혜리 전문연구원
연구의 목적	- 개별 민자항만의 부실 원인을 분석하고 부실 개선 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민자항만사업의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함. - 개별 사업의 부실 개선방안 이외에도 지역별 항만사업의 경쟁 구조 분석을 통해 항만사업의 구조조정방안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 2) 연구결과

목차	<p>제 I 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p> <p>제 II 장 민자항만별 현황 분석 제1절 일반 현황 분석 제2절 항만별 부실 현황 분석</p> <p>제 III 장 민자항만별 미래 수요 검증 제1절 수요 검증 방법 제2절 인천북항 일반부두 및 다목적부두 2·1단계 수요 검증 제3절 포항영일만신항 1·1단계의 수요 검증 제4절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수요 검증</p> <p>제 IV 장 민자항만별 부실 개선방안 검토 제1절 부실 개선방안 검토 개요 제2절 항만별 부실 개선방안 검토</p> <p>제 V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물동량 처리 및 예측 제2절 부실개선방안</p>
연구의 배경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자항만별 현황 분석(4개 항만 대상)</li> <li>- 민자항만별 부실 현황 분석(재무적 분석)</li> <li>- 민자항만별 미래 수요 검증</li> <li>- 민자항만별 부실 개선방안 검토</li> <li>- 민자항만의 부실 개선방안 제시</li> </ul>
연구 (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만 현장방문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하여 현황 파악</li> <li>- 항만수요분석 전문가의 수요검증 및 재무전문가의 부실현황 재무분석</li> </ul>
연구내용 및 결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동량 처리 및 예측</li> <li>- 포항 영일만신항의 경우 인근 부산항과 울산항으로 인해 컨테이너 화물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li> <li>- 인천항의 경우 TOC 통합법인 출범 이후 경쟁 정책의 수립이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만의 부실은 과도한 물동량 예측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음. 항만 부실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동량 예측에 신중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함.</li> <li>• PORT MIS와 운영사 간 물동량 차이에 대한 정밀한 비교와 보정이 필요</li> <li>• 전반적으로 민자항만의 수요 검증을 위한 자료의 확보가 어려움. 민자항만의 수요 추정에는 교과서에서 제시한 물동량 추정 및 예측 방법론의 적용이 어려우며, 기존의 추세에 의존한 장기 예측이 불가피한 실정임.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물동량 예측치의 오류 가능성이 높으므로 민자사업의 물동량은 예측 시점에서 10년 이내의 물동량에 대한 가중치를 높여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li> <li>- 부실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시행조건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시행조건 조정은 인천북항 일반부두와 포항영일만신항 1-1단계에서 제안된 방식으로 해지지지급금의 일부를 사업권가치로 하여 잔여 운영기간에 원리금을 지급하며, 사업권가치를 초과하는 차입금과 운영비를 사업시행자가 운영수입으로 부담한 후 남는 이익을 주무관청과 공유하는 방식임.</li> <li>*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항만 사업 시행조건 조정 방안이 사업시행자 파산가능성 완화 및 해지로 인한 재정부담액의 완화 측면에서 목적 적합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언급한 조정안의 문제점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li> </ul> </li> <li>• 구제 금융 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제금융의 판단은 도산 개념의 판단이 핵심인 구조이며(‘도산해당성’), 해당 구제금융이 도산가능성을 예방하는데 실효적이고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회생적합성’ 또는 ‘수단적합성’)의 판단이 요구됨.</li> <li>* 도산해당성은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①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② 지급불능의 염려가 있는 경우, 및 ③ 절대적인 지급불능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도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임.</li> </ul> </li> </ul> </li> </ul>
--	---------------------------------------------------------------------------------------------------------------------------------------------------------------------------------------------------------------------------------------------------------------------------------------------------------------------------------------------------------------------------------------------------------------------------------------------------------------------------------------------------------------------------------------------------------------------------------------------------------------------------------------------------------------------------------------------------------------------------------------------------------------------------------------------------------------------------------------------------------------------------------------------------------------------------------------------------------------------------------------------------------------------------------------------------------------------------------------------------------------------------------------------------------------------------------------------------------------------------------------------------------------------------------------------------------------

**14.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익성 분석 방법론의 주요쟁점 연구**

1) 조사 개요 및 추진경위

연구기간	2017. 7. 1. ~ 2018. 4. 30.
연구진	- KDI 연구진: 강동석 전문위원(연구총괄), 황희주 전문위원, 김유경 전문연구원
연구의 목적	- 해외투자사업의 할인을 산정시 가산하고 있는 국가위험의 정의 명확화 및 국가 위험 측정 방안 모색 및 제시. 일부 해외투자사업(자원개발사업)의 할인을 산정 시 정치적 위험 등에 대한 추정을 통한 세분화된 기준 마련 - 정부보증이나 국제기구 보증효과에 대한 위험경감 수준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접근을 통해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수익성 분석에 기여 위한 기초연구 수행 - 자기자본 기준 PI의 도입 필요성, 효과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제도도입을 고려할 경우 정책적 판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연구결과

목차	<p>제 I 장 연구의 개요</p> <p>제1절 연구의 배경</p> <p>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p> <p>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p> <p>제 II 장 국가위험 측정 방식 개선 연구</p> <p>제1절 국가위험의 반영 현황 및 문제점</p> <p>제2절 실증분석 모형과 자료</p> <p>제3절 회귀분석 결과: 국가위험 프리미엄의 결정요인</p> <p>제4절 회귀분석 결과를 이용한 CDS 추정</p> <p>제 III 장 투자대상국의 정부보증 반영 여부에 대한 고찰</p> <p>제1절 정부보증의 개요</p> <p>제2절 투자대상국의 정부보증 사례</p> <p>제3절 정부보증의 반영 여부 검토</p> <p>제 IV 장 국제기구 보증에 따른 위험 경감 효과 반영 연구</p> <p>제1절 국제기구 보증 개요</p> <p>제2절 국제기구 보증 사례 분석</p> <p>제3절 국제기구 보증에 따른 위험 경감 효과 반영 방안</p> <p>제 V 장 자기자본 기준 수익성 분석 도입가능성 연구</p> <p>제1절 배경</p> <p>제2절 수익성 분석 방법론 개요</p> <p>제3절 가치평가 방식에 대한 검토</p> <p>제4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수익성 분석 방법 검토</p> <p>제5절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할인을 산정</p> <p>제6절 자기자본 기준 수익성 분석 방식 도입가능성</p> <p>제 VI 장 종합 결론</p> <p>제1절 연구의 내용과 활용</p> <p>제2절 연구의 한계</p>
----	------------------------------------------------------------------------------------------------------------------------------------------------------------------------------------------------------------------------------------------------------------------------------------------------------------------------------------------------------------------------------------------------------------------------------------------------------------------------------------------------------------------------------------------------------------------------------------------------------------------------------------------------------------------------------------------------------------------------------------------------------------------------



<p>연구의 배경 및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위험 측정 방식 개선 방안</li> <li>- 투자대상국의 정부보증에 대한 반영 필요성 검토</li> <li>- 국제기구 보증에 따른 위험 경감 효과 반영 방안</li> <li>- 자기자본 기준 PI의 도입가능성 검토</li> </ul>
<p>연구 (평가)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기존 사례 및 문헌조사</li> <li>- MIGA 등 국제기구 및 공공기관 면담</li> </ul>
<p>연구내용 및 결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의 내용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연구는 국가위험 측정 방식, 정부보증 및 국제기구 보증효과, 자기자본 기준 PI의 도입 필요성 및 효과 등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이론적·실무적 접근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위험 측정 방식 개선 방안에서는 CDS 프리미엄이 관찰 가능한 국가들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CDS 프리미엄이 관찰되지 않는 국가의 국가위험 프리미엄 추정</li> <li>* 정부보증 및 국제기구의 보증효과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와 기존 사례들을 통한 이론적·실무적 접근으로 보증효과 및 경감효과의 반영 방식에 대하여 검토</li> <li>* 해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시 자기자본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안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자기자본 기준으로 평가 시 적용할 수 있는 할인을 제시</li> </ul> </li> <li>• 본 연구의 의의와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할인을 산정 시 가산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가위험의 정의와 측정방식 검토</li> <li>* 정부보증의 정의와 유형 등에 대해 소개하여 해외사업 평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모</li> <li>* 국제기구의 보증에 따른 경감효과는 보증 유무에 따라 시나리오(보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 보증을 받았을 경우)를 구분하여 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li> <li>* 자기자본 기준 수익성 분석 도입가능성 검토에서는 PI방식으로 수익성을 평가하는 경우, 자기자본 기준과 사업기준의 평가 결과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li> </ul> </li> </ul> </li> <li>- 연구의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위험 측정 방식의 개선 방안에서 CDS 분석의 주된 국가가 모든 국가를 포괄하는 분석이 아니므로 일부 국가의 특수성이 고려되기 어려울 수 있음.</li> <li>• 국제기구의 보증에 따른 경감효과에서 보증 상품별로 경감되는 위험이 사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량화하고자 하였으나, 사업 유형이나 피투자국 등에 따라 유형별 비상위험의 중요성과 크기가 달라지는 만큼 일률적으로 경감효과를 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li> <li>• 자기자본 기준 수익성 분석 도입가능성 검토와 관련하여 자기자본 기준은 사업기준 대비 장점이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확정되기 어려운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공공기관의 사업주로서의 역할과 평가의 일관성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li> </ul> </li> </ul>

**15.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의 수요 및 편익산정 연구**

1) 조사 개요 및 추진경위

연구기간	2017. 7. 21. ~ 2018. 10. 31.
연구진	- KDI 연구진: 정동호 전문위원(연구총괄), 정유진 전문연구원
연구의 목적	- 지식산업센터 및 복합용지의 현재 이용상황 및 특성 정리 - 기 수행된 관련 사업의 수요 및 편익추정 방법론의 정리 -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수요 추정 방법을 제시하고 편익 항목 및 산정 방법론을 마련하여 분석의 신뢰성 및 일관성을 제고

2) 연구결과

목차	<p>제 I 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3절 기 수행 사업</p> <p>제 II 장 복합용지 및 지식산업센터의 현황 제1절 복합용지 현황 제2절 지식산업센터 현황 제3절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설문조사 결과</p> <p>제 III 장 수요 추정 제1절 개요 제2절 기존 사업의 수요 추정 방법론 제3절 수요 추정 개선안</p> <p>제 IV 장 편익 추정 제1절 개요 제2절 기존 사업의 편익산정 방법론 제3절 편익산정 개선안 도출</p> <p>제 V 장 결론</p>
연구의 배경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합용지의 현황 및 자료 분석</li> <li>- 기존 관련 사업의 수요산정 방법론 검토</li> <li>- 복합용지의 수요 및 편익 추정 대안적인 방법론 제시</li> </ul>
연구 (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문조사로 지식산업센터의 정량적인 입주업체 특성 파악(수도권/지방)</li> <li>- 사례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창업편익 및 대안적 통계데이터를 통한 신규투자 편익 산출 방법 연구</li> </ul>
연구내용 및 결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연구는 지식산업센터의 산업시설에 초점을 맞춰 수요 및 편익 추정 방법을 세부적으로 살펴봄.</li> <li>- 단층형 공장이 아닌 복층형 공장의 수요 및 편익 추정 방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 및 편익 추정 시 추가투자와 처음창업을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부가가치 방식으로 기준으로 방법론을 제시</li> <li>-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때 다음 사항에 주의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산업단지공단 협의로 제공되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현황자료는 등록자료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통계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교적 면적 정보, 등록시기 등은 정확하나 종사자수와 같은 변수는 명확치 않음.</li> </ul> </li> <li>· 수요추정 시 통계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사업체조사를 활용하여 해당지역의 각 업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증가속도, 매출액 수준을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본다면 보다 정확하게 수요를 추정할 수 있을 것임.</li> </ul> </li> </ul> </li> <li>- 향후 다음과 같은 연구가 진행된다면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사업체조사를 토대로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생존율 및 매출액을 추정한다면 업력별 매출액 및 업종·지역 등이 고려된 5년 이상의 생존율도 추정할 수 있음.</li> <li>· 생존율의 경우 현재는 처음창업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추가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도 생존률의 파악이 가능하다면 추가투자 편익 산정 시 고려가 가능</li> <li>· 매년 말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현황자료와 KIS data를 결합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한다면 연면적당 매출액, 부가가치액 등을 한 자료에서 추출할 수 있어 분석의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li> </ul> </li> </ul>
--	----------------------------------------------------------------------------------------------------------------------------------------------------------------------------------------------------------------------------------------------------------------------------------------------------------------------------------------------------------------------------------------------------------------------------------------------------------------------------------------------------------------------------------------------------------------------------------------------------------------------------------------------------------------------------------------------------------------------------------------------------------------------------------------------------------------------------------------------------------------------------------------------------------------------------------------------------------------------------------------------------------------------------------------------------------------------------------------

## 16.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 방안 연구

### 1) 조사 개요 및 추진경위

연구기간	2017. 8. 15. ~ 2018. 6. 30.
연구진	- KDI 연구진: 박경애 전문위원(연구총괄), 황희주 전문위원
연구의 목적	-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민간투자재원 조달방안 제시 - 민간부문의 유희자금을 생산적인 인프라투자로 유도

### 2) 연구결과

목차	<p>제 I 장 연구의 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개요 및 기대효과</p> <p>제 II 장 공모인프라펀드의 의의 및 관련 법제                  제1절 공모인프라펀드의 개념과 공모의 유형                  제2절 자본시장법 및 민간투자법에 따른 공모인프라펀드 규율</p> <p>제 III 장 국내외 공개시장을 통한 인프라 자금조달 사례 및 시사점                  제1절 국내 공개시장을 통한 인프라 자금조달 사례                  제2절 해외 공개시장을 통한 인프라 자금조달 사례                  제3절 국내외 공모 인프라펀드 사례 분석의 시사점</p> <p>제 IV 장 공모인프라펀드의 사회적 효용 및 활성화 제약요인                  제1절 공모인프라펀드의 사회적 효용                  제2절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의 제약요인</p> <p>제 V 장 공모인프라펀드의 활성화 방안                  제1절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모형                  제2절 공모인프라펀드의 잠재적 투자대상                  제3절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p> <p>제 VI 장 결론과 정책적 함의</p>
연구의 배경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 인프라 펀드의 의의</li> <li>- 공모 인프라 펀드의 국민경제 및 사회적 효용</li> <li>- 해외 공모인프라 펀드 사례 조사</li> <li>- 공모 인프라 펀드 활성화 방안</li> </ul>
연구 (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가 가져올 수 있는 효용을 이론적 관점에서 제시</li> <li>- 해외 공모인프라 펀드의 사례 조사 (투자자산, 제도 및 활성화의 효과 등)</li> <li>- 정책제언 제시</li> </ul>
연구내용 및 결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의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연구는 우리나라 SOC 및 민간투자제도가 적면해 있는 다양한 이유와 상황으로 인해 적극적 도입이 요구되는 공모인프라펀드를 국내에 효율적으로</li> </ul> </li> </ul>

	<p>정책/활성화시키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국내외의 관련 제도 및 규제를 비교하여 살펴보고 우리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던져 줄 수 있는 국내외의 선행 사례들을 분석하였음.</li> <li>•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다양한 효용과 긍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함을 연구결과로 제시함으로써 공모인프라펀드 도입의 당위성을 확인했음.</li> <li>• 현 시점에서 우리 상황에 적합한 공모인프라펀드 모형들을 개발/제시하였음</li> </ul> <p>- 연구의 정책적 함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상황에서 국내 공모인프라펀드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모인프라펀드에 비해 상당히 강화된 규제를 받고 있지만, 그 규제의 내용이 해당 인프라펀드의 수익성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웠음.</li> <li>• 다만 다음과 같이 2가지 측면에서의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째, 현재 사모특별자산펀드는 브릿지대출을 활용하지 않고도 사업시행자에 대한 직접 대출이 가능한데, 공모특별자산펀드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에 대한 직접 대출을 허용한다면, 브릿지대출을 위한 거래비용이 절감할 수 있으므로 공모인프라펀드의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임.</li> <li>* 둘째, 회사형 공모민투법펀드의 최저 순자산액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함.</li> </ul> </li> <li>• 민자사업 선진국들에서 공모인프라펀드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압축될 수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정적인 PPP 제도의 확립</li> <li>(2) 다양한 대체투자펀드에 대한 폭발적 수요 증가</li> <li>(3) 공모인프라펀드에 적용되는 개인투자자들의 세제 혜택</li> <li>(4) 민간투자사업 출자지분의 제한 없는 거래 허용 등</li> </ol> </li> <li>• 우리나라는 민자제도를 도입한지 24년이 경과하여 상당히 발전되어 있고 안정적인 PPP 제도가 구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li> <li>• 우리나라는 가계 부문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인구구조의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유류자금이 장기 투자처를 찾는 경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공모인프라펀드가 활성화 될 경우 이에 대한 투자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전망됨.</li> <li>• 공모인프라펀드 투자 시 개인투자자들에게 특별한 세제 혜택은 없는 상황이므로 향후 공모인프라펀드의 본격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li> </ul> <p>-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모형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6가지의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모형을 개발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들 모형을 ① 사업개발자 선호도(기존 투자자의 선호도) ② 일반 개인투자자 참여 가능성 ③ 실현가능성 ④ 정책적 효과 ⑤ 적용가능분야 등의 차원에서 비교 분석한 결과, 한도보증 하의 Mini-perm 금융구조 공모펀드 모형과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활성화 모형이 가장 적합한 공모인프라펀드 모형으로 판단됨.</li> <li>• 이러한 모형들이 활성화될 경우 사업개발자의 출자지분 투자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민자사업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li> </ul> </li> </ul> <p>- 가상사례 적용을 통한 효과분석 및 정책적 지원 필요사항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연구는 이상의 두 모형을 서로 다른 가상의 민간투자사업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구체적 활용방법론과 기대효과를 적시하였음.</li> <li>• 본 연구가 제시한 모형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사항을 제시하였음.</li> </ul>
--	---------------------------------------------------------------------------------------------------------------------------------------------------------------------------------------------------------------------------------------------------------------------------------------------------------------------------------------------------------------------------------------------------------------------------------------------------------------------------------------------------------------------------------------------------------------------------------------------------------------------------------------------------------------------------------------------------------------------------------------------------------------------------------------------------------------------------------------------------------------------------------------------------------------------------------------------------------------------------------------------------------------------------------------------------------------------------------------------------------------------------------------------------------------------------------------------------------------------------------------------------------------------------------------------------------------------------------------------------------------------------------------------------------------------------------------------------------------------------------------------------------------------------------------------------------------------------------------------------------------------------------------------------------------------------------------------------------------------------------------------------------------------------------------------------------------------------------------------------------------------------------------------------------------------------------------------------------------------------------------------------------------------------------------------------------------------------------------------------------------------------------------------------------------------

## 17. 민간투자사업의 법인세관련 이슈 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 1) 조사 개요 및 추진경위

연구기간	2017. 7. 10. ~ 2018. 8. 28.
연구진	- KDI 연구진: 박용진 전문위원(연구총괄), 임혜림 전문연구원
연구의 목적	- 민간투자사업의 법인세 관련 쟁점 파악 및 검토 - 사례사업의 재무모델을 통한 이슈 및 문제점에 대한 실증분석 -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및 제도 개선방안 도출

### 2) 연구결과

목차	<p>제 I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개요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p> <p>제 II 장 법인세 관련이론 및 규정의 검토 분석 제1절 법인세의 개요 및 특성 제2절 SOC 민간투자사업과 법인세 제3절 판례를 통해 본 법인세 관련 이슈 분석</p> <p>제 III 장 법인세 관련 이슈 및 문제점 실증분석 제1절 법인세 관련 이슈 및 문제점 분석 제2절 재무모델을 활용한 실증분석</p> <p>제 IV 장 법인세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 제1절 법인세 변경효과의 처리 제2절 후순위대출금이자율 관련 문제점 해결방안 제3절 BTL사업의 법인세 처리방안</p> <p>제 V 장 결론 및 정책 제언</p>
연구의 배경 및 범위	- 문헌연구를 통한 법인세 부과의 법률적 근거와 관련 제도의 파악 - 실시협약상 법인세 관련조항 및 실시협약 재무모델 분석을 통한 현황 파악
연구 (평가) 방법	- 선정한 사례 사업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분석 - 사업 시행조건 조정 사례에서의 쟁점 및 개선방안 분석 법인세 변경효과 실시협약상 반영 방안 마련
연구내용 및 결론	- 법인세(corporation tax or corporate income tax)는 법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는 과세 주체가 중앙정부인 국세이고,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임.</li> <li>• 또한, 조세 수입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는 보통세이며, 종가세, 정율세이다. 법인세는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와 함께 3대 기간세목의 하나로서 전체 국세의</li> </ul>

	<p>21.5%를 차지할 만큼 세원 비중이 높은 조세이기도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투자사업의 법인세 관련 법률적 근거는 「법인세법」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찾을 수 있음.</li> <li>- 민간투자사업에서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위험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li> <li>- 임대형 사업에서의 법인세 관련 이슈를 제외하면, 지금까지 발생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법인세 관련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나는 법인세법 등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의 처리와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급이자의 증가로 인해 법인세 납부세액의 감소와 관련되어 있음.</li> </ul> </li> <li>-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분쟁사례 및 현재 제기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법인세 관련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다음과 같은 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민간투자사업 관련 세법의 변경으로 법인세율,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및 공제기간, 비과세소득 인정범위 변경 등에 따른 효과의 합리적인 처리가 필요함.</li> <li>• 법인세 변경효과를 처리함에 있어 기존의 사용료 등의 조정방식 이외에 추가적으로 법인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납부세액을 정산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li> <li>• 법인세법에 특례조항을 두어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인세액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li> <li>• 과세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후순위대출금 이자율의 적정 시가 수준을 실무적으로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기본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음.</li> <li>• BTL 사업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현재의 행정해석을 금융리스로 처리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음.</li> <li>• BTL 사업의 대수선비(부품교체비 포함)의 경우 기업회계와 세무상 수익과 비용지출의 인식시점을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주무관청이 운영비용에서 대수선비를 분리하여 대수선 용역이 발생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li> </ul> </li> </ul>
--	---------------------------------------------------------------------------------------------------------------------------------------------------------------------------------------------------------------------------------------------------------------------------------------------------------------------------------------------------------------------------------------------------------------------------------------------------------------------------------------------------------------------------------------------------------------------------------------------------------------------------------------------------------------------------------------------------------------------------------------------------------------------------------------------------------------------------------------------------------------------------------------------------------------------------------------------------------------------------------------------------------------------------------------------------------------------------------------------------------------------------------------------------------------------------------------------------------------------------------------------------------------

**18.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및 제안서 검토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

1) 조사 개요 및 추진경위

연구기간	2016. 11. 01 ~ 2018. 04. 30
연구진	- KDI 연구진: 김재영 전문위원(연구총괄), 정민웅 전문위원, 조영희 전문위원, 백승한 전문위원, 양봄이 전문연구원, 강은영, 전문연구원 김성규 전문연구원, 이명환 전문연구원
연구의 목적	- 각 부문별 세부요령 및 가이드라인에 산재된 조사 방법론의 정리를 통한 일관성 있는 분석 기준 제시 - 추가적인 연구를 통한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및 제안서 검토의 신뢰성 제고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제시된 관련 세부요령 갱신

2) 연구결과

목차	<p>제 I 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주요 연구 방향</p> <p style="text-align: center;">&lt;제1부&gt;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조사 세부요령(일반지침)</p> <p>제 II 장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 수행체계 제1절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2절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의 수행체계 제3절 사업추진방식별 고려 사항</p> <p>제 III 장 타당성 판단 제1절 타당성 판단의 개요 제2절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3절 교통 부문 사업의 타당성 판단 제4절 환경부문 사업의 타당성 판단 제5절 문화·관광 부문 사업의 타당성 판단 제6절 경제성 분석 제7절 정책성 분석 및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8절 AHP 분석에 의한 종합평가</p> <p>제 IV 장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제1절 정량적 VFM 분석 제2절 정성적 VFM 분석</p> <p>제 V 장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및 우대점수 산정 제1절 민간투자 실행대안의 구축 제2절 우대점수비율의 산정</p> <p style="text-align: center;">&lt;제2부&gt; 주요 쟁점 사안별 상세 연구</p> <p>제 VI 장 해외 적격성조사 제도 및 사례연구 제1절 VFM 개요 제2절 해외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제도 현황</p>
----	-------------------------------------------------------------------------------------------------------------------------------------------------------------------------------------------------------------------------------------------------------------------------------------------------------------------------------------------------------------------------------------------------------------------------------------------------------------------------------------------------------------------------------------------------------------------------------------------------------------------------------------------------------------------------------------------------------------------------------------------------------------------



	<p>제Ⅶ장 적격성조사의 재무적 할인을 차등화 필요성          제1절 적격성조사(Vfm test)와 할인을          제2절 할인을 적용에 대한 쟁점 검토          제3절 해외사례 검토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제언</p> <p>제Ⅷ장 정성적 VFM 분석 개선방안 연구</p> <p>제Ⅸ장 사용료 차이에 대한 고려</p> <p>제Ⅹ장 타당성 판단 관련 연구          제1절 정부실행대안 사용료 기준 연구(도로)          제2절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조사의 용지보상비 추정</p> <p>제Ⅺ장 적격성 판단 관련 연구          제1절 적격성조사의 낙찰을 적용기준 갱신          제2절 VFM 분석시 정부부담액 조달방식에 따른 차이 비교          제3절 VFM 분석 표준재무모델 및 기준 마련</p> <p>제Ⅻ장 기타 제도개선 관련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자적격성 판단          제2절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정부지급금 부담능력 검토 기준</p>
<p>연구의 배경 및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검토범위 및 사항을 포함</li> <li>- 2010년에 발간된 『수익형(BTO)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연구』를 기본으로 하되, 도로사업 위주의 지침을 일반 지침화</li> <li>- 2015년에 『BTO 민간투자사업 투자위험분담형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 세부요령』에서 갱신된 틀과 내용을 반영</li> </ul>
<p>연구 (평가)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별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 결과 중 반영 필요사항 검토</li> <li>- 외부 위탁 및 전문가 자문</li> <li>- 자료수집 및 현지조사</li> <li>- 전문가 초청 간담회 및 관계자 회의</li> </ul>

**19. 공기업·준정부 기관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2판)**

1) 조사 개요 및 추진경위

연구기간	2016. 6. 22. ~ 2018. 4. 30.
연구진	- KDI 연구진: 이정권 전문위원(연구총괄), 정동호 전문위원(공동총괄), 조민혜 전문연구원, 김유경 전문연구원
연구의 목적	-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 절차와 방법을 통찰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2013)를 수정·보완하여 평가 일반지침으로서의 활용도 제고 - 공타 일반지침 개정을 통해 새로운 사업유형 추가, 그간의 관련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지침의 활용성 강화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과정에서 검토한 주요 이슈의 추가·보완 검토를 통한 조사 분석의 신뢰성 제고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과의 연계를 통한 분석의 실효성 제고

2) 연구결과

목차	<p style="text-align: center;">&lt;제1부&gt; 연구의 개요 및 지침의 의의</p> <p>제 I 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의 의의 및 활용 제3절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내용</p> <p>제 II 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 근거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내용</p>
	<p style="text-align: center;">&lt;제2부&gt;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p> <p>제 III 장 사업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추진 경위 및 근거 제3절 사업의 내용</p> <p>제 IV 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의 분석 제2절 조사의 주요 쟁점</p> <p>제 V 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제1절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기술적 검토 제2절 비용 추정</p> <p>제 VI 장 수요 및 편익 추정 제1절 수요 및 편익 추정의 개요 제2절 수요 추정 및 편익 산정</p> <p>제 VII 장 공공성 평가 제1절 경제성 평가</p>

	<p>제2절 정책성 분석</p> <p>제Ⅷ장 수익성 평가</p> <p>제1절 수익성 평가 개요</p> <p>제2절 재무성 분석방법</p> <p>제3절 재무성 평가</p> <p>제4절 재무안정성 평가</p> <p>제5절 해외사업의 위험도 평가</p> <p>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p> <p>제1절 AHP 분석의 개요</p> <p>제2절 AHP를 활용한 종합판단</p> <p>제3절 조사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p>
<p>연구의 배경 및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배전, 연료전지, 산업단지, 배후단지 개발 등에 대한 편익 분석 방법론 추가</li> <li>- 공타 일반지침 연구('13년) 이후 분석 방법론 수정·변경사항에 대한 업데이트 및 운용지침 개정내용 반영</li> </ul>
<p>연구 (평가)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IMAC 업무 GUIDELINE 및 회람을 통해 배포된 주요 수정 및 보완사항 반영</li> <li>- 새로운 사업유형의 조사수행에 따라 제기된 분석이슈에 대한 보다 정치한 분석 방법론을 검토하여 지침으로 제시</li> <li>- PIMAC 타 분석 방법론 연구(산단, 개발사업, 항만, 정보화, CVM분석, 기타 표준지침 및 가이드라인 등)의 주요성과를 반영하여 일반지침 정비</li> <li>-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의 보완을 위한 공업용수 공급 편익 산정 요령</li> <li>- 조사과제 일관성 확보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한 교통분석 기초자료(항만 물동량 등) 적용방안</li> </ul>
<p>연구내용 및 결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지침의 의의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지침은 법령, 지침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조사의 전문성, 객관성을 제고함은 물론 조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분석 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하는 지침으로서의 의미를 가짐.</li> <li>· 『일반지침』은 해외사업 표준지침을 포함하여 각종 부문별 표준지침의 통합 지침으로 기능하게 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일반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사안별 분석기법을 쟁점화하고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둠.</li> </ul> </li> </ul> </li> <li>- 주요 연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지침』의 핵심 내용인 경제성 분석, 재무성 분석, 정책적 분석 및 종합평가 부문을 중점적으로 검토함.</li> <li>· 공공기관 사업의 타당성 평가는 공공성 평가 중심의 재정사업 및 수익성을 중시하는 민간투자사업 평가 성격을 병행 검토하고자 '공공성'과 '수익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성' 평가에서는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경제적 타당성(경제성)과 더불어 정책적 타당성(정책성) 평가방법을 정리하고,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추가된 '기관 설립목적과의 합치성'에 대한 검토방법을 제시</li> <li>* '수익성' 평가에서는 '개별 사업의 재무성'과 '재무안정성' 평가기준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재무성(PI) 산정을 위한 주요 파라미터, 재무비율 평가항목 및 분석요령을 검토</li> </ul> </li> <li>· 종합평가를 위하여 공공성 및 수익성 평가항목의 가중치 설정을 검토하고 AHP 수행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론을 제시</li> </ul> </li> </ul>

**20.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2판)**

1) 조사 개요 및 추진경위

연구기간	2016. 12. 23. ~ 2018. 4. 22.
연구진	- KDI 연구진: 이정권 전문위원(연구총괄), 강동석 전문위원, 황희주 전문위원, 정동호 전문위원
연구의 목적	- 해외사업 표준지침을 수정·보완하여 지침으로서의 활용도 제고 -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결과 반영 - 자원개발사업, 수력발전사업 등 신규사업유형 추가

2) 연구결과

목차	<p style="text-align: center;">&lt;제1부&gt;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요</p> <p>제 I 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향 및 연구내용</p> <p>제 II 장 공공기관 해외투자 현황                  제1절 해외투자사업의 특성                  제2절 공공기관의 해외투자</p> <p>제 III 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방향 및 절차                  제1절 추진방향                  제2절 추진절차</p> <p style="text-align: center;">&lt;제2부&gt; 해외인프라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지침</p> <p>제 IV 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제2절 기초자료 분석                  제3절 해외인프라사업 법률 검토 시 주안점                  제4절 프로젝트 파이낸스 계약                  제5절 기업인수계약</p> <p>제 V 장 기술 검토 및 비용 추정                  제1절 화력발전사업                  제2절 수력발전사업                  제3절 신재생 발전사업</p> <p>제 VI 장 수요 및 매출추정                  제1절 개요                  제2절 시장 분석                  제3절 매출액 추정</p> <p>제 VII 장 공공성 평가                  제1절 공공성 평가의 개요                  제2절 정책성 평가                  제3절 국내경제 파급효과</p>
----	-----------------------------------------------------------------------------------------------------------------------------------------------------------------------------------------------------------------------------------------------------------------------------------------------------------------------------------------------------------------------------------------------------------------------------------------------------------------------------------------------------------------------------------------------------------------------------------------------------------------------------------------------------------------------------------------------------------------------------------------------------------------------------------------------------------------------------------------------------------------------------------------------------------------------------------------------------------------------------------------------------------------------------------------------

	<p>제Ⅷ장 수익성 평가          제1절 사업의 재무성 평가          제2절 재무안전성 평가          제3절 해외사업위험요인 분석</p> <p>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          제2절 AHP 분석과정          제3절 조사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p> <p style="text-align: center;">&lt;제3부&gt; 해외자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지침</p> <p>제Ⅹ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제2절 조사의 주요 쟁점          제3절 법률 검토의 주안점</p> <p>제Ⅺ장 공공성 평가          제1절 공공성 평가의 개요          제2절 국내경제 파급효과</p> <p>제Ⅻ장 기술 검토 및 비용 추정          제1절 주요 기술 검토 사항          제2절 총사업비 추정          제3절 운영비 산정          제4절 기타 고려사항</p> <p>제Ⅻ장 수요 및 매출 추정          제1절 매장량 및 생산량 추정          제2절 자원가격 추정 방법          제3절 매출액 추정방법</p> <p>제Ⅻ장 수익성 평가          제1절 재무적 할인율 추정</p> <p>제Ⅻ장 사업 안정성 평가          제1절 석유·가스 개발사업</p> <p>제Ⅻ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해외자원사업의 AHP 평가방법          제2절 조사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p>
<p>연구의 배경          및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사업의 분석 방법론</li> <li>- 자원사업의 분석 방법론 추가</li> <li>- 정책성 분석부문 업데이트</li> <li>- 재무성 분석 보완(할인율, PI 산정방식 등)</li> <li>- 재무안전성 분석 보완</li> </ul>
<p>연구 (평가)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 해외사업 추이 및 진행 절차 정리</li> <li>-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현황 정리</li> <li>- 사업유형별로 구분하여 기술 및 비용 검토, 수요 및 편익추정 방법 기준 제시</li> <li>- 재무적 할인율, PI 산정방식</li> <li>- 개별 이슈별로 외부 전문가를 섭외하여 검토 진행</li> </ul>
<p>연구내용          및 결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공공기관 해외사업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및 사례를 분석하고 기존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을 기본 틀로 하여,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li> </ul> </li> </ul>

	<p>비타당성조사에 적용 가능한 항목과 추가 고려사항 등을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 해외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외사업의 리스크요인(국가리스크, 사업리스크 등)을 분석하고, 공공기관 해외투자사업의 산업별, 투자 유형별, 참여 방식별 특성을 반영한 대상 사업의 선정 및 조사 방법을 검토하였으며, 해외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공성 및 수익성 평가방안을 파악</li> <li>- 제1부: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투자사업의 특성, 공공기관의 해외투자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조사대상 사업의 선정과 평가과정에서의 고려요소들을 확인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의 필요성, 대상 사업의 선정기준을 검토하며 추진절차를 제시</li> </ul> </li> <li>- 제2부: 해외인프라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사업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평가항목별 지침을 수립·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화력발전 위주의 지침을 보완하여 수력발전, 신재생 등 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을 정리하여 추가로 제시</li> </ul> </li> <li>- 제3부: 해외자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평가항목별 지침을 제시</li> <li>· 자원사업의 단계별(탐사, 개발 및 생산 단계) 특징과 함께 광물사업과 유·가스 사업 간의 차이점 및 평가 주안점 등을 살펴봄.</li> </ul> </li> </ul>
--	---------------------------------------------------------------------------------------------------------------------------------------------------------------------------------------------------------------------------------------------------------------------------------------------------------------------------------------------------------------------------------------------------------------------------------------------------------------------------------------------------------------------------------------------------------------------------------------------------------------------------------------------------------------------------------------------------------------------------------------------------------------------------------------------------------------------------------------------------------------------------------------------------------------------------------

## 21. 환경분야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지침 개정 연구

### 1) 조사 개요 및 추진경위

연구기간	2016. 11. 1. ~ 2018. 6. 30.
연구진	- KDI 연구진: 이원석 전문위원(연구총괄), 전문위원, 구석모 전문연구원, 양봄이 전문연구원, 강은영 연구원
연구의 목적	- 기존 지침의 개정을 통해 혼재되어 있는 각종 지침성 방법론들을 명확히 지침화하고 최근 동향과 여건을 반영한 조사의 기준과 방법론을 재정립하고자 함. - 환경분야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지침 개정판이 통합지침서로써 조사의 일관성과 신뢰성 제고

### 2) 연구결과

목차	<p>제 I 장 연구의 개요</p> <p>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p> <p>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p> <p>제3절 상하수도 정책과 현황</p> <p>제4절 폐기물 정책과 현황</p> <p>제5절 환경사업 적격성조사 현황</p> <p>제 II 장 장래인구 추정</p> <p>제1절 장래인구 추정의 개요</p> <p>제2절 조성법을 통한 장래인구 추정 연구</p> <p>제3절 조성법에 따른 장래인구 추정 가이드라인</p> <p>제 III 장 수요 추정</p> <p>제1절 상하수도 수요 추정의 개요</p> <p>제2절 상하수도부문 수요추정</p> <p>제3절 폐기물부문 수요 추정의 개요</p> <p>제4절 폐기물부문 수요 추정</p> <p>제5절 환경기초시설의 기술적·환경적 타당성 검토 사항</p> <p>제 IV 장 비용 산정</p> <p>제1절 비용 산정의 개요</p> <p>제2절 상하수도부문 비용 산정</p> <p>제3절 폐기물부문 비용 산정</p> <p>제 V 장 편익 산정</p> <p>제1절 개요</p> <p>제2절 편익 산정 쟁점 검토</p> <p>제3절 적격성조사의 편익 산정 개선 방안</p> <p>제 VI 장 타당성 판단과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p> <p>제1절 환경사업의 타당성 판단</p> <p>제2절 환경사업의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p>
연구의 배경	- 최근 환경분야 시설사업의 동향과 추이 검토 및 선행연구, 조사사례 검토 - 수요추정 방법론의 경우, 기존 방법론의 보완뿐만 아니라, 시설규모의 적정성

<p>및 범위</p>	<p>판단시 유의할 사항을 함께 검토하여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용 추정은 그간 개정된 타 지침, 연구결과 그리고 각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관련법 개정사항 및 환경부의 최근 지표를 최대한 고려하여 수정·보완하고자 함.</li> <li>- 최근 제안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환경사업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편익 추정 방법론을 연구</li> <li>- 기타 기본계획 개정사항 반영 및 과거 쟁점이 되어왔던 사항들에 대해 지침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검토·반영</li> </ul>
<p>연구 (평가)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 시설현황 자료, 선행연구 및 관련문헌을 바탕으로 다양한 평가방법론 연구</li> <li>- 연구세미나,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외부전문가 의견 수렴 및 연구에 반영</li> <li>- 각 부문별 전문가 집단(학계, 연구기관, 설계회사 등)을 연구진으로 구성하고, 추가적인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지침의 전문성을 제고</li> </ul>
<p>연구내용 및 결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연구의 기본 구성은 기존 지침의 틀을 최대한 유지하되, 금회 다루는 환경기초시설의 종류가 기존 지침 대비 다양해서 종류별로 지침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문별 공통기준이 중복적으로 제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재구성함.</li> <li>- 부문별로 시설의 처리대상 장래인구의 산정, 수요 추정, 비용 산정, 편익산정 그리고 타당성판단과 적격성판단 지침에 대한 세부 연구항목으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부문: 장래인구 추정과 수요 추정 파트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부문은 기존 지침에서 제시한 조성법 추정방법론은 유지하며 세대인구의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외부유입인구 산정을 보완하고자 하며, 다양한 시설종류를 고려하고 최근 연구결과에 따라 수요 추정의 방법론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지 검토</li> <li>* 수요와 시설규모가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환경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요를 추정하고 시설규모를 확정하기까지 연구진이 검토해야할 사항들을 제시</li> </ul> </li> <li>• 비용부문: 하수도분야와 폐기물분야로 구분하고 그간 개정된 타 지침, 연구결과 그리고 각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관련법 개정사항 및 환경부의 최근 지표를 최대한 고려하여 수정·보완</li> <li>• 편익부문: 기존 편익추정 방법론을 검토하고 재정립하며 최근 다양해지는 사업유형(이전, 지하화, 성능개선 등)의 특수성을 고려한 추정 방법론을 검토하여 제시하고, 환경시설사업에서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환경적 편익항목의 도출을 연구</li> </ul> </li> </ul>





## 제Ⅳ장

### 2018년도 교육 및 국제협력 과제별 요약표

---



## 1. 중남미지역 공무원 대상 PPP 정책연수

기간	2018. 9. 10. ~ 9. 14.
장소	- KDI 대회의실 /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
참석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남미 공무원) Raul Menezes dos Santos(브라질 재무부), Nicolle Esmeralda Suazo Lizardo(온두라스 PPP 관리협회), Alicia Bish(자메이카 재무부), Juan Jaime Molina Vélez(멕시코 공공투자 서비스 국립은행), Israel Barrera(파나마 기획재정부), Rolando Javier Sapriza Gomez, Maria Viviana González Lucero(이상 파라과이 재무부), Germán Alberto Ferreyra Espinoza, Omar Teofilo Coronado Cacsire(이상 페루 기획재정부), Maria Luisa Olivera Favretti(우루과이 기획재정부), Tomás Portela(아르헨티나 재무부), Marco Ferrari(아르헨티나 각료의장), Fabian Moscoso(에콰도르 부동산관리청)</li> <li>- (IDB) Gerardo Reyes Tagle 선임 이코노미스트, 최재영 자문관(이상 IDB 재정관리부)</li> <li>- (기획재정부) 이승욱 민간투자정책과 과장, 이옥주 사무관</li> <li>- (KDI) 김기완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김형태 민간투자지원실 실장, 김도일 민간투자지원실 부실장, 김탁경 공공투자정책팀장, 이과섭 사업지원팀장, 김재영 사업조사팀장, 박경애 사업관리팀장, 김혜영 전문위원, 김수정 전문연구원, 송가원 연구원</li> </ul>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민간투자제도의 홍보와 주요 과정 및 방법론 소개</li> <li>- 중남미 PPP 실무자들과 네트워크 구축 및 한국 PPP 경험 공유</li> </ul>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민간투자제도의 주요 내용 공유와 민간투자사업 현장 방문</li> <li>· 다양한 분야의 민간투자 전문가로부터 한국 민간투자사업 추진체계와 주요 절차, 공공투자관리제도, 재정위험관리, 적격성 조사, 민간투자사업의 계약관리와 자금조달 등 한국 민간투자제도의 주요 내용과 경험을 공유</li> <li>· 민간투자시설 현장 방문</li> </ul>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공공투자관리제도 및 KDI PIMAC 소개</li> <li>- 한국의 민간투자제도 및 정책방향 소개</li> <li>-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우선순위 설정</li> <li>- 타당성 검토와 VFM 분석</li> <li>-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위험 관리</li> <li>- 사례 연구: 적격성 조사</li> <li>-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민간투자사업 협상</li> <li>- 민간투자사업의 계약관리</li> <li>- 민간투자사업의 금융구조 및 자금조달</li> <li>-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li> <li>-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재조달과 재구조화</li> <li>- 민간투자사업 현장방문</li> </ul>

## 2. 2017 아시아 민간투자 네트워크(APN)

기간	2018. 11. 5 ~ 11. 8.
장소	- 콘래드 서울
참석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DI) 임영재 부원장, 김기완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김형태 민간투자지원실장, 김정옥 규제연구센터소장, 김탁경 공공투자정책팀장, 김혜영 사원지원팀장, 김수정 전문연구원, 송가원, 김수연 연구원</li> <li>- (기획재정부) 이승욱 민간투자정책과 과장, 정재성 주무관</li> <li>- (World Bank) Hoon Sahib Soh 세계은행 서울사무소 대표, Junglim Hahm WB 선임 인프라 전문관, Deblina Saha WB 인프라 분석관</li> <li>- (ADB) Srinivas Sampth ADB PPP 테마그룹 총괄, 양원호 PPP 전문관, Aura V. Abon 선임 PPP 담당관, Camelia Aurora Godoy 선임운영어시스턴트</li> <li>- (GIH) Steven Hong 선임매니저</li> <li>- (학계) 박현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박인석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연구교수</li> <li>- (민간) 임한규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본부장, Kon Lee 맥쿼리 이사, Thalia Alice Georgiou 아시아케어그룹 사회의료서비스 상무이사, Nasser Fares Massoud 컨셉리얼라이제이션 상무이사, Lieven Jacquemyn GE 헬스케어 PPP 국제개발디렉터 등 총 5인</li> <li>- (각국 참석자) Kyaw Myo 미얀마 교통통신부 차관 외 1인, Elita Tooala 사모아 공기업부 CEO 외 1인, Allan Jensen 쿡아일랜드 투자청 CFO 외 2인, Maria Lerma Advincula 필리핀 PPP센터 실장, Faruque Ahmed 방글라데시 PPP 담당 국장, Macthearith Om 캄보디아 PPP Unit 부팀장 외 1인, Pratibha Saxena 인도 재무부 부국장, Dulguun Ganzorig 몽골 개발은행 자산관리매니저, Thavichanh Thienhthepvongsa 라오스 투자계획부 부국장, Ana Chkhaidze 조지아 MESD 경제개혁과 팀장, 파키스탄 Agha Waqar Javed 편집주 PPP 담당관 등 아태지역 개도국 PPP 정책담당자</li> </ul>
목적	- APN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기획재정부(MOEF)가 후원하는 아시아지역 PPP 네트워크 사업으로 아시아 지역 PPP 전담 기관장들이 모여 민간투자(PPP) 정책 방향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번 회의는 '민간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공과 민간 간 적절한 역할분담과 배분방안'이라는 주제 하에 아래 내용에 대한 발제 및 토론과 현장방문으로 운영 됨.</li> <li>· 공공-민간 간 적절한 역할분담과 배분</li> <li>· 국별 라운드테이블: 최근 PPP 정책 및 시장동향 공유</li> <li>· 사회 인프라 개발을 위한 민간투자사업</li> <li>· PPP 최근 동향과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li> <li>· 민간제한사업 워크숍</li> </ul>

<p>프로그램</p>	<p>&lt;Day 1&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inding balance between public and private dimension in P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orld Bank's approach</li> <li>· PPPs in the Asia Pacific region</li> <li>· Korea: Current challenges and policy response</li> <li>· Country case: Finding the balance between private and public in PPPs: The Philippine PPP experience</li> </ul> </li> <li>- Roundtable of the PPP Practitioners in As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resentations by the delegate from each participating country</li> </ul> </li> </ul> <p>&lt;Day 2&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ructuring social sector PP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resentation on Elderly Care PPPs</li> <li>· Presentation on Education PPPs</li> <li>· Presentation on Health PPPs</li> <li>· Panel Discussion</li> </ul> </li> <li>- Towards a broader and more relevant PPP – Response to Specific Top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novative risk allocation mechanism</li> <li>· Recent policy developments and key issues in Australia's PPPs</li> <li>· Korea: Effective ways to support procurement process</li> </ul> </li> <li>- Public-private dialogue – Discussion with the PPP inves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verview of Korea's overseas PPP participation and case examples</li> <li>· Case examples in global PPP projects</li> </ul> </li> <li>- Wrap-up session</li> </ul> <p>&lt;Day 3&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USPs</li> <li>- Dispelling USP Myths</li> <li>- Key Decisions in Drafting a USP Policy</li> <li>- Interactive Exercise</li> <li>- Wrap-up session</li> </ul> <p>&lt;Day 4&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ite visit: School Facility(dormi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li> <li>- Site visit: Hospital Facility: Gyeonggi Provincial Medical Center Ansong Hospital</li> </ul>
-------------	------------------------------------------------------------------------------------------------------------------------------------------------------------------------------------------------------------------------------------------------------------------------------------------------------------------------------------------------------------------------------------------------------------------------------------------------------------------------------------------------------------------------------------------------------------------------------------------------------------------------------------------------------------------------------------------------------------------------------------------------------------------------------------------------------------------------------------------------------------------------------------------------------------------------------------------------------------------------------------------------------------------------------------------------------------------------------------------------------------------------------------------------------------------------------------------------------------------------------------------------------------------------------------------------------------------------------------------------------------------------------------------------------------------------------------------------------------------------------------------------------------------------------------------------------------------------------------------------------------------------------------------------------------------------------------------------------------------------------------------------------------------------------------------------------------------------------------------------------------------------------------------------------------------------------------------------------------------------------------------------------------------------------------------------------------------------------------------------------------------

### 3. 카자흐스탄 공무원단(KSP 사절단) 방원회의

기간	2018. 2. 20.
장소	- KDI 중회의실
참석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자흐스탄) Yesdauletova A.A 국가경제부 예산투자-민관협력국 부국장, Kalkabayeva A.A. 국가경제부 예산투자-민관협력국 수석전문가, Seidumanov A.M. 국가경제부 예산투자민관협력국 PPP부 전문가, Zhakin A.T. 카자흐스탄 프로젝트 준비기금 프로젝트 최고책임자, Bulatov A.B. 카자흐스탄 PPP 센터 경영본부 부사장</li> <li>- (KDI) 김기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김탁경 공공투자정책팀장, 박경애 사업관리팀장, 김수정 전문연구원</li> </ul>
목적	- 카자흐스탄과 KDI는 현재 ‘민간투자사업(PPP) 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KSP사업을 진행중이며 KSP사업의 정책실무자연수의 일환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 방문하여 한국의 민간투자제도 및 관련 경험을 공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및 기능 소개</li> <li>- 한국의 공공투자관리제도 소개 및 PPP 사업 추진방식 및 절차 등 논의</li> <li>- 민간투자사업 자금조달 및 환위험관리 발표 및 질의응답</li> </ul>

### 4. 스리랑카 재무부 사절단 방원회의

기간	2018. 3. 29.
장소	- KDI 중회의실
참석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리랑카) Deshal de Mel 재무부 경제자문관, Kithsiri Nemawatta 재무부 공기업국 국장, Lakkathas Asai 공기업부 차관보, Fabian Seiderer WB 공공부문 수석전문관, Manela Karunadasa WB SOE거버넌스 담당관 등 5인</li> <li>- (KDI) 김형태 민간투자지원실장, 김탁경 공공투자정책팀장, 김수정 전문연구원</li> </ul>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리랑카 사절단은 KDI 국제정책대학원과 세계은행이 공동주최하는 ‘공동의 번영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SOE Reforms &amp; Shared Prosperity)과 조세제도와 경제성장(Taxation and Growth)’ 워크숍 참석을 위해 한국에 방문</li> <li>- 동 방문기간동안 세계은행의 요청으로 본 세미나는 추진되었으며 기획재정부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방문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과 기능 및 한국의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등을 논의</li> </ul>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과 기능 소개</li> <li>- 한국의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소개</li> </ul>

### 5. 우간다 장관 사절단 방원회의

기간	2018. 4. 11.
장소	- KDI 대회의실
참석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간다) Hon. AJEDRA G. ARIDRU 재무기획경제개발부 국무장관, Hon. SARAH OPENDI ACHIENG 보건부 국무장관 외 8인</li> <li>- (WB) Pascal Dooh-Bill WB 컨설턴트, 최정 WB 서울사무소 홍보관</li> <li>- (KDI) 김기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김탁경 공공투자정책팀장, 김재영 사업조사팀장, 이과섭 사업지원팀장, 박경애 사업관리팀장, 김수정 전문연구원</li> </ul>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B의 동아프리카 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간다 사절단 10인을 대상으로 방한연수가 추진되었으며, 본 연수는 한국의 PPP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여 우간다 PPP 정책과 제도 구축을 지원하고자 기획되었음.</li> <li>- 동 기간동안 우간다 사절단은 KDI를 방문하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와 한국의 PPP 제도와 PPP 사업 추진 사례 등을 논의하였음.</li> </ul>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공공투자관리제도 소개와 질의응답</li> <li>-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제도 및 사례 소개와 관련 질의응답</li> </ul>

### 6. 우크라이나 공무원단(KSP 사절단) 방원회의

기간	2018. 7. 18.
장소	- KDI 중회의실
참석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크라이나 경제개발부) Oksana Gryshkevych 공공투자개발지원국 국장, Nataliia Spichak 공공투자프로젝트팀장, Iryna Korzh 공공투자프로젝트 모니터링-국제협력팀 선임전문위원, Dmytro Grytsenko 투자유치팀 선임전문위원, Yuliia Skubak PPP팀 선임전문위원, Olha Aleksieieva 투자활동법률제공팀 선임전문위원 외 2인</li> <li>- (KDI) 김기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여흥구 재정투자평가실 부실장, 김탁경 공공투자정책팀장, 김수정 전문연구원</li> </ul>
목적	- 우크라이나와 KDI는 현재 '우크라이나 국내외 투자활성화를 위한 메커니즘 구축'을 주제로 KSP사업을 진행중이며 KSP사업의 정책실무자연수의 일환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 방문하여 한국의 공공투자관리제도(공공투자사업의 평가선정·타당성 평가 등)를 공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및 기능 소개</li> <li>- 한국의 재정투자평가제도 소개 및 관련 질의응답</li> </ul>



### 7. 캄보디아 PPP 전담기관 사절단 방원회의

기간	2018. 10. 2.
장소	- KDI 중회의실
참석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캄보디아 재경부) Vongsey Vichet 예산실 투자과장, Men Vivoit Vithiea 예산실 사무관 외 7인</li> <li>- (캄보디아 PPP 전담기관) Sam Vongsy PPP 전담기관장 외 3인</li> <li>- (KDI) 김기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김탁경 공공투자정책팀장, 김수정 전문연구원, 송가원 연구원</li> <li>- (KIND) 사업전략실 윤채린 과장 외 2인</li> </ul>
목적	- 캄보디아 재경부와 PPP 전담기관 사절단은 한국 인프라 시설현장을 방문하고 유관기관(기재부, KDI PIMAC 등)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의 인프라 기획재정부 /KDI(PIMAC)와의 미팅을 통해서 한국 인프라 시설 구축과 민간투자제도의 추진 과정 관련 경험을 공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및 기능 소개</li> <li>-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제도 소개 및 관련 질의응답</li> </ul>

### 8. 대만 공업기술연구원 사절단 방원회의

기간	2018. 10. 31.
장소	- KDI 301호
참석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만) 대만 공업기술연구원 Chih-Chiang Chen(陳志強) 부실장, Lilian Lee(李修瑩) 선임연구원 외 1인</li> <li>- (KDI) 김탁경 공공투자정책팀장</li> </ul>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만 공업기술연구원은 대만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대만의 연구개발사업 대상 사전평가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li> <li>- 동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도입 배경과 대상사업 선정과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하며, 중소기업연구원의 요청으로 KDI를 방문하여 아래와 같은 논의를 진행하였음.</li> </ul>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수행절차 및 분석방법</li> <li>- 한국의 재정투자평가제도 전반에 관한 질의응답</li> </ul>

### 9. 2018년 민간투자사업 상반기 권역별 순회교육

기간	2018. 5. 9 ~ 5. 29
장소	○ 영남권(창원시청), 충청권(충남도청), 호남권(전남여성플라자), 수도권(인천건설기술교육원), 제주권(제주도청)
참석대상 (참석인원)	○ 주무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공무원(201명)
목적	○ 새로운 민간투자제도 교육 및 보급 확대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공무원 교육 강화를 위해 권역별 순회교육 시행
프로그램 및 내용	○ 1일차 - 민간투자사업 정책방향 - 민간투자사업 법령 및 제도 - 민간투자사업 주요 추진 절차 - 조달청 민자사업 실시절계 단가 적절성 검토 업무소개 및 방향 - 사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역할과 지원 사례 ○ 2일차(현장방문) - 수도권: 의정부경전철 - 제주권: 제주도립미술관

### 10. 2018년 상반기 민간기관 대상 민간투자사업 교육

기간	2018. 5. 25
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서울 The K 호텔)
참석대상	○ 민간기업 민간투자사업 담당자(61명)
목적	○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여 실무담당자의 민자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 민간투자사업 주요현안과 향후 정책방향을 소개하여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
프로그램 및 내용	○ 민간투자사업 정책방향 ○ 민간투자사업 법령 및 제도 ○ 민간투자사업 주요 추진 절차 ○ 조달청 민자사업 실시절계단가 적절성 검토 업무소개 및 방향 ○ 사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역할과 지원 사례

### 11. 2018년 민간투자사업 재무심화교육

기간	2018. 6. 28 ~ 6. 29
장소	○ 리솜리조트 덕산(충남 예산군)
참석대상	○ 민간투자사업 공무원 및 공공기관 담당자(29명)
목적	○ 민간투자사업의 재무, 회계, 세무 등의 실무중심의 교육 ○ 실습을 통한 재무모델 이해 ○ 자금재조달 및 금융약정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 및 내용	○ 1일차 - 민간투자사업의 금융구조 및 재무분석 기초 - 재무모델의 이해와 실습 - 민간투자사업의 재무모델 변경 이해 ○ 2일차 - 금융약정 및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재조달의 이해 -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세무 이슈

### 12. 2018년 민간투자사업 하반기 권역별 순회교육

기간	2018. 8. 28 ~ 9. 13
장소	○ 영남권(부산 크라운하버호텔), 호남권(광주인력개발원), 강원권(정원미달로 타권 역으로 교육이관), 충청권(온양그랜드호텔), 수도권(서울 The K 호텔)
참석대상 (참석인원)	○ 주무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공무원(144명)
목적	○ 새로운 민간투자제도 교육 및 보급 확대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공무원 교육 강화를 위해 권역별 순회교육 시행
프로그램 및 내용	○ 1일차 - 민간투자사업 정책방향 - 민간투자사업 제도 및 법령의 이해 - 민간투자사업 주요 추진절차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역할과 지원 사례 ○ 2일차(현장방문) - 수도권: 서울경찰청 어린이집

**13. 2018년 하반기 민간기관 대상 민간투자사업 교육**

기간	2018. 9. 19
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서울 The K 호텔)
참석대상	○ 민간기업 민간투자사업 담당자(77명)
목적	○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여 실무담당자의 민자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 민간투자사업 주요현안과 향후 정책방향을 소개하여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
프로그램 및 내용	○ 민간투자사업 정책방향 ○ 민간투자사업 제도 및 법령의 이해 ○ 민간투자사업 주요 추진절차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역할과 지원 사례

**14. 2018년 민간투자사업 심화교육**

기간	2018. 11. 21 ~ 11. 23
장소	○ 리솜리조트 덕산(충남 예산군)
참석대상	○ 민간투자사업 공무원 및 공공기관 담당자(51명)
목적	○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 능력 제고를 위해 주무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민자사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민간투자사업 심화교육 시행
프로그램 및 내용	○ 1일차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소개 - 적격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자 제안공고 작성요령 및 사업계획서 평가방법 ○ 2일차 - 자금 재조달의 이해 - (특강) 기후변화가 정치,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 - 민간투자사업 분쟁 현황 및 대응방안 ○ 3일차 -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주요 정책방향 - Infracore DB system 활용



## 제 V 장

### 2018년도 조세특례 평가사업 과제별 요약표

---



< 조세특례 심층평가 >

**1. 농림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8. 2. ~ 2018. 9.
연구진	- KDI 연구진: 김동준, 이경배 - 외부 연구진: 정규언(고려대), 김관수(서울대)
주요 내용	- 농민, 임업인, 어민이 농·임·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공급에 대해 부가 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를 면제함.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분	내용
정책대상	- 농민(개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 임업인(개인,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어민(개인, 영어조합법인,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어업주업법인)
현황	- 본 제도는 1971년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2에 어업용 면세유 조항으로 신설된 후 농업, 임업으로 지원부문과 특례세목, 대상품목이 지속적으로 확대됨. - 조세감면 규모는 2010년 1조 5,406억을 기록하였으나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 후 2016년 1조 1,086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타당성 분석	- 정부개입, 정책수단, 정책목표, 정책대상의 적절성 측면에서 정부의 개입은 종합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누수효과와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함. - 지속적으로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나 향후에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착색유제도, 판매이익을 제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직접지불제와는 정책목표와 대상이 일부 중복되나 심각한 수준은 아님.
효과성 분석	- 일몰 시 세수는 약 1조 2,349억원 증가하나 총 잉여는 약 1조 1,656억원 감소함. - 일몰 시 농·어업부문 총 노동투입량은 465천 시간 증가하며, 취업자 수는 457명 증가함. - 제도 시행으로 농가·어가소득과 농업·어업소득이 모두 상승하나 농업부문 소득불평등도는 다소 개선되고 어업부문 소득불평등도는 다소 심화됨.
개선방안	- 장기적으로 소득보전이라는 정책목표가 더 중요시될 경우 직접적인 재정지출이나 소득을 지원하는 다른 조세지원체계에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함. - 중기적으로 수혜자에 의한 직접 사후환급제도로 변환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단기적으로는 필요경비 공시제도의 확대·강화, 착색유 도입 필요
종합결론	- 일몰을 1회 연장하되 가능하다면 연장의 기간은 효과발현 상에 연관제도인 「농어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일몰에 맞추어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



## 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8. 2. ~ 2018. 9.
연구진	- KDI 연구진: 김동준, 박보영 - 외부 연구진: 홍인기(대구대), 김형건(강원대)
주요 내용	- 에너지절약시설과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 - 세액공제율은 에너지절약시설의 경우 투자금액의 1%(대기업), 3%(중견기업), 6%(중소기업)이며, 환경보전시설의 경우 투자금액의 1%(대기업), 3%(중견기업), 10%(중소기업)임.

###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분	내용
정책대상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
현황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연평균 감면액은 2,082억원(2018년)이며,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연평균 감면액은 506억원(2018년)임.
타당성 분석	- 정부개입 및 정책대상과 목표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수직적 형평성제고 측면에서도 기여하였으며, 용자사업 등 타 제도와의 목적과 명목 상 유사성은 존재하나,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특정설비투자 시에 세액공제 방식을 통해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도 뚜렷한데, 이는 본 제도가 향후 개선을 통해 효율성과 형평성 등의 기준을 좀 더 잘 충족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효과성 분석	- 두 조세특례는 투자를 유인하지만 그 유인효과는 크지 않으며 반면에 차등적인 세액공제 혜택이 차별적인 투자유인으로 작용하지 않음. - 종합적으로 본 조세특례는 비용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다고 판단됨.
개선방안	- 제도의 유지 기간은 정책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고 경제주체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소 3년이 적절 - 제도의 중장기적 개선방안: 제품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라 편제된 대상시설 항목들을 성과기준 중심으로 개편
종합결론	-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전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개입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유의하게 나타나므로, 두 세액공제 제도를 당분간 유지할 필요성이 존재함.

### 3.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8. 2. ~ 2018. 9.
연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DI 연구진: 정동호, 김수정</li> <li>- 외부 연구진: 전병욱(서울시립대), 노용환(서울여대)</li> </u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창업 초기의 열악한 경영여건 개선 및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li> </ul>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분	내용
정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창업후 3년 이내에 관련 인증을 받아야 함.)</li> </ul>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조세지출 규모는 2007년(1,783억원) 이후 2010년(1,124억원)까지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상승하는 추세(2016년, 1,994억원)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의 연도별 감면금액 변화에 따른 것임.</li> </ul>
타당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개입 및 정책수단, 정책목표, 정책대상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li> <li>- 제도운영의 적절성 측면에서 감면대상의 구분은 적절하나, 기술형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며, 타제도와의 중복가능성 여지도 일부 존재함.</li> </ul>
효과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제도에 따른 소득세 실효세율 감면정책은 개인창업, 청년창업, 기술형창업 모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법인세 실효세율의 경우 기술형 창업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li> <li>- 특히 법인의 경우 기술형 창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음.</li> </ul>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석과 설문결과에 따라 본 제도의 실제 투자 및 고용의 증가 효과는 상당하나 인지도가 낮아 동 감면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li> <li>- 조세정책과 재정지원정책의 중복성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생존기반 기술형 창업에 효과적이라는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유망산업과 고용을 많이 창출시킬 수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창업을 유도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li> <li>- 수혜업종의 점진적 확대가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므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존재함.</li> </ul>
종합결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당성과 효과성 분석 결과 본 제도의 실효성은 인정되는 바, 2018년 5월 법 개정을 통한 2021년까지 일몰연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li> </ul>

## 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8. 2. ~ 2018. 9.
연구진	- KDI 연구진: 박용진, 사지원 - 외부 연구진: 흥인기(대구대) 임상수(조선대)
주요 내용	-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도입되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경감하는 제도임.

###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분	내용
정책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현황	- 1995년 「조세감면규제법」에 신설, 2004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2018년 12월 31일에 일몰 예정임. - 법인택시 등록대수는 소폭이나마 계속 감소 추세인 반면 등 조세특례 감면액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부가가치세 경감을 확대에 기인).
타당성 분석	- 정부개입의 적절성은 낮다고 판단되지만 수요대응형 대중교통의 역할 확대 측면에서 개입의 필요성은 존재하며, 정책수단은 대체제도가 존재함. - 정책목표는 조세원칙에 근거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나, 정책대상은 정책목표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제도운영은 조세체계의 간소성을 강화하고 혜택의 귀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조세특례의 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택시 종사자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사 제도가 존재하나 중복수혜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효과성 분석	- 본 제도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소득보전으로서 비용편익 측면에서의 타당성은 부재한 것으로 검토됨. - 현행 제도가 감면 대상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인데 반해 편익 대상은 운수종사자이기 때문에 정책 목표가 불명확할 수 있어, 제도의 목적이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이라면 보조금을 통한 제도 역시 고민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평가는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을 분석하는데 있어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몇 가지 가정을 전제했다는 점에서 해석상 한계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개선방안	- 개인택시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직접 지급체제로 제도 변경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택시 관련 여러 조세특례들과의 관련성과 택시업종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규제책 및 진흥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의 필요성 있음.
종합결론	- 본 조세특례는 일몰을 종료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유예기간을 정하고 일몰을 1회 연장하는 것이 필요함. - 일몰 연장 후, 택시 관련 여러 조세특례들과의 관련성과 택시업종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규제책 및 진흥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5.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8. 2. ~ 2018. 9.
연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DI 연구진: 진성, 김재영, 이주영</li> <li>- 외부 연구진: 김성태(정주대), 임병인(충북대)</li> </u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연료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li> </ul>

###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분	내용
정책대상	하이브리드 자동차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년 신설되어 2009년 07월부터 적용되었으며, 두 차례 일몰이 연장(2013년, 2015년)되어 2018년에 일몰이 도래하였음.</li> <li>- 조세지출 규모는 제도가 도입된 2009년 27억원, 2010년 114억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508억원 수준으로 집계됨.</li> </ul>
타당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조세특례를 통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확대 및 이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조세특례제도의 타당성을 확보함.</li> <li>- 다만,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제도와의 정책 목표 및 대상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중복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li> </ul>
효과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조세특례에 의한 효과는 비용(조세지출규모) 대비 99.5%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어, 효과성은 일반적인 기준에 비해 근소하지만 낮은 것으로 검토됨.</li> <li>- 한편,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요 확대를 통한 생산기술 발전 등 정량화가 어려운 효과는 반영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li> </ul>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함께 친환경자동차 전반에 대한 수요 변화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조세특례제도의 일몰 시점과 최대감면액 수준에 대한 탄력적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li> <li>-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자동차 관련 세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li> </ul>
종합결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 제도의 전반적인 타당성이 확보되고 효과성 및 형평성이 정책 목표에 일정 수준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제도 유지를 위한 일몰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li> </ul>



## 참고 문헌

- 국회예산정책처, 『2010 공공기관 현황분석』, 2010.
- 기획예산처, 『SOC 민간투자제도 발전방안 연구』, 2002.
-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2018.4.
- 기획재정부, 『2018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2018.12.
- 기획재정부,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시행계획』, 2013.
-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2016.11.
-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2017.9.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내실화 방안』, 2012.11.
-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2011.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각 년도.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년도.
-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각 년도.
- 한국개발연구원, 『2011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도입백서』, 2012.
- 한국개발연구원,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2013.
- 한국개발연구원, 『2012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2013.
- 한국개발연구원, 『2013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2014.
- 한국개발연구원, 『2014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2015.
- 한국개발연구원, 『2015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2016.
- 한국개발연구원, 『2016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2017.
- 한국개발연구원, 『2017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2018.
- 한국개발연구원, 『민간투자사업의 국가정책 부합여부 및 우선순위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2008.
- 한국개발연구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 정비방안 연구』, 2007.
-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2008.
-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6판)』, 2016.
- 한국개발연구원, 『총괄백서 : 예비타당성 조사 어떻게 이루어졌나?』, 1999.
- 한국개발연구원, 『타당성재조사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2판)』, 2012.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http://pimac.kdi.re.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http://www.law.go.kr))